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9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3. 10. 25.(수), 14:00~16: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의원 : 이상석, 강철기, 조운연, 서정호, 한인섭,  
김영모, 김용식, 이성주, 백운기, 한성용,  
윤 주, 신현실, 만당(최재호)(이상 13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 【심의사항】

1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등 천연기념물 및 명승 59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2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둔치도 강변길 가로등 설치	(공개)
3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신설 (*설명)	(공개)
4	「장성 백양사 고불매」 주변 수각 및 석조 설치 (*설명)	(공개)
5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중청대피소 신축	(공개)
6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외 홍도 2구항 어촌뉴딜 사업 (*설명)	(공개)

## 【검토사항】

7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공개)
8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공개)
9	「곡성 함허정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공개)
10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잠수함 운항 관련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에 따른 향후 조치 등 검토	(공개)

## 【보고사항】

11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건수 107건)	(공개)
----	----------------------------------	------

---

# 심 의 사 항

---

## 1.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등 천연기념물 및 명승 59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등 천연기념물 및 명승 59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등 천연기념물 및 명승 59건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기존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21년부터 지역별로 연차적으로 시행중에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반영
- 주요경과
  - '21~'22년 경기, 인천, 부산, 강원, 제주 등 11개 광역시·도 대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보존정책과)
  - '22.10.12./'23.4.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추진 요청(문화재청→대상 시·도)
  - '22.11.30.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개정
  - '22.10~'23.8. 대상문화재별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조정 추진 요청
  - '23.9.~10. 대상 지자체 허용기준 검토, 조정 및 행정 예고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등 14인

연번	관리단체	건수	연번	관리단체	건수
1	서울특별시 관악구	1건	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3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건	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1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1건	10	경기도 고양시	1건
4	인천광역시 서구	1건	11	경기도 남양주시	1건
5	대전광역시 서구	1건	12	경기도 화성시	1건
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7건	13	세종특별자치도	1건
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5건	14	제주특별자치도	34건
<b>합계</b>					<b>59건</b>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등 59건

- 천연기념물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82.11.09.지정)
- 천연기념물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80.10.27.지정)
- 천연기념물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82.11.09.지정)
- 천연기념물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13.07.17.지정)
- 천연기념물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64.01.31.지정)
- 천연기념물 「강릉 방동리 무궁화」(‘11.01.13.지정)
- 천연기념물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05.07.19.지정)
- 천연기념물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04.04.09.지정)
- 천연기념물 「원성 성남리 성황림」(‘62.12.07.지정)
- 천연기념물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64.01.31.지정)
- 천연기념물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82.11.09.지정)
- 천연기념물 「철원 철새 도래지」(‘73.07.10.지정)
- 천연기념물 「고양 송포 백송」(‘62.12.07.지정)
- 천연기념물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70.12.24.지정)
- 천연기념물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06.04.04.지정)
- 천연기념물 「연기 봉산동 향나무」(‘82.11.09.지정)
- 천연기념물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62.12.07.지정)
-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군」(‘64.01.31.지정)
- 천연기념물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93.08.19.지정)
- 천연기념물 「제주 남읍리 난대림」(‘93.08.19.지정)
- 천연기념물 「차귀도 천연보호구역」(‘00.07.18.지정)
- 천연기념물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01.09.11.지정)

- 천연기념물 「제주 수산리 곰솔」(‘04.05.14지정)
- 천연기념물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11.01.13.지정)
- 천연기념물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93.08.19.지정)
- 천연기념물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00.07.18.지정)
- 천연기념물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 (흑비둘기,슴새) 번식지」(‘82.11.20.지정)
- 천연기념물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84.08.14.지정)
- 천연기념물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71.09.30.지정)
- 천연기념물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79.06.21.지정)
- 천연기념물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변」(‘04.04.09.지정)
- 천연기념물 「제주 비양도 호니토」(‘04.04.09.지정)
- 천연기념물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09.12.11.지정)
- 천연기념물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05.01.06.지정)
- 천연기념물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05.09.08.지정)
- 천연기념물 「제주 수산동굴」(‘06.02.07.지정)
- 명승 「명주 청학동 소금강」(‘70.11.23.지정)
- 명승 「대관령 옛길」(‘10.11.15.지정)
- 명승 「강릉 용연계곡 일원」(‘13.03.21.지정)
- 명승 「영월 어라연 일원」(‘04.12.07.지정)
- 명승 「영월 한반도 지형」(‘11.06.10.지정)
- 명승 「영월 선돌」(‘11.06.10.지정)
- 명승 「제주 방선문」(‘13.01.04.지정)
- 사적 동삼동 패총(‘79.07.26.지정) 및 명승 「부산 영도 태종대」(‘05.11.01)
- 명승 「영월 청령포」(‘08.12.26.지정) 및 천연기념물 「영월 청령포 관음  
송」(‘88.04.30.지정)
-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86.02.08.지정) 및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64.01.31.지정)
- 천연기념물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62.12.07.지정) 및 「천제연 난대  
림」(‘93.08.19.지정)
-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04.12.13.지정) 및 「제주 삼도 파  
초일엽 자생지」(‘62.12.07.지정)
- 명승 「제주 서귀포 산방산」(‘11.06.30.지정) 및 천연기념물 「제주 사계리 용머  
리 화산쇄설층」(‘11.01.13.지정),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93.08.19.지정)

- 명승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제주 서귀포 외돌개 및 천연기념물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62.12.07.지정),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68.05.29.지정), 「제주 천지연 난대림」(‘93.08.19.지정)

(3) 신청내용 : 천연기념물 및 명승 59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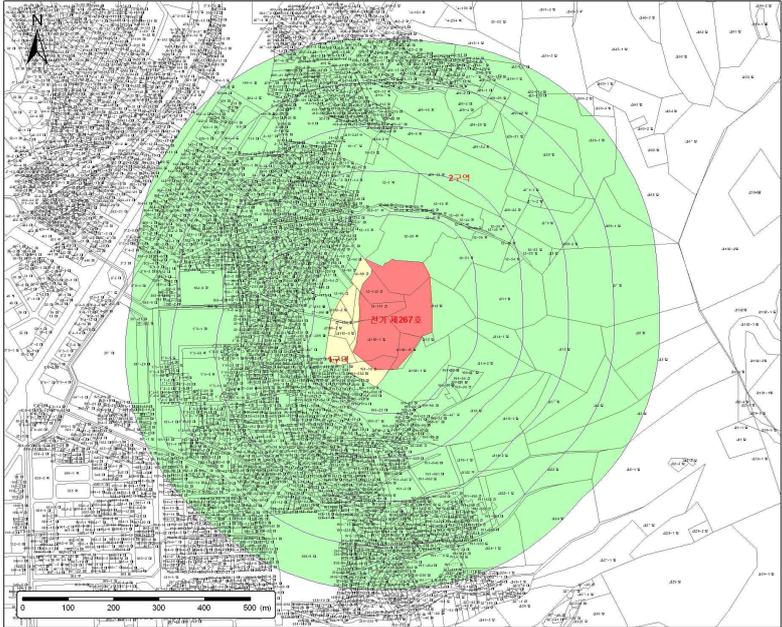
- 천연기념물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 허용기준 현행

대상문화재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기존규모 개축·재축 허용	
2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시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천연기념물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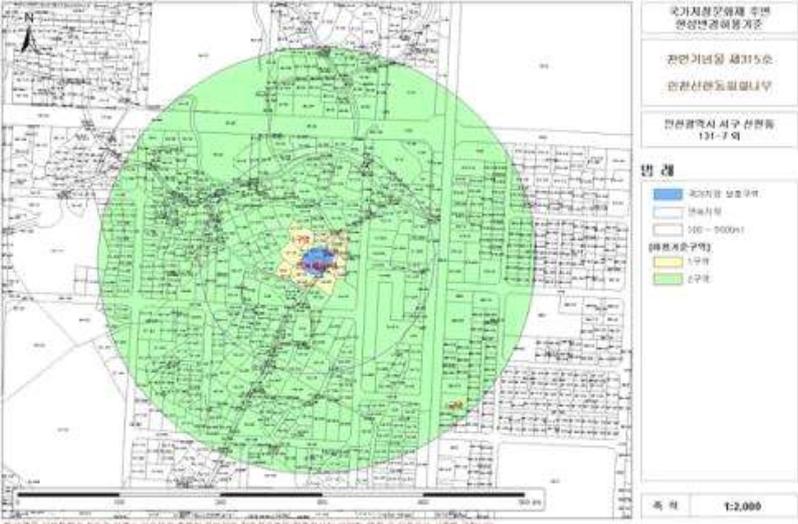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
도면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flex: 1;">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div> <div style="flex: 1;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bottom: 5px;">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p>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bottom: 5px;">천연기념물 제267호 부산전포동구상반려암</p>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bottom: 5px;">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12 외</p> <p><b>범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red;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국가지정 문화재</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연속지적</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purple; margin-right: 5px;"></span> 100 ~ 500(m)</li> </ul> <p><b>【허용기준구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yellow;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1구역</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lightgreen;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2구역</li> </ul>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top: 5px;">축척 <b>1:5,500</b></p> </div> </div>
구분	허용기준
제1구역	○ 기존규모 재·개축 허용
제2구역	○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b>	
도면	<div style="position: absolute; top: 10px; right: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p> <p>천연기념물 제267호 부산전포동구상반려암</p> <p>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12 외</p> <p><b>범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red;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국가지정 문화재</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연속지적</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100 ~ 500(m)</li> </ul> <p><b>【허용기준구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yellow;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1구역</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lightgreen;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2구역</li> </ul> <p>축척 <b>1:5,500</b></p> </div>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 검토	
2구역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mm 이내)은 제외)</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li> </ul>	

○ 천연기념물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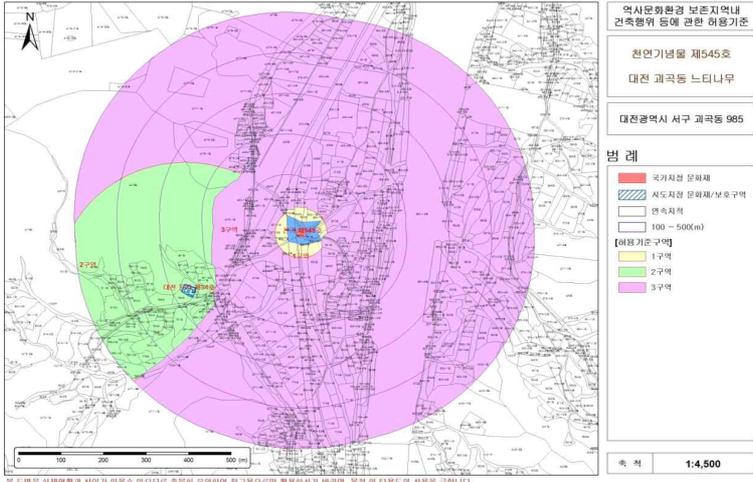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 (10:3이상)</b>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5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5층 이하)
2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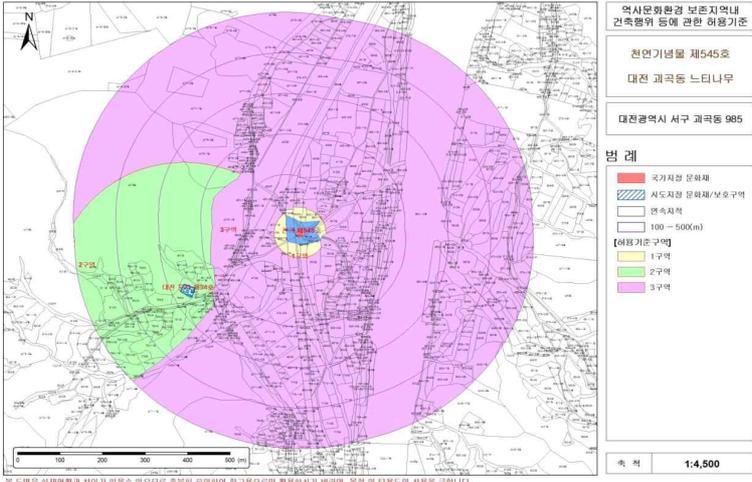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2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검토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li> </ul>	

○ 천연기념물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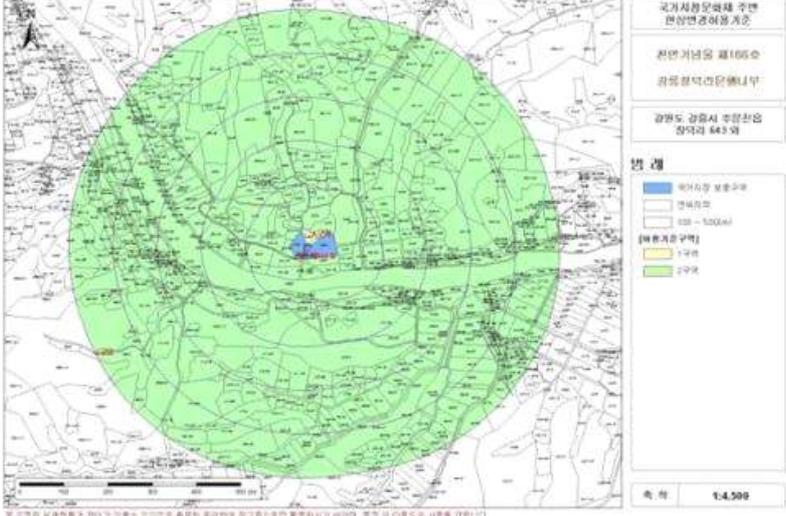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b>	
도면	 <p>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85</p> <p><b>범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정 문화재</li> <li>시도지정 문화재/부후구역</li> <li>연속지적</li> <li>100 - 500(m)</li> </ul> <p><b>【허용기준구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구역</li> <li>2구역</li> <li>3구역</li> </ul> <p>축척 1:4,500</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파평윤씨 서윤공파고택(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3구역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li> <li>○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li> </ul>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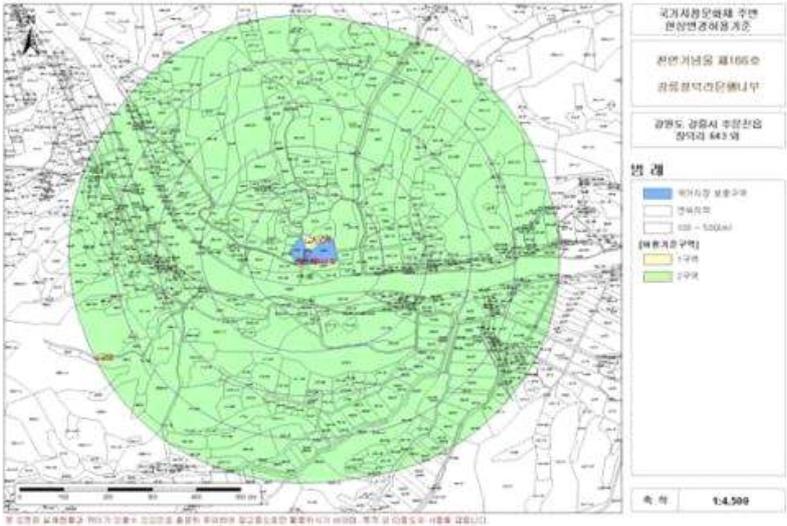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b>	
도면	 <p>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85</p> <p><b>범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정 문화재</li> <li>시도지정 문화재/부후구역</li> <li>연속지적</li> <li>100 - 500(m)</li> </ul> <p><b>【허용기준구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구역</li> <li>2구역</li> <li>3구역</li> </ul> <p>축척 1:4,500</p> <p><small>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small></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 검토	
2구역	○ 파평윤씨 서운공파고택(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3구역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li> </ul> <p>&lt;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이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ul>	

○ 천연기념물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

- 허용기준 현황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강릉 장덕리 은행나무</b>	
도면	 <p>The map shows a circular green zone representing the natural monument area. A legend on the right indicates various zones: '문화재구역' (Cultural Heritage Area) in blue, '경사지붕' (Sloped Roof) in yellow, and '1구역' (Zone 1) in light green. Text on the map includes '국기시정문화재 주변 관할면적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105호', '관동문화유산은행나무', and '강릉도 강릉시 후문산읍 장덕리 843-9'. The scale is 1:4,500.</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li>&lt;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 &gt;</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ul>	

○ 천연기념물 강릉 방동리 무궁화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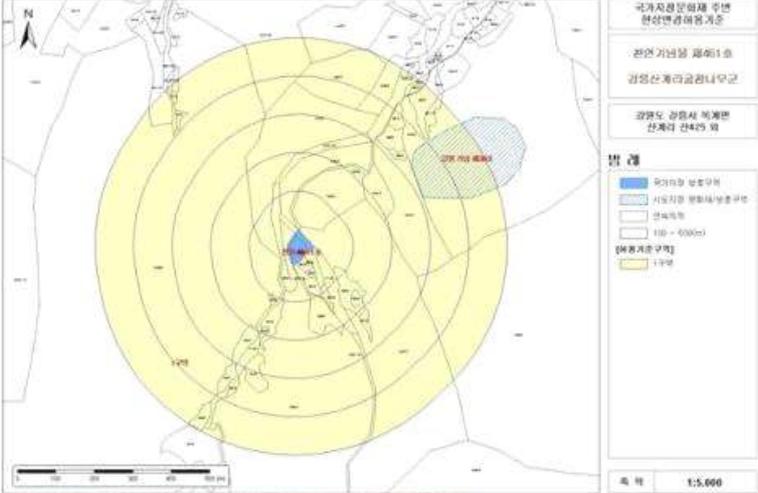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강릉 방동리 무궁화</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2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p>○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p> <p>○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p>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강릉 방동리 무궁화	
도면	<div style="position: absolute; top: 10px; right: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p> <p>천연기념물 제520호 강릉 방동리 무궁화</p> <p>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346</p> <p><b>범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blue; margin-right: 5px;"></span> 국가지정 보호구역</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연속지적</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100 ~ 500(m)</li> </ul> <p><b>[허용기준구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yellow; margin-right: 5px;"></span> 1구역</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lightgreen; margin-right: 5px;"></span> 2구역</li> </ul> <p>축척 <b>1:4,500</b></p> </div>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2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li>&lt;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 &gt;</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ul>	

○ 천연기념물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 허용기준 현행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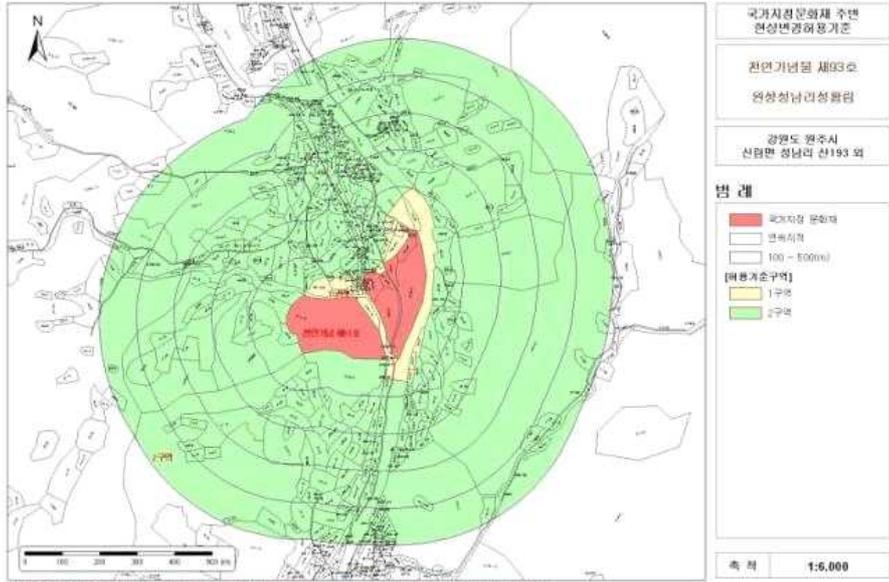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mm 이내)은 제외)</li> <li>○ &lt;2, 3구역 적용&gt;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li> </ul>	

○ 천연기념물 원성 성남리 성황림

- 허용기준 현행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원성 성남리 성황림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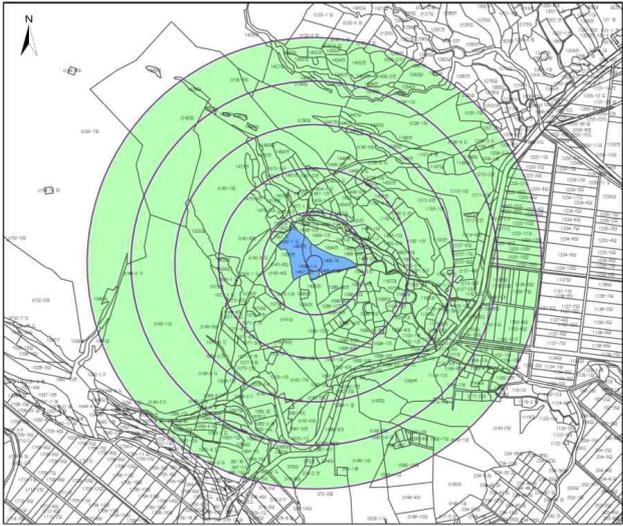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원성 성남리 성황림</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li>&lt;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적용 &gt;</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ul>	

○ 천연기념물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 허용기준 현행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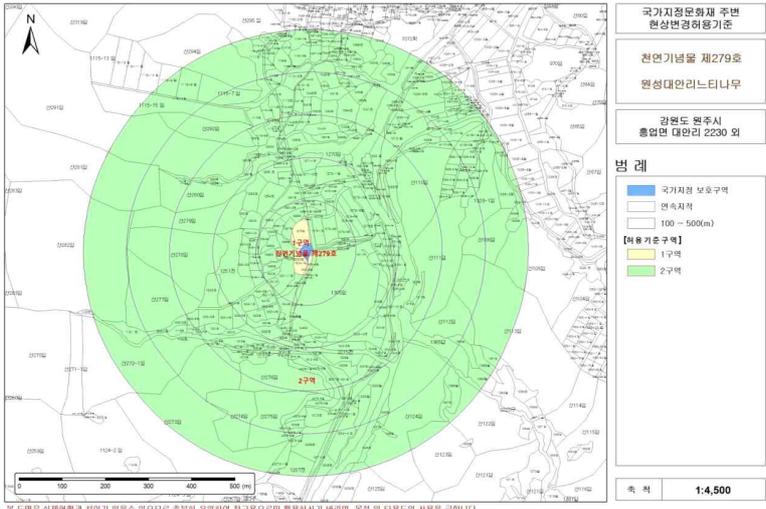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li>&lt;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적용 &gt;</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ul>	

○ 천연기념물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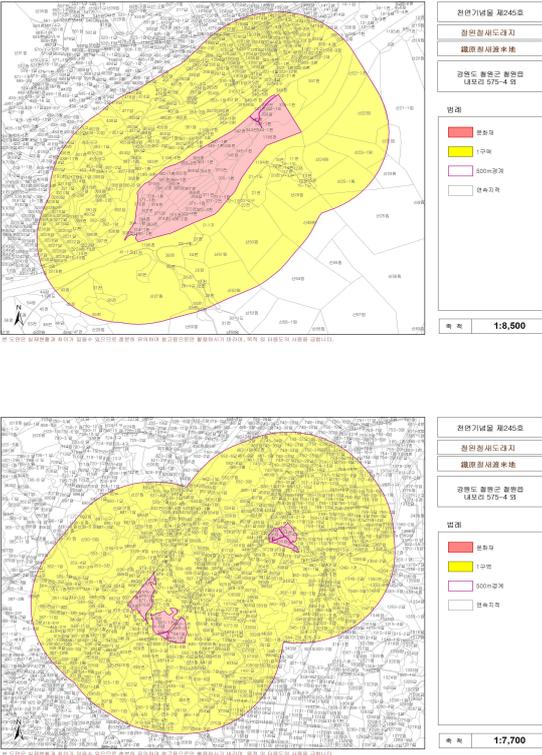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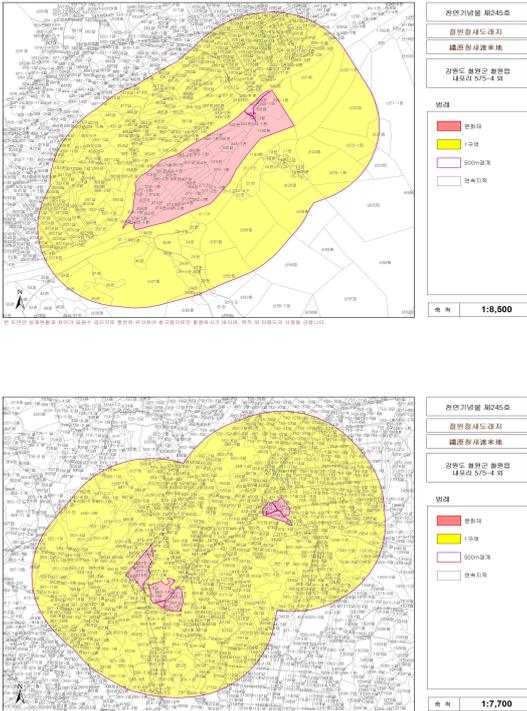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원성 대안리 느티나무</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li>&lt;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적용 &gt;</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ul>	

○ 천연기념물 철원 철새 도래지

- 허용기준 현행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철원 철새 도래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고
1구역	○ 철원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문화재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
공통 사항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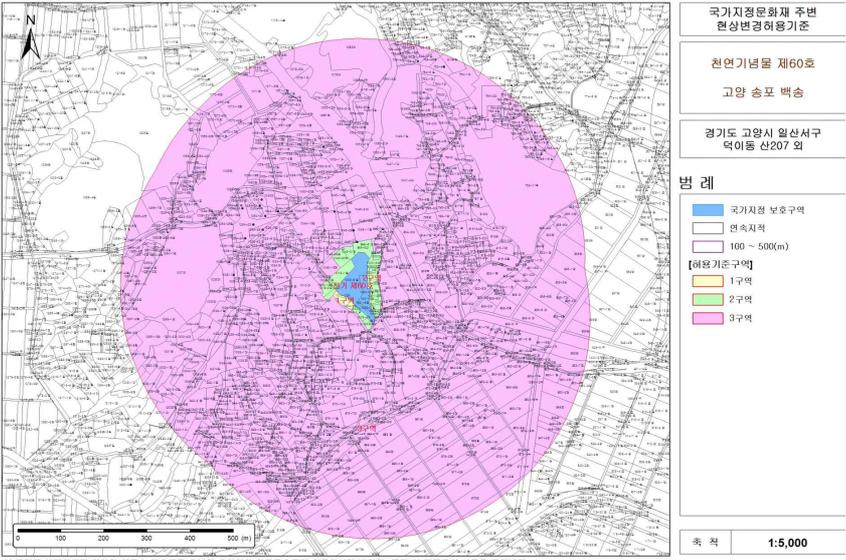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칠원 칠새 도래지</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칠원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지하수법」 등에 따른 농업용 등 지하수 개발(관정깊이 100미터 내, 관정지름 150밀리미터 내) 제외)</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천연기념물 고양 송포 백송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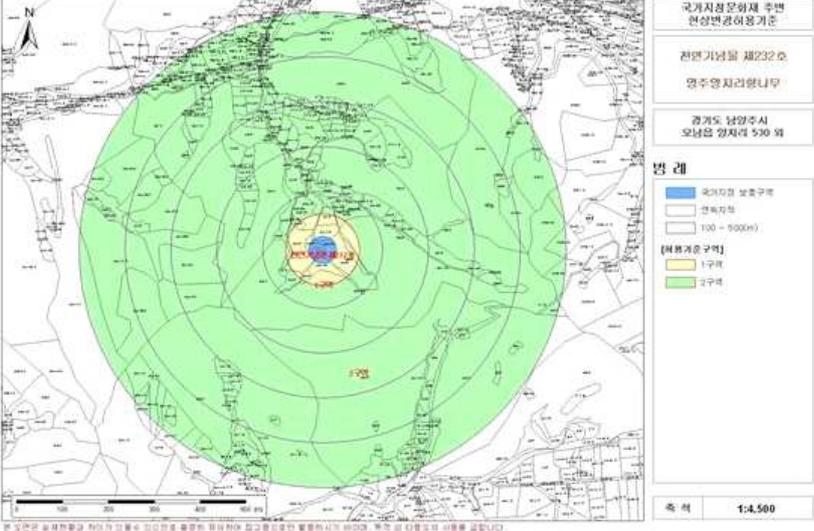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고양 송포 백송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li> <li>○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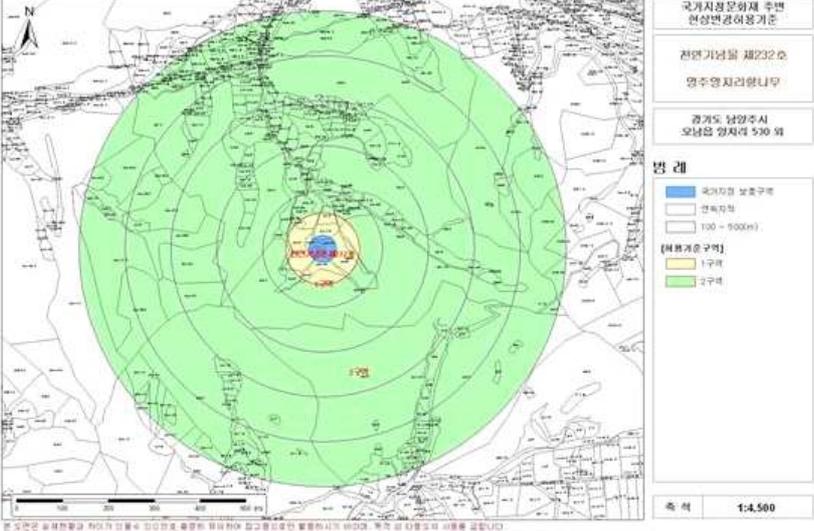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고양 송포 백송</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li> </ul> <p style="margin-left: 20px;">&lt;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100m이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ul>	

○ 천연기념물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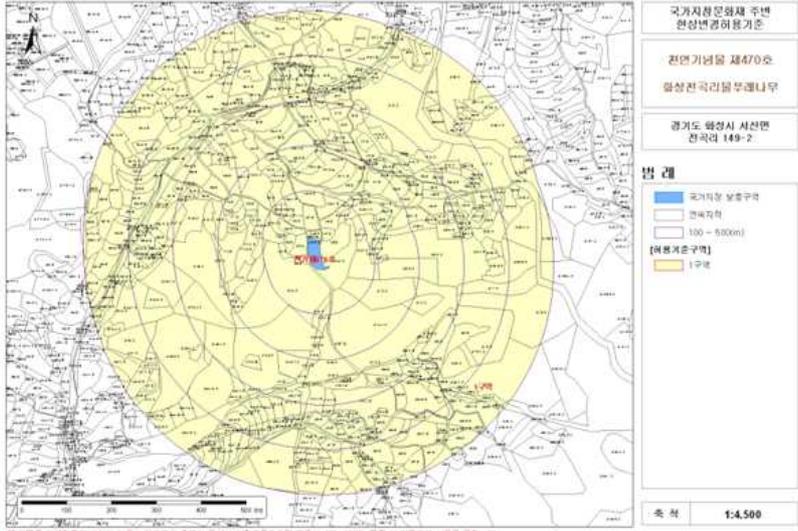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건축물 높이 11m이하	○ 건축물 높이 15m이하
2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b>	
도면	 <p>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면적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232호 영주양지리향나무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530 외</p> <p><b>범례</b> 국가지정 보훈구역 경북지정 100 ~ 5000m [문화재구역] 1구역 2구역</p> <p>축척 1:4,500</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이하
2구역	○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p>○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p> <p>○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p> <p>○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p> <p>○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p> <p>○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p> <p>&lt;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이내&gt;</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p> <p>○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검토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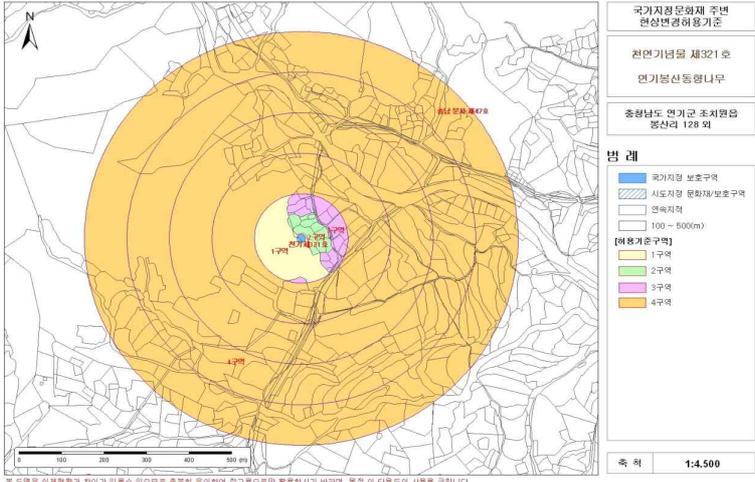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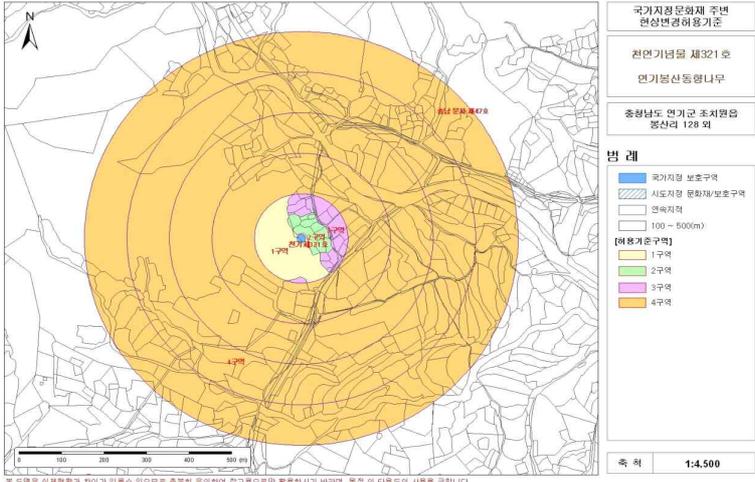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li>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li> </ul> <p>&lt;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검토함.</li> </ul>	

○ 천연기념물 연기 봉산동 향나무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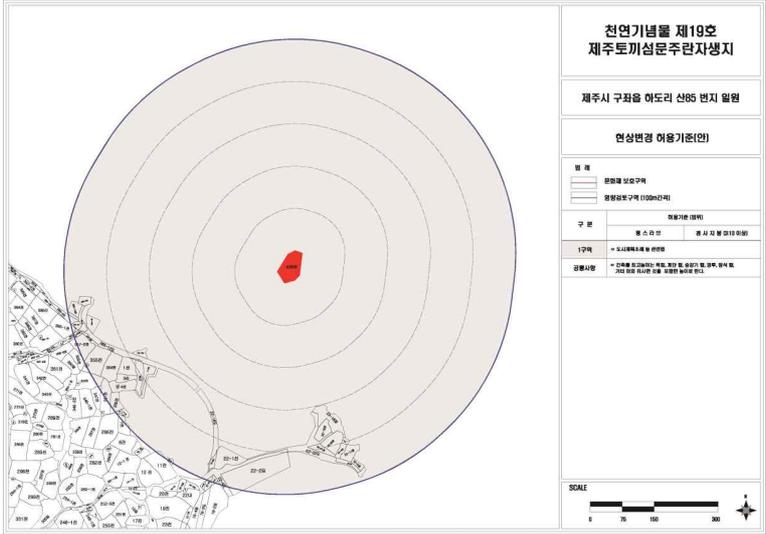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연기 봉산동 향나무	
도면	 <p>국가지원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봉산동향나무 충청남도 연기군 초지면음봉산리 128 외</p> <p>범례 국가지원 보호구역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연속지적 100 ~ 500(m) [허용기준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p> <p>축척 1:4,500</p> <p>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출판후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장식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 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서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li> <li>○ 도로, 교량 등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li> </ul>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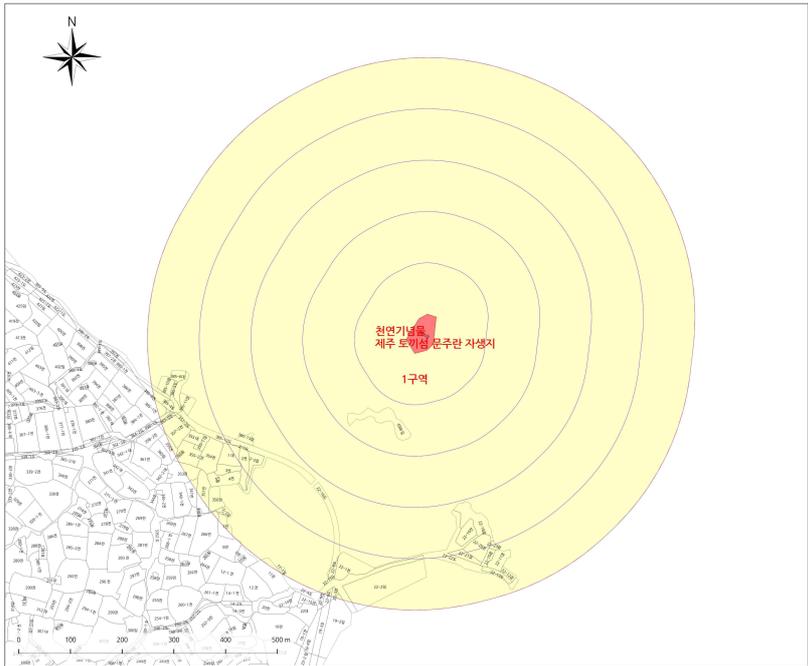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연기 봉산동 향나무</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 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세종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li> </ul> <p>&lt;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100m이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검토함.</li> </ul>	

○ 천연기념물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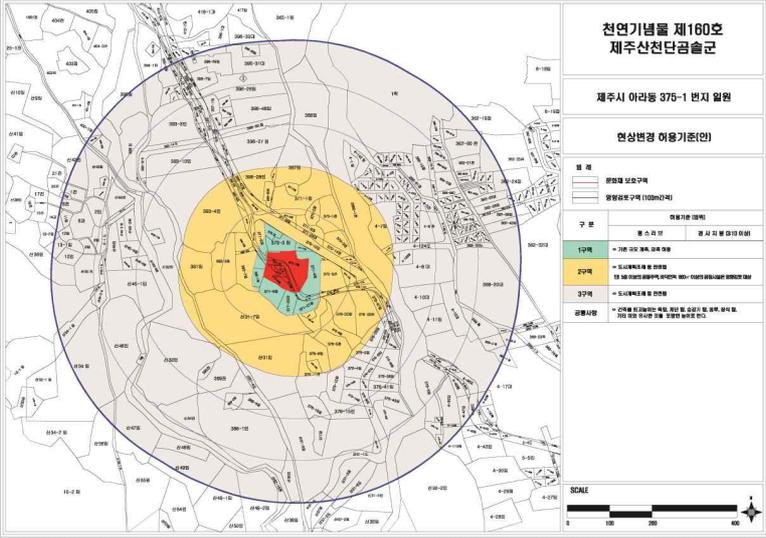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도면	 <p>The map shows the birthplace of Mungju-ran on Jeju Rabbit Island, marked with a red dot. Concentric circles represent different buffer zones. The legend on the right specif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연기념물 제19호 제주토끼섬문주란자생지 (Natural Monument No. 19, Jeju Rabbit Island Mungju-ran Birthplace)</li> <li>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산85 번지 일원 (Jeju City Gwajup Hado-ri San 85 Bn-ji Il-won)</li> <li>현상변경 허용기준(면) (Current Change Allowance Standard (Area))</li> <li>평지붕 (Flat Roof)</li> <li>경사지붕 (10:3이상) (Sloped Roof (10:3 or steeper))</li> </ul> </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b>	
도면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font-size: small; color: red;">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style="font-size: x-small;">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천연기념물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p> <p style="font-size: x-small;">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산 85</p> <p><b>법 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red;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국가지정 문화재</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연속지적</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100~500(m)</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yellow;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허용기준 구역] 1구역</li> </ul>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top: 10px;"><b>축 척</b> 1 : 5,000</p> </div> </div>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li> </ul>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곶솔 군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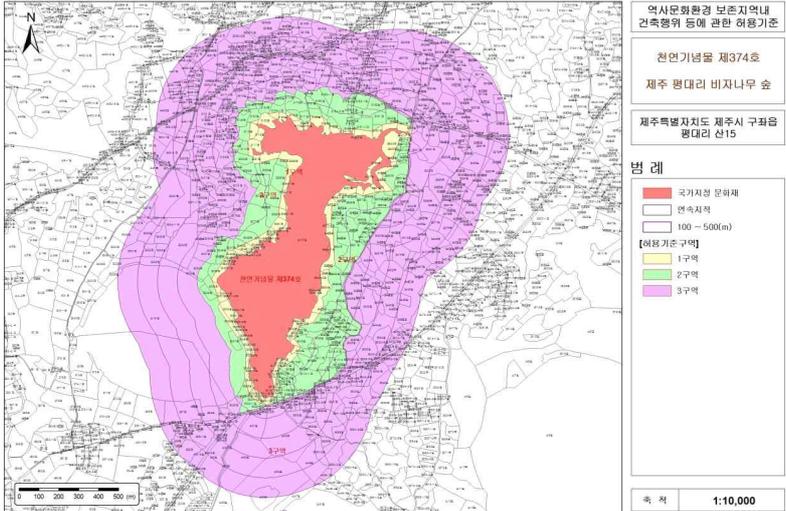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곶솔 군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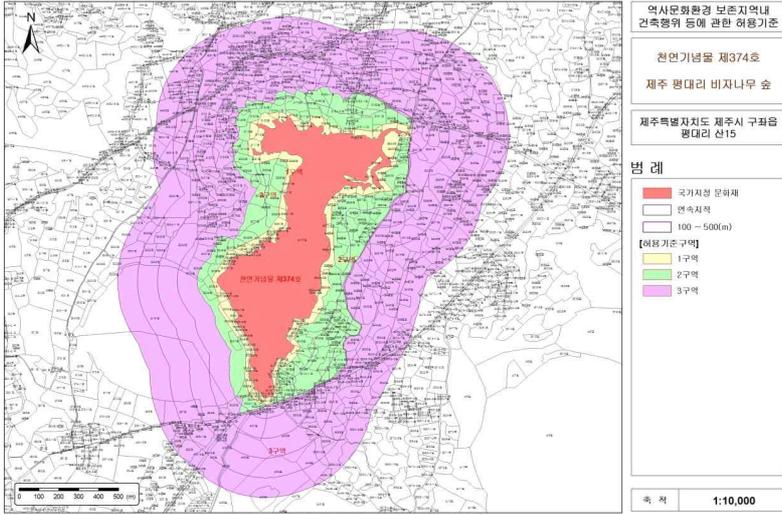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 군	
도면	<p>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p> <p>천연기념물 제주 산천단 곰솔 군</p> <p>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3041-24 (아라일동)</p>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정 보호구역</li> <li>연속지적</li> <li>100-500(m)</li> <li>허용기준 구역</li> <li>1구역</li> <li>2구역</li> <li>3구역</li> </ul> <p>축척 1:5,000</p> <p><small>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등의 사용을 금합니다.</small></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최고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개별 검토함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p>○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p> <p>○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p> <p>○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p> <p>&lt; 2구역 적용 &gt;</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p> <p>○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p> <p>○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p>	

○ 천연기념물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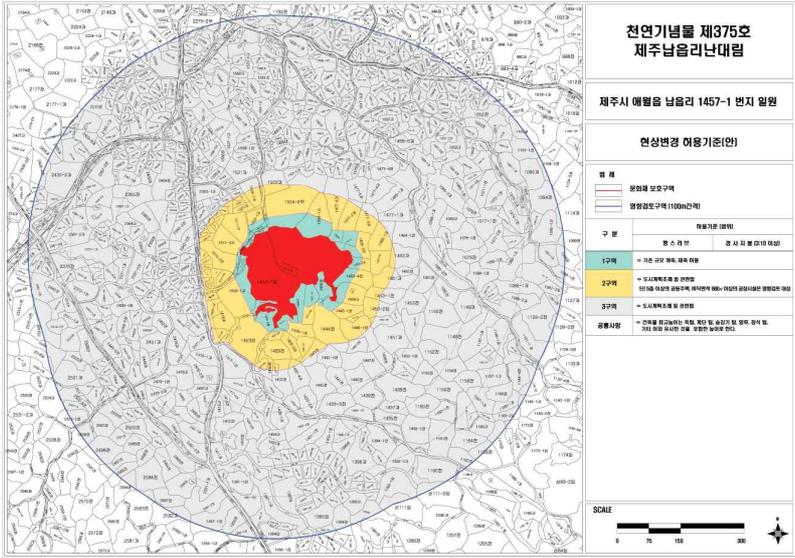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도면	 <p>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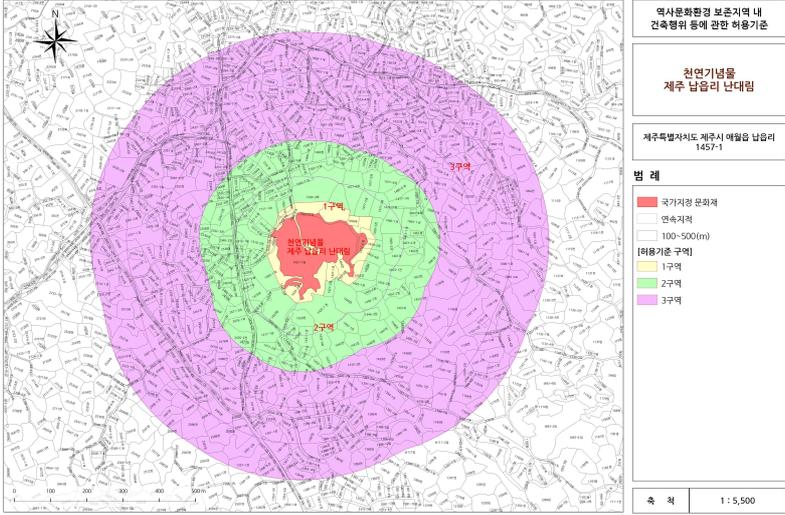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b>	
도면	 <p style="font-size: small;">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p> <p><b>범례</b>  <span style="color: red;">■</span> 국가지정 문화재  <span style="color: green;">■</span> 연속지적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span> 100~500(m)  <b>【허용기준구역】</b>  <span style="color: yellow;">■</span> 1구역  <span style="color: lightgreen;">■</span> 2구역  <span style="color: purple;">■</span> 3구역</p> <p>축척 1:10,000</p> <p style="font-size: x-small;">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반의 유효성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최고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개별 검토함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p>○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p> <p>○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p> <p>&lt; 2구역 적용 &gt;</p> <p>○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p> <p>○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p>	

○ 천연기념물 제주 납읍리 난대림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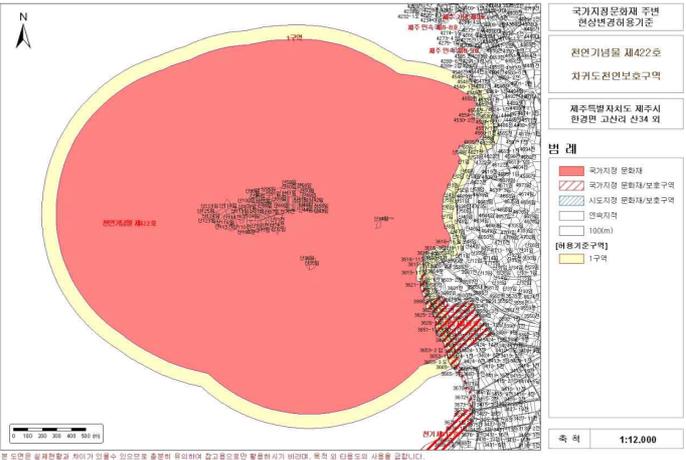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납읍리 난대림
도면	 <p><b>천연기념물 제375호 제주납읍리난대림</b></p> <p>제주시 해월읍 납읍리 1457-1 번지 일원</p> <p>연상변경 허용기준(안)</p> <p><b>범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 보호구역</li> <li>영향권보호구역(100m간격)</li> </ul> <p><b>구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구역: 기존 건물 유지, 용도 허용</li> <li>2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li> <li>3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li> </ul> <p><b>중요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용도(건축)는 벽체, 바닥, 지붕 등 용도(지붕, 방수, 방화 등)와 관련된 용도(건축)를 포함한다.</li> </ul> <p>SCALE: 0 75 150 300</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권 토 대상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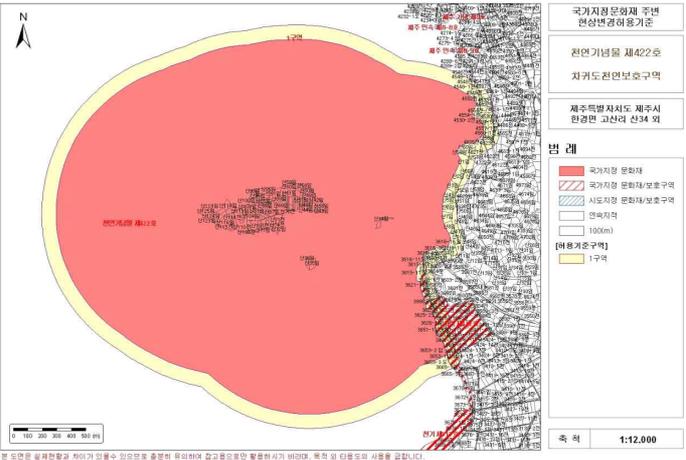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남읍리 난대림	
도면	 <p>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p> <p>천연기념물 제주 남읍리 난대림</p> <p>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예월읍 남읍리 145-1</p>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정 문화재</li> <li>연속지적</li> <li>100~500(m)</li> <li>[허용기준 구역]</li> <li>1구역</li> <li>2구역</li> <li>3구역</li> </ul> <p>축척 1:5,900</p> <p><small>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small></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최고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개별 검토함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p>&lt; 2구역 적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ul>	

○ 천연기념물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 허용기준 현행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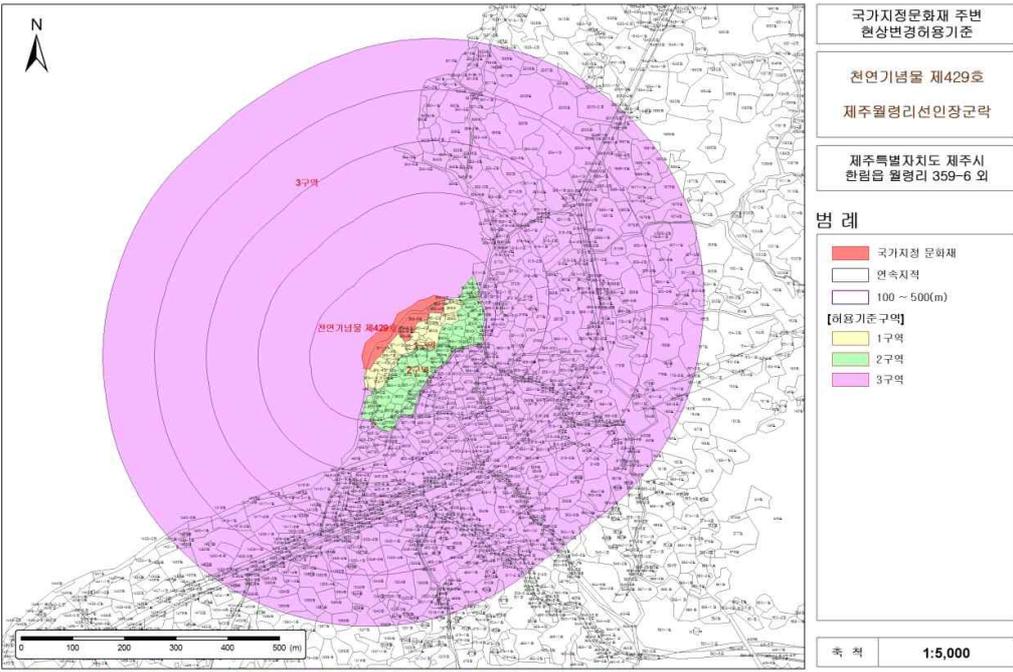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차귀도 천연보호구역</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li> </ul>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천연기념물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 허용기준 현행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도면	<p>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p> <p>천연기념물 제429호 제주월령리선인장군락</p> <p>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59-6 외</p>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정 문화재</li> <li>연속지적</li> <li>100 ~ 500(m)</li> </ul> <p>【허용기준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구역</li> <li>2구역</li> <li>3구역</li> </ul> <p>축척 1:5,000</p> <p>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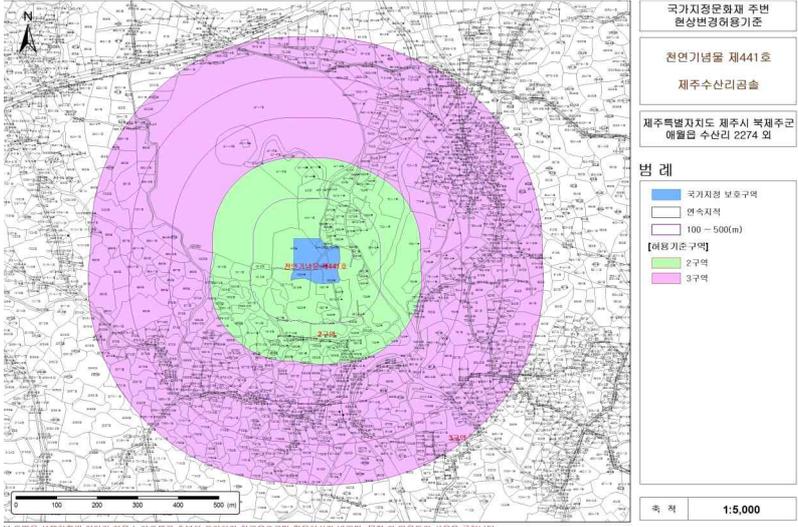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군락	
도면	 <p>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429호 제주월령리선인장군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59-6 외</p> <p>범례 국가지정 문화재 연속지적 100 ~ 500(m) [허용기준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p> <p>축척 1:5,000</p> <p>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최고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개별 검토함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p>○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p> <p>○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p> <p>&lt; 2구역 적용 &gt;</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p> <p>○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p> <p>○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p>	

○ 천연기념물 제주 수산리 곶솔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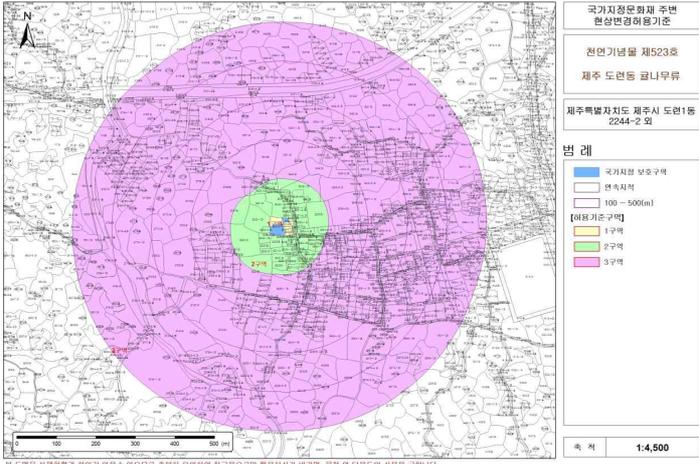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수산리 곶솔
도면	<p>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p> <p>천연기념물 제441호 제주수산리곶솔</p> <p>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리 2274 외</p>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정 보호구역</li> <li>연속지적</li> <li>100 - 500(m)</li> </ul> <p>【허용기준 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구역</li> <li>2구역</li> <li>3구역</li> </ul> <p>축척 1:5,000</p> <p><small>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반에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small></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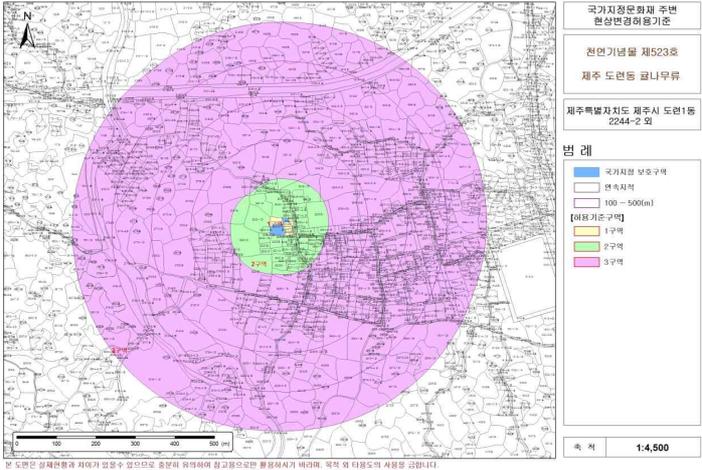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제주 수산리 곶솔</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최고높이 20m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개별 검토함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li>&lt; 2구역 적용 &gt;</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ul>	

○ 천연기념물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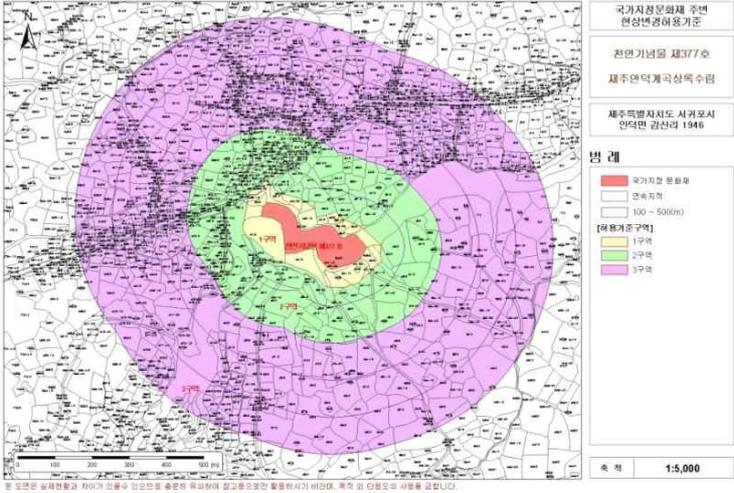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p>《1구역부터 2구역에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고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심의 함</li> </ul> <p>《3구역에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li> </ul>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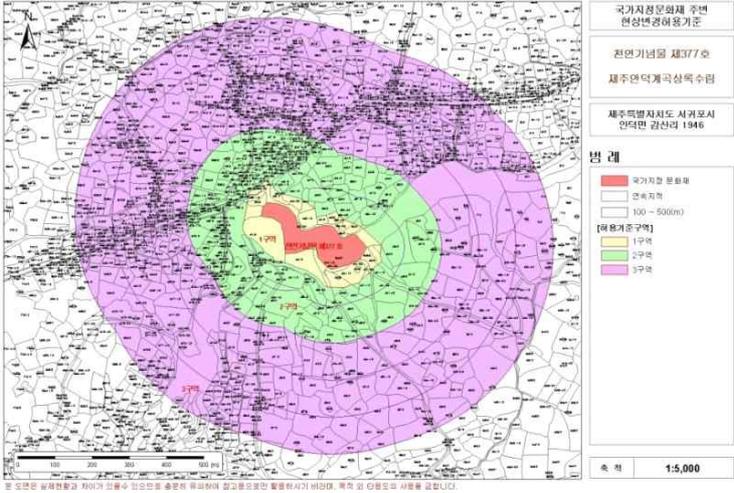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제주 도련동 굴나무류</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li>&lt; 2구역 적용 &gt;</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ul>	

○ 천연기념물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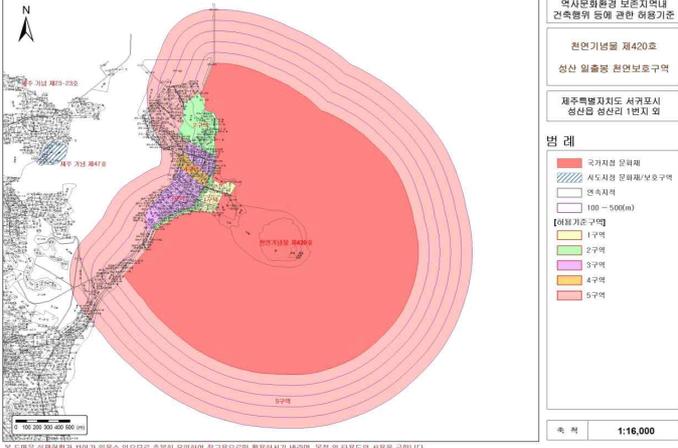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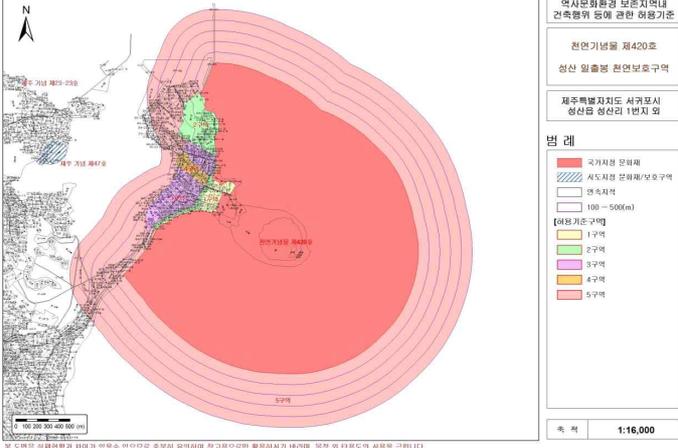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최고높이 20m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개별 검토함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p>&lt;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적용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ul>	

○ 천연기념물 제주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 허용기준 현행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12m 이하	○ 건축물 16m 이하
3구역	○ 건축물 16m 이하	○ 건축물 20m 이하
4구역	○ 건축물 20m 이하	○ 건축물 24m 이하
5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p>《1구역부터 4구역에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고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ul> <p>《1구역부터 5구역에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li> </ul>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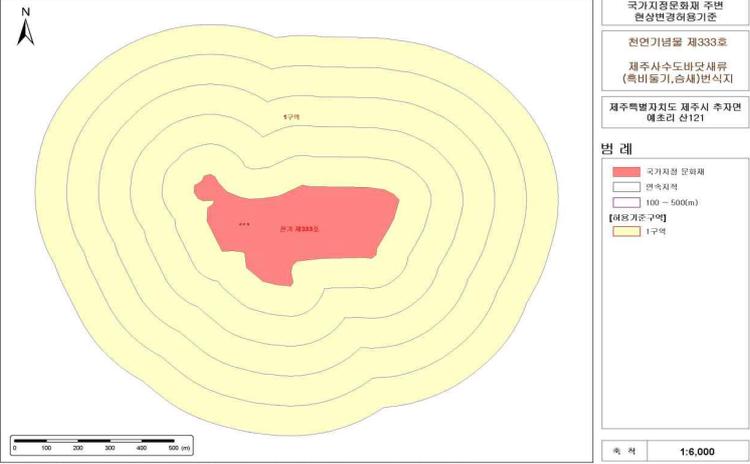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p>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 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번지 뒀</p> <p>범례 국가지정 문화재 세도지정 문화재/보존구역 유적지역 100 ~ 500(m) [허용 기준 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p> <p>축척 1:16,000</p> <p>본 도면은 보충안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통괄히 위명하여 참고함으로써 불합치기 배제, 약역 및 다중도의 세밀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2m 이하	○ 최고높이 16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6m 이하	○ 최고높이 20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20m 이하	○ 최고높이 24m 이하
5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천연기념물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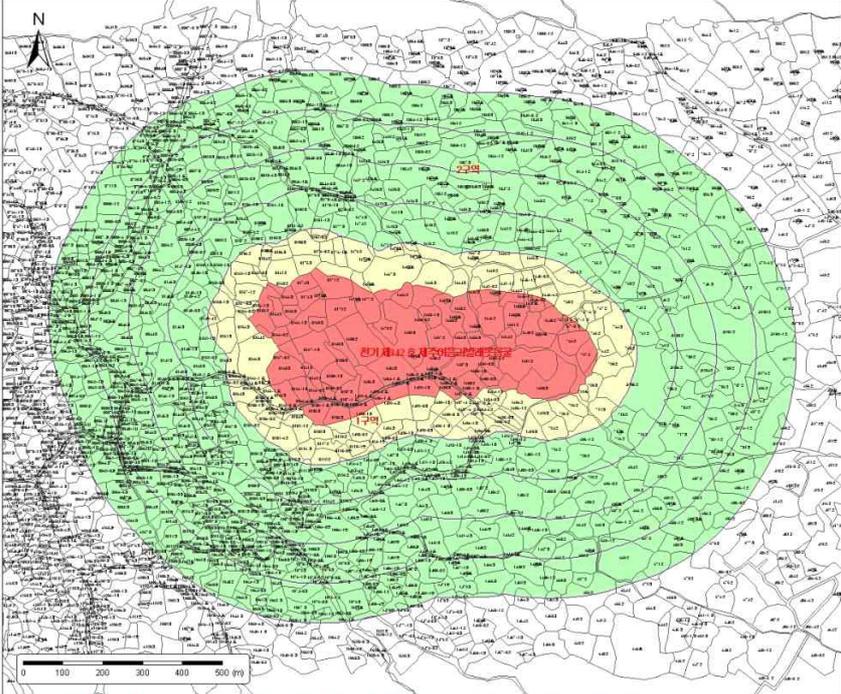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1구역	○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름
공통 사항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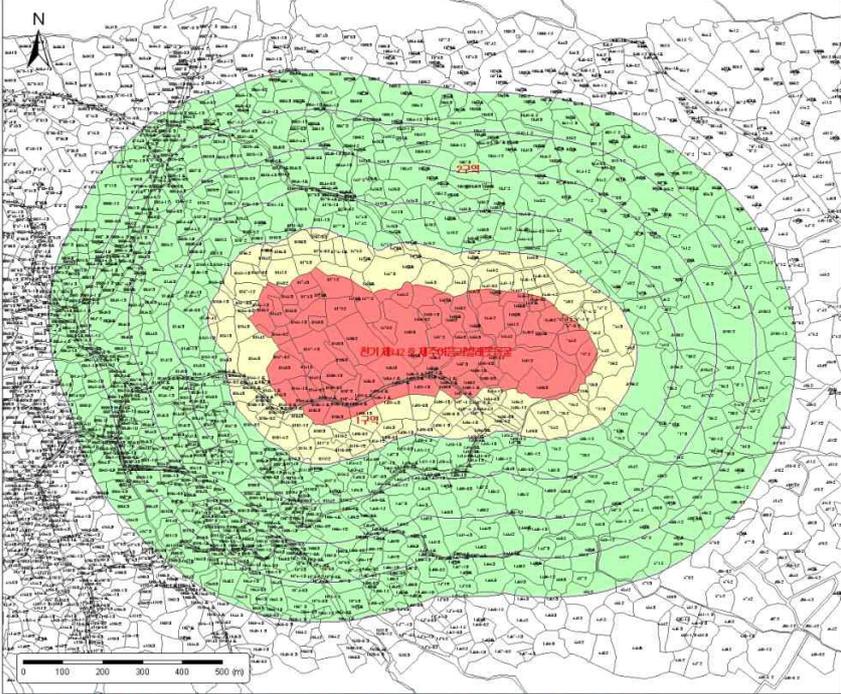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b>	
도면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천연기념물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 허용기준 현행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b>	
도면	 <div style="position: absolute; top: 196px; right: 196px; width: 150px;"> <p>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p> <p>천연기념물 제342호 제주어음리빌레못동굴</p> <p>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707 외</p> <p><b>범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red;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국가지정 문화재</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연속지적</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100 ~ 500(m)</li> </ul> <p>[허용기준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yellow;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1구역</li> <li><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lightgreen;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5px;"></span> 2구역</li> </ul> <p>축척 <b>1:6,800</b></p> </div>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제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함.</li> <li>○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를 별도 심의한다.</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li> </ul>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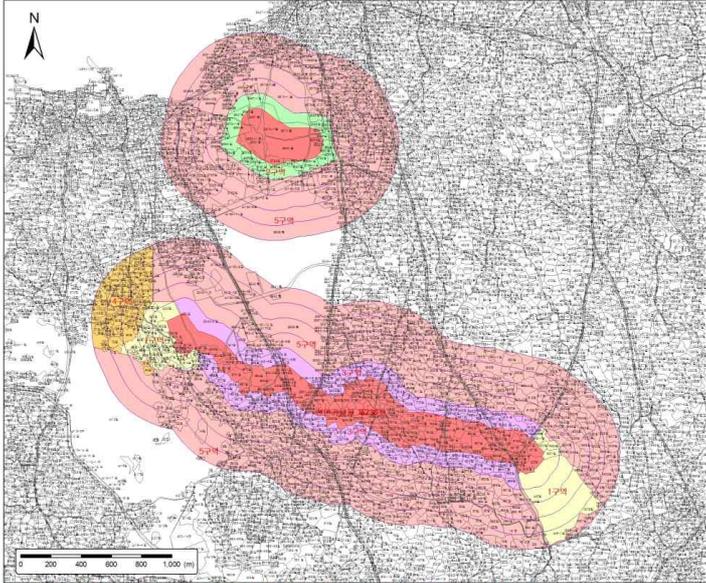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b>	
도면	 <p style="font-size: small;">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함으로써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mm 이내)은 제외)</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li> </ul>	

○ 천연기념물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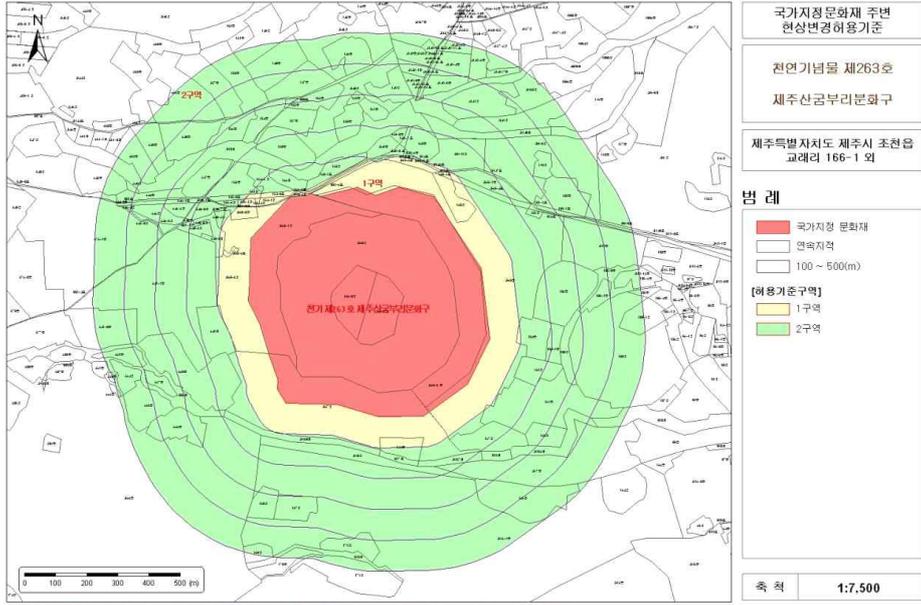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단, 터파기 공사 시 사전에 지반조사를 실시함. -지반조사 결과 동굴 분포 확인 시 개별심의 -지반조사 결과 동굴 분포 미확인 시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5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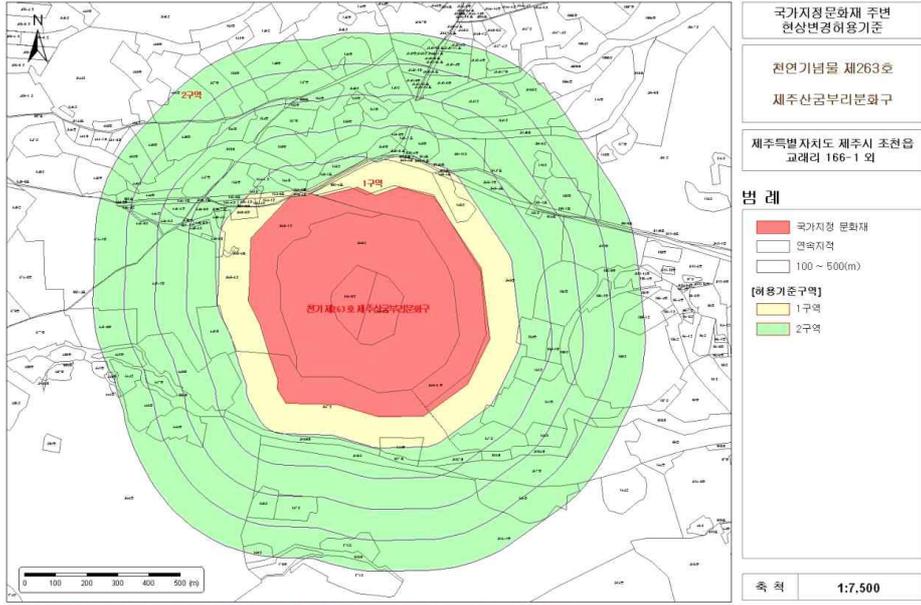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 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5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1~4구역 적용) 1m 이상 깊이의 터파기 공사 시 사전에 지반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반조사 결과 동굴 분포 확인 시 개별 검토</li> </ul> </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mm 이내)은 제외)</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li> </ul>	

○ 천연기념물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 허용기준 현행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b>	
도면	 <p>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263호          제주산굼부리분화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66-1 외</p> <p><b>범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정 문화재</li> <li>□ 연속지적</li> <li>○ 100 ~ 500(m)</li> </ul> <p><b>[허용기준구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구역</li> <li>■ 2구역</li> </ul> <p>축척 1:7,500</p> <p><small>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small></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함.</li> <li>○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를 별도 심의함.</li> </ul>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b>	
도면	 <p>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263호 제주산굼부리분화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66-1 외</p> <p><b>범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정 문화재</li> <li>영속지역</li> <li>100 ~ 500(m)</li> </ul> <p><b>[허용기준구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구역</li> <li>2구역</li> </ul> <p>축척 1:7,500</p> <p><small>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승문화유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단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small></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 검토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mm 이내)은 제외)</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li> </ul>	

○ 천연기념물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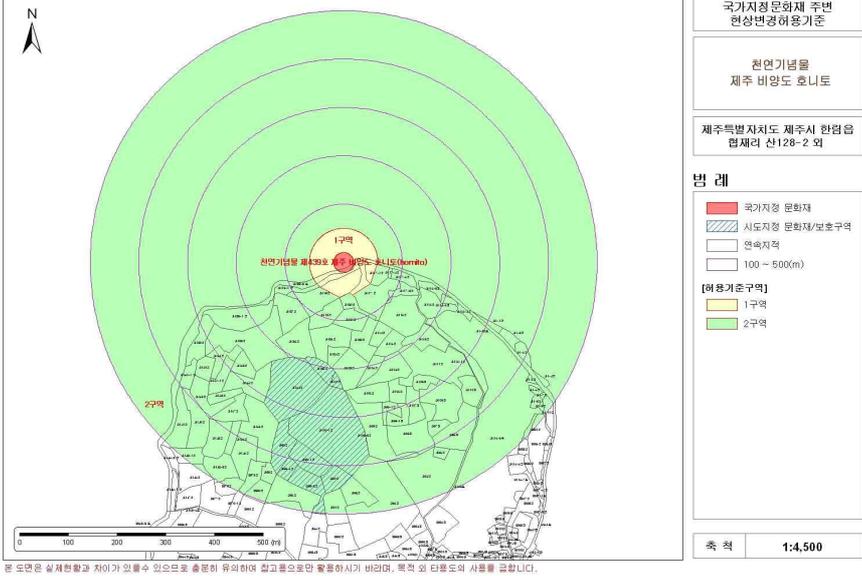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터파기 시 홍조단괴 분포조사를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p>①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p> <p>②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p> <p>③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p> <p>④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수질오염(물환경보전법), 토양오염(토양환경보전법), 위험물 제조·저장·처리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관련시설[축사(건사 포함), 도축장(개 포함), 도계장 등 도살 시설]과 화학물질·열·빛을 발생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p> <p>⑤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공공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p> <p>⑥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p> <p>⑦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p> <p>⑧3구역의 경우 ⑥번,⑦번 공통사항만을 적용함</p>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변</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 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2구역 적용) 터파기 공사 시 사전에 홍조단괴 분포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조단괴 분포 시 개별 검토</li> </ul> </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mm 이내)은 제외)</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li> </ul>	

○ 천연기념물 제주 비양도 호니토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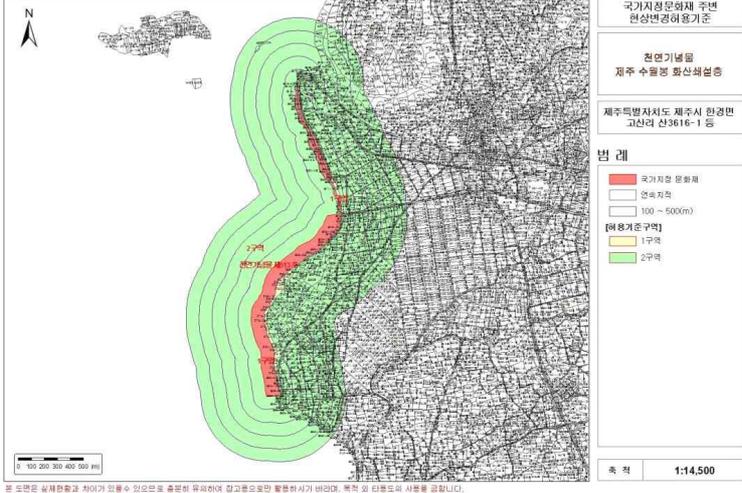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비양도 호니토
도면	 <p>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p> <p>천연기념물 제주 비양도 호니토</p> <p>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합재리 산128-2 외</p>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정 문화재</li> <li>시도지정 문화재/보존구역</li> <li>연속지적</li> <li>100 ~ 500(m)</li> </ul> <p>[허용기준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구역</li> <li>2구역</li> </ul> <p>축척 1:4,500</p> <p>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li> <li>○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를 별도 심의한다.</li> </ul>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비양도 호니토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 검토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mm 이내)은 제외)</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li> </ul>	

○ 천연기념물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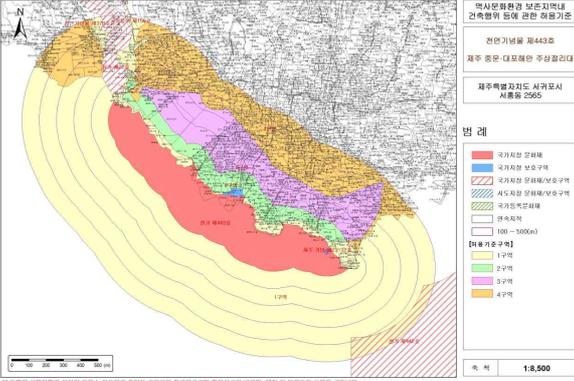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도면	 <p>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p> <p>천연기념물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p> <p>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환경면 고산리 산3616-1 등</p>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정 문화재</li> <li>영속지적</li> <li>100 ~ 500(m)</li> <li>허용기준구역</li> <li>1구역</li> <li>2구역</li> </ul> <p>축척 1:14,500</p> <p>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복제 및 인공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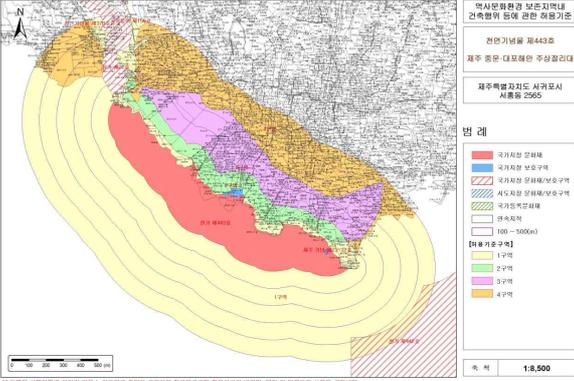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 검토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mm 이내)은 제외)</li> <li>○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적용)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li> </ul>	

○ 천연기념물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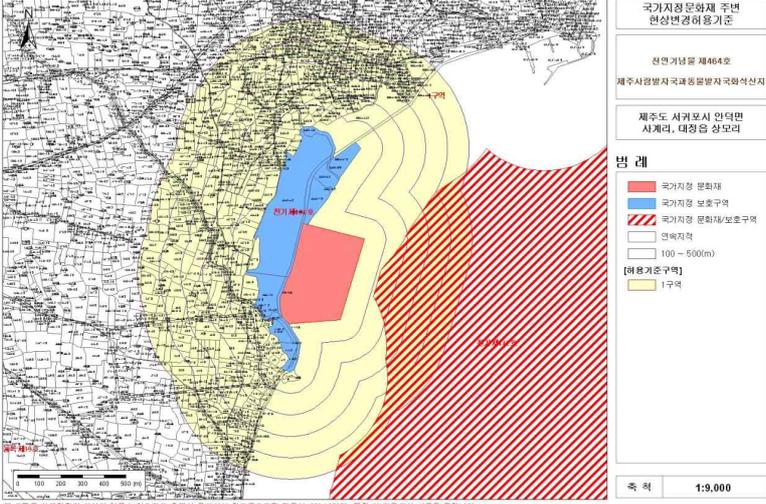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구역	○ 개별심의	○ 개별심의
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사항	<p>○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p> <p>《1구역부터 3구역에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고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심의 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li> </ul> <p>《모든 구역에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ul>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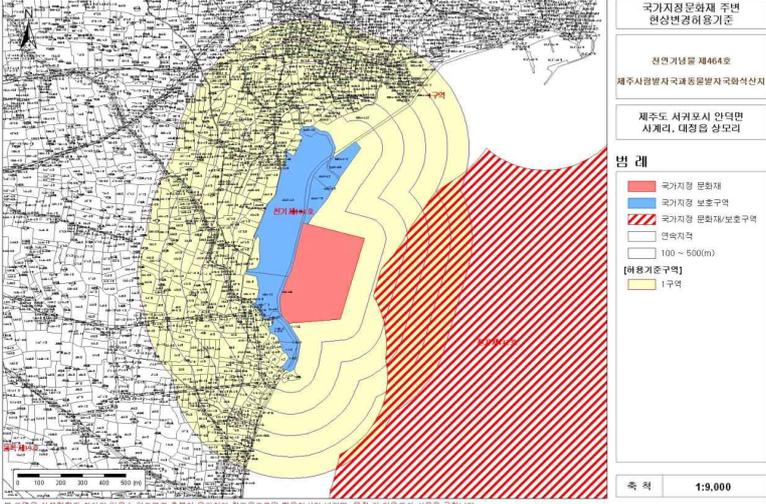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 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mm 이내)은 제외)</li> <li>○ (2구역 적용)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li> </ul>	

○ 천연기념물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 허용기준 현행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도면	 <p>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464호 제주사람발자국과동물발자국화석산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대정읍 상모리</p> <p>범례          ■ 국가지정 문화재          ■ 국가지정 보호구역          ■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표지적          □ 100 ~ 5000m)          [허용기준구역]          □ 1구역</p> <p>축척 1:9,000</p> <p><small>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판후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판 및 인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small></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1구역	○ 서귀포시 도시계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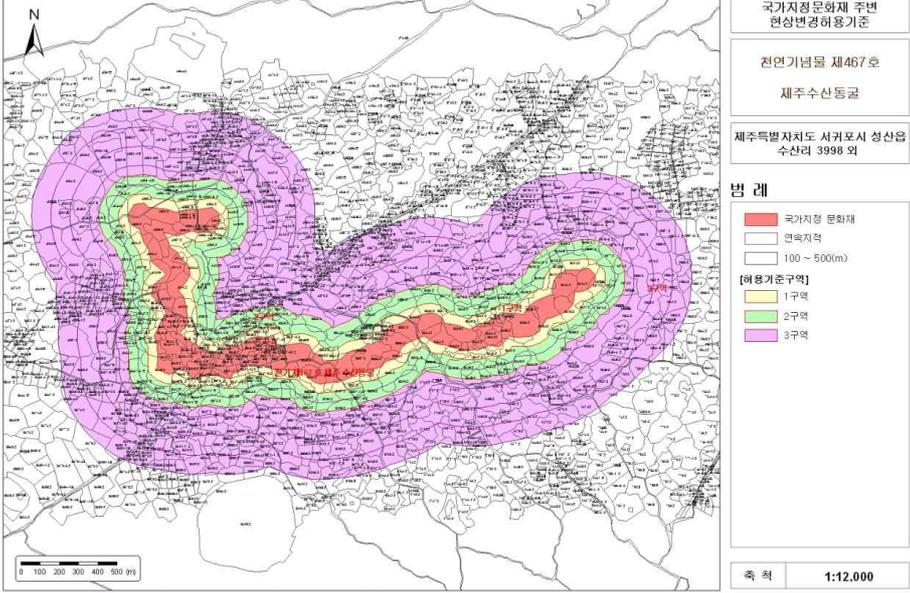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굴발자국 화석산지</b>	
도면		
구분	<b>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b>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mm 이내)은 제외)</li> <li>○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적용)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li> </ul>	

○ 천연기념물 제주 수산동굴

- 허용기준 현행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제주 수산동굴</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p>①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p> <p>②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p> <p>③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p> <p>④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수질오염(물환경보전법), 토양오염(토양환경보전법), 위험물 제조·저장·처리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관련시설[축사(건사 포함), 도축장(개 포함), 도계장 등 도살 시설]과 화학물질·열·빛을 발생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p> <p>⑤ 지하 5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 함</p> <p>⑥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단, 2구역은 높이 1m 이상)</p> <p>⑦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공공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p> <p>⑧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p> <p>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p> <p>⑩ 3구역의 경우 ⑤번, ⑧번, ⑨번 공통사항만을 적용함</p>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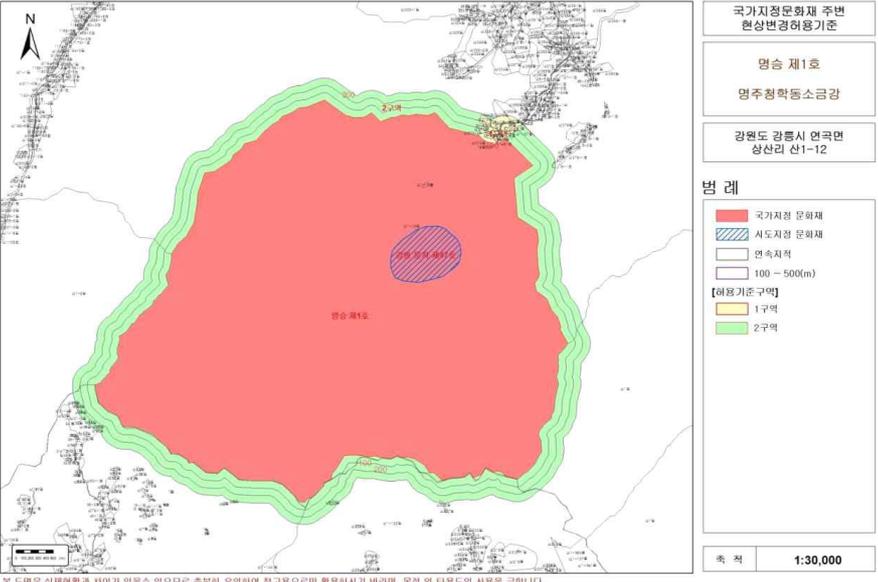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천연기념물 제주 수산동굴</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2구역	○ 개별 검토	○ 개별 검토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li>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수질오염(물환경보전법), 토양오염(토양환경보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mm 이내)은 제외)</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2구역은 높이 1m 이상,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li> </ul>	

○ 명승 명주 청학동 소금강

- 허용기준 현행

대상문화재	명승 명주 청학동 소금강		
도면	<p>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p> <p>명승 제1호 명주청학동소금강</p> <p>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상산리 산1-12</p>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정 문화재</li> <li>시도지정 문화재</li> <li>연속지역</li> <li>100 - 500(m)</li> <li>[허용기준구역]</li> <li>1구역</li> <li>2구역</li> </ul> <p>축척 1:30,000</p> <p>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초안이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신축 2층 이하(8m 이하)	○ 신축 2층 이하(12m 이하)	지정구역 밖 ~ 300m
	○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 시 별도 허용기준(안) 마련		
2구역	○ 강릉시·평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li> <li>○ 제한시설 : 소음, 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li> <li>○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li> </ul>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대상문화재	<b>명승 명주 청학동 소금강</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 강릉시·평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명승 대관령 옛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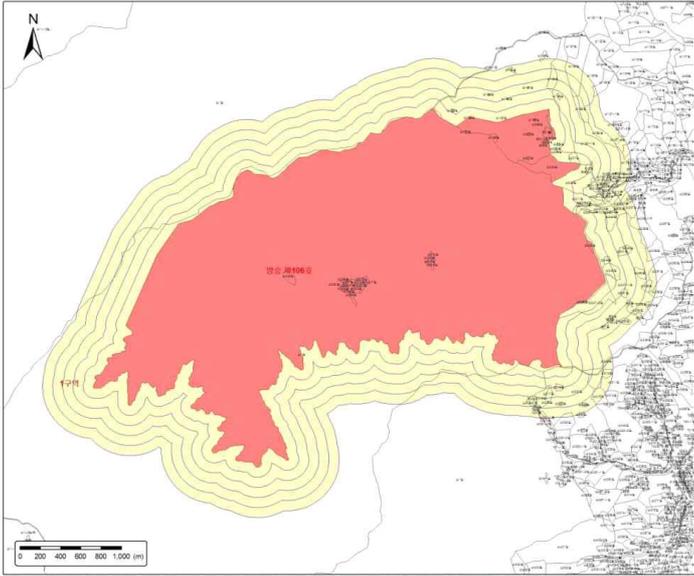
- 허용기준 현행

대상문화재	<b>명승 대관령 옛길</b>	
도면	<p>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p> <p>명승 제74호 대관령옛길</p> <p>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물리 일원</p> <p><b>범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정 문화재</li> <li>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li> <li>연속지적</li> <li>100 ~ 500(m)</li> <li><b>【허용기준구역】</b></li> <li>1구역</li> </ul> <p>축척 1:15,000</p> <p><small>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조분에 유의하여 참고함으로써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은 금합니다.</small></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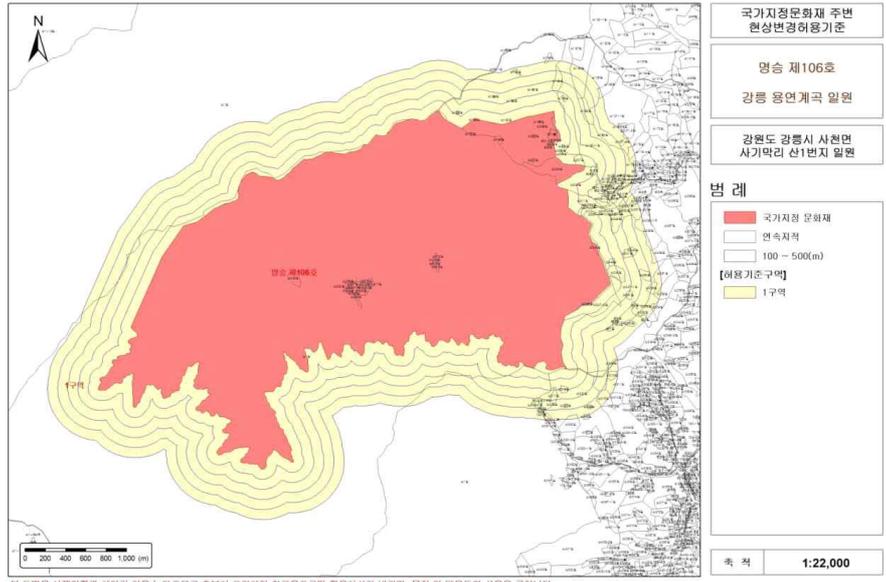


○ 명승 강릉 용연계곡 일원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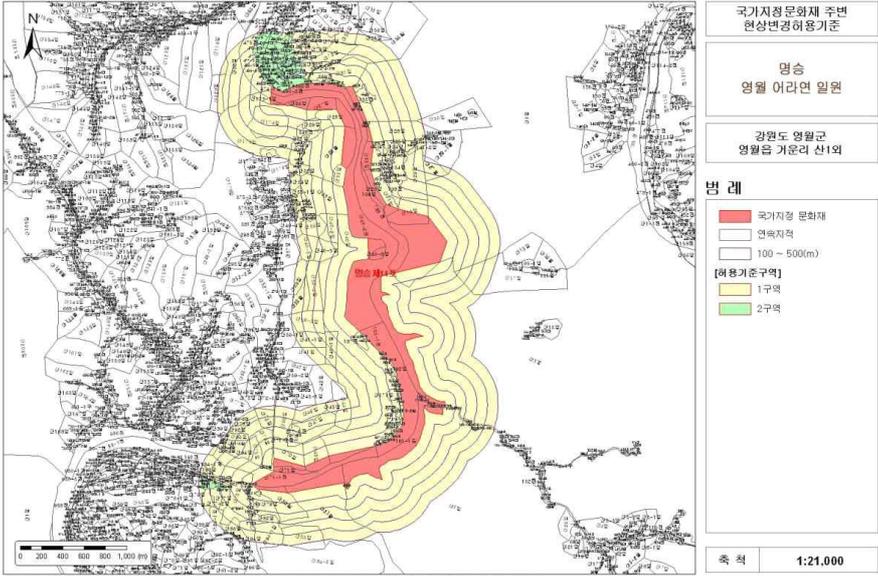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명승 강릉 용연계곡 일원</b>	
도면	 <p>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분이 유역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함.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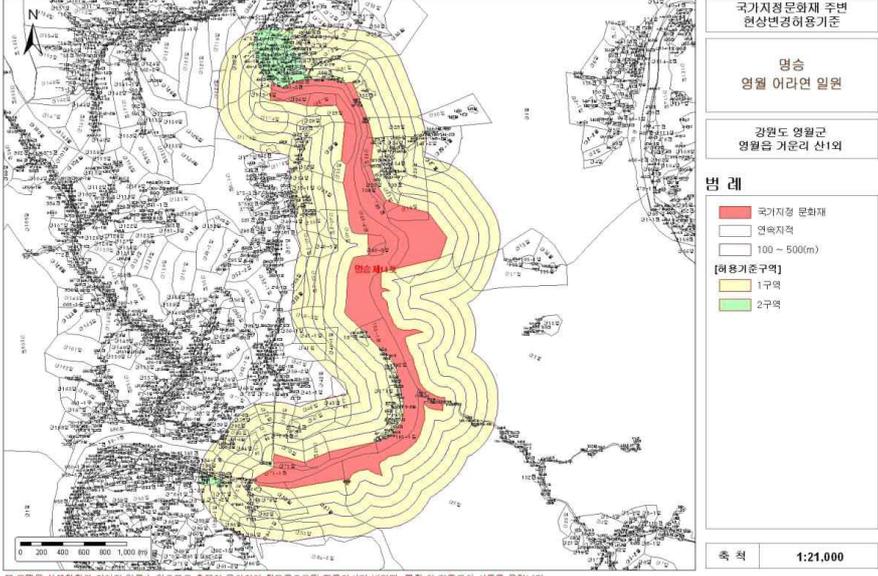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명승 강릉 용연계곡 일원	
도면	 <p>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p> <p>명승 제106호 강릉 용연계곡 일원</p> <p>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산1번지 일원</p> <p><b>범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정 문화재</li> <li>연속지적</li> <li>100 ~ 500(m)</li> <li>1구역</li> </ul> <p>【허용기준구역】</p> <p>속 적 1:22,000</p> <p>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분이 유익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명승 영월 어라연 일원

- 허용기준 현행

대상문화재	명승 영월 어라연 일원	
도면	 <p>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원상변경허용기준</p> <p>명승 영월 어라연 일원</p> <p>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문리 산1외</p> <p>범례</p> <p>국가지정 문화재 연락지역 100 ~ 500(m)</p> <p>[허용기준구역] 1구역 2구역</p> <p>축척 1:21,000</p> <p>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단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기존 건축물은 기존 규모로 개·보수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건축물은 동 기준을 적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ul>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대상문화재	<b>명승 영월 어라연 일원</b>	
도면	 <p>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p> <p>명승 영월 어라연 일원</p> <p>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문리 산1외</p> <p><b>범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정 문화재</li> <li>연속지적</li> <li>100 ~ 500(m)</li> </ul> <p>[허용기준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구역</li> <li>2구역</li> </ul> <p>축척 1:21,000</p> <p><small>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검토함으로써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단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small></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 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명승 영월 한반도 지형

- 허용기준 현행

대상문화재	<b>명승 영월 한반도 지형</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영월군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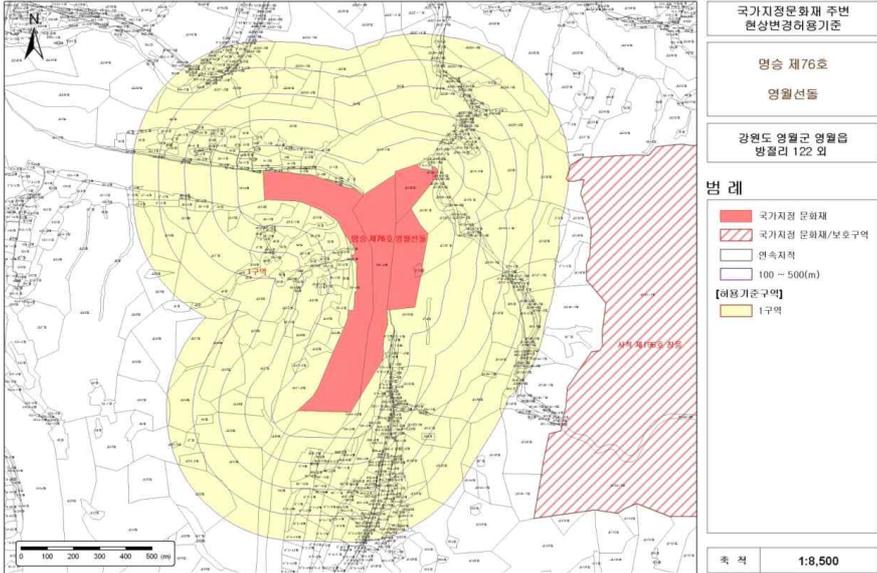


○ 명승 영월 선돌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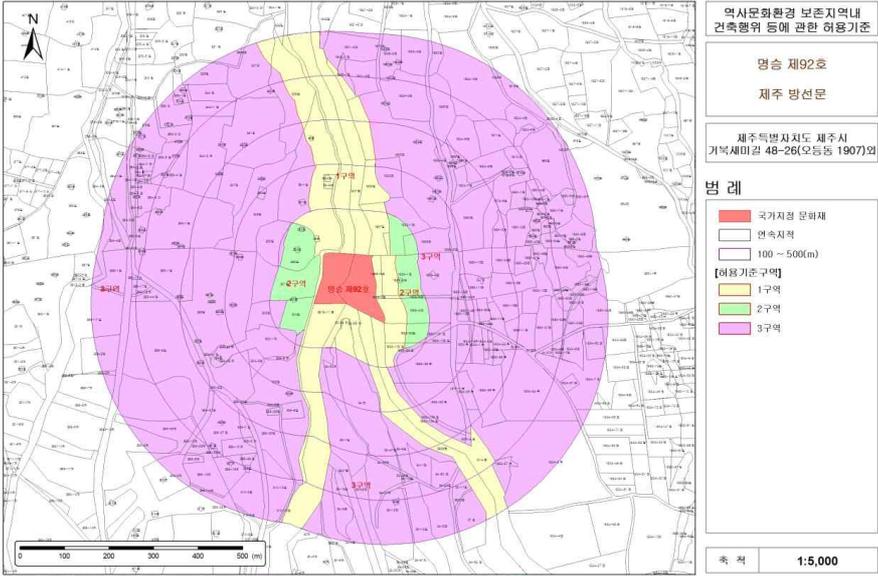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명승 영월 선돌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영월군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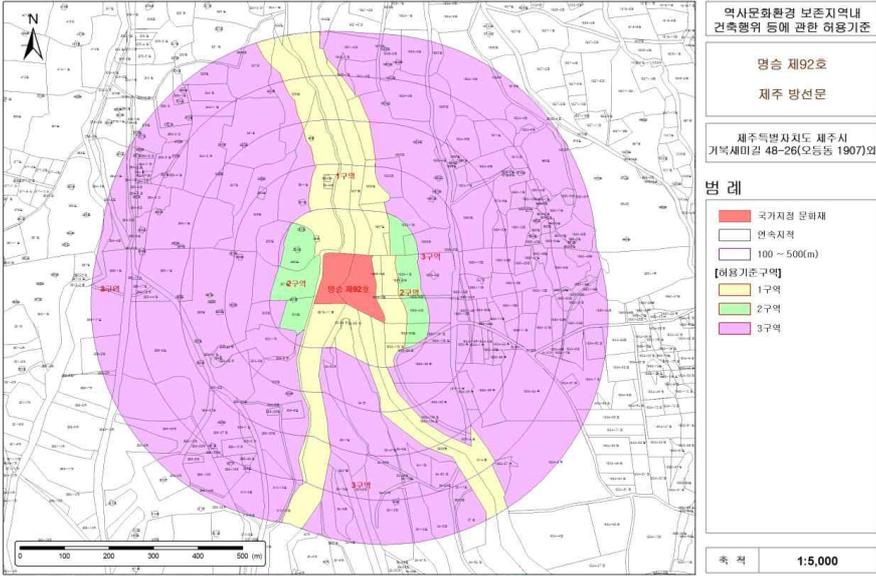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명승 영월 선들</b>	
도면	 <p style="font-size: small;">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분이 유익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영월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명승 제주 방선문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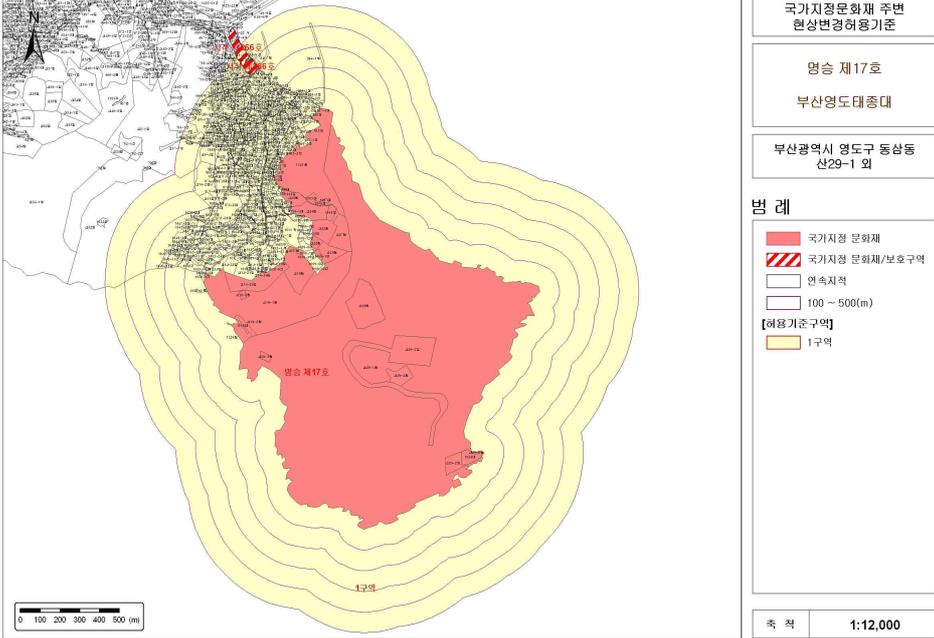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명승 제주 방선문	
도면	 <p>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문이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li> <li>○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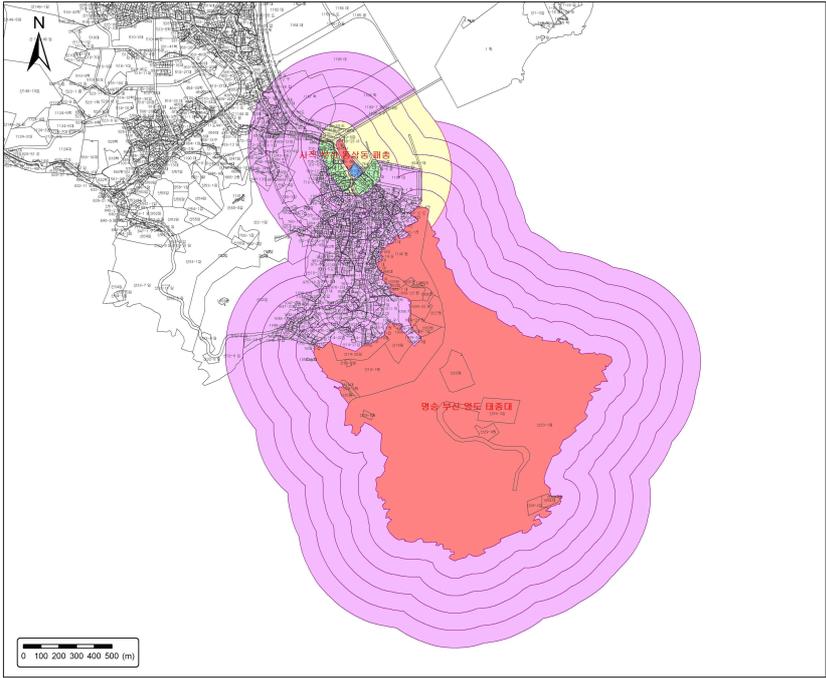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명승 제주 방선문</b>	
도면	 <p style="font-size: small;">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분이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 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사적 동삼동 패총 및 명승 부산 영도 태종대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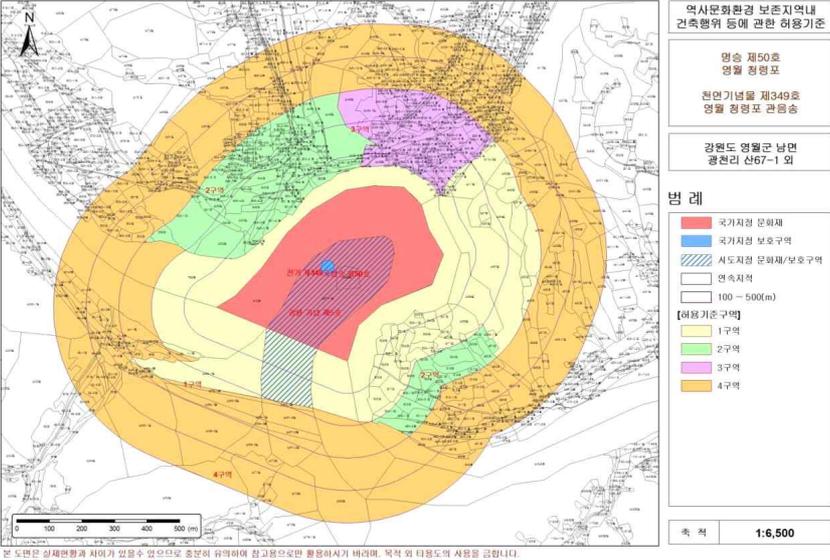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명승 부산 영도 태종대</b>	
도면	 <p style="text-align: right;">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명승 제17호 부산영도태종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29-1 외  <b>범례</b>  <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red; border: 1px solid black;"></span> 국가지정 문화재  <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ackground: repeating-linear-gradient(45deg, transparent, transparent 2px, black 2px, black 4px); border: 1px solid black;"></span> 국가지정 문화재/보존구역  <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black;"></span> 연속지역  <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order: 1px solid black;"></span> 100 ~ 500(m)  <b>[허용기준구역]</b>  <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10px; height: 10px; background-color: yellow; border: 1px solid black;"></span> 1구역          축척 1:12,000       </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등 관련법에 따름	
공통사항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통합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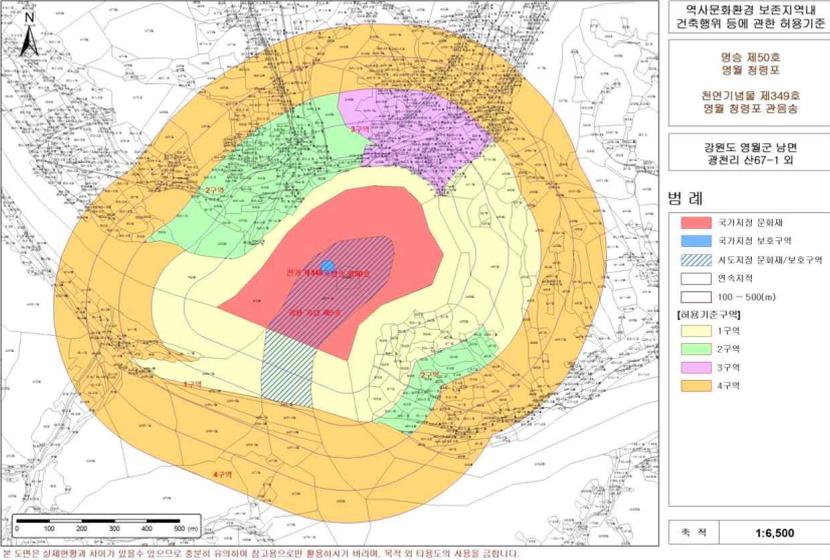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사적 동삼동 패총 및 명승 부산 영도 태종대	
도면	 <p>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p> <p>사적 부산 동삼동 패총</p> <p>명승 부산 영도 태종대</p> <p>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9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망로 118</p>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정 문화재</li> <li>국가지정 보호구역</li> <li>연속지적</li> <li>100 ~ 500(m)</li> </ul> <p>[허용기준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구역</li> <li>2구역</li> <li>3구역</li> </ul> <p>축척 1:15,000</p> <p>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버리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에 한하여 개별 검토함.</li> <li>○ 삭제(법령중복)</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명승 영월 청령포 및 천연기념물 영월 청령포 관음송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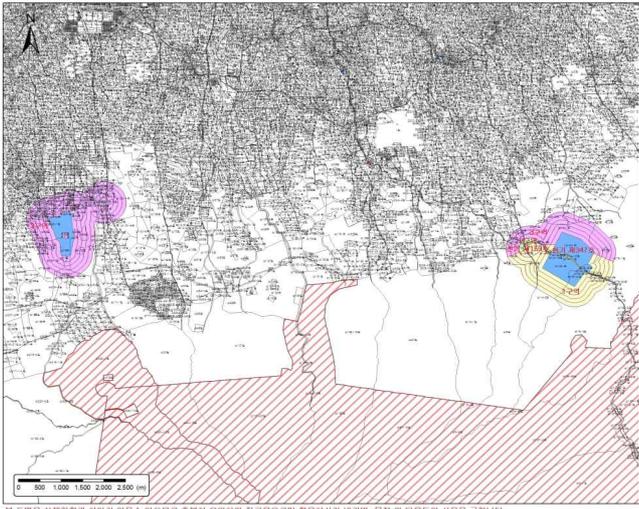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b>명승 영월 청령포 및 천연기념물 영월 청령포 관음송</b>	
도면	 <p style="font-size: small;">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명승 제50호 영월 청령포          천연기념물 제349호 영월 청령포 관음송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 외</p> <p><b>범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정 문화재</li> <li>국가지정 보호구역</li> <li>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li> <li>연속지적</li> <li>100 ~ 500(m)</li> <li><b>【허용기준 구역】</b></li> <li>1구역</li> <li>2구역</li> <li>3구역</li> <li>4구역</li> </ul> <p>축척 1:6,500</p> <p style="font-size: x-small;">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출판시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 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대상문화재	<b>명승 영월 청령포 및 천연기념물 영월 청령포 관음송</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 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 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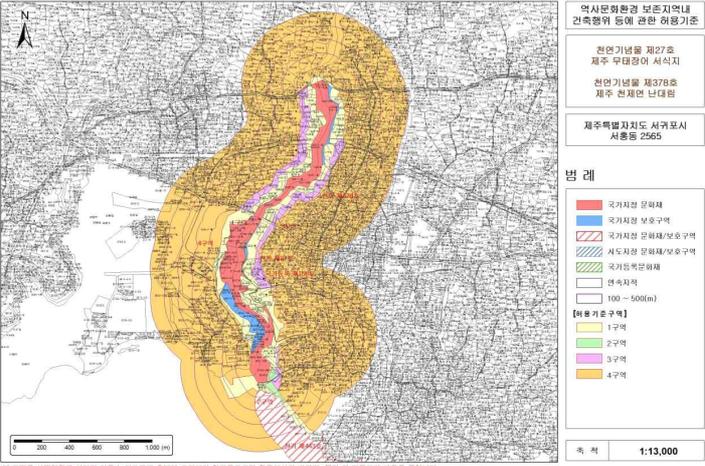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도면	 <p>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159호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의 제주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봉개동, 용강동</p> <p>범례 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보호구역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연속지적 100 ~ 500(m) [아용기준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p> <p>축척 1:48,000</p> <p>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판의 취지에 따라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및 단종의 사용은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건축물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 원지형 보존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름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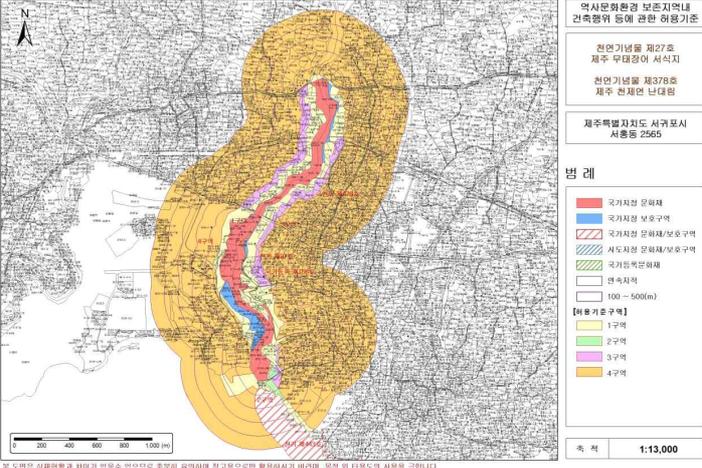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심의</li> </ul>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li> <li>-최고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li> </ul>	
3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li> </ul>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구역은 개·보수만 허용</li> </ul> </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지하수법」 등에 따른 농업용 등 지하수 개발(관정깊이 100미터 내, 관정지름 150밀리미터 내) 제외(천연기념물(동물)만 적용))</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천연기념물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및 제주 천제연 난대림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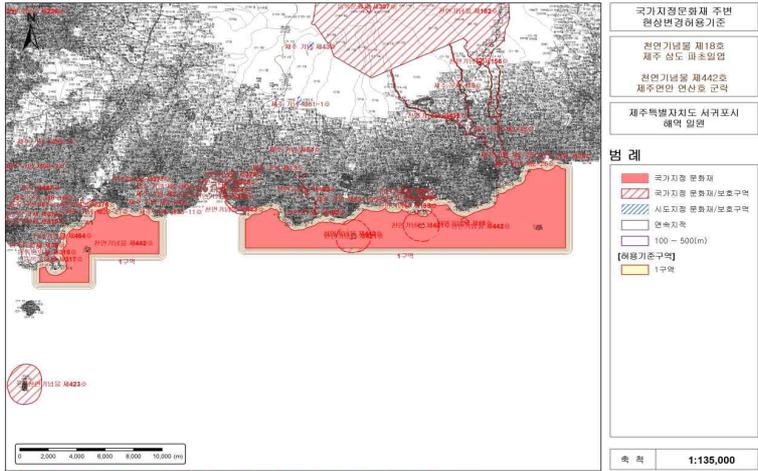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및 제주 천제연 난대림	
도면	 <p>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p> <p>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p> <p>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p> <p>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종동 2565</p>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정 문화재</li> <li>국가지정 보호구역</li> <li>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li> <li>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li> <li>국가등록문화재</li> <li>민속지적</li> <li>100 - 500(m)</li> </ul> <p>【허용기준 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구역</li> <li>2구역</li> <li>3구역</li> <li>4구역</li> </ul> <p>축척 1:13,000</p> <p>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준공에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인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제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 개별 심의 함	
제4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름	
공통 사항	<p>《1구역부터 2구역에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고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 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li> </ul> <p>《3구역부터 4구역에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li> </ul>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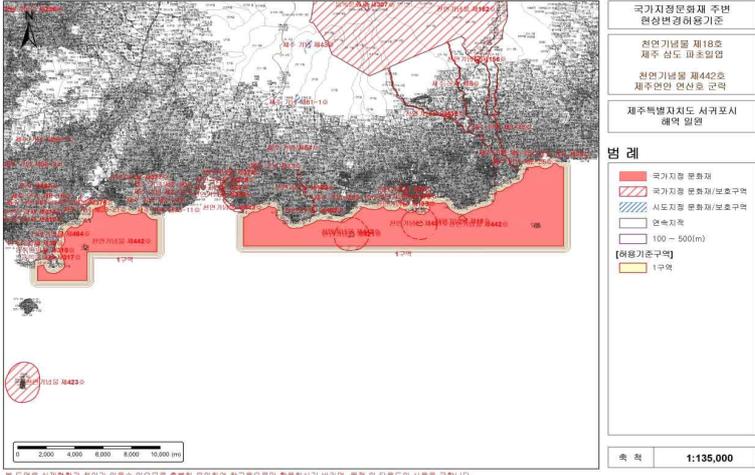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및 제주 천제연 난대림	
도면	 <p>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p> <p>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p> <p>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p> <p>제주특별자치도 시군포시 서훈동 2565</p>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정 문화재</li> <li>국가지정 방호구역</li> <li>국가지정 문화재/방호구역</li> <li>시도지정 문화재/방호구역</li> <li>국가등록문화재</li> <li>연속지역</li> <li>100 ~ 500(m)</li> </ul> <p>【허용기준구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구역</li> <li>2구역</li> <li>3구역</li> <li>4구역</li> </ul> <p>축척 1:13,000</p> <p>본 도면은 실제상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출판에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최고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개별 검토함	
4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및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 허용기준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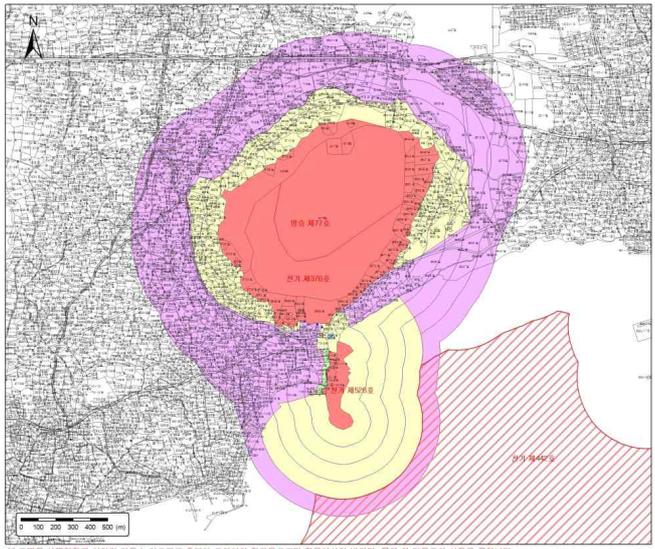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및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도면	 <p>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p> <p>천연기념물 제18호 제주 삼도 파초일엽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p> <p>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42호 제42조 제1항</p> <p>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정 문화재</li> <li>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li> <li>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li> <li>문화재</li> <li>100 ~ 500(m)</li> <li>【허용기준구역】</li> <li>1구역</li> </ul> <p>축척 1:135,000</p> <p>본 도면은 실측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반의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인용등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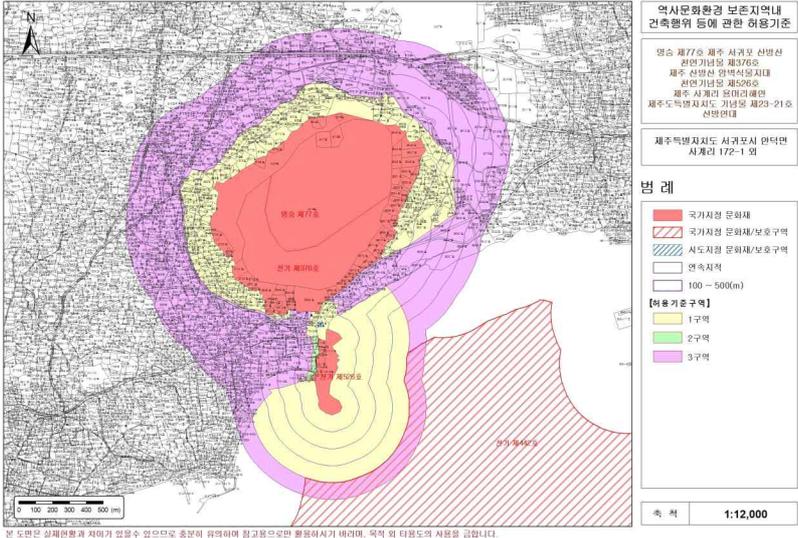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및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li> </ul>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지하수법」 등에 따른 농업용 등 지하수 개발(관정깊이 100미터 내, 관정지름 150밀리미터 내) 제외)</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명승 제주 서귀포 산방산 및 천연기념물 제주 사계리 용머리 화산쇄설층,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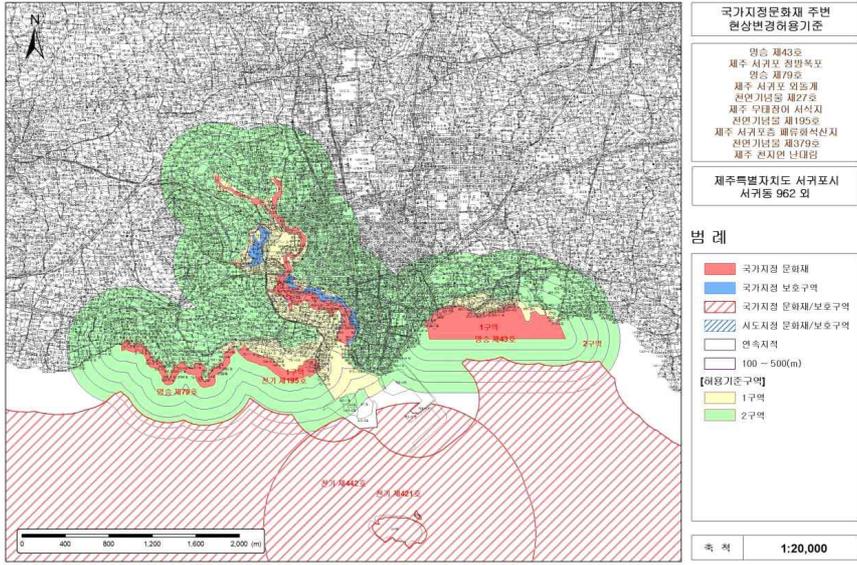
- 허용기준 현행

대상문화재	<b>명승 제주 서귀포 산방산 및 천연기념물 제주 사계리 용머리 화산쇄설층,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b>	
도면	 <p><b>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b></p> <p>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천연기념물 제506호 제주 시계리 용머리래안 제주도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3-21호 산방산대</p> <p>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연덕면 사계리 172-1 외</p> <p><b>범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지정 문화재</li> <li>국가지정 문화재/보존구역</li> <li>시도지정 문화재/보존구역</li> <li>연속지적</li> <li>100 ~ 500(m)</li> </ul> <p><b>[허용기준구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구역</li> <li>2구역</li> <li>3구역</li> </ul> <p>축척 1:12,000</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3:10이상)</b>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p>《1구역부터2구역에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li> </ul> <p>《3구역에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li> </ul>	

-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도면변경 없음)

대상문화재	<b>명승 제주 서귀포 산방산 및 천연기념물 제주 사계리 용머리 화산쇄설층,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b>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b>평지붕</b>	<b>경사지붕(10:3이상)</b>
1구역	○ 개별 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li> <li>○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li> <li>○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li> <li>○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li> <li>○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mm 이내)은 제외]</li> <li>○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li> <li>○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li> <li>○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li> <li>○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ul>	

- 천연기념물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제주 천지연 난대림 및 명승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제주 서귀포 외돌개,
  - 허용기준 현행

대상문화재	명승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제주 서귀포 외돌개 및 천연기념물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제주 천지연 난대림	천연기념물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도면	 <p>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환경허용기준</p> <p>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명승 제79호 제주 서귀포 외돌개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천연기념물 제195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제379호 제주 천지연 난대림</p> <p>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962 일</p> <p>범례</p> <p>국가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보호구역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연속지적 100 ~ 500(m) 【허용기준구역】 1구역 2구역</p> <p>축척 1:20,000</p> <p>본 도면은 상세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반이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및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p>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개별심의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li> <li>○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li> <li>② 지하 25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li> <li>③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li> <li>④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li> </ul> <p>-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p>

- 허용기준 신청(안)(※도면변경 없음)

대상문화재	<p>명승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제주 서귀포 외돌개 및 천연기념물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제주 천지연 난대림</p>	
도면		
구분	<p>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p>	
1구역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구역	<p>○ 개별 검토</p>	
공통사항	<p>○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p> <p>○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p> <p>○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p> <p>○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p> <p>○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p>	



##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항은 「서울 신림동 굴참나무」 등 천연기념물 및 명승 59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구역조정 없이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 문화재청 행정 행위의 일관성 확보 및 허용기준 구체화를 위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문화재청과 자체단체의 의견 조정 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신청된 사항으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22.11.30.) 허용기준 공통사항 기준에 따라 공통사항 용어 및 문구를 통일하고, 불필요한 공통사항은 제외, 용도범위·굴착규모·절성토범위·건설공사 및 토목시설물에 대한 공통사항은 일부 추가하여 공통사항을 보완함
- 또한 통합고시 문화재 1건, 도면 오류가 있는 문화재 3건, 총 4건에 대하여 도면 수정을 반영함
  - 통합고시 : 사적 「동삼동 패총」 및 명승 「부산 영도 태종대」
  - 도면오류 : 천연기념물 「제주 토끼섬 문주란자생지」, 「제주 산천단 곰솔군」 및 「제주 납읍리 난대림」
- 천연기념물 및 명승 59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각 지자체 주민의견 수렴결과 ‘의견 없음’으로 추가 조정 없이 허용기준 신청(안)/조정(안)대로 변경하고자 함
  - ※ 통합고시 1건 추가조정 :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 깊이 100m, 관정지름 150mm 이내)은 제외) 예외사항 추가
  - [명승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제주 서귀포 외돌개 및 천연기념물 제주 무대장어 서식지,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제주 천지연 난대림]

##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 가결 13명

## 2.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둔치도 강변길 가로등 설치

###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둔치도 강변길 가로등 설치를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둔치도 강변길 가로등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 지정일 : 1966. 7. 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둔치도 강변길 가로등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763-1953 일원
  - 사업내용 : 가로등 설치 63본, 가로등제어반 4면, 배관배선 1식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4. 07. 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과 인접(1구역)
  - \*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둔치도 강변길 가로등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허용기준 1구역으로 주요 서식지인 서낙동강과 인접한 지역으로 빛 발생에 따라 조류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천연기념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지정 구역 조정 검토안에 대한 2023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23.3.22) 검토 결과, '평강천 일대, 중사도 및 둔치도 육지부 등 서낙동강 일부 지역에 대한 세부 조정안(도면, 토지조서, 대체서식지 부지·조성방안 등) 마련 후 재심의(관리단체)'의 사유로 보류 결정된 사안과 관련된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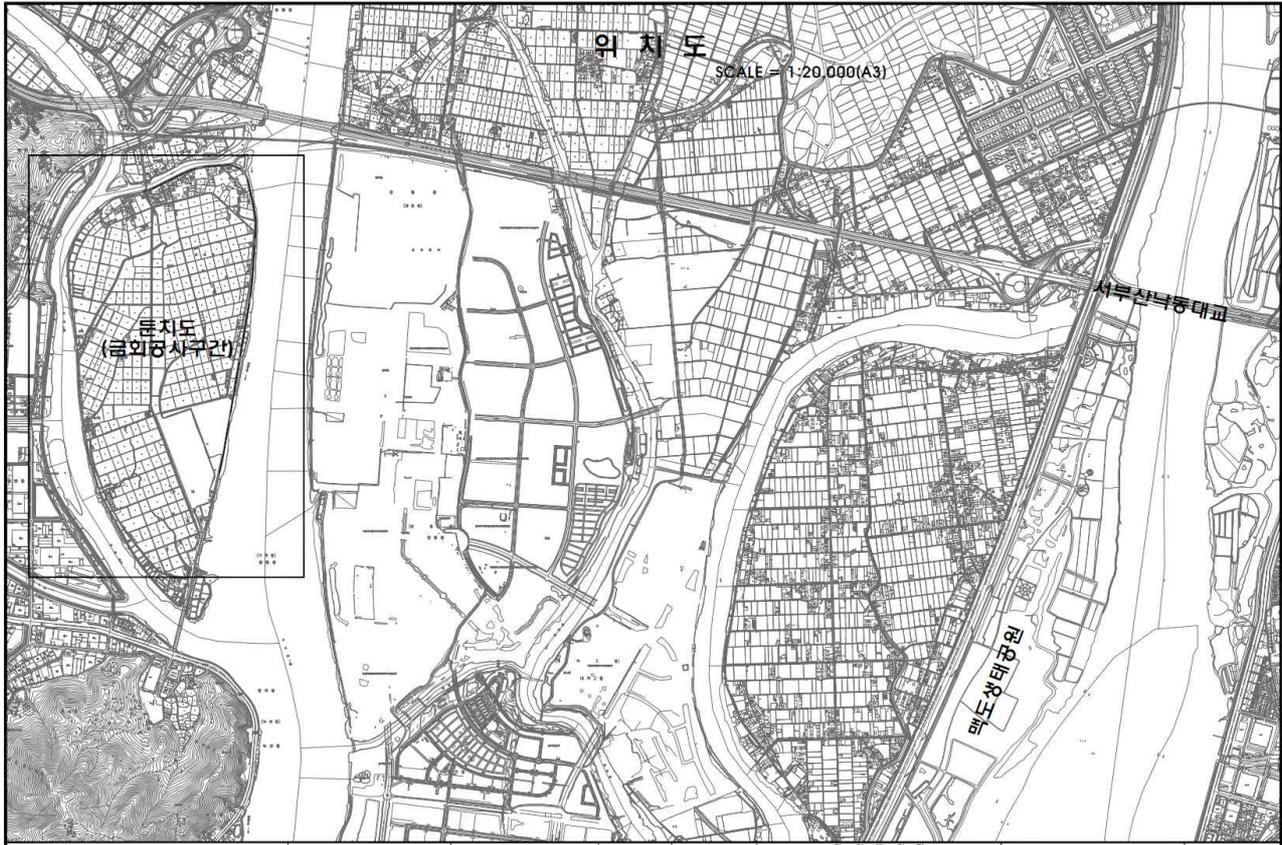
### (1) 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

<\*\*\* \*\*\*/ 2023. 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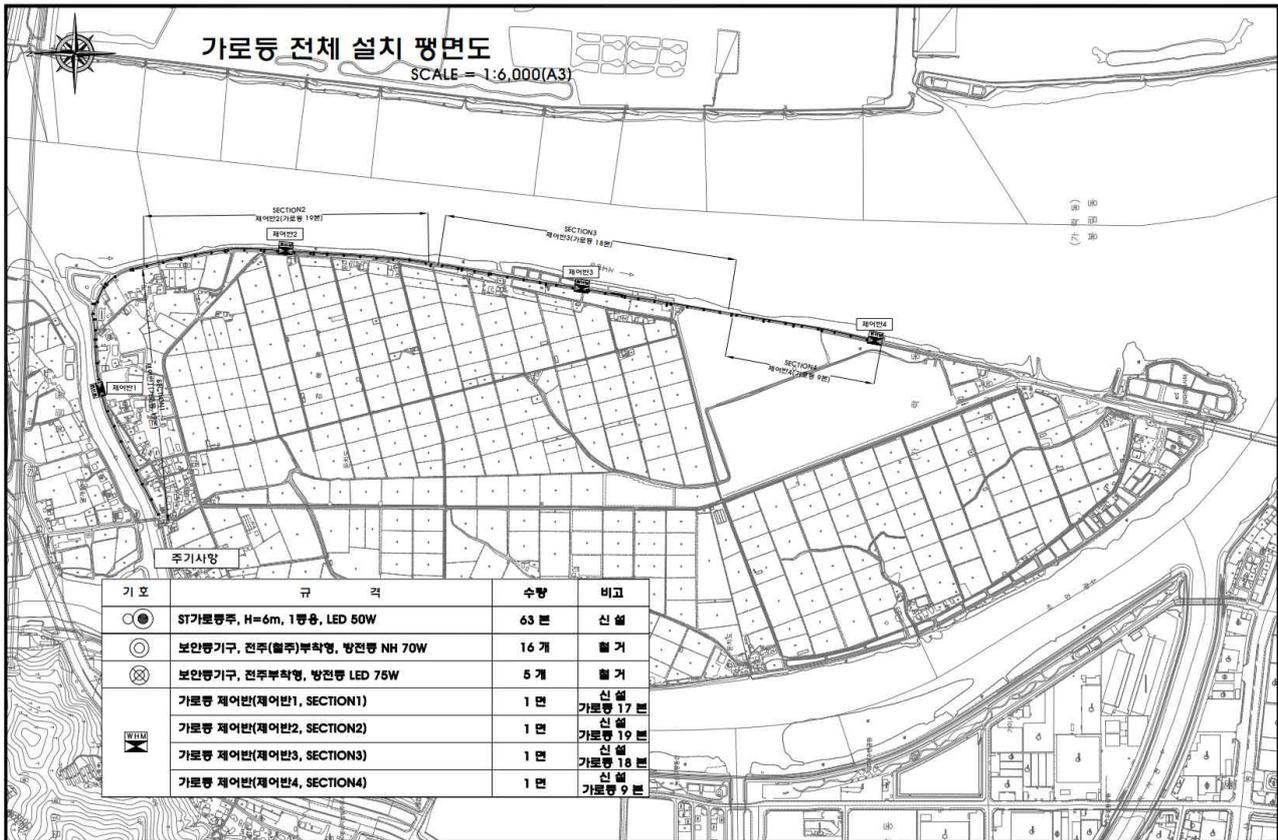
- 본 건물은 국가지정문화재 1구역 내 둔치도 강변길에 가로등과 배전함 등을 설치하는 건임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허용기준 1구역으로 주요 서식지인 서낙동강과는 10m 이내의 인접한 지역으로 과도한 빛 발생은 조류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나, 둔치도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한 필요 시설로 조류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서 도로조명(가로등)은 소로(12m 이내 도로) 기준 상관색온도는 3,000~4,000CCT로 이에 맞는 색온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밝기 또한 토지에도 맞는 제1종(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선정하여 지역에 맞는 밝기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빛이 수변과 하늘을 비추지 않도록 가로등 위치는 도로 안쪽, 가로등 구조는 갓이 있는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문화재보호지역 조정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 예비지역(안)으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 후 공사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설치 시 겨울철새가 이주하기 전 10월 말 완료되어야 할 것임

## 바. 참고자료

### (1) 사업위치도



### (2) 가로등 배치도



(3) 대상지 현황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조건부 가결 13명

### 3.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신설

#### 가. 제안사항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신설을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신설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5번지 일원
  - 지정일 : 2000. 3. 21.
- (3) 신청내용
  - 사업명 : 태양광 발전시설 신설
  - 사업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845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인도 및 자전거도로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B=3.2m, H=4.144m) 570m 설치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4. 10. 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주변(1구역)
  - \*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 라. 검토의견 (\*\*\*\*\*)

- 신청사업은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로부터 약 80m 이격된 1구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화석산지에 직접적인 훼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1) 관계전문가 서면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 2023. 10. 12.>

- 태양광 설치 장소는 천연기념물 414호의 제1구역에 해당되나 이 지역의 지반은 중생대 지층이 아니어서 화석에 대한 훼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위치는 시화호 북쪽 안산시화 공단의 남쪽 해안도로에 위치해 있고 녹지 옆 포장도로 위에 설치함으로써 화석지 훼손 가능성은 없음.
- 단지 길이 570미터나 되는 긴 대규모의 태양광이 화석지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 데이터가 필요하며 또한 시화호모니터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시화호 주변의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므로 이 위원회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시화호 전반의 생태환경과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는 것이 좋겠음.

(2) 지자체 의견

<\*\*\* \*\*\*\*\*>

- 본 신청지는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현상 변경 허용기준 상 제1구역에 해당되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소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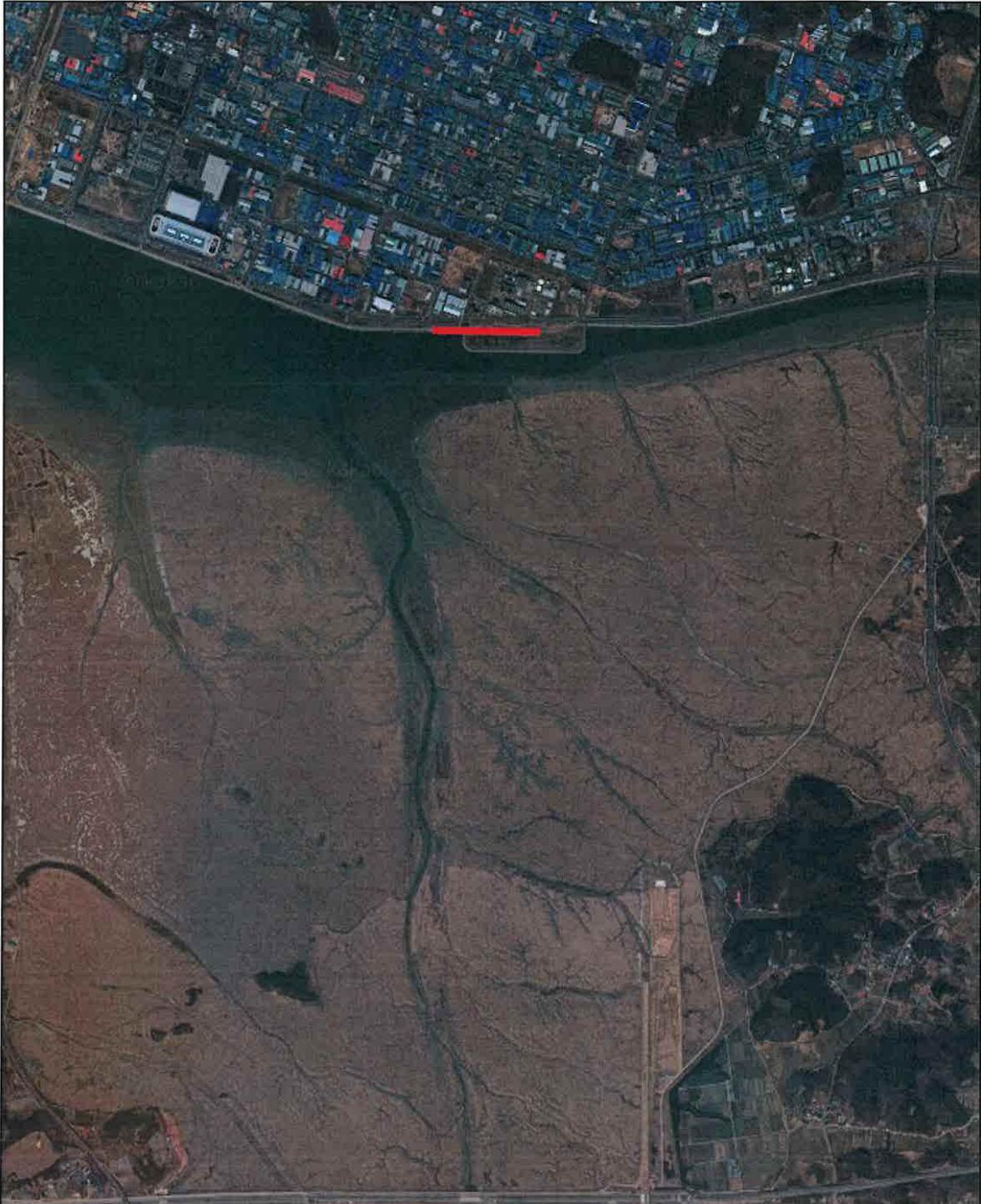
- 당해 사업은 정부의 ‘스마트그린산단’ 및 경기도 ‘산단 대개조’ 사업의 일환인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대상부지를 국가산단내로 한정하며, 2023년도 2차에 걸쳐 대상부지에 대해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구역에 걸친다는 의견(문화예술과) 외에 특이사항 없었음.
- 당해 사업(태양광 발전시설 신설) 대상부지는 반월·시화MTV내 개발완료된 도로부지로서 가로등, 교통신호시설 등 기존의 설비가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긍정적 검토를 바랍.

## 바. 참고자료

### (1) 사업계획

-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신설(B=3.24m, H=4.144m) 570m  
(면적 1,846.8m<sup>2</sup>, 기존 인도 및 자전거도로 상부에 설치)
- 사업면적 : 1,846.8m<sup>2</sup>(3.24m × 570m)

### (2)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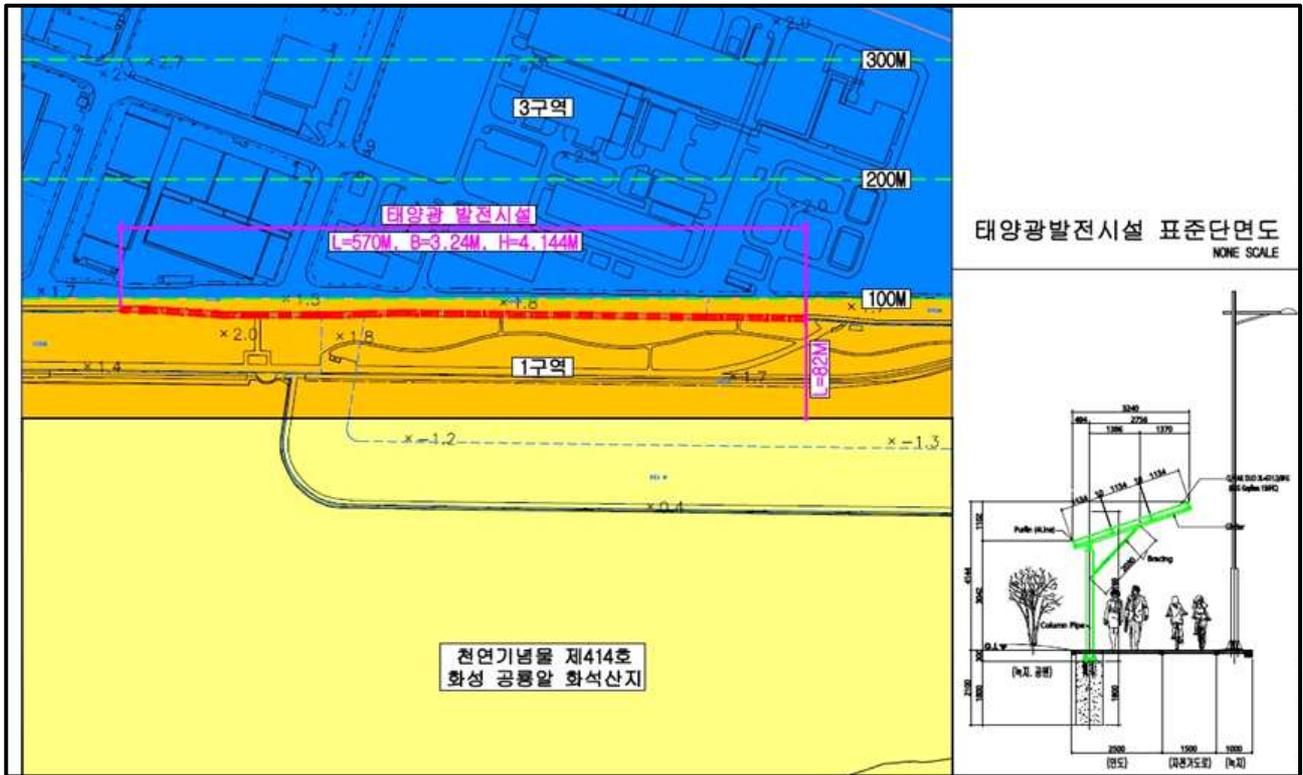
### (3) 문화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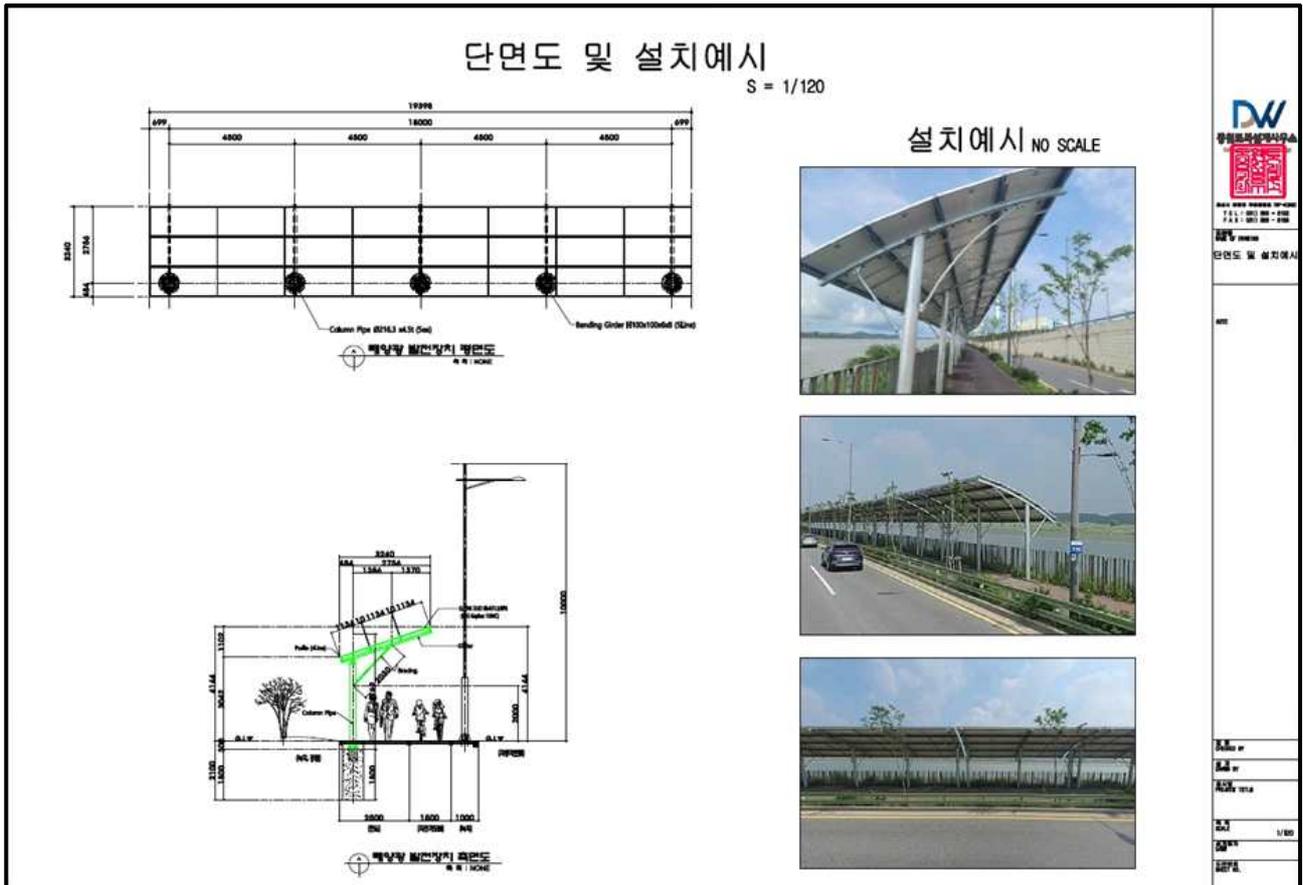
### (4) 현황사진



(5) 태양광 발전시설 배치도



(6) 단면도 및 설치예시



## 사.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 가결 6명, 조건부 가결 5명, 부결 2명

## 4. 「장성 백양사 고불매」 주변 수각 및 석조 설치

### 가. 제안사항

「장성 백양사 고불매」 주변 수각 및 석조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장성 백양사 고불매」 주변 수각 및 석조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 참고사항
  - '19.7.8. 2019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지원(유형문화재과)에 따라 수각 철거 및 석조 설치
  - \*사유 : 고불매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수각을 이전·축소 설치하고 대응전으로 가는 통로를 개설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 : 장성 백양사 고불매
  - 소재지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 지정일 : 2007.10.0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장성 백양사 사천왕문 주변 수각 이축 및 개축 사업
  - 사업위치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허용기준 1구역)
  - 사업내용 : 장성 백양사 고불매 주변 수각 및 석조 설치
    - 수각 1동, 6.30㎡, 높이 4.3m, 너비5.5m / 석조 1개, 높이 0.7m, 너비 1.5m
    - 자연석 박석 깔기 55.72㎡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3. 12. 30.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문화재로부터 약1.5m(1구역))
  - \* 허용기준 1구역 : 개별 심의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장성 백양사 고불매」 문화재구역과 인접한 1구역에 수각 철거 및 석조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해당구역에 2019년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지원으로 고불매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수각을 철거 후 석조를 설치하였으나, 2023년 도지정문화재(장성 백양사 사천왕문)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수각·석조를 재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지자체 의견

(1) 지자체(\*\*\* \*\*\*/ 2023.10.06.)

- 현재 수각이 노후되어 구조적으로 붕괴 위험이 있어 개축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 위치는 사천왕문 전면에 있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철거 후 원래 위치에 개축하는 것보다, 향적전과 고불매 사이 옛 수각이 있던 자리로 이축하고, 건물의 규모는 고불매의 생육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축소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바.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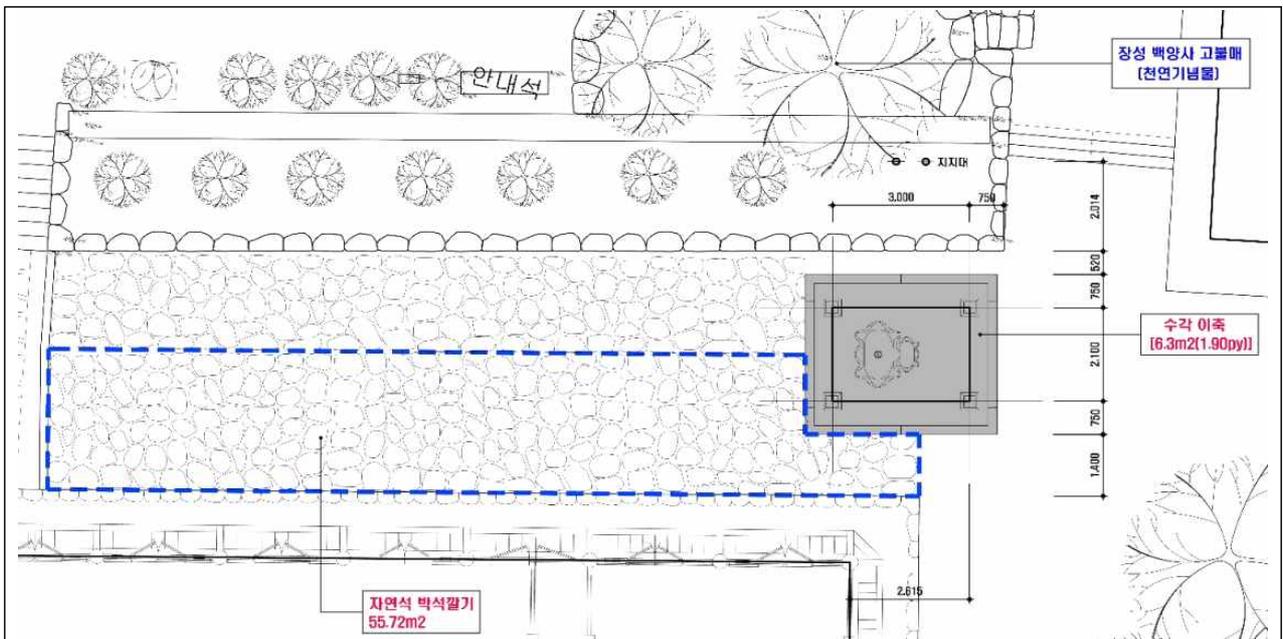
- 사업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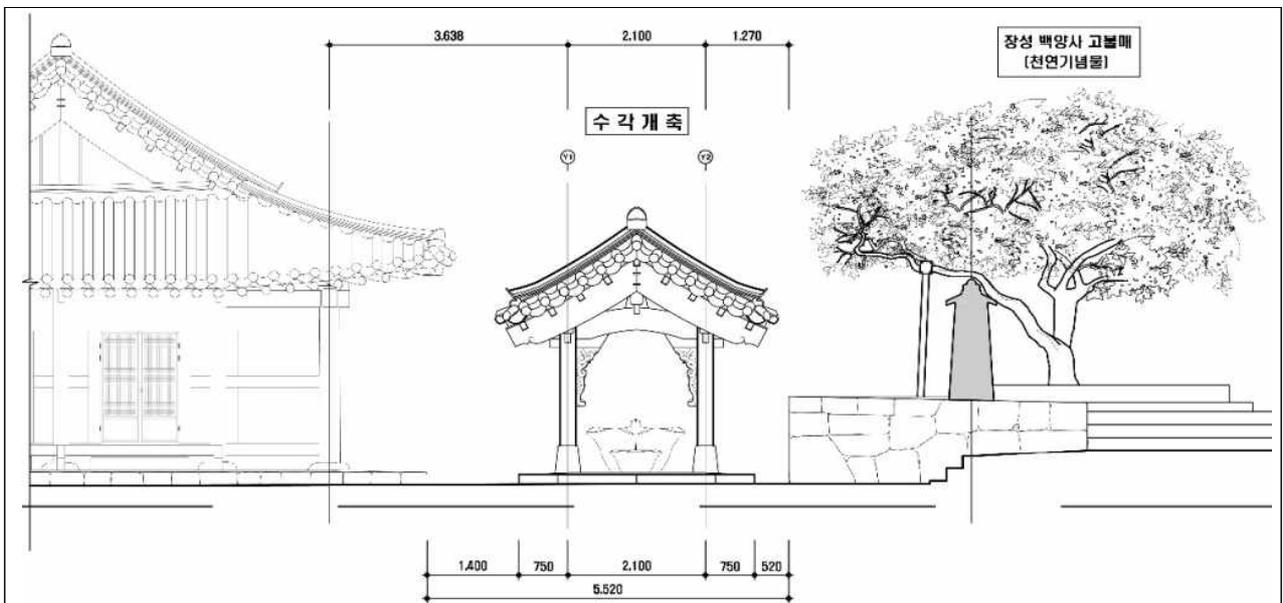
○ 대상지 현황 및 계획



○ 계획 배치도



○ 계획 입면도



##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 가결 3명, 조건부 가결 7명, 부결 1명, 보류 1명, 기피 1명

## 5.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중청대피소 신축

### 가. 제안사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중청대피소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중청대피소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으로, 현지 조사('23. 9. 5.)의견을 반영하여 재신청함.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부
- 지정일 : 1965.11.05.

(3) 신청내용

- 사업명 : 설악산 중청대피소 신축공사
-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1818-40 중청봉대피소(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중청대피소 신축
  - 기존 대피소 및 태양광 시설 철거(건축면적 147.21㎡, 연면적 348.09㎡, 8m)
  - 대피소 및 공중화장실 신축(건축면적 345.23㎡, 연면적 265.23㎡, 4.7m)
  - 우수처리시설 3ton 설치
  - 태양광 설치(지붕경사면, 5kw)
  - 흙막기(기존 되메우기 토석) 352.96㎡
  - 석축 쌓기(L=4.5m, T=35cm이하) 16.65㎡

<설계에 반영한 사항>

- 지형변화 최소화
- 대피소 외부마감 친환경적 소재로 변경
- 경관 저해 통신시설 이설 또는 재설치 검토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4. 12. 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중청대피소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1995년 준공된 기존 대피소가 노후 되고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중청대피소 신축이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 기존 건물보다 바닥 면적은 넓어지나, 건물의 높이는 기존 건물 8m 보다 낮은 신규 건물 4.7m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굴착 물량 및 지형변화 최소화를 위한 시설 보완 과 소음·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공방법 선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마.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 2023. 9. 5.>

- 국립공원공단에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대피소가 노후 되었고 대피소, 취사장, 화장실, 발전기실, 유류탱크, 메탄화시스템 등 시설이 복잡하게 설치된 기존대피소를 철거하고 새롭게 1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취사장 등 일부 시설을 없애고 건물높이를 지상1층으로 낮추어 설치하면 시설개선 효과와 함께 경관적 개선 및 주변 정비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부지 내 화장실과 계단을 새로 만들기 위해 지하암반을 굴착하게 되면 자연(지질)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시공 중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굴착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지붕도 가능하면 최대한 녹화를 하고 건물 벽체도 인공성이 낮은 자연친화적 재료를 활용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아울러 경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통신설비를 함께 정비하여 시각적 간섭 및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통합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 전문위원 / 2023. 9. 5.>

- 중청대피소 신축공사를 위한 지하 터파기는 대부분 등산객들을 위한 화장실과 이를 사용하기 위한 계단시설로 인해 추가 굴착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추가 굴착을 하면서까지 화장실을 굳이 이곳에 설치해야 하는 지, 우측 계단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계단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굴착물량(면적 약 6x9m, 깊이 4m)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신축건축물이 지하층에 시공되기 위해서는 기존건축물의 지하층이 철거되어야 하고, 철거 이후에도 일부구간에서의 터파기는 불가피하므로 이때 발생하는 정확한 암 절취 물량을 제시하고, 추후 노두 되는 불연속면의 방향성 및 특이성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에 따른 암반구간의 안정성 검토가 필요함. 이와 함께 천연보호구역임을 감안한 암반굴착공법을 제시하고,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연속 코어링 등)을 제시바람
- 신축건축물의 지붕과 벽체 마감은 친환경적으로 자연과 어울리는 소재로 적용바람
- 동 사업 부지개 동일한 부지에 신축하는 사업이나, 기존 건축면적 대비 2.3 배 이상의 면적이 추가로 건축되는 것이므로 그만큼 훼손면적이 증가되므로 이에 따라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굴착물량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2) 관계전문가 서면 의견

<\*\*\* 문화재 전문위원 / 2023. 10. 16.>

- 본 건은 1차 현지조사 의견 중에 공중화장실 및 계단 신설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부분만 반영되어 있음
- 평면개념의 굴착은 최소화 되었으나, 깊이 개념의 굴착은 여전히 많은 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확한 암 절취량을 산정하고, 이와 함께 보호구역임을 감안하여 소음·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암반굴착공법을 제시바람. 또한 현상변경계획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 굴착 없이 대피소가 신축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문구의 적용은 추후 지양하시기 바람
- 제시된 도면의 배면에는 기존 석축과 신설 석축이 적용되어 있음. 신축 석축의 경우, 석축 쌓기 전개도에는 기초바닥까지 높이 4.7m로 계획되어 있으나, 상세도에는 높이 3.2m로 적용되어 있음. 석축높이의 개념을 이해한 후 도면 보완 바람
- 부지횡단면도를 보면 좌측면에는 굴착과 함께 4.7m정도의 비탈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도면에는 단순히 선단부는 수직으로 상부는 1:0.5정도

의 구배를 두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음.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추후 시공과정에서 노두 되는 불연속면에 대해서는 방향성 및 특이성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안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명기바람

**(3) 지자체(\*\*\*\*\* \*\* / 2023.10.10.)**

- 1995년 준공된 기존 대피소의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으로 시설물 노후화가 현저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
- 당초 대피소 철거 후 동일한 부지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번 신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형변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최초 건축 시 형성된 기존 터파기 구간을 활용하는 등 굴착물량을 최소화하였으며,
- 대피소 외부마감 및 주변 통신시설도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설계 하는 등 생태계 및 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

바. 참고자료

- 사업위치



- 대상지 현황(중청대피소 원경)



○ 대상지 현황(중청대피소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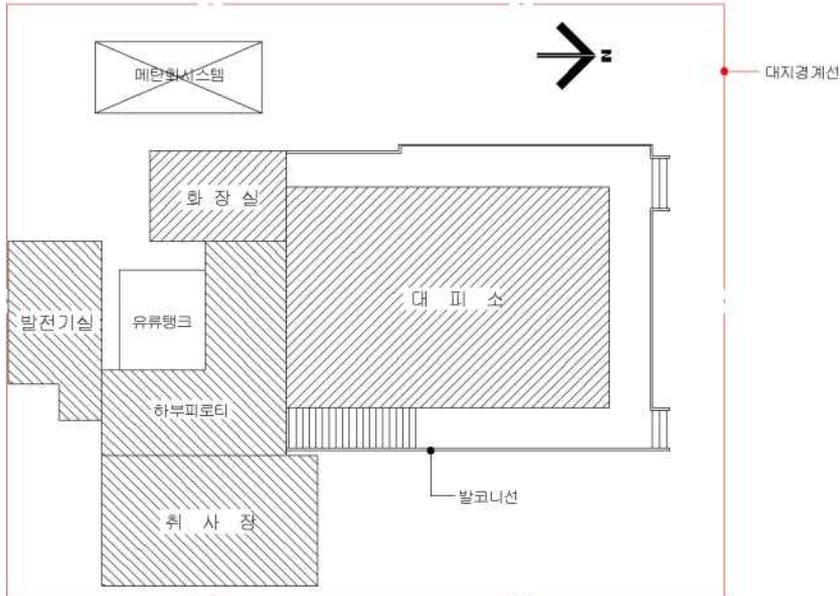


○ 대상지 상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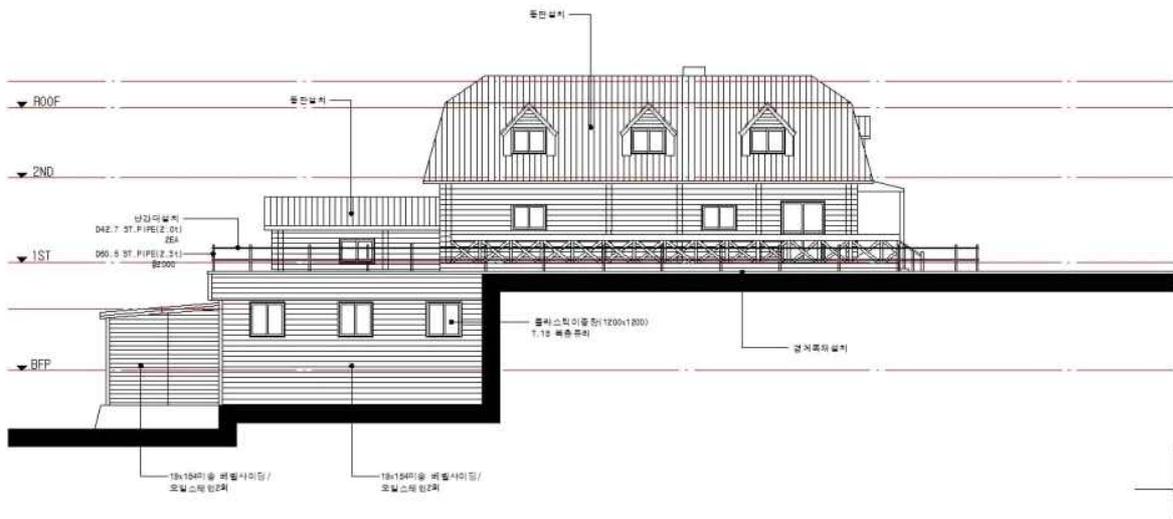


○ 당초 배치도 및 정면도

▶ 설악산국립공원 중형대피소(당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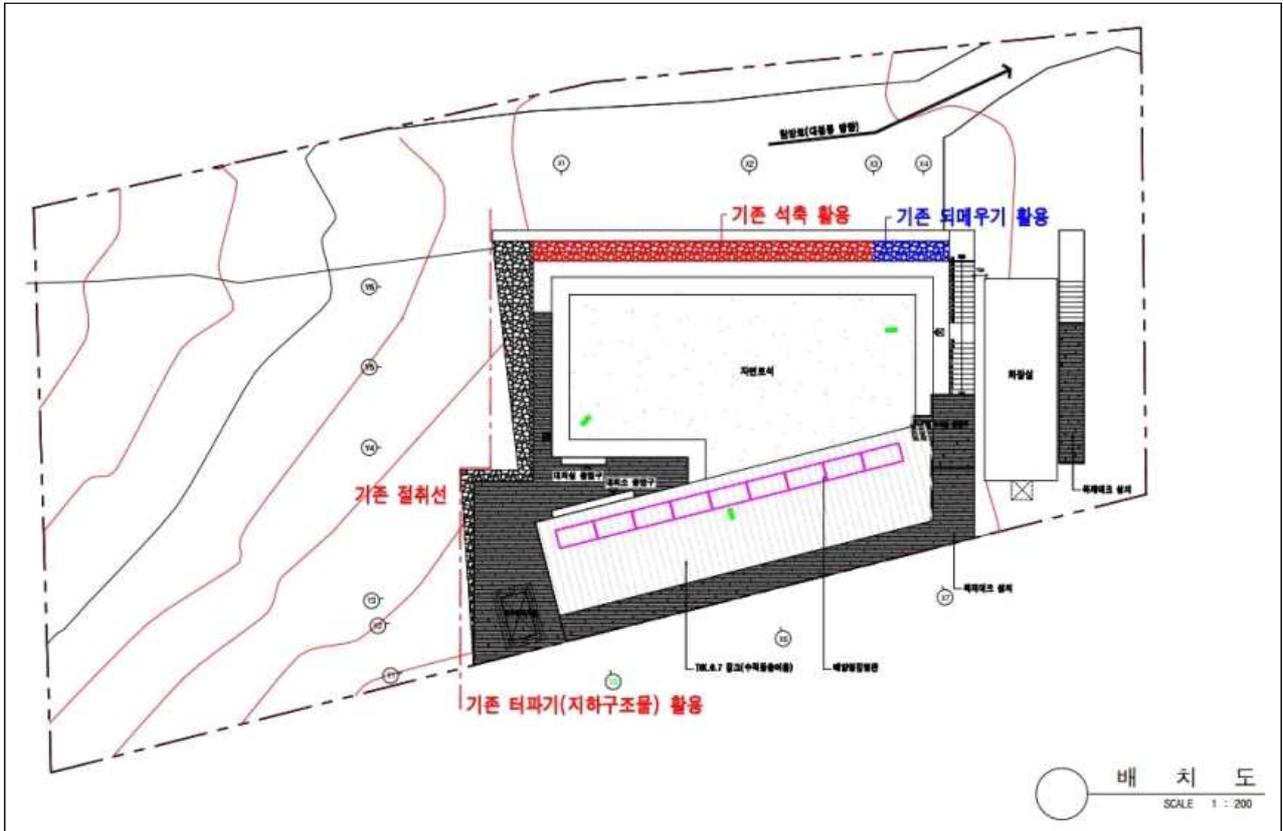


(당초)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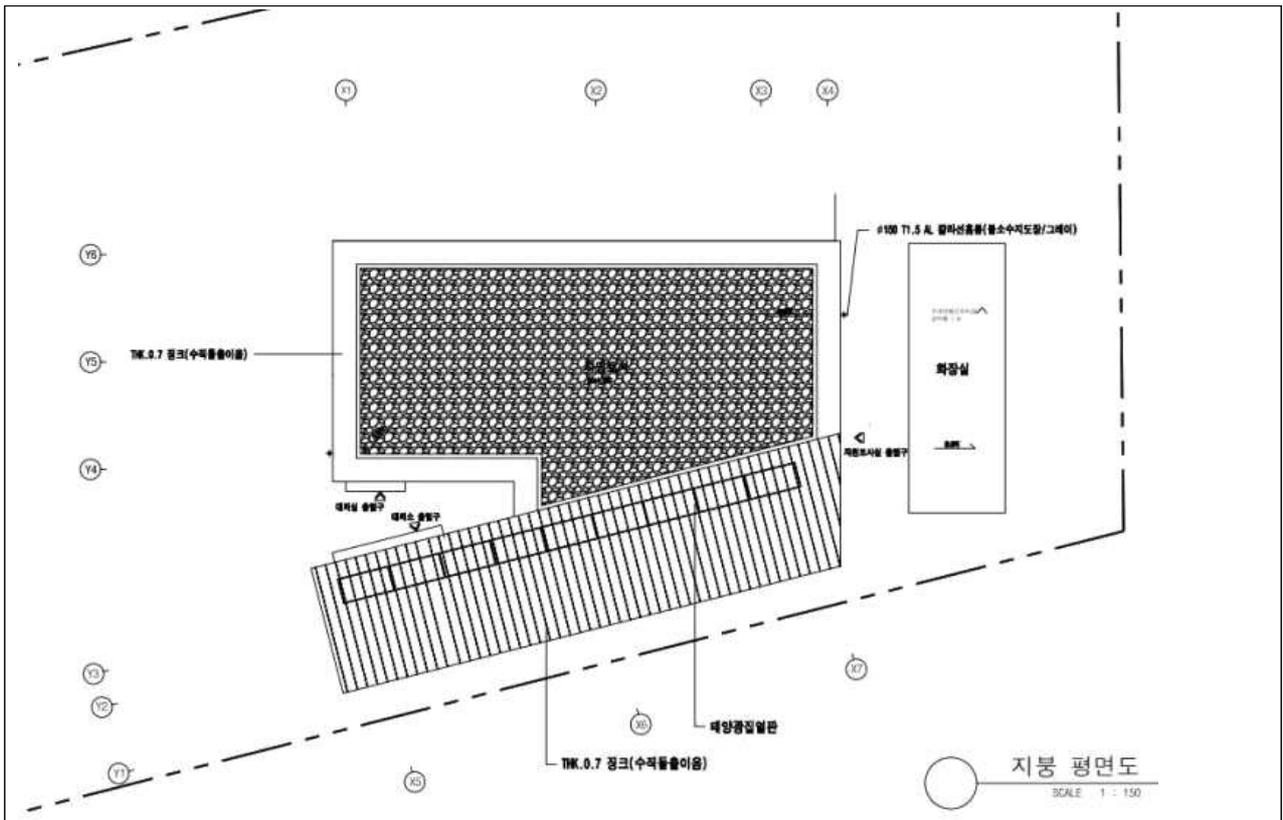


(당초)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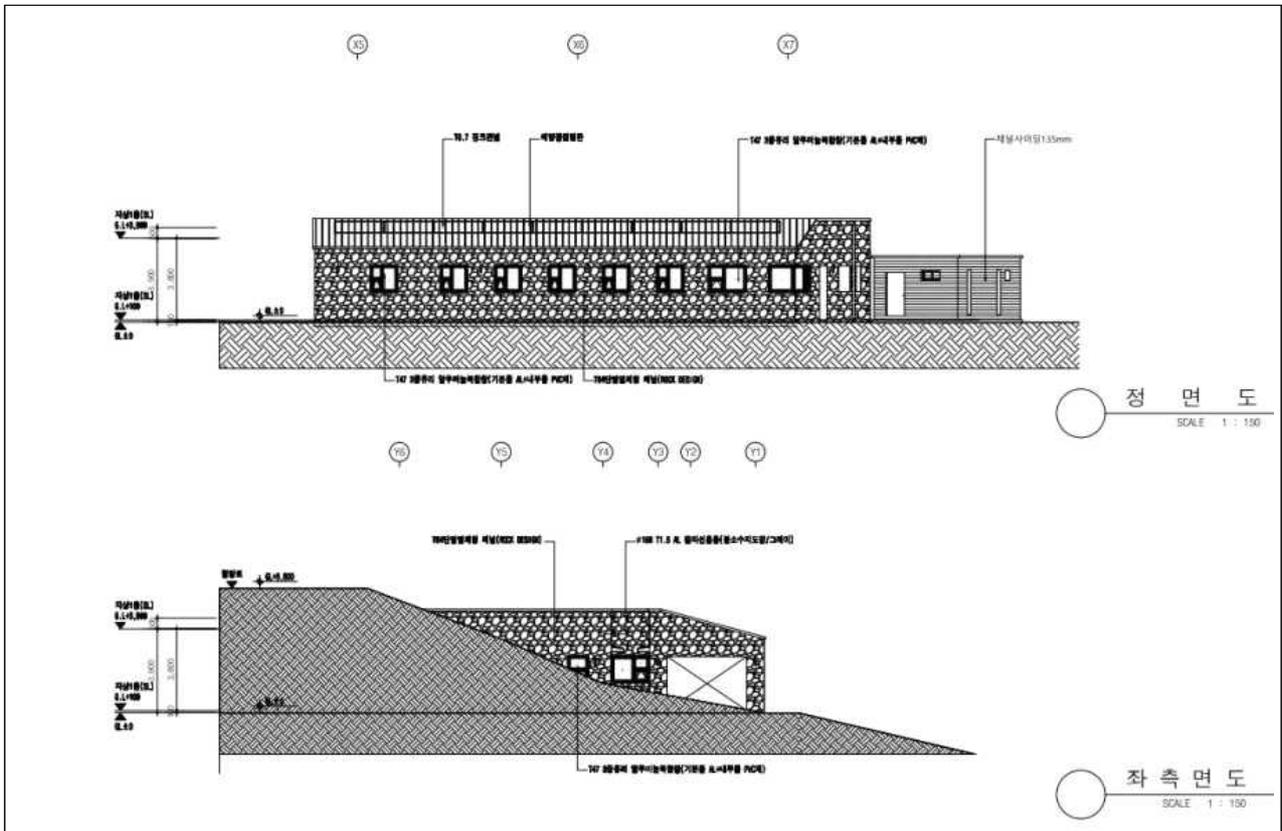
○ 계획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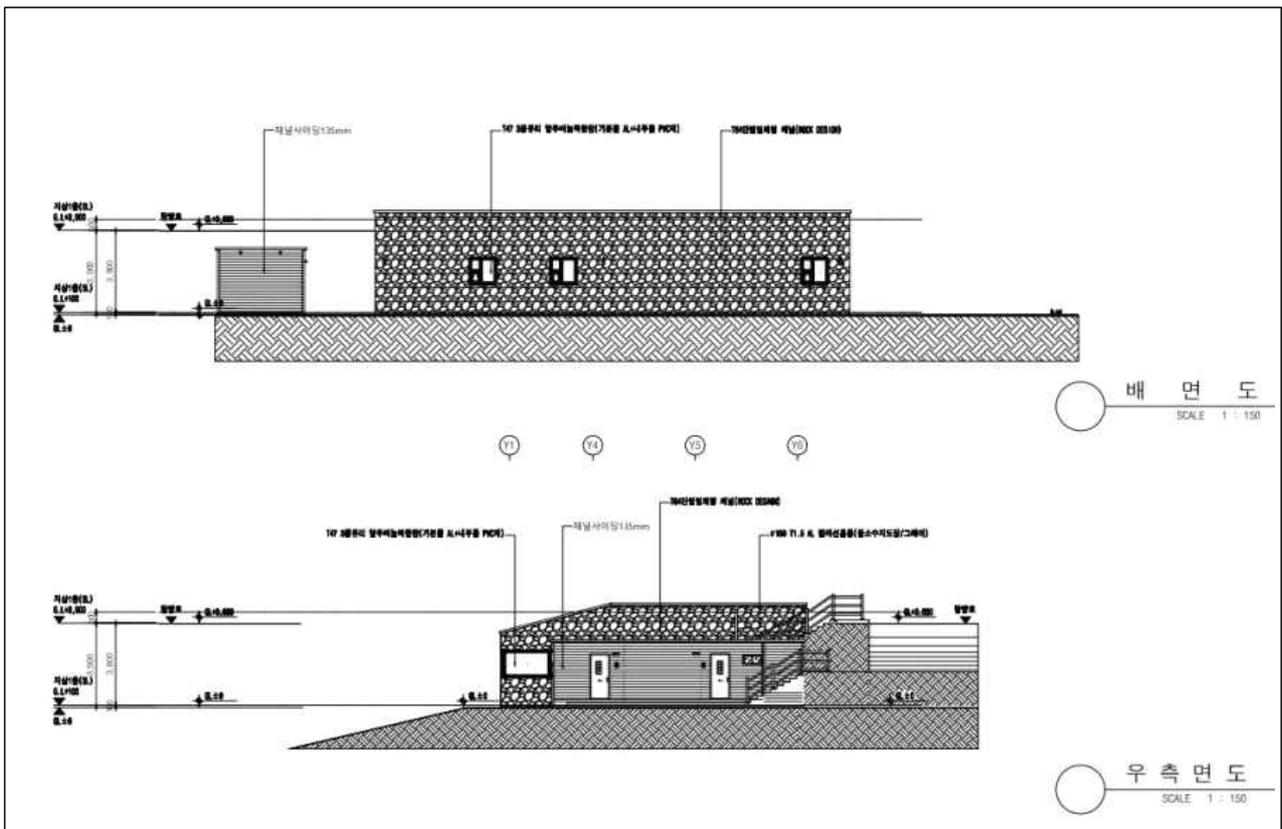
○ 지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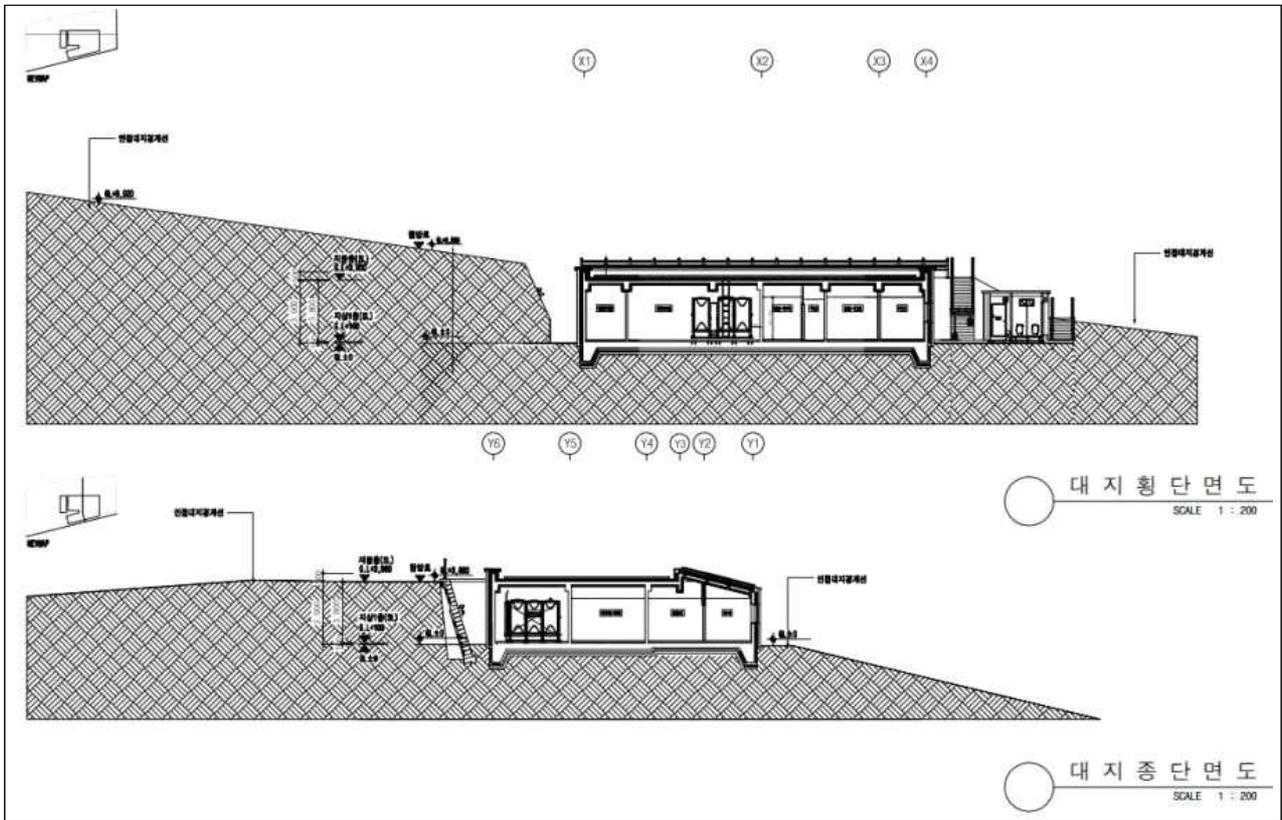
○ 정면도 및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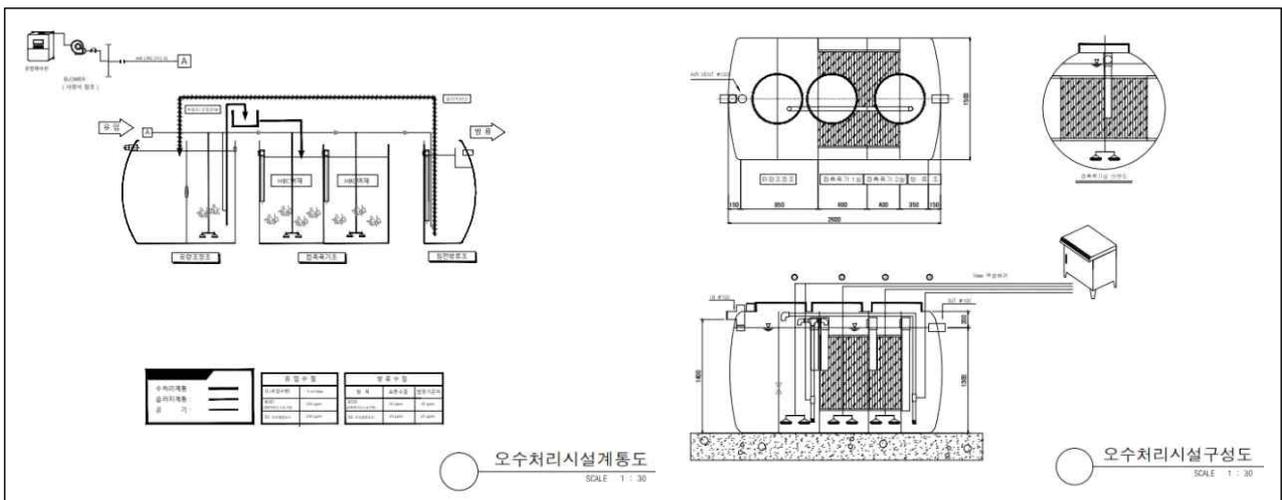
○ 배면도 및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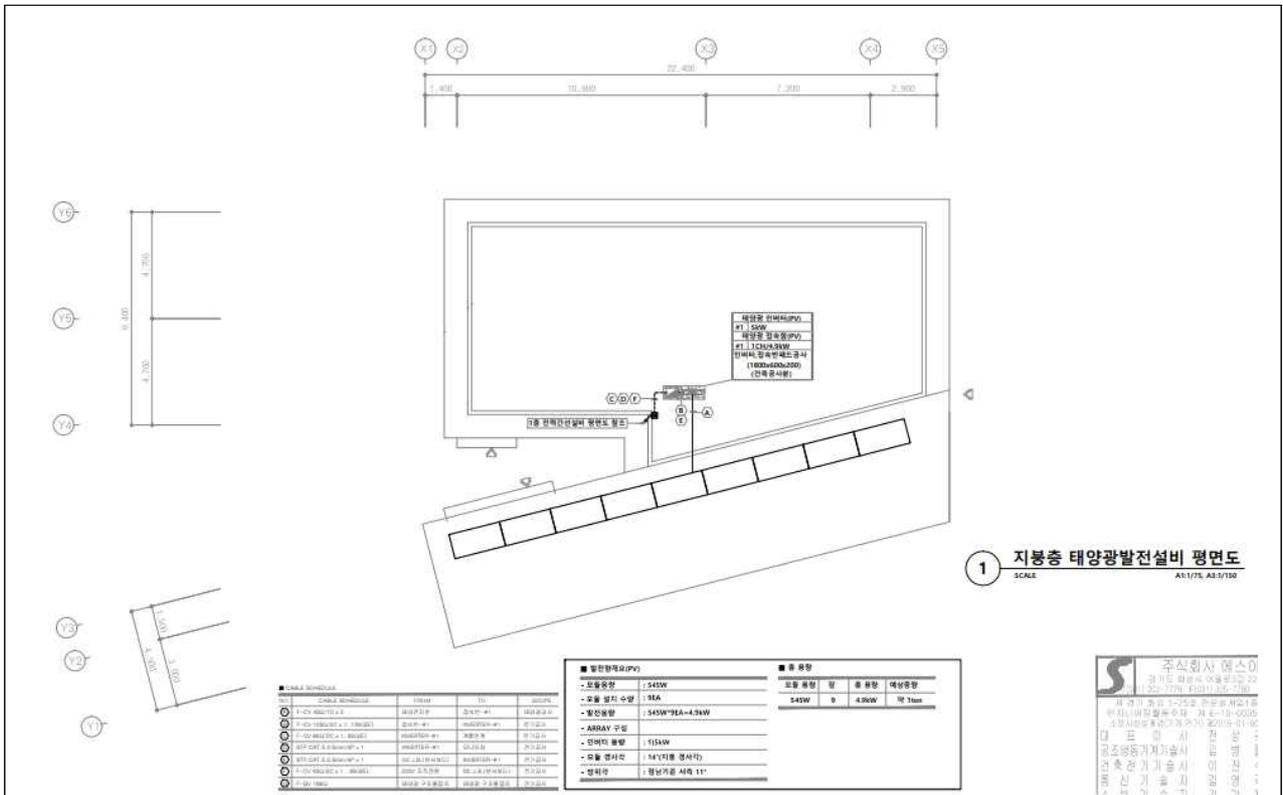
○ 대지 횡단면도 및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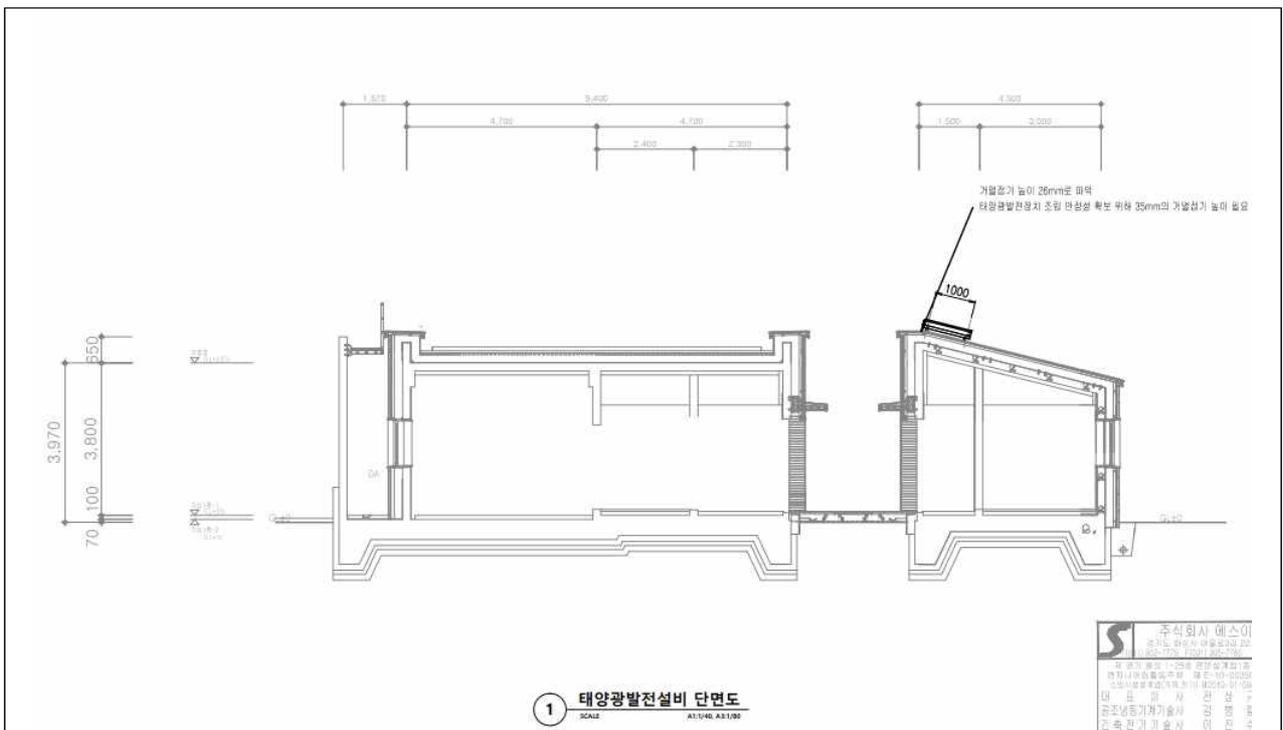
○ 오수처리시설 계통도 및 구성도



### ○ 지붕층 태양광발전설비 평면도



### ○ 지붕층 태양광발전설비 단면도



##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원안 가결 4명, 조건부 가결 8명

## 6.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외 홍도 2구항 어촌뉴딜 사업

### 가. 제안사항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외 홍도 2구항 어촌뉴딜 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외 홍도 2구항 어촌뉴딜 사업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홍도 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번지 외

○ 지정일 : 1965.04.07.

(3) 신청내용

○ 사업명 : 홍도 2구항 어촌뉴딜사업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80-2, 80-5

○ 사업내용

- 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한 방파제 연장 25m

- 다목적센터 166.0㎡ 신축(1층 수산물가공장/ 2층 주민커뮤니티 공간)

- 참살이집 46.24㎡ 내부 리모델링(창호교체 등)

- 해안길정비(디딤돌 포장 L20m / 그네의자 2개소, 자연석벤치 24개소, 난간포토 조형물 10개소, 경관포토벤치 1개소 설치)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5. 10. 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1구역, 1지역

\* 1구역: 신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방파제 등 시설공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 홍도 2구 1지역: 1층 이하, 최고높이 8.0이하/ 기존 건축물 개·보수 및 개축·재축 허용

## 라. 검토의견 (\*\*\*\*\*)

- 신청 사업은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외 홍도2구항 어촌뉴딜사업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으로 선박의 안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본 사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 방파제 연장, 다목적센터 신축, 참살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천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해안길 정비내용 중 시설물 설치하는 경관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마.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 2023. 9. 13.>

- 방파제 등 시설공사는 북서풍이 부는 겨울이나 파고가 높을 경우 선박의 안전 및 어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설계안에서와 같이 최소한의 규모인 25m 이내의 방파제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 1지구의 기준인 1층 이하, 최고높이 8.0m이하인 기존 건축물 개·보수 및 개축·재축 허용 규정에 따른 현장 조사에서 참살이 시설과 연계하는 기존의 동선을 유지하면서 건축되는 부분으로 단애의 높이와 방파제의 높이에 의해 미관상 경관 손상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신축부분의 내부 공간 구성은 어민들과 협의하여 편리하게 구획하고, 건물의 외부와 색상 재료도 배면의 단애 부분과 참살이 건물의 연계성을 갖는 디자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 전문위원 / 2023. 9. 13.>

- 본 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 1구역과 문화재구역으로 보존이 우선되어야 하는 지역임. 단,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빈번한 태풍 및 너울성 파도가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내항의 선박과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 방파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기존 T.T.P.의 유실로 인한 해양오염을 고려하여 현재 사용 계획 중인 재료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유실율을 예측하고 해양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해안길 정비는 기존의 범위와 형태를 유지하고 지면의 재료는 습기와 염기

에 비교적 안정적인 재료를 선택하고 데크시설은 기존 시설의 정비이외의 추가 설치는 지양되어야 함. 또한 지나친 부대시설은 오히려 도서의 기상 특성상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나무벤치나 장식이 두드러진 벤치의 설치 등은 지양되어야 함.

- 다목적센터는 현 목적에 부합한 사용을 전제로 하여 추후 다른 용도와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계획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다목적센터의 조성은 이 지역의 추후 건축선의 확장과 신축 증축 건조물의 기준 및 부정적 선례가 되지 않도록 문화재청과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살이집 리모델링과 다목적센터 사업은 천연기념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규모와 형태가 결정되어야 하며 이질적 경관요소로 인식되지 않도록 색채와 재료를 전문가와 추후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 지자체(\*\*\*\*)

<\*\*\* \*\*\*/ 2023. 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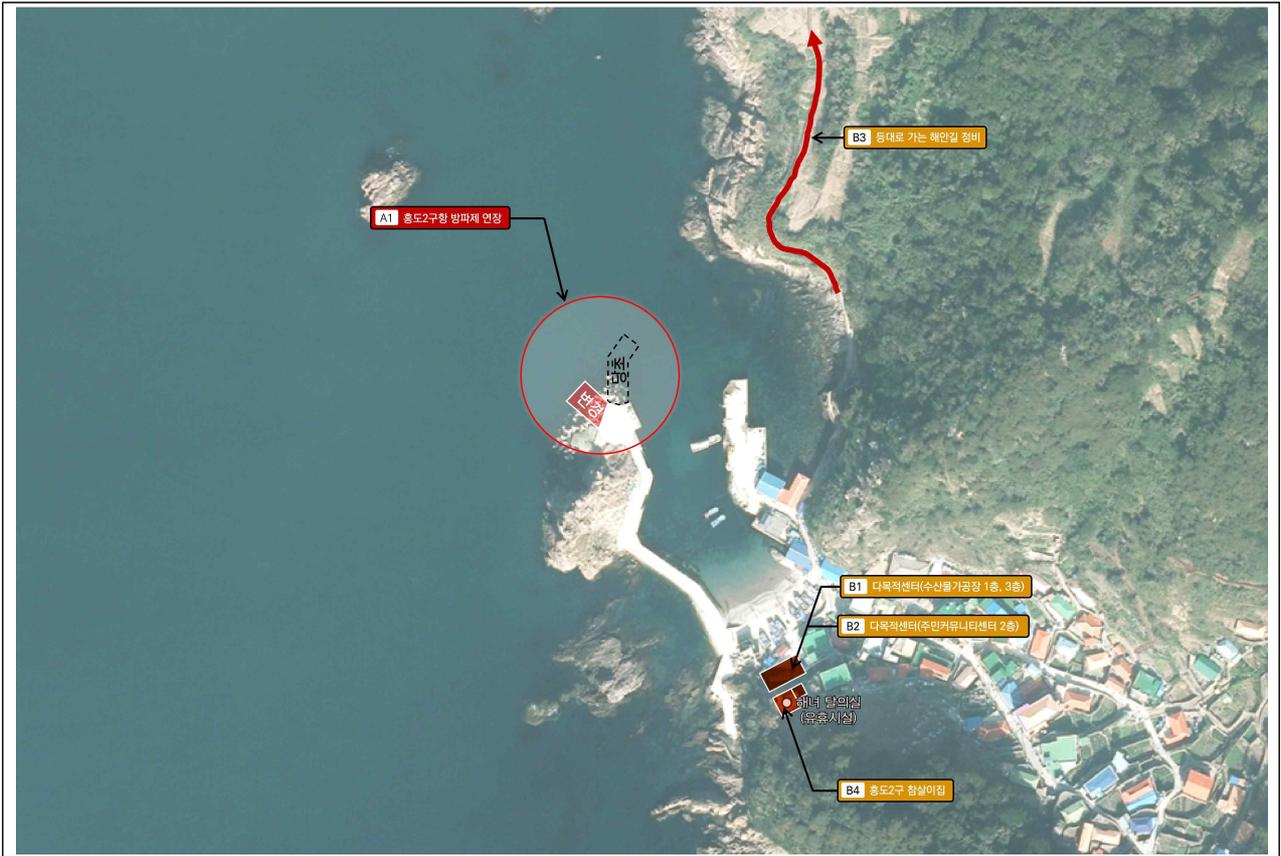
- 홍도 2구항은 수역시설이 협소하고 정온 상태가 아니라 유람선이나 여객선이 접안하기에는 사고 위험이 높아 현재 접안을 꺼려하고 있고, 주민들은 마을어선을 이용해 홍도 1구로 이동하고 있고, 홍도 2구 방파제는 여름철의 태풍(남서풍)과 같은 이상파랑으로 어항 내 선박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상 기후시 피항수역 부족으로 육지 또는 홍도 1구로 피항하는 실정으로, 주 어업기간 4~9월 남서풍 영향으로 인한 어선 피해로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생계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피항 시설 확보를 위해 방파제 조성이 시급함
- 수산물 채취 후 가공을 할 수 있는 공동 작업공간의 부재로 생물 상태로 판매하거나 채취량을 조절하는 실정으로 해산물을 건조, 가공할 수 있는 공간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함
- 홍도 2구 등대로 향하는 길이 해풍에 의해 부식과 유실이 심하여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이용이 매우 불편한 상황으로 바닥 포장 등 정비가 필요함

<\*\* \*\*\*/ 2023. 9. 5.)

- 홍도 2구항 어업환경 개선 및 주민 정주 환경 개선 등으로 마을소득 증대 효과가 예상되고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 바. 참고자료

### ○ 사업위치



### ○ 대상지 현황(홍도 2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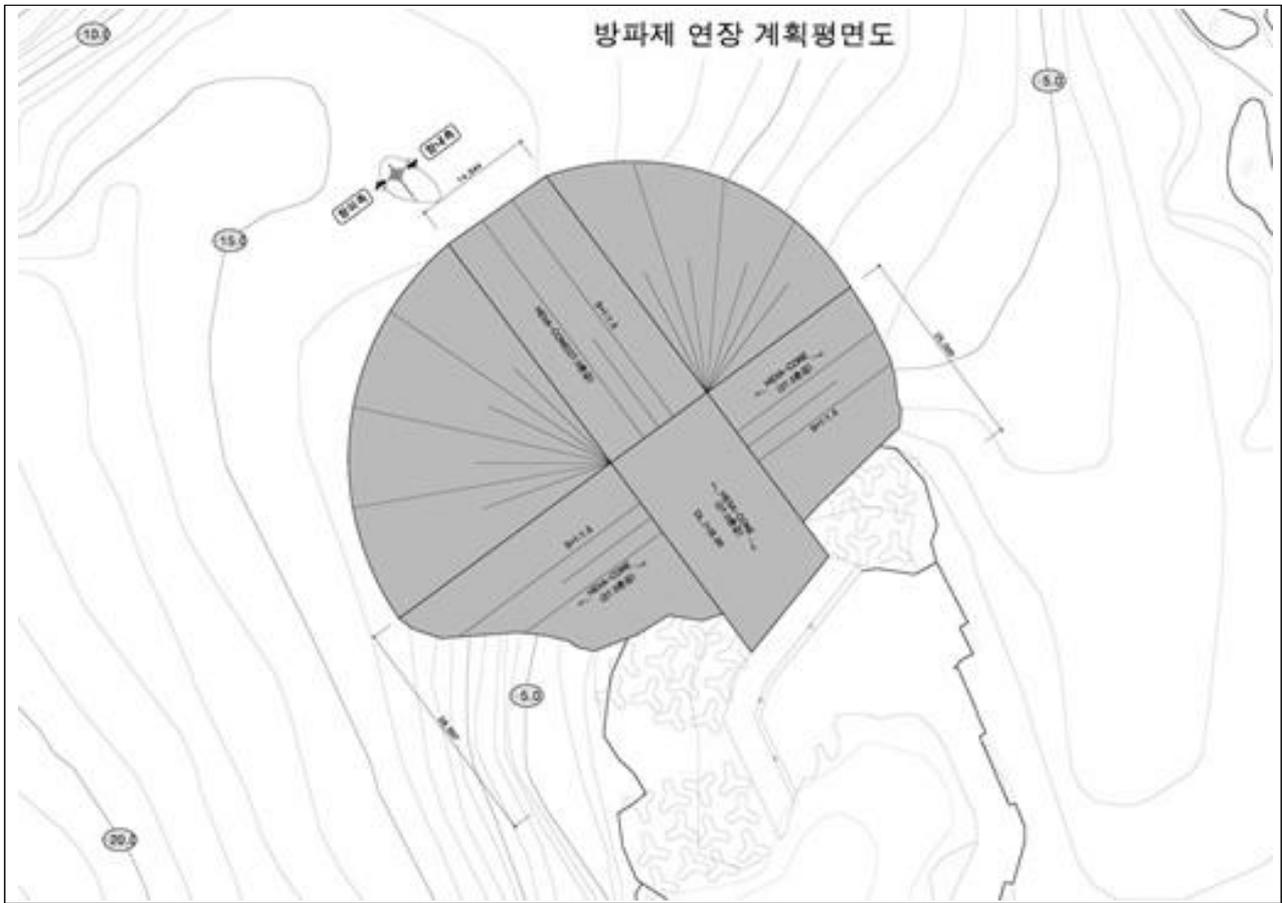
○ 대상지 현황(홍도 2구 참살이집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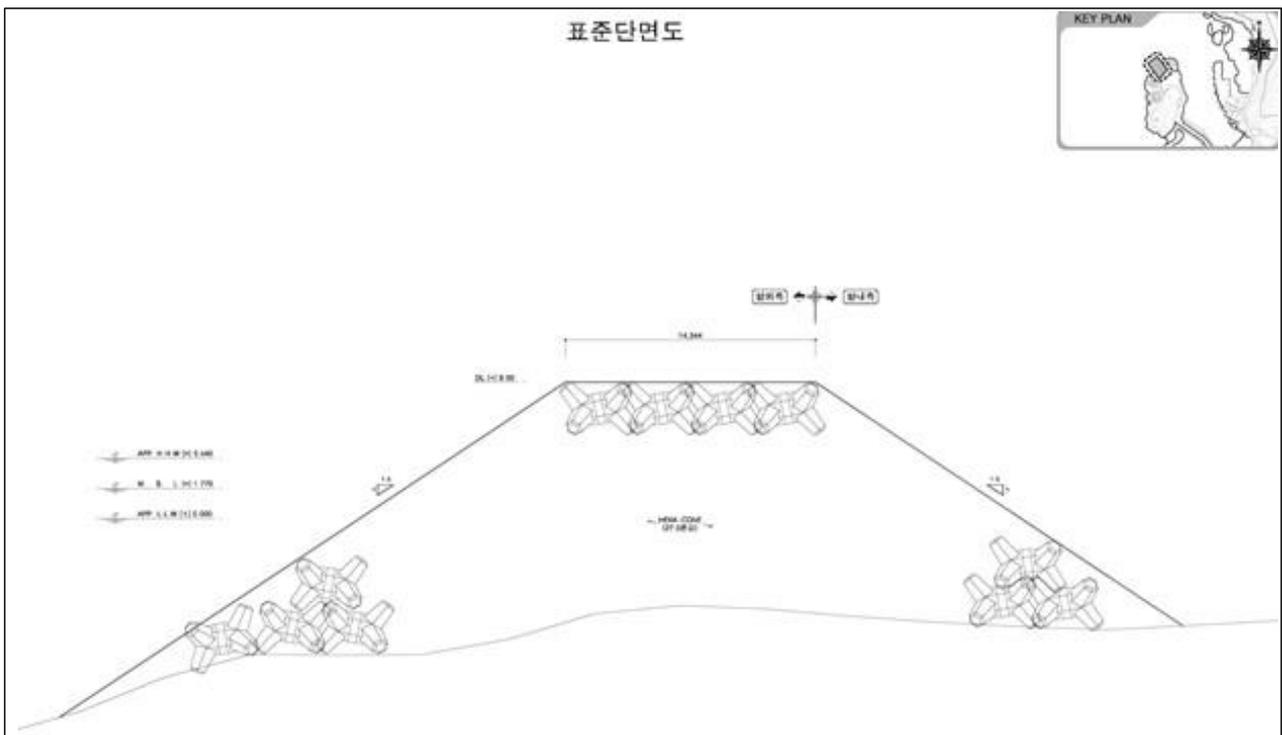
○ 대상지 현황(해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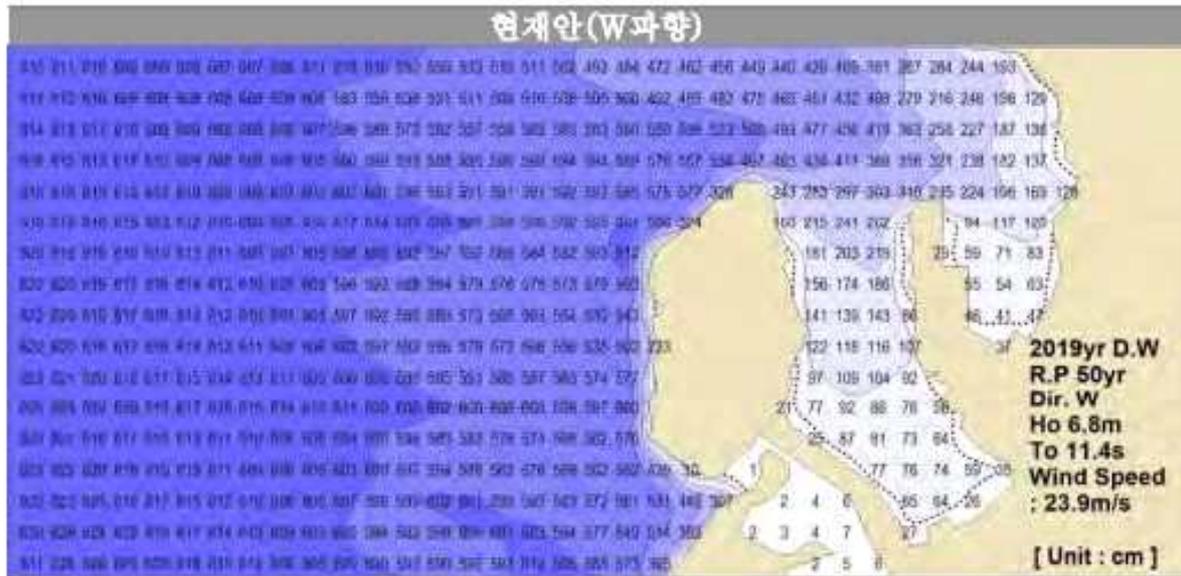
○ 홍도 2구항 방파제 연장 계획평면도



○ 홍도 2구항 방파제 연장 표준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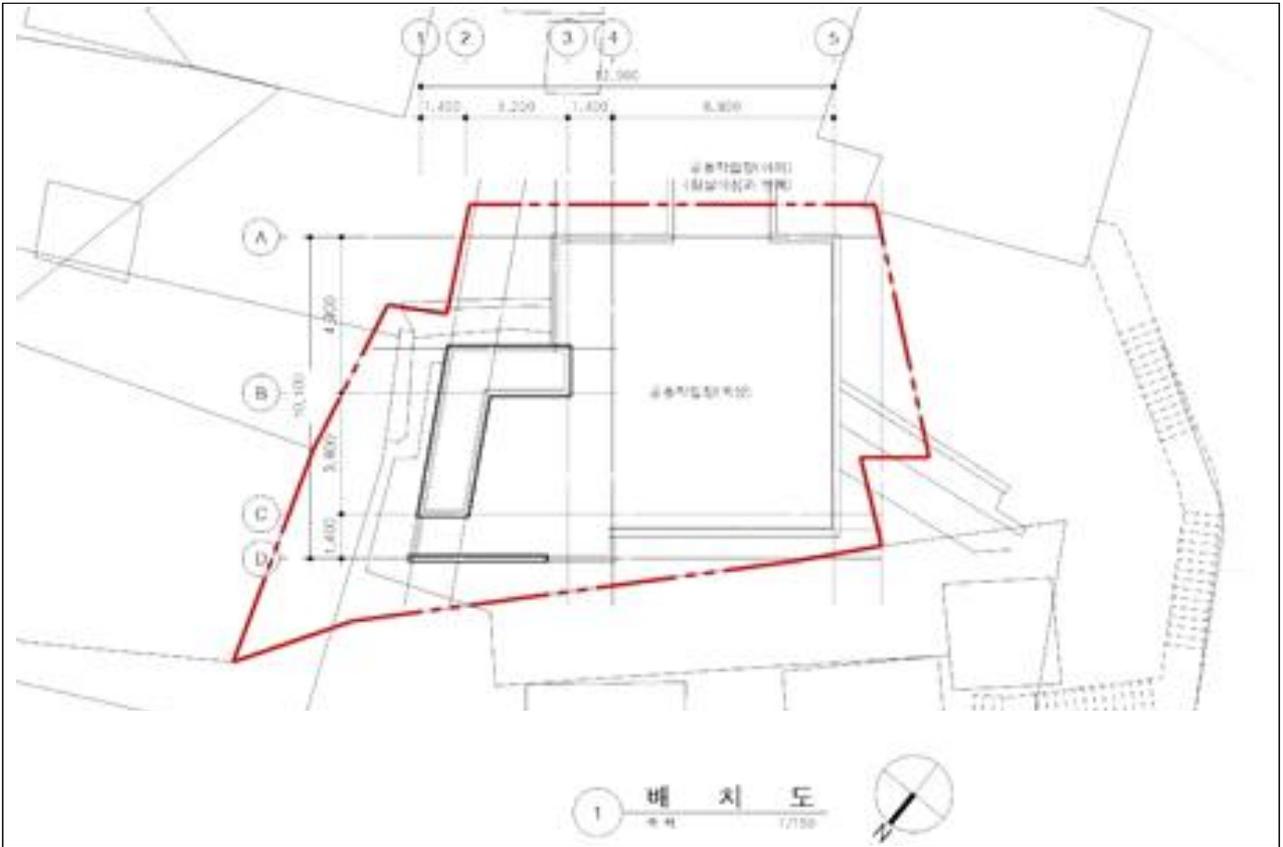
○ 홍도항 수치무형 실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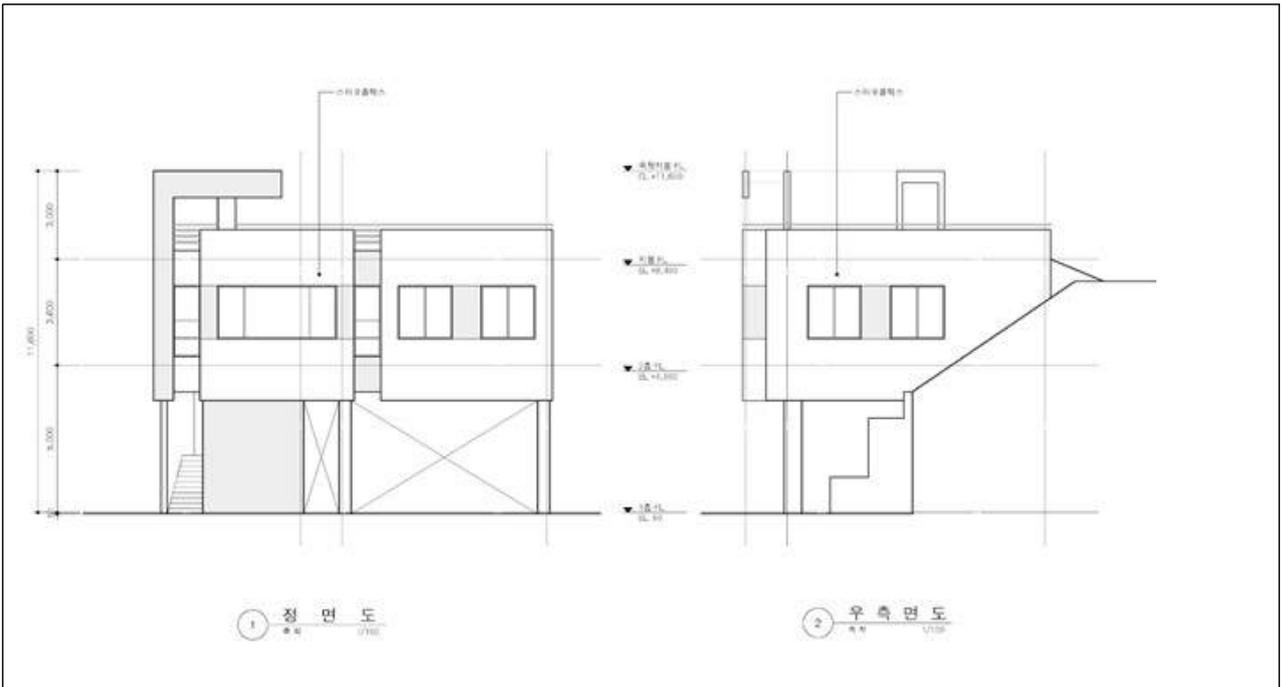
○ 검토결과

- 현재안은 0.7m이하\*의 정온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됨
  - 실시설계는 항내측의 정온이 확보됨
    - 최대파고 : 5.81m / 이상파 내습시 한계최대파고 : 0.70m
    - 세부두 파고분포 : 1.28m~2.43m / 항내 전면구간 파고 : 0.23m~0.70m
- \*어선 정박지온도 : 항내보박 및 정박가능 최대파고(조위 3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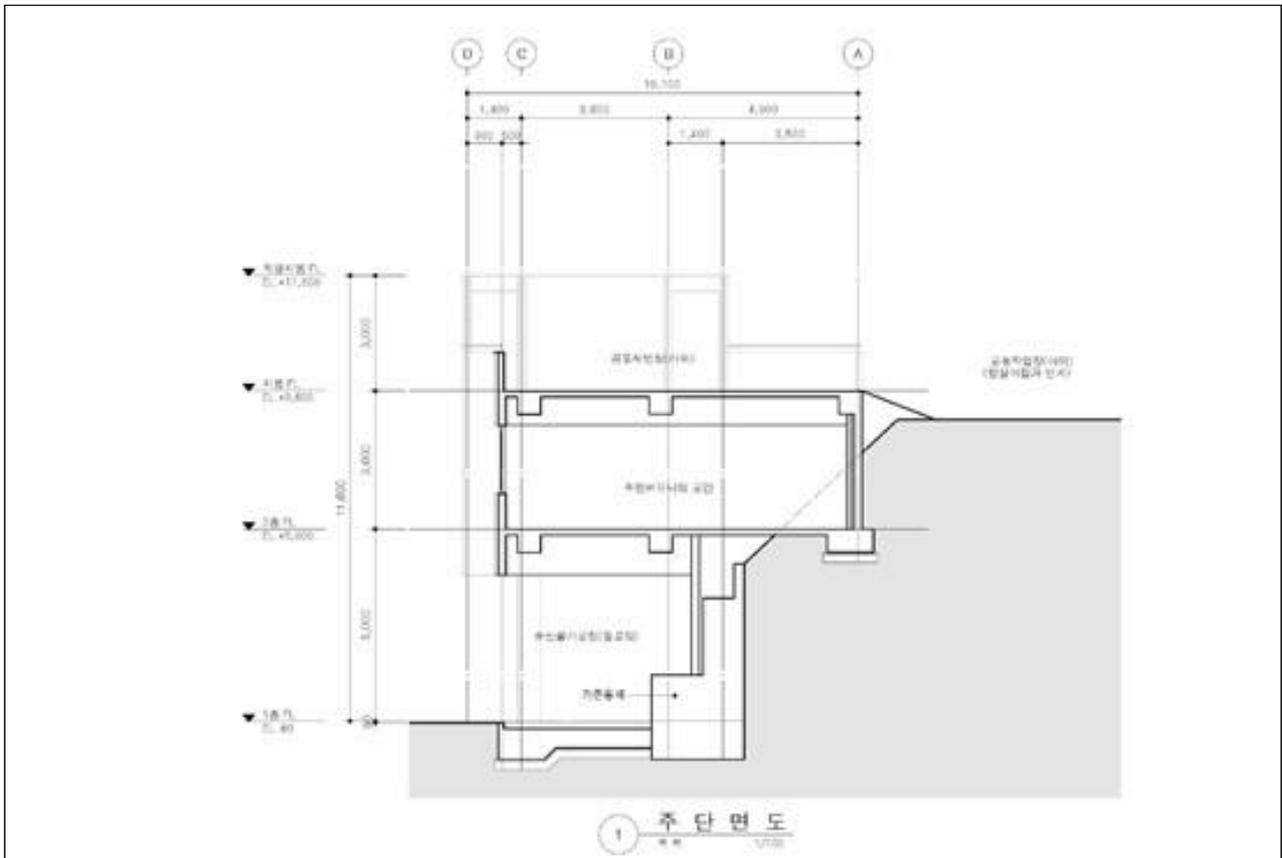
○ 홍도 2구항 다목적센터 배치도



○ 홍도 2구항 다목적센터 정면도 및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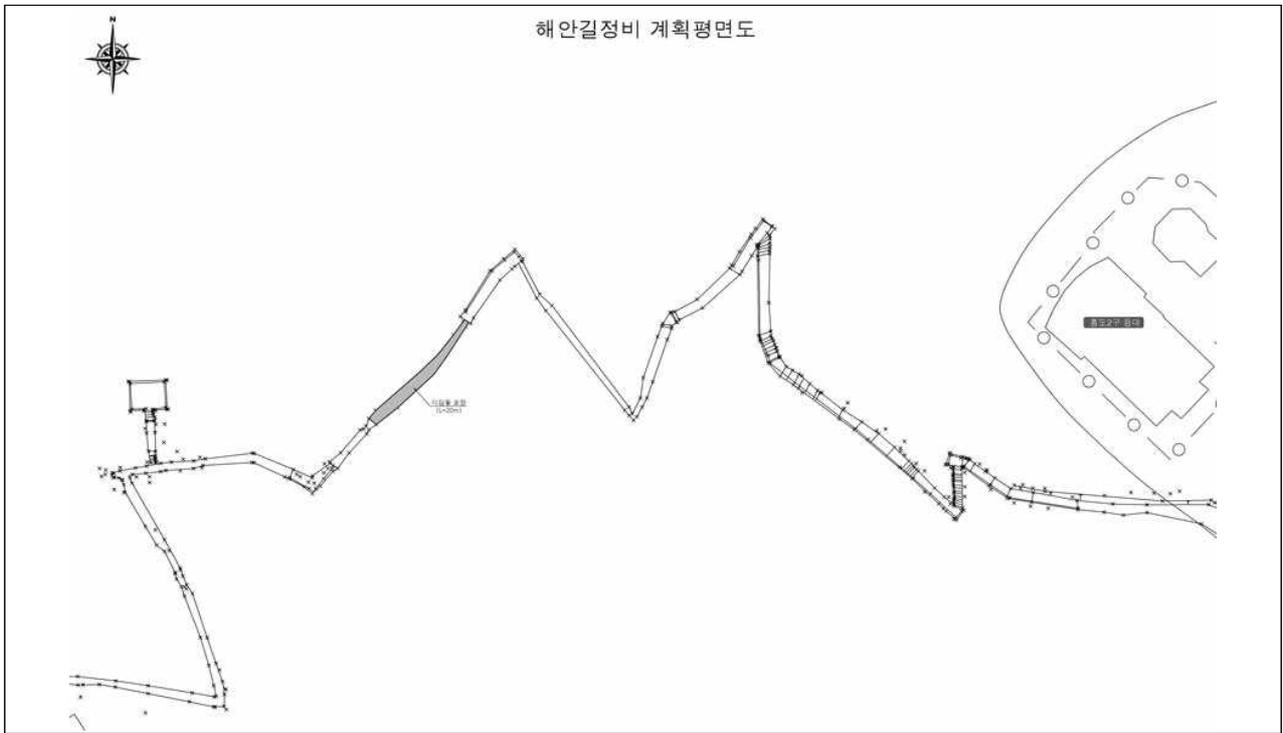
○ 홍도 2구항 다목적센터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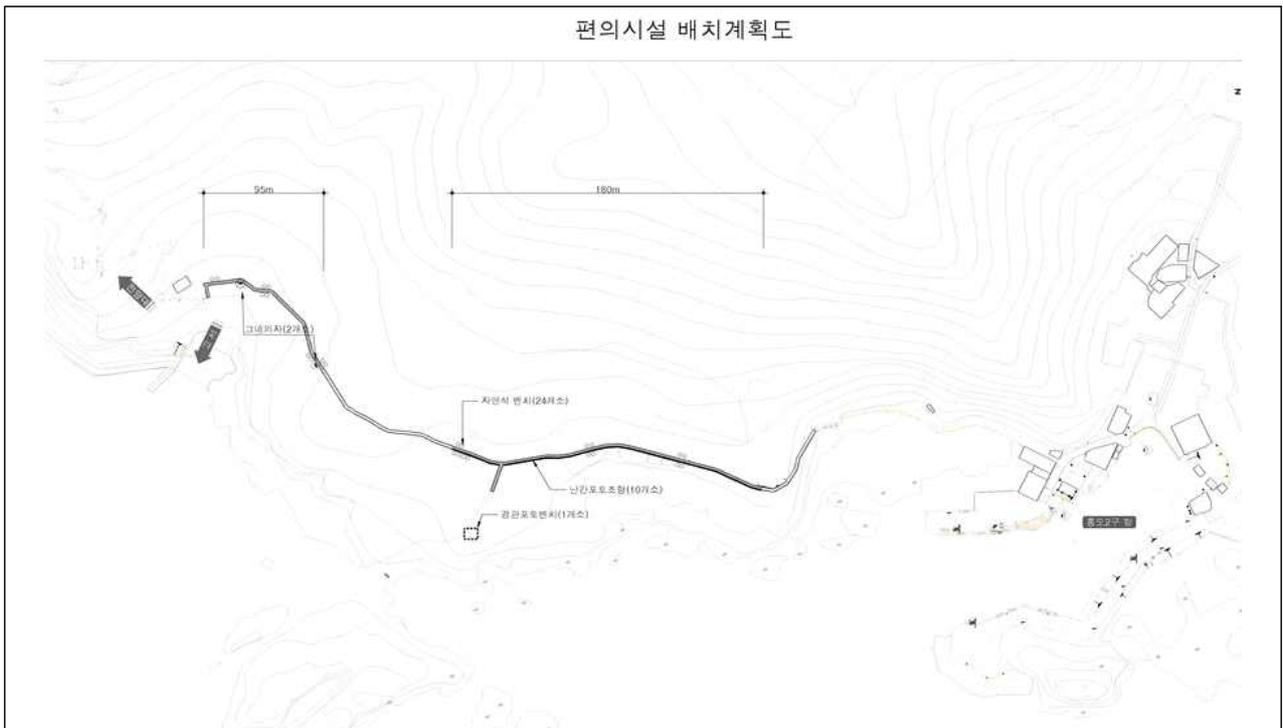
○ 홍도 2구항 다목적센터 조감도



○ 홍도 2구항 해안길 정비 포장계획 평면도



○ 홍도 2구항 해안길 정비 편의시설 배치계획도



## 사.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 가결 4명, 조건부 가결 9명

---

# 검 토 사 항

---

## 7.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
- 추진경과
  - 2020. 7. 28.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화석문화재 발굴허가(16,973m<sup>2</sup>)
  - 2020. 7.29.~12.24. 궤도차량 진입도로 개설공사부지 내 화석문화재 발굴조사
  - 2023. 3. 2. 천연기념물(지질) 우수 잠재자원 신청(포항시→문화재청)
  - 2023. 7.28. 천연기념물(지질) 지정조사(\*\*\*, \*\*\* 문화재위원, \*\*\* 교수(경북대학교), \*\*\* 학예연구사)
  - 2023.10.19.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제출(포항시→문화재청)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 (한자) 浦項 金光洞層 新生代 化石產地
  - (영문) Cenozoic fossil site of the Geumgwangdong Formation, Pohang
-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지형·지질)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산88 일원
- 문화재지정구역 : 82필지, 258,234m<sup>2</sup>
- 소유자 : 국유, 사유 등
- 지정사유
  - 포항 금광동층은 신생대 제3기 분지의 하부 육성층 중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육상식물 화석산지로서, 식물화석의 종 다양성과 화석 밀집도가 매우 우수한 국내 유일의 지역임

- 신생대 전기 마이오세 한반도의 식생과 기후 등 고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지만, 산지 규모가 작고 암석의 특성상 기후변화에 취약하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 관리단체(안) : 경상북도 포항시

**라. 검토의견(\*\*\*\*\*)**

- 대상지는 금광리 일원에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신생대 전기 마이오세 퇴적층으로, 다양한 식물화석이 산출되어 당시의 식생과 고환경을 알려주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음
- 다만, 화석산지의 규모가 작고 화석의 암석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강우나 사태 등에 취약할 수 있어 시급히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함이 타당함

**마. 현지조사, 지정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지정조사 의견('23. 7. 28.)**

**<\*\*\* 문화재위원회>**

- 우리나라 남한의 신생대층은 동해안을 따라 분포하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양남분지, 포항분지, 영해분지, 북평분지가 존재하며, 이 분지들의 하부는 육성층이 발달한 반면 상부는 해성층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이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해성층으로 이루어진 연일층군이 분포한 포항분지이며 다양한 해양생물 화석들이 발견되어 중점적으로 연구되어 왔음.
- 반면 양남분지는 가장 하부인 범곡리층군부터 상부로 장기층군, 연일층군까지 분포하며, 범곡리층군과 장기층군은 육성층으로 구성됨. 이 육성층으로부터는 포항분지의 해성층처럼 화석이 많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시대 결정이 쉽지 않음. 하지만 하부 육성층의 연대를 알아내는 것은 동해의 열림과 관계되어 우리나라 신생대층이 언제부터 쌓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 이런 의미에서 육성층의 대표적인 화석층이 금광동층이며 과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학자인 다테이와(Tateiwa, 1924)에 의해 장기층군의 금광동층에서는 다양한 식물화석을 보고하였음. 이러한 식물화석들은 일본과의 식물상과 비교 연구를 통해 장기층군의 시대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음.
- 현재 금광동층은 금광리 일원에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전기 마이오세 퇴적층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수의 층군에서 산출되는 풍부한 식물잎 화석이

특징적임. 산출되는 식물화석은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 너도밤나무(*Fagus*), 참나무(*Quercus*), 단풍나무(*Acer*), 자작나무(*Betula*), 느티나무(*Zelkova*) 속 등이며 곤충과 민물어류 화석이 함께 발견됨. 전반적인 퇴적상과 식물화석의 상태는 작은 호수로 유입된 식물잎들이 부유성 퇴적물과 천천히 퇴적되어 층리면에 평행하게 놓여 보존된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금광동층은 남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신생대 식물화석 산지이며 그 역사적 가치가 높고 다양한 식물잎 화석들이 현재에도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보존하여 학술연구를 제외한 화석 수집을 금지할 필요가 시급히 요구됨. 이러한 식물화석들은 전기 마이오세에 한반도의 식생과 기후, 고환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짐. 또한 금광동 식물화석 산지는 그 규모가 매우 작아 지금 보존하지 않으면 곧 없어질 수도 있어, 시급히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함.

#### <\*\*\* 문화재위원>

- 금광동층은 1924년 일본인 학자 타데이와(Tateiwa)가 처음 금광동 세일로 명명하며 알려지기 시작한 신생대 육성 퇴적층으로 장기층군에 속함. 금광동층은 포항시 금광리 지역에 소규모(폭 1km 내외, 두께 70m 내외)로 분포하지만, 다양한 식물화석이 군집을 이루며 산출되는 국내 유일의 신생대 퇴적층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큼.
- Huzioka(1972)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현재까지 총 27과 43속 64분류군이 보고된 식물화석의 박물관 같은 지역으로, 이를 통해 전기 마이오세의 식물상(Aniai type) 및 환경 복원의 자료를 제공함.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 너도밤나무(*Fagus*), 참나무(*Quercus*), 단풍나무(*Acer*), 자작나무(*Betula*), 느티나무(*Zelkova*) 속이 우점하며, 곤충과 어류화석 또한 함께 산출되어, 이들 화석을 통한 당시대의 생물상 복원에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지층임.
- 금광동층과 접해 있는 성동리층과 놀대리 응회암층에서는 또한 규화 또는 탄화된 나무 줄기화석이 발견되고 있으며 최근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포항 나무화석 산출지도 가까움. 따라서 나뭇잎 화석과 더불어 나무 줄기화석 연구는 또한 당시 육상 분지에서의 화산활동과 화산쇄설물의 호수 유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즉, 금광동층은 전기 마이오세의 생물상과 기후변화 및 당시의 화산활동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학술적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식물화석이 풍부하게 산출되는 국내 유일의 육상식물화석 군집지이기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함이 마땅함.

### <\*\*\* \*\*\*\*\* 교수>

- 동해의 형성 및 확장과 관련된 신생대 퇴적층은 전기 마이오세 육성 퇴적층 및 화산암(효동리안산암, 범곡리층군, 장기층군)과 중기 마이오세 해성 퇴적층(연일층군)으로 구분되며, 금광동층은 전기 육성 퇴적층임. 금광동층은 호수 퇴적층으로 늪대리응회암 상부에 정합적으로 퇴적되어 있으며, 금광동층 상부는 응회암 및 응회질 퇴적암으로 구성된 신정리층이 분포하고 있음. 따라서 금광동층은 화산 휴지기 동안 호수에서 퇴적된 퇴적암임.
- 금광동층은 다양한 식물화석이 산출되며, 1924년 일제강점기 식물화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이래로 다수의 식물화석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 너도밤나무(*Fagus*), 참나무(*Quercus*), 단풍나무(*Acer*), 자작나무(*Betula*), 느티나무(*Zelkova*) 속이 관찰되며, 곤충과 어류화석 또한 산출됨.
- 금광동층은 신생대 한반도의 기후, 지구조운동 및 퇴적환경과 관련된 학술적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다른 신생대 퇴적층에서 쉽게 관찰할 수 없는 다양한 식물화석이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나타나는 중요성을 지님. 아울러 일제강점기 이래로 진행되어온 고생물학 연구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 <\*\*\* 학예연구사>

- 포항지역의 신생대 퇴적층은 다테이와(Tateiwa, 1924)가 지질도폭조사를 수행한 이후 기본적인 층서분류와 화석생물상이 알려졌으며, 특히 장기층군 금광동층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식물화석이 산출되어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분류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음. 특히, Huzioka(1972)는 금광동층 식물화석의 퇴적시기와 식생구성 등을 종합하여, 이들이 일본의 전기 마이오세 아니아이형(Aniai type) 식물상과 대비되며, 상대적으로 한랭한 기후가 우세한 환경이었음을 유추하였음.
- 장기층군은 동해 열림 현상에 따른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으로 형성된 소규모 육성퇴적분지로 화산성 응회질퇴적물과 지구조적 변형이 관찰되고 있어 해성층인 포항분지(두호층 포함)와는 구분됨.
- 금광동층은 금광리 일원에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전기 마이오세 퇴적층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부의 정천리역암(장기역암)과 늪대리응회암(늪대리조면암질응회암), 상부의 신정리층(하부함탄층, 하부현무암질응회암, 상부함탄층) 사이에 정합적으로 위치함. 담갈색~황갈색, 회색을 띠는 금광동층은 주로 엽층리가 잘 발달된 세일로 구성되며, 다수의 층준에서 산출되는 풍부한 식물잎 화석이 특징적임.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 너도밤나무(*Fagus*), 참나무(*Quercus*), 단풍나무(*Acer*), 자작나무(*Betula*), 느

티나무(*Zelkova*) 속이 우점하며, 드물게 곤충과 어류화석이 함께 산출됨. 전반적인 퇴적상과 식물화석의 보존 상태로 볼 때, 분지 내 화산활동이 비교적 약화된 시기에 호수로 유입된 식물잎들이 부유성 퇴적물과 함께 느리게 가라앉아 안정적으로 퇴적되어 층리면에 평행하게 압착(compression)된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1) 금광동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신생대 식물화석산지로서 다양한 식물잎 화석이 산출되어 당시의 식생과 고환경을 알 수 있는 학술적, 교육적 효과가 높으며, 2) 국내에서 신생대 전기 마이오세의 식물상과 퇴적환경이 보존된 유일한 곳으로서 3) 그 분포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에 국내에서 다시 찾기 힘든 화석산지 일부 구간을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보존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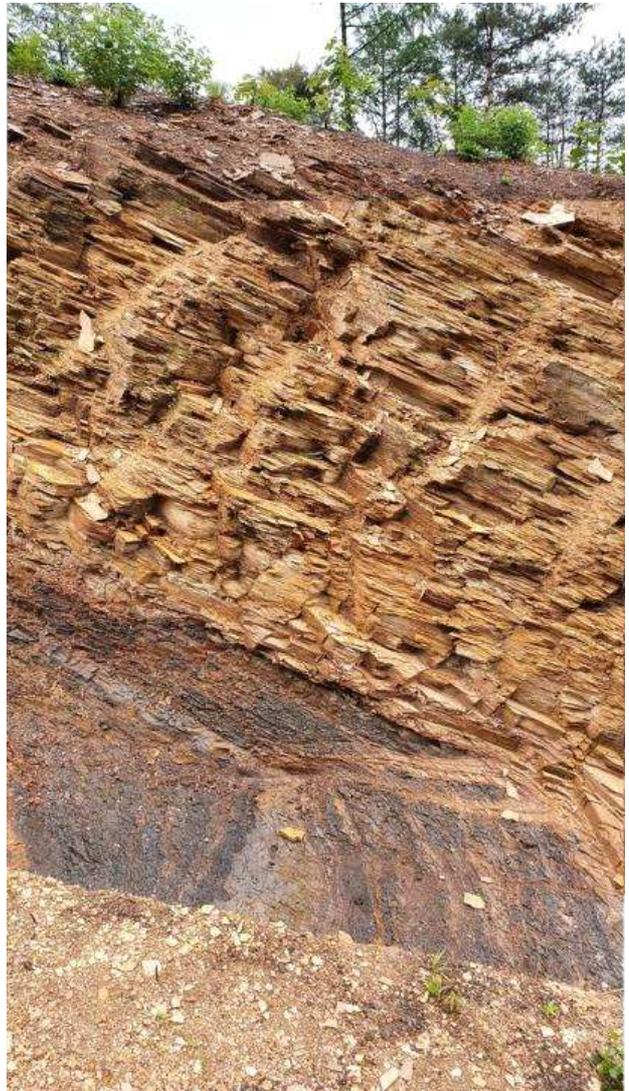
### (3) 지자체(\*\*\*\* \*\*\*) 의견('23. 10. 19.)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는 문화재청의 ‘자연유산 우수 잠재자원’ 추천 요청에 의해 우리시에서 추천 잠재자원으로 건의하였으며, 2023년 3월 검토결과 우리나라 신생대 식물화석 산출의 대표 지층으로 산지에서 산출되는 화석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음.
- 이에 2023년 7월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 후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라는 명칭으로 지정 추진을 결정하였음.
- 이 화석산지는 금광동층에 해당되며, 포항시 금광리 지역에 소규모(폭 1km 내외, 두께 70m 내외)로 분포하지만, 다양한 식물화석이 군집을 이루며 산출되는 점에서 국내 유일의 신생대 퇴적층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큼.
- 국내 최대의 신생대 화석 산출지로 알려진 포항에서 산출된 화석을 보관·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일부 중요 노두의 절단면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한국의 지질에 관하여 교육체험 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가자연유산(천연기념물)을 지정 신청함.

## 바. 사진자료



화석산지 안내판



층위 단면



수습된 목재 화석(‘20년)



화석 발굴조사('20년)

사.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 가결 13명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 보고서

# 자연유산(천연기념물-지형·지질) 지정조사 보고서

## □ 조사일자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3. 7. 28.
- 조사자 :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교수(\*\*\*\*\*), \*\*\*학예연구사

## 1. 문화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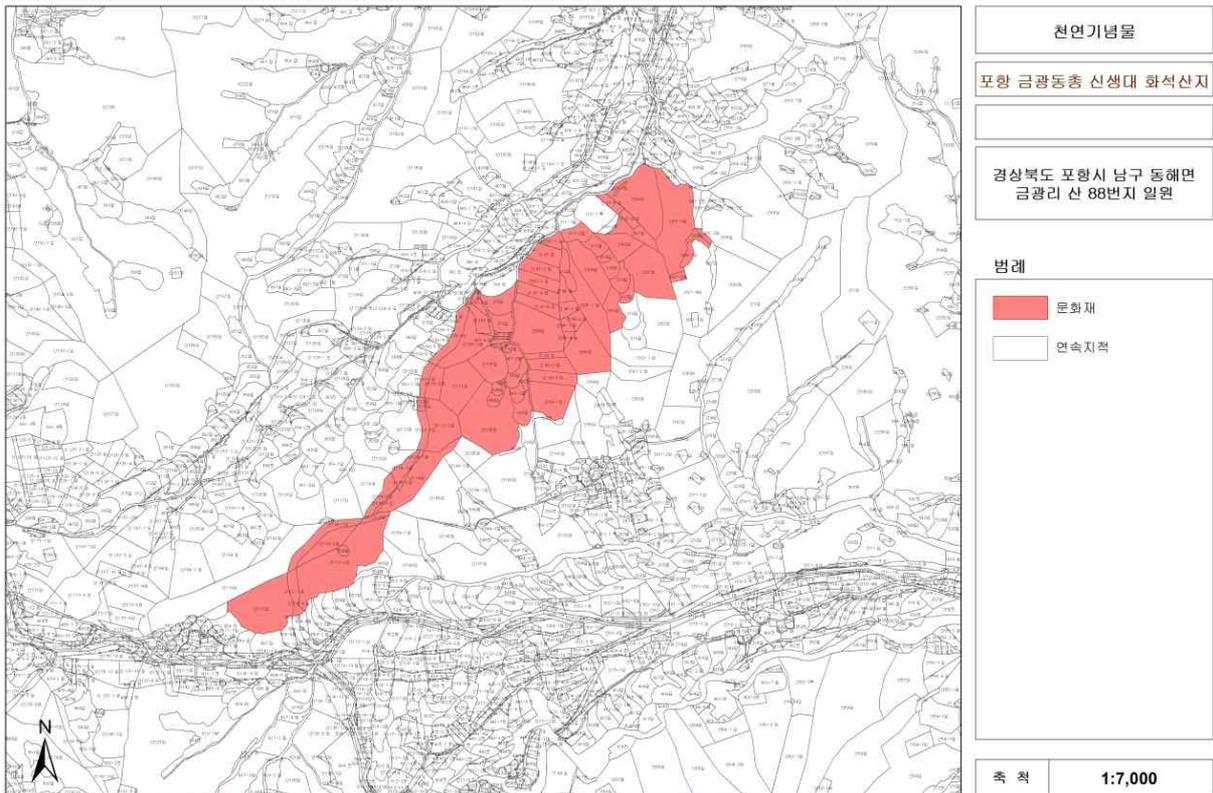
- 가.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 나. 지정명칭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 다.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산88번지 일원
- 라. 규모 : 258,234m<sup>2</sup>
- 마. 지정대상 및 범위 : 82필지, 258,234m<sup>2</sup>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성명	주소
	계			277,070	258,234		
1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299	임	872	872	*** 외 1명	경북 포항시 남구
2	"	299-1	임	979	979	***	경북 포항시 남구
3	"	300-2	임	453	453	***	-
4	"	307-1	임	231	231	***	경북 포항시 남구
5	"	311-2	답	2,238	2,238	"	"
6	"	312	답	1,954	1,954	*(***)	-
7	"	313	답	1,745	1,745	***	경북 포항시 남구
8	"	314	답	727	727	*****	경북 포항시 남구
9	"	315	답	1,455	1,455	***	경남 양산시 신기동
10	"	316	답	1,940	1,940	***	경북 포항시 북구
11	"	317	답	1,167	1,167	*(***)	-
12	"	341	답	2,357	2,357	***	경북 포항시 남구
13	"	342	전	466	466	***	-
14	"	343	답	1,795	1,795	***	경북 포항시 남구
15	"	343-1	답	1,174	1,174	"	"
16	"	344	임	826	826	***	-
17	"	345	답	774	774	*** 외 2명	경북 포항시 남구
18	"	346	전	152	152	***	경북 포항시 남구
19	"	347-1	답	330	330	***	경북 경주시 안강읍
20	"	347-2	답	1,818	1,818	***	경북 포항시 남구
21	"	347-3	답	330	330	*** 외 1명	부산시 남구

## 바. 주요특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22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347-4	답	330	330	***	부산시 수영구
23	"	347-5	답	389	389	***	경남 창원시 의창구
24	"	347-6	답	360	360	***	부산시 기장군
25	"	378	답	2,129	2,129	*(***)	-
26	"	379	답	3,263	3,263	"	"
27	"	904-7	구	11,917	1,325	*(***)	-
28	"	산87	임	3,259	3,259	***	경북 포항시 남구
29	"	산87-2	임	661	661	***	대구시 북구
30	"	산87-3	임	13,108	13,108	*** 외 2명	인천시 강화군
31	"	산87-5	임	1,223	1,223	*** 외 3명	경북 경주시
32	"	산87-8	임	992	992	*** 외 2명	경북 경주시
33	"	산88	임	11,901	11,901	***	-
34	"	산90	임	4,364	4,364	***	서울시 강남구
35	"	산91	임	10,711	10,711	***	"
36	"	산93	임	2,777	2,777	*(***)	-
37	"	산94	임	5,554	5,554	***	경북 포항시 남구
38	"	산95	임	8,532	8,532	*(***)	-
39	"	산95-1	임	8,923	8,923	"	"
40	"	산96	임	1,388	1,388	*** 외 1명	-
41	"	산96-1	임	1,388	1,388	*** 외 3명	울산시 북구
42	"	산96-2	임	1,390	1,390	*(***)	-
43	"	산96-3	임	899	899	"	"
44	"	산96-4	임	489	489	"	"
45	"	산97	임	2,545	2,545	*** 외 5명	울산시 북구
46	"	산97-1	임	1,100	1,100	*** 외 1명	울산시 울주군
47	"	산97-2	임	2,545	2,545	*** 외 6명	울산시 북구
48	"	산97-3	임	2,545	2,545	*** 외 5명	경남 양산시
49	"	산97-4	임	2,545	2,545	*** 외 5명	울산시 북구
50	"	산97-5	임	2,604	2,604	*** 외 6명	울산시 남구
51	"	산98	임	9,917	9,917	*(***)	-
52	"	산99	임	1,330	1,330	*** 외 5명	경남 창원시 진해구
53	"	산99-1	임	13,876	6,832	*** 외 2명	-
54	"	산99-2	임	3,306	3,306	*** 외 18명	부산시 동구
55	"	산99-3	임	3,306	3,306	*** 외 9명	부산시 연제구
56	"	산106	임	14,181	14,181	***** **	대구시 달성군
57	"	산107	임	5,157	5,157	***	경북 포항시 남구
58	"	산108	임	1,650	1,650	***	경북 경주시
59	"	산108-1	임	315	315	***	경북 포항시 남구
60	"	산108-2	임	812	812	*(***)	-
61	"	산109-1	임	3,669	3,669	***	경북 포항시 남구
62	"	산109-2	임	5,995	5,995	*** 외 1명	경북 포항시 남구
63	"	산110-1	임	1,871	1,871	***	경북 포항시 남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sup>2</sup> )	지정면적 (m <sup>2</sup> )	소유자	
						성명	주소
64	"	산110-2	임	2,279	2,279	***	경북 포항시 남구
65	"	산111	임	7,934	7,934	"	"
66	"	산112-1	임	517	517	***	경북 포항시 남구
67	"	산113-1	임	1,827	1,827	***	경북 포항시 남구
68	"	산113-2	임	7,279	7,279	***	경북 구미시
69	"	산114	임	7,651	7,651	***	경북 포항시 남구
70	"	산114-1	임	360	360	***	경북 포항시 남구
71	"	산115-1	임	1,938	1,938	"	"
72	"	산115-2	임	293	293	*** 외 2명	-
73	"	산116-1	임	2,325	2,325	***	경북 포항시 남구
74	"	산116-3	임	313	313	"	"
75	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556	답	555	555	***	-
76	"	산110-1	임	3,878	3,878	***	경북 포항시 남구
77	"	산110-2	임	4,029	4,029	*****	경북 포항시 남구
78	"	산112	임	15,019	13,819	"	"
79	"	산112-1	임	2,125	2,125	****	경북 안동시
80	"	산112-2	임	18,925	18,925	*****	경북 포항시 남구
81	"	산112-3	임	799	799	***	경북 포항시 남구
82	"	산112-4	임	25	25	****	경북 안동시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우리나라 남한의 신생대층은 동해안을 따라 분포하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양남분지, 포항분지, 영해분지, 북평분지가 존재하며, 이 분지들의 하부는

- 육성층이 발달한 반면 상부는 해성층으로 구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음.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해성층으로 이루어진 연일층군이 분포한 포항분지이며 다양한 해양생물 화석들이 발견되어 중점적으로 연구되어 왔음.
- 반면 양남분지는 가장 하부인 범곡리층군부터 상부로 장기층군, 연일층군까지 분포하며, 범곡리층군과 장기층군은 육성층으로 구성됨. 이 육성층으로부터는 포항분지의 해성층처럼 화석이 많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시대 결정이 쉽지 않음. 하지만 하부 육성층의 연대를 알아내는 것은 동해의 열림과 관계되어 우리나라 신생대층이 언제부터 쌓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 이런 의미에서 육성층의 대표적인 화석층이 금광동층이며 과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학자인 다테이와(Tateiwa, 1924)에 의해 장기층군의 금광동층에서는 다양한 식물화석을 보고하였음. 이러한 식물화석들은 일본과의 식물상과 비교 연구를 통해 장기층군의 시대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음.
  - 현재 금광동층은 금광리 일원에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전기 마이오세 퇴적층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수의 층군에서 산출되는 풍부한 식물잎 화석이 특징적임. 산출되는 식물화석은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 너도밤나무(*Fagus*), 참나무(*Quercus*), 단풍나무(*Acer*), 자작나무(*Betula*), 느티나무(*Zelkova*) 속 등이며 곤충과 민물어류 화석이 함께 발견됨. 전반적인 퇴적상과 식물화석의 상태는 작은 호수로 유입된 식물잎들이 부유성 퇴적물과 천천히 퇴적되어 층리면에 평행하게 놓여 보존된 것으로 해석됨.

## 2. 주요연혁 및 입지환경 검토

### 가. 연혁 및 유래

#### 1) 기존 화석 연구

- 장기분지의 제3기층이 여러 지층에서 식물화석의 산출이 Tateiwa(1924)에 의해 처음 보고된 후, 최근까지 많은 화석 연구가 수행되었음(예: Huzioka, 1972; 김봉균 외, 1975; 김종현과 최성일, 2008; 정은경 외, 2010; Pail et al., 2012; 전영석, 2018).
- 김봉균 외(1975)는 금광동층에서 많은 종류의 식물화석을 발견하고, *Metasequoia occidentalis*의 목엽화석이 다수 발견되었음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하였음. 대표적으로 금광동층에서 17속 15종의 식물화석을 기재하였음. 또한, 금광동층과 하부함탄층의 화분포자 화석 연구를 통해, 일본 동북지방의 阿仁습형 식물군과 유사하고 九州의 佐世保층군과 그 구성원이 비슷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음은 위도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

- 되며, 따라서 그 지질시대는 하부 마이오세에 속한다고 보고하였음.
- 김경식 외(2008)는 장기층군이 분포하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와 오천읍 세계리 일대에서 총 15개의 화석목재를 채집하여 이들의 목재해부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소나무과 전나무속, 자작나무과 서어나무속, 느릅나무과 느릅나무속, 장미과 벗나무속, 단풍나무과 단풍나무속, 멸구슬나무과 참죽나무속, 벽오동과 와타리아속 등 총 7속의 화석목재를 동정, 기재하였음. 이를 통해 한국에서 보고되지 않은 전나무속, 벗나무속, 참죽나무속 등의 미기록 화석목재를 발견하였음.
  - 정은경 외(2010)는 금광동층에서 *Ulmus carpinooides*, *U. longifolia*, *U. shiragica*, *Z. ungeri* 등 4분류군의 느릅나무과 화석 잎을 발견하였으며, 이 중 *U. longifolia*를 한반도에서 처음 기재하였음. 이들 느릅나무과 화석 잎의 현생 근연종의 생육환경에 근거하여, 금광동층에서 산출된 느릅나무과 화석 잎의 고식물상 특성은 금광동층 퇴적 당시 한반도 동남부 지역이 한냉한 온대지방의 기후적 특성을 가졌음을 시사해주나, 현생 근연종(*U. lanceaefolia*)이 온난한 기후의 생육조건을 가지는 *U. longifolia* 분류군 산출의 고식생적 해석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상세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였음.
  - 가장 최근 전영석(2018)은 금광동층의 식물화석 연구를 통해 23과 34속 39종을 기재하였으며, 그 중 8과 11속 11종을 처음 기재하고 보고하였음. 이에 따라 장기층군의 식물군은 총 29과 44속 59종에 이른다고 하였으며, 식물화석의 구성은 나무(tree)가 45종(76.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작은 나무(small tree)와 관목(shrub) 7종(11.9%), 초본식물(herb) 6종(10.2%)이며, 덩굴식물(vine)은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하였음. 장기식물군은 온대식물이 주를 이루며, 중기 마이오세의 연일식물군보다 냉대~냉온대 식물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어 연일식물군보다 더 한랭한 기후였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일본의 마이오세 식물군과 비교한 결과, 37종(62.7%)의 공통종이 존재하는 전기 마이오세의 Aniani-type 식물군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 2) 발굴조사 결과

### <발굴조사 상세 내용>

- 조사명 : 포항 남구 동해면 금광리 산98번지 일원 궤도차량 진입도로 개설공사부지 내 화석문화재 발굴조사
- 조사지역 :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산98번지 일원
- 조사년도 : 2020년
- 조사면적 : 16,973㎡
  - 정밀발굴 : 1,463㎡(실조사면적 : 1,463㎡×6층=8,778㎡)
  - 수습+입회 : 15,510㎡

- 조사지역 주변의 지질은 제3기 마이오세 장기층군의 퇴적암류 및 화산암류와 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며, 장기층군은 하부로부터 정천리역암, 늪대리응회암, 금광동층, 신정리층, 그리고 위 지층들을 관입 및 분출하는 현무암 및 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음. 금광동층은 역암, 사암이 우세한 하부 구간과 거의 세일로 구성된 상부 구간으로 구분됨.
- 조사지역에 발달한 지층들의 북동 내지 동북동 주향의 층리와 하부지층에서 상부지층으로의 방향인 북서방향으로 갈수록 지층의 경사가 대체로 고각에서 저각으로 변화하는 양상, 그리고 분지내 지층들에 발달한 북동 주향의 소규모 정단층의 발달은 분지의 확장방향이 북서-남동 방향이며 퇴적동시성의 지층경동이 함께 발생한 것임을 지시함. 즉 본 지역은 북서-남동 방향의 인장력 하에서 생성된 것으로 이 인장력은 연구지역 서쪽 부에서 북북동 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오천단층과 동해확장에 따른 우수향 주향이동성 단층운동으로 인하여 형성된 당겨열림분지(pull-apart basin)로 해석할 수 있음.
- 발굴조사구간의 식물 잎 화석을 배태하고 있는 금광동층은 약 15m 두께에 이르는 세일층으로 구성되며, 표토층을 제외하고 7개의 세부층(상부로부터 I층~VII층)으로 구분됨. 박층의 응회질 사암으로 구성된 II층, 심하게 풍화되어 토양화된 IV층과 VI층을 제외한 I층, III층, V층 및 VII층의 여러 층준에서 식물 잎 화석이 산출되었음. 대체로 III층과 V층에서의 화석 산출량이 높게 나타남. 식물 잎 화석은 거의 대부분 잎의 모양이 흔적으로 남는 인상화석보다는 잎이 이질 퇴적물 사이에 매우 얇은 두께로 압착된 상태의 압착화석으로서 산출됨. 식물화석은 대부분 산화된 상태로 산출되나 일부 탄화된 상태의 것도 일부 관찰됨.
- 금광동 출토 식물화석에 대한 근연 현생종을 기준을 생육지 환경을 5개로 세분(수중, 수변 및 습지, 산지 사면, 산지 계곡, 고산 및 아고산) 할 수

있음.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는 종은 복수로 계산하여 금광동 출토 화석 근연종의 생육지를 분석한 결과, 수생식물은 4종류, 습지 및 수변식물의 종류는 27종류, 일반 산지 사면에 생육하는 종류는 88종류, 산지의 계곡부에 생육하는 종류는 54종류, 아고산 혹은 고산지역 분포하는 종류는 13종류이었음. 따라서 본 지역에서 출토된 화석종은 대부분 산지에 분포하거나 습지가 아닌 평지에 생육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수분의 측면에서 볼 때 수생, 습지, 산지의 계곡에 분포하는 종을 합하면 85종류로 복수로 계산한 186종류 중 46%가 수분이 많은 지역에 생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금광동 출토 화석 근연 현생종의 생활형을 분석한 결과, 총 113종류 중 초본식물은 6종으로 5.3%, 목본식물은 107종류로 94.7%이었으며. 목본식물에서도 높이가 14.5m 이상인 식물종의 비율이 55.8%로 교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그리고 목본식물의 앞에서 온난한 기후를 지시하는 낙엽성이 88.8%를 차지함. 금광동 출토 화석 근연 현생종의 분포 지역의 기후대를 구분한 결과, 상대적으로 더운 지역에 분포하는 종류의 비율이 55%로 추운 지역의 45%보다 높았고, 아열대 및 한대에 생육하고 있는 종은 8%에 불과하였음. 전반적으로 다소 추운 기후와 다소 따뜻한 기후들이 공존했던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금광동 식물화석들의 생존시기 기후는 전반적으로 온난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추운 기후 또한 공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늪대리응회암과 금광동층 하부에서 산출되는 목재화석은 일부 규화목으로 산출되나 대부분 탄화목으로 잔존하고 있으며. 대체로 규화목의 산상을 가지는 화석의 개체가 크고 목재의 형태나 조직의 보존 상태가 양호함. 탄화목재는 일부 암석화작용을 거쳐 조직적으로 치밀, 견고한 특징을 보이기도 하나 대부분 연약한 목질 상태를 유지함. 전체 조사구간 중 목재 화석 15점을 수습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1지점부터 11지점까지는 전체적으로 검게 탄화되어 있으며, 12지점에서 15지점은 밝은색으로 탄화되었음.

#### 나. 입지환경

- 포항시 일원은 한반도 지체구조에 있어서 동남부 해안을 따라 발달하는 신생대 제3기분지의 중앙부에 해당됨. 한반도의 신생대 제3기층은 주로 동해안을 따라 소규모로 산재하고 있으며, 북으로부터 두만강 하류지역, 길주-명천지역, 동해만지역, 북평분지, 영해분지, 포항분지, 장기분지, 어일분지, 하서분지, 정자분지 등 다수의 분포지가 확인되었음. 한반도 남부

의 서해안에는 이 지층이 분포하지 않으며 북부에만 신의주, 안주 및 사리원 지역에 매우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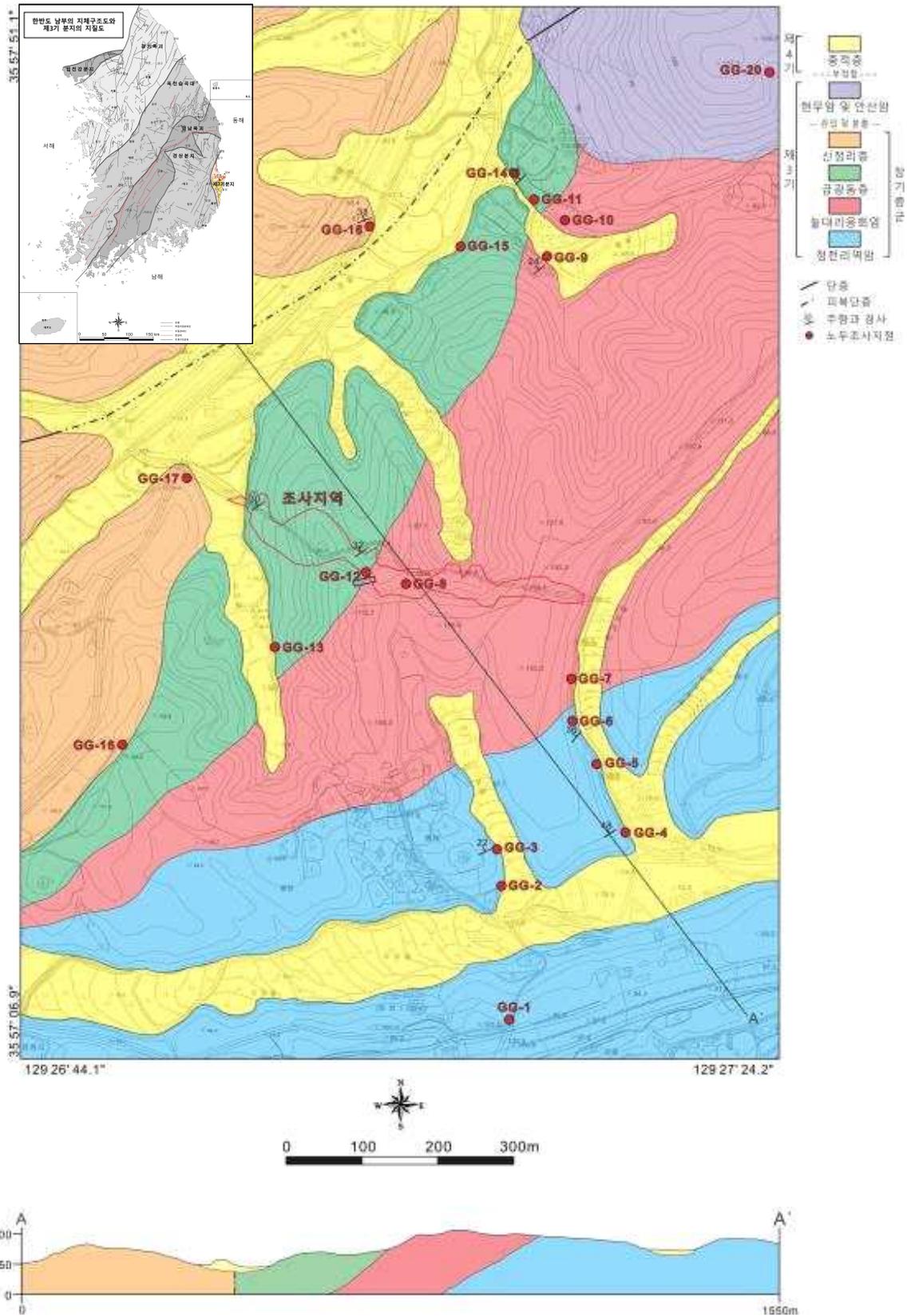


그림1. 지질도

- 금광동층은 북동쪽에서 남남서 방향으로 양호한 연장을 보이며 산출되며 (그림 1) 남쪽 말단에 이르면서 지층의 규모는 크게 감소함. 층리의 자세는 북동 방향의 주향과 북서 방향의 경사로서 하부 지층들과 유사하고, 대체로 지층 상부로 가면서 경사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금광동층은 암상에 있어서 응회질 역암과 응회질 사암 등의 조립질 퇴적암으로 구성된 하부 구간과 거의 세일 또는 응회질 세일로 구성된 상부 구간으로 뚜렷하게 구분됨.
- 금광동층의 하부는 주로 역암과 사암으로 구성되며 부분적으로 탄질세일이 협재되며(그림 1.1A), 전체적으로 역암이 우세한 하위 구간과 사암이 우세한 상위 구간으로 구분됨(그림 1.1B & C). 역암은 역-지지되어 있어 아각상~아원상의 잔자갈로 구성되며 대체로 괴상이나 희미한 평행층리가 발달하기도 함(그림 1.1D). 중립질~조립질 사암, 역질 사암과 교호하며 탄질 세일을 협재하기도 함(그림 1.1E). 탄질 세일이 발달하는 구간에서는 약 2m에 이르는 수직 변위를 보이는 정단층이 발달하기도 함(그림 1.1E). 상위 구간은 주로 중립질~조립질 사암과 역질 사암이 발달하며, 평행층리의 발달이 두드러지고 부분적으로 평상사층리도 관찰됨(그림 1.1F). 부분적으로 세립질~중립질 사암에는 박층의 탄질세일이 다수 협재되기도 함(그림 1.1G). 금광동층의 하부와 주로 세일로 구성된 금광동층의 상부는 선명한 접촉 관계를 발달시킴(그림 1.1H)
- 금광동층 하부의 사암층에는 소편상의 탄화식물편을 포함하거나 일부 층준을 따라 집중되기도 함(그림 1.2A & B). 이러한 탄질물을 외에 일부 층준에서 탄화목재가 소량 발견됨(그림 1.2C-H). 대체로 탄화목재의 보존상태는 불량하고 형태적으로 심하게 파손되어 있으나 일부 탄화목재는 내부의 목재조직이 뚜렷하게 잔존하기도 함(그림 1.2H).
- 금광동층 상부는 거의 평행엽층리와 분열성이 뚜렷한 세일층으로 구성됨(그림 1.3A-D). 탁월한 분열성의 발달로 인해 세일층은 매우 연약하며 심하게 파쇄되어 있음. 상부의 세일층에는 식물 잎 화석이 산출됨. 식물화석은 산화된 상태의 압착(compression) 화석으로 산출되며(그림 1.3E & F), 일부 탄화된 상태의 압착 화석이 관찰되기도 함(그림 1.3G &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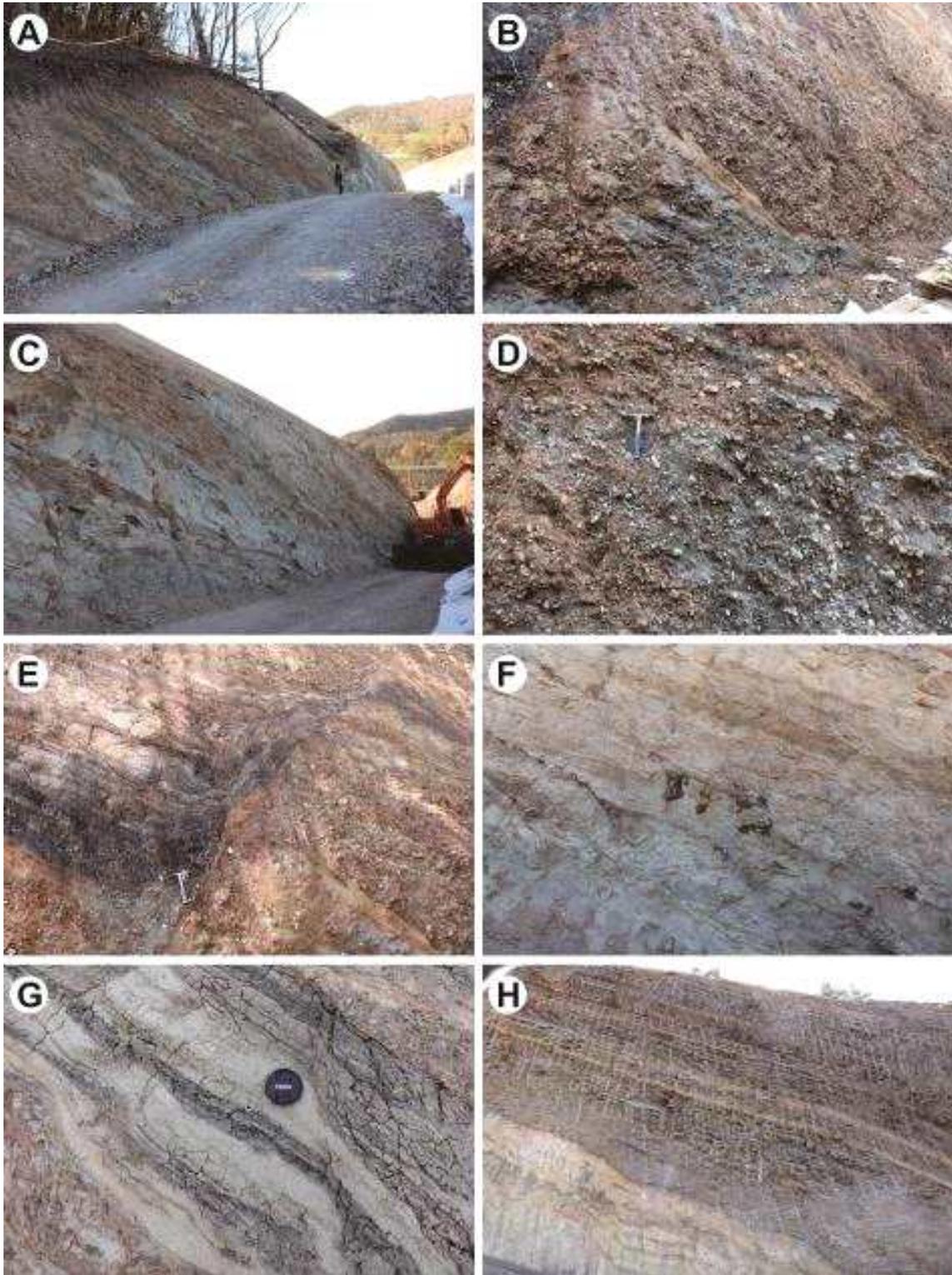


그림 1.1 금광동층 하부의 산상. A: 금광동층 하부의 전경. B: 금광동층 하부의 하위를 접하는 역암층. C: 금광동층 하부의 상위를 접하는 사암층. D: 역-지지되어 있고 괴상이거나 희미한 평행층리가 발달하는 역암층. E: 하위 역암층에 협재되는 탄질 셰일과 정단층. F: 평행층리, 정상사층리가 발달하는 사암층. G: 부분적으로 탄질 셰일을 협재하는 사암층. H: 금광동층 하부의 사암층과 금광동층 상부 셰일층의 경계. GG-12. 지질조사용 해머 길이 28cm, 카메라 렌즈 덮개 직경 6cm, 동전 직경 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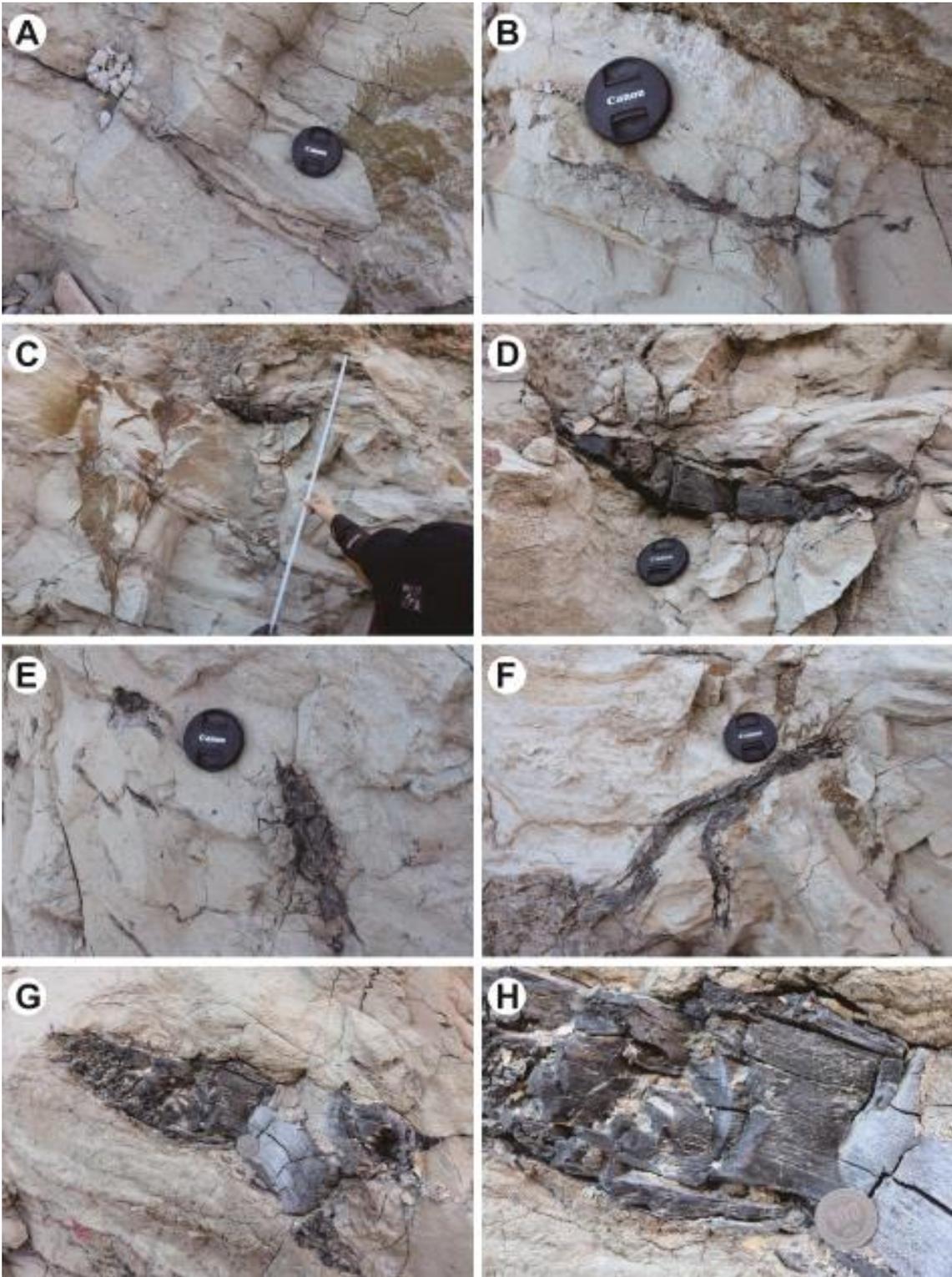


그림 1.2. 금광동층 하부에서 산출되는 목재화석의 산상. GG-12. 카메라 렌즈 덮개 직경 6cm, 동전 직경 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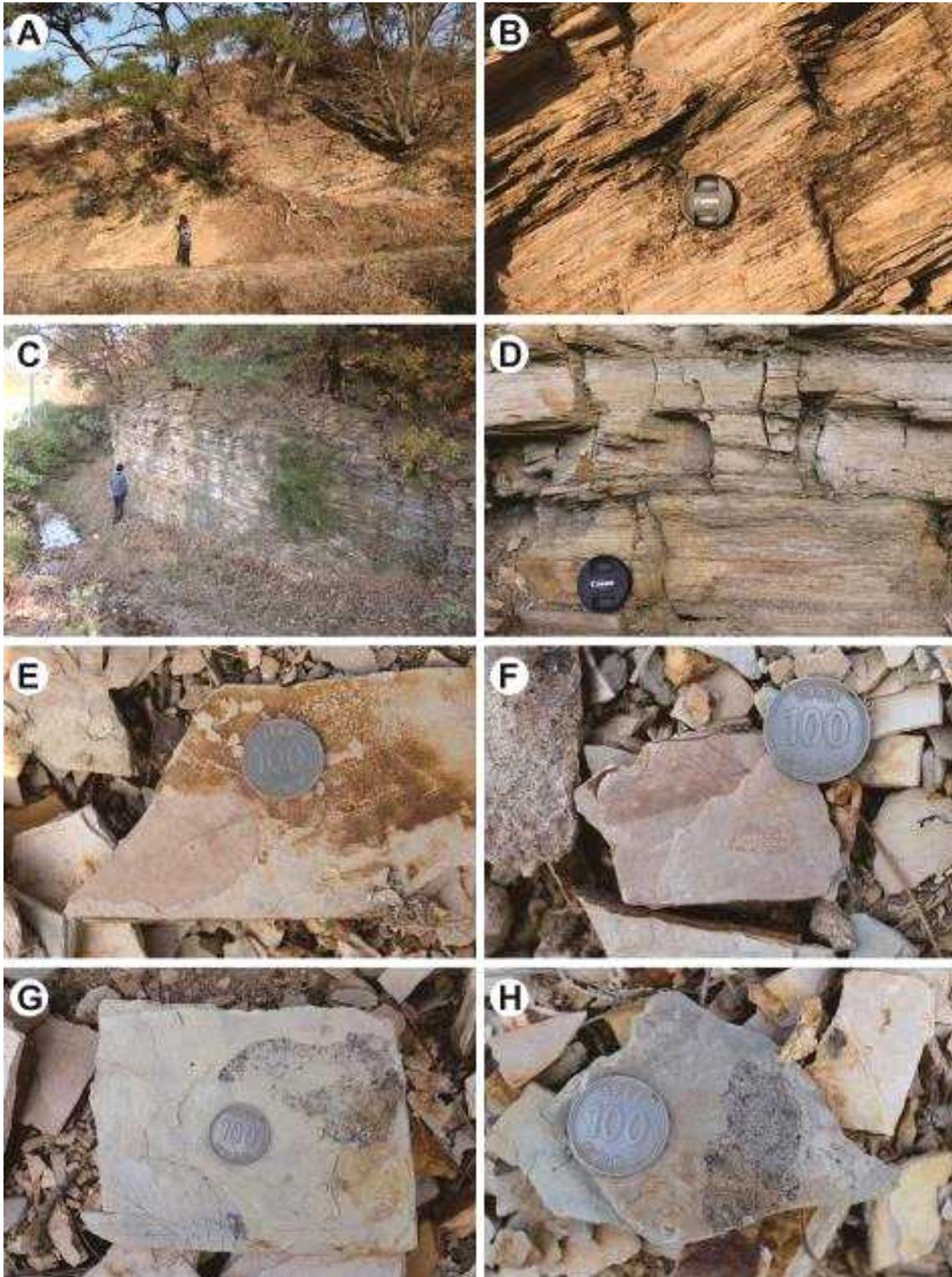


그림 1.3. 금광동층 상부의 산상. A-D: 조밀한 평행엽층리와 분열성이 탁월하게 발달하는 세일층. E-F: 산화된 압착 화석으로 산출되는 활엽수의 잎 화석. G & H: 탄화된 압착 화석로 산출되는 활엽수의 잎 화석. A, B, E-H: GG-14, C & D: GG-15. 카메라 렌즈 덮개 직경 6cm, 동전 직경 2.3cm.

### 3. 보존관리사항 검토

#### 가. 보존정비사항

- 금광리층은 암반 노출 지역이 적고, 노두의 대부분도 풍화에 매우 취약하며, 특히 세일의 층리면을 따라 지하수 등의 침투로 인해 노출된 거의 모든 암석이 훼손되어 있음. 따라서 지정 구역이 확정되면 시급한 보존 조치가 요구됨.
- 일반도로와 논밭 소로를 따라 금광동층 노두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금광리 일대의 추가적인 층서퇴적학적 조사를 통해 기존 연구로 알려진 금광동층 분포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사유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존 가능지역(지정범위)을 설정함.
- 단단히 굳지 않은 신생대 퇴적암의 특성상, 식물화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금광동층 노출 사면에 대한 기록, 정비 및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층내에 존재하는 식물화석을 일반인들이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식물화석과 퇴적층에 대한 안내문이 필요함.

#### 나. 활용 착안사항

- 금광동층 노두에서는 식물화석이 쉽게 보이지 않음. 따라서, 전시관과 연계한 상시 발굴지 운영(관련 전문가) 등으로 지속적인 표본 확보, 연구와 교육·체험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4. 지정가치

#### 가. 가치평가

##### 1) 학술적 가치

- 동해의 형성 및 확장과 관련된 신생대 퇴적층은 전기 마이오세 육성 퇴적층 및 화산암(효동리안산암, 범곡리층군, 장기층군)과 중기 마이오세 해성퇴적층(연일층군)으로 구분되며, 금광동층은 전기 육성 퇴적층임. 금광동층은 호수 퇴적층으로 늪대리응회암 상부에 정합적으로 퇴적되어 있으며, 금광동층 상부는 응회암 및 응회질 퇴적암으로 구성된 신정리층이 분포하고 있음. 따라서 금광동층은 화산 휴지기 동안 호수에서 퇴적된 퇴적암임.
- 포항지역의 신생대 퇴적층은 다테이와(Tateiwa, 1924)가 지질도폭조사를 수행한 이후 기본적인 층서분류와 화석생물상이 알려졌으며, 특히 장기층군 금광동층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식물화석이 산출되어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분류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음. 특히, Huzioka(1972)는 금광동층 식물화석의 퇴적시기와 식생구성 등을 종합하여, 이들이 일본의 전기 마이오세 아니아이형(Aniai type) 식물상과 대비되며, 상대적으로 한랭한

기후가 우세한 환경이었음을 유추하였음.

- 장기층군은 동해 열림 현상에 따른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으로 형성된 소규모 육성퇴적분지로 화산성 응회질퇴적물과 지구조적 변형이 관찰되고 있어 해성층인 포항분지(두호층 포함)와는 구분됨.
- 담갈색~황갈색, 회색을 띠는 금광동층은 주로 엽층리가 잘 발달된 세일로 구성되며, 다수의 층군에서 산출되는 풍부한 식물잎 화석이 특징적임.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 너도밤나무(*Fagus*), 참나무(*Quercus*), 단풍나무(*Acer*), 자작나무(*Betula*), 느티나무(*Zelkova*) 속이 우점하며, 드물게 곤충과 어류화석이 함께 산출됨. 전반적인 퇴적상과 식물화석의 보존 상태로 볼 때, 분지 내 화산활동이 비교적 약화된 시기에 호수로 유입된 식물잎들이 부유성 퇴적물과 함께 느리게 가라앉아 안정적으로 퇴적되어 층리면에 평행하게 압착(compression)된 것으로 해석됨.
- 금광동층은 신생대 한반도의 기후, 지구조운동 및 퇴적환경과 관련된 학술적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다른 신생대 퇴적층에서 쉽게 관찰할 수 없는 다양한 식물화석이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나타나는 중요성을 지님. 아울러 일제강점기 이래로 진행되어온 고생물학 연구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음.

다. 지정기준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천연기념물)에서 지질·지형 지정기준에서 화석의 가치가 뛰어난 것

<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종류 : 천연기념물)</p> <p>3. 지질·지형</p> <p>가. 나목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p> <p>1) 학술적 가치</p> <p>마) 발견되는 화석의 가치가 뛰어나거나 종류가 다양한 화석 산지인 것</p>
---

라. 종합의견

<\*\*\* 문화재위원>

- 금광동층은 남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신생대 식물화석 산지이며 그 역사적 가치가 높고 다양한 식물잎 화석들이 현재에도 계속 발견되고 있으며 동해의 열림과 관계된 신생대 제3기 분지의 하부 육성층 중 대표적인 화석산지임. 이러한 식물화석들은 전기 마이오세에 한반도의 식생과 기후, 고환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갖지만 산지의 규모가 매우 작아 지금 보존하지 않으면 곧 없어질 수도 있어, 시급히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함.

### <\*\*\* 문화재위원>

- 금광동층은 국내 유일의 신생대 육상식물 화석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으로, 식물화석의 종 다양성과 화석 농집도가 매우 우수한 국내 유일의 지역임. 또한 화석을 통해 신생대 전기 마이오세의 식물상과 고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학술적·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임. 따라서 금광동층에 대한 분포 조사를 실시한 후 천연기념물로 지정함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 됨.

### <\*\*\* \*\*\*\*\* 교수>

- 금광동층은 일제강점기 이래로 우리나라 식물화석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신생대 한반도의 기후, 지구조운동 및 퇴적작용에 대한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고생물학 연구사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임. 하지만 암석화 과정을 충분히 겪지 않은 금광동층의 특성상 강우나 사태 등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서 지정하여 보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아가야 함.

### <\*\*\* 학예연구사>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는 국내에서 유일한 신생대 전기 마이오세 식물상의 보고로서 당시 식생과 고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학술적·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임. 제한적인 분포범위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보존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추가적인 층서퇴적학적 연구를 통해 지정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으며, 화석산지 활용방안(태백장성 전기고생대 화석산지 등 층 내 화석 산출지 포함)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함.

## 5. 관련사진



전경사진



화석산지 안내판



목재 화석 및 식물 화석

## 8.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의 자연유산 명승 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
- 추진경과
  - '23. 2.28.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명승 잠재자원 신청 / 경남도청
  - '23. 8.17.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명승 지정 관계전문가 지정조사
- \* 현지조사자 : \*\*·\*\*\* 문화재위원, 김규섭 문화재전문위원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 (한문) 昌寧 觀龍山 觀龍寺 一圓
    - (영문) Gwallyongsa Temple and Surroundings in Gwallyongsan Mountain, Changnyeong
  - 지정종별 : 명승(복합명승)
  - 소재지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320-2번지 일원
  - 문화재지정구역 : 17필지, 761,609㎡
  - 지정사유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은 신라시대 고찰로 알려진 관룡사와 그 배후에 병풍처럼 둘러진 기암괴석의 산봉우리 등 산세가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반야의 세계로 향하는 용이 이끄는 배라는 뜻의 '반야용선'을 재현한 듯한 용선대와 용선대 석조여래좌상이 보여주는 독특한 경관요소, 관룡사 내 보물 등 많은 불교 문화유산이 자연과 서로 조화되어 인문학적 가치를 더해줌.
  - 관리단체(안) : 경상남도 창녕군

## 라. 검토의견 (\*\*\*\*\*)

- 관계 전문가 지정조사 결과 명승 지정기준 중 경관적 가치(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간 어울림이 뛰어나 총체적인 미를 형성하는 곳)를 충족한 대상지로 판단됨.
- 자연유산으로 지정·보존해야 할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다만, 사찰의 역사성에 대한 고증과 명승적 가치를 포괄하는 지정구역 범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함.

## 마. 현지조사 의견

###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현지조사일 2023. 8. 17.)

<\*\* 문화재위원 / 2023. 8. 17.>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의 명승 지정 종합적인 평가는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모두 ‘우수’한 수준이며, 명승 지정기준으로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어울림이 뛰어나 총체적 미를 형성하고 있는 곳」을 제시함.
- 관룡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인 통도사의 말사로, 창건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신라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보 유적을 보유한 고찰로, 『관룡사 사적기, 1733년』, 『약사전상량문』 등의 기록으로 보아 신라 시대 지어진 사찰로 추정되는 고찰임.
- 아홉 마리의 용이 등천하는 것을 바라본 것에 따라 사찰명을 ‘관룡사(觀龍寺)’, 화왕산 능선과 이어지는 구룡산(九龍山)과 관룡산(觀龍山)의 명칭도 함께 유래된 것으로 전해짐.
- 옥천계곡 옆 석장승과 일주문 역할을 한 석문을 지나 사찰경내에 들어서면 수림 풍광과 병풍바위 등 기암괴석과 어우러지는 사찰경관이 우수하며 반야용선(般若龍船)의 의미를 품은 용선대에서 조망하는 경관이 뛰어남.
- 관룡사 사찰경관과 용선대만의 특별한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편이나 기존 불교 유적의 연구 조사에 더해 자연유산 명승이 지닌 가치를 연계하여 대상지의 진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됨.

<\*\*\* 문화재위원 / 2023. 8. 17.>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의 명승 지정 종합적인 평가는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모두 ‘양호’한 수준이며, 명승 지정기준으로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어울림이 뛰어나 총체적 미를 형성하고 있는 곳」을 제시함.
- 신라시대에 창건된 오래된 고찰(관룡사사적기와 창녕군지 참조)로 경내에는

다양한 보물이 보존되어 있음(약사전, 대웅전,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석조여래좌상,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 대웅전 관음보살벽화의 보물)

- 사찰의 규모가 소박하나, 정갈하고 건물의 배치가 미학적이다. 사찰을 품고 있는 화왕산의 화강암이 빚어낸 능선과 절벽 지형 또한 경관이 우수함. 특히 용선대에서 바라본 사찰과 전체적 지형은 경관적 가치가 있음
- 다만, 사료의 부족과, 이로 인한 사찰 건축물 원형의 형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사찰을 제외한 화왕산의 자연 경관이 명승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되어야 함

<\*\*\* 문화재 전문위원 / 2023. 8. 17.>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의 명승 지정 종합적인 평가는 역사적·학술적 가치 ‘우수’, 경관적 가치는 ‘매우우수’한 수준이며 명승 지정기준으로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어울림이 뛰어나 총체적 미를 형성하고 있는 곳」을 제시함.
- 관룡사는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의 말사로 관룡사 구성에 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관룡사사적기(觀龍寺事蹟記)」(이하 사적기)와 『창녕군지(昌寧郡誌)』에 신라시대 때 조성된 것을 기록하고 있고, 경내의 약사전, 대웅전,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석조여래좌상,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 대웅전 관음보살벽화의 보물이 지정되어 있음
- 조선 이후부터 이 지역의 자연 풍광은 경관적으로 수려하며, 기암괴석과 용선대로 이어지는 역사문화 권역은 우수한 경관자원 상태임. 다만,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거쳐 화마에 유실된 이후 복원되는 과정에서 사료 및 문헌 자료의 고증이 불분명하게 이루어짐으로 원형 등의 근거가 모호한 상태임.
- 명승으로 지정할 경우 주차장 및 현재 조성된 일주문을 시점으로 조성시에는 주변 상업시설과의 마찰과 진입도로의 1차선 협소 등의 문제들이 사전 협의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 가결 2명, 조건부 가결 11명

# 자연유산(명승) 지정조사 보고서(요약)

- 조사일자 : 2023. 8. 17.
- 조사자 :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조사대상 : 경상남도 창원군 소재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 조사내용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명승 지정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 1. 문화재 개요

가. 지정종별 : 명승(자연명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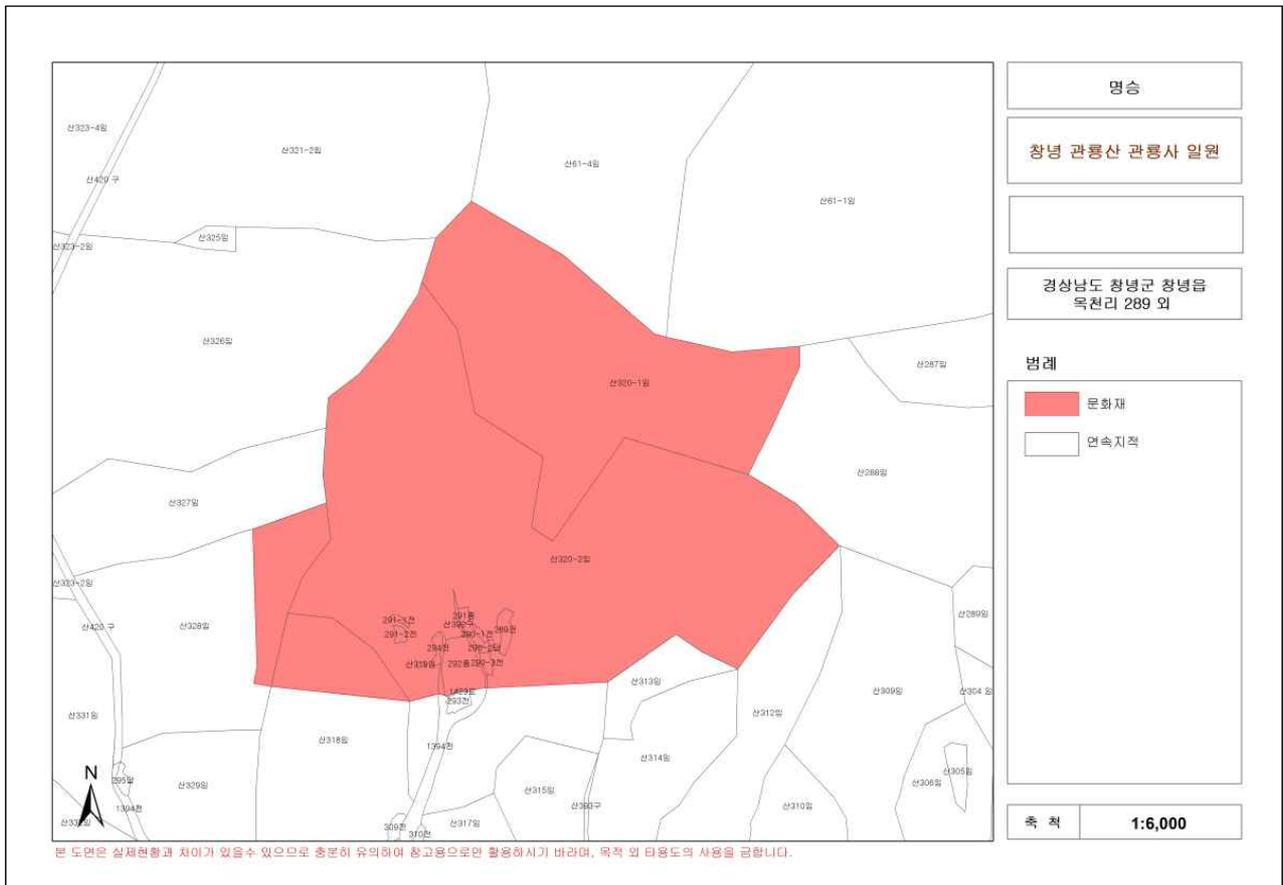
나. 지정명칭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 (한문) 昌寧 觀龍山 觀龍寺 一圓

- (영문) Gwallyongsa Temple and Surroundings in Gwallyongsan Mountain, Changnyeong

다.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옥천리 산320-2번지 일원

라. 지정대상 및 범위 : 관룡사 및 병풍바위, 용선대를 아우르는 관룡산 일원 (761,609m<sup>2</sup>)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1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옥천리	289전	전	2,136	2,013	관룡사
2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옥천리	290-1전	전	411	411	관룡사
3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옥천리	290-2답	답	331	331	관룡사
4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옥천리	290-3전	전	894	894	관룡사
5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옥천리	290-4답	답	209	209	관룡사
6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옥천리	291중	종교	646	646	관룡사
7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옥천리	291-1전	전	376	376	관룡사
8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옥천리	291-2전	전	740	740	관룡사
9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옥천리	292중	종교	7,807	7,807	관룡사
10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옥천리	294전	전	920	920	관룡사
11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옥천리	1394천	하천	274,020	1,583	관룡사
12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옥천리	산318임	임야	158,397	30,277	하**
13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옥천리	산319임	임야	155	155	-
14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옥천리	산320-1임	임야	231,176	231,176	관룡사
15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옥천리	산320-2임	임야	512,852	453,643	관룡사
16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옥천리	산328임	임야	142,534	29,980	남지학원
17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읍 옥천리	산392구	구거	447	447	극락암

#### 마. 주요특징

- 신라시대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고찰 관룡사는 대웅전, 약사전,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관음보살벽화 등 수많은 불교 문화유산 보유하고 있어 그 자체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으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유실·훼손됨에 따라 사찰의 가람배치 등 원형에 대한 고증은 필요함.
- 오래된 역사를 가진 산지 승원으로써 관룡사와 주변의 병풍바위, 용선대 등이 조화되어 빼어난 경관을 보여주며, 용선대 석조여래좌상이 위치한 용선대에서 조망하는 사찰과 산지지형 역시 경관적 가치가 있음

## 2. 주요연혁 및 입지환경 검토

### 가. 주요연혁

- 관룡사의 창건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신라 시대 지어진 사찰로 추정됨. 『관룡사 사적기(觀龍寺 事蹟記), 1733년』와 『창녕 관룡사 약사전상량문』 등에 신라 시대 창건과 이후 중수 관련 기록이 전해지며, 통일신라기에 조성된 관룡사 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보물)이 남아 있어 관룡사의 신라 창건설을 뒷받침해줌.
- 화왕산 자락 구룡산(九龍山)과 관룡산(觀龍山)의 명칭도 이에 유래되었으며 『해동지도, 18세기 중반』와 『영남읍지, 1871년』 등에 세 곳의 용지와 화왕산·구룡산과 관룡사와 부속 암자인 청룡암·황룡암 등이 묘사되어 있음
- 관룡사는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사세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임진왜란 당시 약사전을 남겨두고 대부분 소실되었음. 『창녕 관룡사 약사전상량문』에 1507년 약사전이 재창되었고 1609년수리 되었다는 것과 『대웅전상량문 1749』에는 1401년(태종 1) 대웅전을 창건하고 임진왜란에 소실된 것을 1671(광해군 9)년 개창하고 1749년에 삼중창 한 기록 전해짐. 이후, 조선시대 다섯 차례의 중창과 중수 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나. 입지환경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은 창녕군 화왕산군립공원(1984.1.11. 지정) 내에 위치하고, 화왕산 계곡의 옥수가 흘러 옥천(玉泉)이란 지명이 붙은 곳으로 경상남도 중앙 북쪽에 자리해 여러 권역에서 접근성이 좋은 편임.
- 옥천계곡 옆 관룡사로 가는 길에는 한 쌍의 돌장승 ‘창녕 관룡사 석장승’이 비보(裨補)의 목적과 사찰의 경계로 자리함. 일주문 역할을 한 불(佛)자가 새겨진 ‘관룡사 돌담 석문(石門)’과 대숲길을 지나 ‘천왕문’에 들어서면 산림 풍광과 어우러지는 병풍바위가 관룡사를 품고 있어 독특한 사찰경관을 이루며 용선대로 이어지는 탐방길 조성이 잘 되어 있음.
- 화왕산은 창녕군의 자연관광지로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 여름에는 억새초원, 가을에는 황금빛 억새물결, 겨울의 설경이 유명함. 백악기에 관입한 흑운모 화강암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화산 분화에 의해 형성된 3개의 못(분화구)이 있다고 구전으로 전해짐.

## 3. 보존정비 및 활용사항 검토

- 화왕산 옥천계부터 관룡사까지의 진입도로가 1차선의 좁은 도로로 버스 이용 및 관람객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별도 접근로 및 경관정비 필요함)
- 관룡사 진입 도로 주변에 식당과 위락시설 등의 집단시설지구가 밀집되어 있어 명승 지정 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찰 권역 시작점으로 알려진 석장승을 포함한 지역을 문화재구역이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찰의 경계 역할을 담당하는 석장승과 관룡사 석문 사이에 최근에 건립된 일주문으로 인한 혼선 등 동선 체계에 및 진입로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용선대 불전함 등의 정비가 필요함.

#### 4. 지정가치 검토

##### 가. 역사적 가치

- 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지형 사찰로 관룡사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시기 등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약사전, 대웅전, 용선대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으며, 지형·지세를 고려할 때 몇몇 건축물은 집합 형식으로 조영된 사례로 일반적인 불사건축의 평면적 전개 방식과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됨. 시대별 특성을 지닌 유적을 보유한 곳으로 역사적 가치를 지님.

##### 나. 학술적 가치

- 관룡사 내 약사전과 약사여래전, 대웅전과 관음보살 벽화, 약사전 삼층석탑 등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한 고찰로 상세한 수리 이력이 전해지고, 관련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바 학술적 가치가 우수함
- 사찰의 변화된 공간구성 수법, 건축물의 개축 및 신축에 대한 고증을 통한 가람배치 형태 변화와 공간 구성의 분석을 통한 건축물의 배치의도 등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우수하며, 조성 당시의 원형 고증을 탐색해 가는 학술적 가치가 있음

##### 다. 경관적 가치

- 소박하고 정갈한 관룡사와 사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화왕산의 흑운모 화강암이 빗어낸 기암괴석의 형태는 경승적인 가치가 없지 않다고 판단됨. 특히 서쪽 정상인 용선대에서 바라본 전체적 지형은 경관이 우수함.
- 4계절 경관이 우수한 화왕산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창녕의 금강산이라 부르는 관룡산(해발 740m) 자락에 위치해 있는 관룡사는 뒤로는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두르고, 가을철 진입로의 붉게 물든 단풍이 늦가을의 선물 같은 풍경을 선사하고, 사찰 뒤편의 병풍바위가 공간의 흐름을 잇게 하여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함.

- 관룡사 용선대는 암반 전체가 배처럼 보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용이 이끄는 배를 타고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끈다' 라는 뜻의 '반야용선(般若龍船)'에서 따온 이름임을 알 수 있음. 반야용선은 중생을 태워 고통이 없는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용선대 석조여래좌상은 바로 반야용선의 선장으로 선수에 위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어 용선대 석조여래좌상이 위치한 용선대와 그 주변 경관으로 인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더욱 인정받을 수 있음.

### 5. 지정등급 및 기준(평가 결과)

평가자	평가결과					지정기준
	매우우수 (I)	우수 (II)	양호 (III)	미흡 (IV)	매우미흡 (V)	
**		○				<b>[바-1]</b>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어울림이 뛰어나 총체적인 미를 형성함
***			○			<b>[바-1]</b>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어울림이 뛰어나 총체적인 미를 형성함
***	○					<b>[바-1]</b>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어울림이 뛰어나 총체적인 미를 형성함

【붙임】 관계전문가 지정조사보고서

(앞쪽)

자연유산(명승)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3. 8.17.			
조사자		성명	**	전공분야	활용, 콘텐츠
		소속	*****	직위(직책)	**
문화재 개요	지정종별	복합명승			
	지정명칭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320-2번지 일원			
	지정대상 및 범위 (면적)	해당 문화재 (지정구역)	창녕 관룡사와 관룡산 일원 761,609㎡		
		보호 구역	-		
	주요특징	국가지정문화재 보물과 유적을 많이 보유한 고찰로, 병풍처럼 두른 기암 괴석과 어우러진 사찰경관이 빼어나며, 반야용선(般若龍船) 의미를 지닌 용선대에서 조망하는 전경과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과 어우러진 일출 경관이 명소임			
주요연혁 및 입지환경 검토	연혁 및 유래	<p>○신라시대 8대 사찰로 알려진 관룡사(觀龍寺)의 창건 시기는 349년과 538년의 이견이 있는 등 명확하지 않으나, 『관룡사 사적기(觀龍寺 事蹟記), 1733년』와 『창녕 관룡사 약사전상량문』 등에 신라 시대 창건과 이후 중수 관련 기록이 전해져 신라 시대 지어진 사찰로 추정됨</p> <p>○관룡산 정상 부근 용선대(龍船臺)는 반야용선(般若龍船), 극락정도로 인도하는 배)의 의미를 품은 곳으로, 배바위 부처님으로 불리는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된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이 자리하고 있음</p> <p>○‘용을 보았다’란 의미의 사찰명 ‘관룡사’는, 『관룡사 사적기』를 비롯하여 『창녕군지(昌寧郡誌)』에 화왕산(火旺山) 마루의 월영삼지(月影三池)로부터 아홉 마리의 용이 등천하는 것을 바라본 것에 따라 지어진 상서로운 사찰로 기록되어 있음</p> <p>○화왕산 자락 구룡산(九龍山)과 관룡산(觀龍山)의 명칭도 이에 유래되었으며 『해동지도, 18세기 중반』와 『영남읍지, 1871년』 등에 세 곳의 용지와 화왕산·구룡산과 관룡사와 부속 암자인 청룡암·황룡암 등이 묘사되어 있음</p>			

		<p>○관룡사는 원효대사가 중국의 승려 1000명을 초대하여 화엄경을 설법하며 대도량으로 발전했다 하며, 고려시대까지 사세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임진왜란 당시 약사전을 남겨두고 대부분 소실됨</p> <p>○『창녕 관룡사 약사전상량문』에 1507년 약사전이 재창되었고 1609년 수리 되었다는 것과 『대웅전상량문 1749』에는 1401년(태종 1) 대웅전을 창건하고 임진왜란에 소실된 것을 1671(광해군 9)년 개창하고 1749년에 삼중창 한 기록 전해지고 있음. 이후, 조선시대 다섯 차례의 중창과 중수 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p>	
	입지환경	<p>○관룡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인 통도사의 말사로, 경북 창령군 옥천리 화왕산군립공원에 위치함. 화왕산 계곡의 옥수가 흘러 옥천(玉泉)이란 지명이 붙은 곳으로 경상남도 중앙 북쪽에 자리해 여러 권역에서 접근성이 좋은 편임</p> <p>○옥천계곡 옆 관룡사로 가는 길에는 한 쌍의 돌장승 ‘창녕 관룡사 석장승’이 비보(裨補)의 목적과 사찰의 경계로 자리함. 일주문 역할을 한 불(佛)자가 새겨진 ‘관룡사 돌담 석문(石門)’과 대숲길을 지나 ‘천왕문’에 들어서면 산림 풍광과 어우러지는 병풍바위가 관룡사를 품고 있어 독특한 사찰경관을 이루며 용선대로 이어지는 탐방길 조성이 잘 되어 있음</p> <p>○관룡사에는 ‘용선대 석조여래좌상’과 ‘관룡사 약사전’을 포함하여 7점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관룡사 사적기’를 포함 2점이 도지정유형문화재, ‘관룡사 석장승’이 도지정민속문화재, ‘관룡사 원음각’을 포함한 2점이 도지정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있는 등 신라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특성이 담긴 불교문화 유물이 많은 사찰임</p>	
보존관리 사항검토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p>○불교 유적의 기존 연구와 연계해 자연유산 명승이 지닌 가치와 진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함</p> <p>○관룡사 진입도로 주변 식당가와 사유지가 밀집되어 있어 명승지정시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사찰의 권역 시작점으로 알려진 석장승을 포함 문화재구역이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p> <p>○사찰의 경계 역할을 담당하는 석장승과 관룡사 석문 사이에 최근에 건립된 일주문으로 인한 혼선 등 동선 체계에 및 진입로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용선대 불전함 등의 정비가 필요함</p>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명승 지정 후 6개월 이내	
지정 가치	가 치 평 가 *해당 가치 부분 작성	역사적 가 치	시대별 특성을 지닌 유적을 보유한 곳으로 역사적 가치를 지님
		학술적 가 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과 유적을 많이 보유한 고찰로 상세한 수리 이력이 전해지고, 관련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바 학술적 가치가 우수함

	경관적 가치	병풍처럼 두른 기암괴석과 조화된 사찰경관과 반야용선(般若龍船) 의미를 지닌 용선대에서 조망하는 경관이 우수함
참고 사항	기존 문화재 와의 차별성	사찰권역과 이어진 용선대의 경관과 의미가 특별함
	원형 보존성	창건 당시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 등 원형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화왕산 군립공원내에 포함되어 지형이 잘 유지된 편이며 사찰 영역에 국지지정문화재 보물 및 유물이 많아 관리가 양호한 편임
	지정등급	Ⅱ등급
	지정기준	바-①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어울림이 뛰어나 총체적 미를 형성하고 있는 곳
	종합의견	<p>○ 관룡사(觀龍寺)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인 통도사의 말사로, 창건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신라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 유적을 보유한 고찰로, 『관룡사 사적기, 1733년』, 『약사전상량문』 등의 기록으로 보아 신라 시대 지어진 사찰로 추정되는 고찰임</p> <p>○ 아홉 마리의 용이 등친하는 것을 바라본 것에 따라 사찰명을 ‘관룡사(觀龍寺)’, 화왕산 능선과 이어지는 구룡산(九龍山)과 관룡산(觀龍山)의 명칭도 함께 유래된 것으로 전해짐</p> <p>○ 옥천계곡 옆 석장승과 일주문 역할을 한 석문을 지나 사찰경내에 들어서면 수림 풍광과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어우러지는 사찰경관이 우수하며 반야용선(般若龍船)의 의미를 품은 용선대에서 조망하는 경관이 뛰어난</p> <p>○ 관룡사 사찰경관과 용선대만의 특별한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편이나, 기존 불교 유적의 연구 조사에 더해 자연유산 명승이 지닌 가치를 연계 대상지의 진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됨</p>

- 첨부서류 1. 명승 지정가치 평가표 1부.  
2. 관련 세부사진 일체 1부. 끝.

2023년 10월 일

조사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명승 지정가치 평가표(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대 분류	기준	문 항	지정가치 평가지표	매 우 수 (I)	우 수 (II)	양 호 (III)	미 흡 (IV)	매 우 미 흡 (V)	해 당 사 無
1. 역 사 적  가 치 지 표	가 (생활· 민속성)	①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				
		②	각 시대·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을 잘 보여주는 곳인지			○			
				최고등급 : 등급					
	나 (인물· 사건 관련성)	①	종교·사상·전설·사건·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가 풍부하여 보존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				
			최고등급 : 등급						
2. 학 술 적  가 치 지 표	다 (희소성· 상징성)	①	자연물·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연구할 가치가 있는지		○				
		②	지역 고유의 특성이 잘 드러나거나 상징성이 강한 곳인지		○				
				최고등급 : 등급					
	라 (완전성· 의도성)	①	대상의 고유한 성격을 알 수 있는 구성 요소가 잘 남아있고, 위치·구성·형식 등이 명확한지				○		
②		조경의 구성원리·유래·발달 과정 등 관련 보존·연구할 가치가 있는지					○		
			최고등급 : 등급						
3. 경 관 적  가 치 지 표	마 (전통성· 심미성)	①	우리나라 혹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나고, 경관적 의미를 지니는지		○				
		②	자연 속에 구현한 경관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잘 남아있는지			○			
				최고등급 : 등급					
	바 (조화미· 조망성)	①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어울림이 뛰어나 총체적 미를 형성하고 있는지		○				
②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자연현상·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지		○					

대분류	기준	문항	지정가치 평가지표	매우우수	우수	양호	미흡	매우미흡	해당사항
				(I)	(II)	(III)	(IV)	(V)	無
표				최고등급 : 등급					
4. 국제적 가치 지표	사 (협약에 따른 자연유산)	①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 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지						
			㉠ 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그 집단으로 구성된 자연적 조형물로서 미학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 및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또는 보존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위협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를 이루는 것. ㉢ 자연유적 또는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평가 참고사항	.								

종합 평가 결과 (추후 작성 가능)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준 제시)	※ 3등급 이상 중 높은 등급 우선으로 작성한다. ▶ 대분류( 3 ) - 지정기준( 바-① ) - ( II ) 등급 ▶ 대분류( ) - 지정기준( ) - ( ) 등급 ▶ 대분류( ) - 지정기준( ) - ( ) 등급	
평가결과 종합	지정등급	II등급
	지정기준	바-①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어울림이 뛰어나 총체적 미를 형성하고 있는 곳

## 자연유산(명승)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3.8.17.			
조 사 자	성 명	***	전공분야	지질학
	소 속	*****	직위(직책)	교수
문화재 개 요	지정종별	복합명승		
	지정명칭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옥천지 산320-2번지 일원		
	지정 대상 및 범위 (면적)	해 당 문화재 (지정구역)	창녕 관룡사와 관룡산 일원 761,609㎡	
		보 호 구 역	-	
주요특징	신라시대의 보물과 유물을 보유한 오래된 사찰로 배후의 병풍처럼 두른 기암괴석과 조화되어 빼어난 경관을 보여주며, 용선대에서 조망하는 반야 용선(般若龍船 : 용이 이끄는 배를 타고 열반의 세계로 이끈다)의 경관이 독특함. 또, 옥천계곡과 옥천계곡 단풍나무길은 우수한 문화관광 명소로 잘 알려져 있음.			
주요연혁 및 입지환경 검 토	연혁 및 유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건 시기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관룡사사적기(觀龍寺事蹟記)」와 『창녕 군지(昌寧郡誌)』 및 「창녕관룡사약사전상량문」의 내용으로 볼 때 신라시대 때 지어진 사찰로 추정됨.</li> <li>● 관룡사의 서쪽 산 정상에 남아 있는 “관룡사 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295호)” 또한 관룡사의 창건 시기가 신라시대임을 뒷받침함.</li> <li>● 보수공사 중 천장에서 발견된 기록(1965년 8월)에 따르면, 몇몇 건물은 조선 태종 때(1401) 증축되고, 광해군(1617) 당시 개축되었음.</li> </ul>		
	입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룡사는 창녕군의 화왕산군립공원(1984년 1월 11일 지정)안에 위치하며, 대구와 접해 있는 북부권과 창녕읍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창원과 접해 있는 남지읍과 부곡온천의 남부권으로 나뉘어져 있어 경상남도 어디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관광권을 형성하고 있음.</li> <li>● 화왕산은 백악기에 관입한 흑운모 화강암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구전에 의하면 화산 분화에 의해 형성된 3개의 못(분화구)이 있다고 전해짐</li> </ul>		

보존관리 사항검토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관룡사 진입 도로 주변에 식당과 위락시설 등의 집단시설지구가 밀집되어 있어 명승 지정 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정 가치	가 치 평 가 *해당 가치 부분 작성	역사적 가 치	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 산지형 사찰로 관룡사에 대한 건축물 의 건축시기 등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약사전, 대웅전, 용선대 등의 문화재적 가치가 높으며, 지형·지세를 고려할 때 몇 몇 건축물은 집합 형 식으로 조영된 사례로 일반적인 불사건축의 평면적 전개 방식과 다른 가 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됨
		학술적 가 치	관룡사 경내에 있는 약사여래전과 벽화 및 탑 등은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음
		경관적 가 치	소박하고 정갈한 관룡사와 사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화왕산의 흑운모 화강암이 빗어낸 기암괴석의 형태는 경승적인 가치가 없지 않다고 판단됨. 특히 서쪽 정상 of 용선대에서 바라본 전체적 지형은 경관이 우수함
	참고 사항	기 존 문화재 와의 차별성	
		원 형 보존성	신라시대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경내 구조물들에 대한 원형이 확인되 지 않음. 다만, 약사여래전 등은 벽면의 훼손 정도가 심해 보임. 관룡사 진 입부의 일주문과 돌장승에 대한 원형이 복원되어야함.
	지정등급	Ⅲ등급	
	지정기준	바-①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어울림이 뛰어나 총체적 미를 형성하고 있는 곳 신라시대에 창건된 오래된 산사의 사찰과 사찰이 보유한 보물 및 사찰을 감싸고 있는 화왕산의 지형과 기암괴석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지형 등 이 우수함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라시대에 창건된 오래된 고찰(관룡사사적기와 창녕군지 참조)로 경내 에는 다양한 보물이 보존되어 있음(약사전, 대웅전,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석조여래좌상,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 대웅전 관음보살벽화의 보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찰의 규모가 소박하나, 정갈하고 건물의 배치가 미학적이다. 사찰을 품고 있는 화왕산의 화강암이 빗어낸 능선과 절벽 지형 또한 경관이 우수함. 특히 용선대에서 바라본 사찰과 전체적 지형은 경관적 가치가 있음</li> <li>● 다만, 사료의 부족과, 이로 인한 사찰 건축물 원형의 형태 파악이 우선되어야하고, 사찰을 제외한 화왕산의 자연 경관이 명승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되어야함.</li> </ul>
--	--	--

- 첨부서류 1. 명승 지정가치 평가표 1부.  
2. 관련 세부사진 일체 1부. 끝.

2023년 10월 일

조 사 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명승 지정가치 평가표(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대 분류	기준	문 항	지정가치 평가지표	매 우 수 (I)	우 수 (II)	양 호 (III)	미 흡 (IV)	매 우 미 흡 (V)	해 당 사 無
1. 역 사 적  가 치 지 표	가 (생활· 민속성)	①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 의미가 있는지			√			
		②	각 시대·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을 잘 보여주는 곳인지				√		
				최고등급 : 등급					
	나 (인물· 사건 관련성)	①	종교·사상·전설·사건·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가 풍부하여 보존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		
			최고등급 : 등급						
2. 학 술 적  가 치 지 표	다 (희소성· 상징성)	①	자연물·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연구할 가치가 있는지			√			
		②	지역 고유의 특성이 잘 드러나거나 상징성이 강한 곳인지				√		
				최고등급 : 등급					
	라 (완전성· 의도성)	①	대상의 고유한 성격을 알 수 있는 구성요소가 잘 남아있고, 위치·구성·형식 등이 명확한지				√		
②		조경의 구성원리·유래·발달 과정 등 관련 보존·연구할 가치가 있는지				√			
			최고등급 : 등급						
3. 경 관 적  가 치 지	마 (전통성· 심미성)	①	우리나라 혹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나고, 경관적 의미를 지니는지			√			
		②	자연 속에 구현한 경관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잘 남아있는지			√			
				최고등급 : 등급					
	바 (조화미· 조망성)	①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어울림이 뛰어나 총체적 미를 형성하고 있는지			√			
②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자연현상·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지			√				

대분류	기준	문항	지정가치 평가지표	매우우수 (I)	우수 (II)	양호 (III)	미흡 (IV)	매우미흡 (V)	해당사항 無
표				최고등급 : 등급					
4. 국제적 가치 지표	사 (협약에 따른 자연유산)	①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 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지				V		
			㉠ 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그 집단으로 구성된 자연적 조형물로서 미학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 및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또는 보존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위협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를 이루는 것. ㉢ 자연유적 또는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평가 참고사항	.								

종합 평가 결과 (추후 작성 가능)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준 제시)	※ 3등급 이상 중 높은 등급 우선으로 작성한다. ▶ 대분류( 3 ) - 지정기준( 바-① ) - ( III ) 등급 ▶ 대분류( ) - 지정기준( ) - ( ) 등급 ▶ 대분류( ) - 지정기준( ) - ( ) 등급
평가결과 종합	지정등급 III등급
	지정기준 바-①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어울림이 뛰어나 총체적 미를 형성하고 있는 곳

## 자연유산(명승)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3.8.17.			
조 사 자	성 명	***	전공분야	전통조경
	소 속	*****	직위(직책)	*****
문화재 개 요	지정종별	복합명승		
	지정명칭	창녕군 관룡산 관룡사 일원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옥천지 산320-2번지 일원		
	지정 대상 및 범위 (면적)	해 당 문화재 (지정구역)	창녕 관룡사와 관룡산 일원 761,609m <sup>2</sup>	
		보 호 구 역	-	
주요특징	<p>신라시대의 보물과 유물을 다수 보유한 오래된 사찰로 배후의 병풍처럼 둘러 싼 기암괴석과 경내의 건축물과 조화되어 빼어난 경관을 보여 줌. 특이한 가람배치를 보여주는 산지형 사찰의 사례임</p> <p>용선대에서 조망하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의 경관이 독특하며, 옥천계곡과 옥천계곡 단풍나무 길은 우수한 문화관광 명소로 잘 알려져 있음.</p>			
주요연혁 및 입지환경 검 토	연혁 및 유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룡사의 창건 시기가 기록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으나, 후대에 기록된 「관룡사사적기(觀龍寺事蹟記)」와 『창녕군지(昌寧郡誌)』의 내용으로 볼 때 신라시대 때 지어진 사찰로 추정된다.</li> <li>○ 『창녕군지』에는 신라 26대 진평왕 5년(583)에 증법국사(證法國師)에 의해 관룡사가 창건되었으며, 신라 8대 고찰의 하나라고 설명하였고, 이처럼 관룡사의 초창연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사적기」와 『창녕군지』 그리고 「창녕관룡사약사전상량문」에 기록된 초창연대가 모두 신라시대에 해당하고, 사찰의 서쪽 산 정상 큰 바위 위에 통일신라기에 조성된 관룡사 용선대 석조석가여래좌상(보물 제295호)이 남아 있어 관룡사의 신라 창건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li> <li>○ 또한, 1965년 8월 보수공사 때, 천장 부근에서 발견한 기록에 따르면 이 건물은 조선 태종 1년(1401)에 짓고,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것을 광해군 9년(1617)에 고쳐 세워 이듬해에 완성했음을 알 수 있다.</li> </ul>		
	입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룡산 관룡사 및 화왕산국립공원이 위치해 있는 창녕군은 대구와 접해 있는 북부권과 창녕읍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창원과 접해 있는 남지읍과 부곡온천의 남부권으로 나뉘어져 있어 경상남도 어디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관광권을 형성하고 있다.</li> <li>○ 화왕산국립공원: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녕군에 있는 면적 31km<sup>2</sup>, 높이</li> </ul>		

		<p>756m의 산이다. 1984년 1월 1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화왕산은 선사시대 화산으로 지금 3개의 못(용지)은 화산의 분화구가 있으며,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 여름이면 억새초원, 가을에는 황금빛 억새물결, 겨울의 설경이 유명하다.</p>  <p>표 1. 창녕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이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포늪: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이방면, 대합면 즉, 3개면에 걸쳐있는 총면적 2.31km<sup>2</sup>의 대한민국 최대의 내륙 습지. 우포늪 권역은 2011년 천연기념물 제524호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480여종의 식물, 62종의 조류, 28종의 어류, 55종의 곤충류가 서식하고 있어 람사르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대표적인 습지이다.</li> <li>○ 영취(축)산: 영취산은 남북 방향으로 덕유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소백산맥과 백두대간의 중간 구간에 있다. 영취산에서 동쪽, 경상남도 함양군에서는 덕운봉[956m]에서 제산봉[852.6m]으로 이어지는 산지가 함양군 서상면과 함양군 서하면의 자연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쪽의 낙동강과 금강, 섬진강의 물줄기가 나뉘는 분수령에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li> </ul>
<p>보존관리 사항검토</p>	<p>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p> <p>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화왕산 옥천계부터 관룡사까지의 진입도로가 1차선의 좁은 도로로 버스이용 및 관람객 이용이 불가능(별도 접근로 및 경관정비 필요)</li> <li>○ 주차 후 경사가 급한 1km의 도로 주변 식당 등 집단시설지구가 밀집되어 있어 추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지역이라 판단됨.</li> <li>○ 사역 주변의 기단 등 유적들을 통한 추정 가능한 가람배치 구조의 복원 및 변화 과정을 통한 특별한 공간구성의 사례로 활용 가능  하현정,신현익,안영배, 「관룡사 가람배치 및 외부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12호, 1987, p34.</li> <li>○ 중장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의 경승가치를 보완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룡사에 대한 건축물 및 조영시기 등의 명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약사전, 대웅전, 용선대 등의 문화재적 가치가 높으며, 병풍처럼 두른 기암괴석의 화왕산 주변의 경승적인 가치가 우수</li> <li>○ 명승 지정 후 6개월 이내 수립</li> </ul>

지정 가치	가치 평가 *해당 가치 부분 작성	역사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사찰 유형 중 산지형 사찰의 하나의 유형 사례</li> <li>○ 지형·지세를 고려할 때 몇 개의 건물군(群) 집합 형식으로 조영된 사례로 일반적인 불사건축의 평면적 전개 방식과 다른 가치를 갖고 있음</li> </ul>
		학술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쟁 등으로 인해 소실된 사료를 대신할 숨은 자료 및 문헌 등의 발굴을 통해 조성 당시의 원형 고증을 탐색해 가는 학술적 가치</li> <li>○ 약사전 관련 고증 및 벽화, 건물구조 등의 사료적 가치가 존재함.</li> <li>○ 사찰의 변화된 공간구성 수법 및 건축물의 개축 및 신축에 대한 고증을 통한 가람배치 형태 변화 및 공간 구성의 분석을 통한 건축물의 배치의도 등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우수함</li> </ul>
		경관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달래 군락지와 역세의 산으로 4계절 경관이 우수한 화왕산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창녕의 금강산이라 부르는 관룡산(해발 740m) 자락에 위치해 있는 관룡사는 뒤로는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두르고, 가을철 진입로의 붉게 물든 단풍이 늦가을의 선물 같은 풍경을 선사하고, 사찰 뒤편의 병풍바위가 공간의 흐름을 잇게 하여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한다.</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룡사 경외에 위치하고 있는 용선대는 조금 떨어진 바위에서 용선대를 바라보면 암반 전체가 배처럼 보인다.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용이 이끄는 배를 타고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끈다' 라는 뜻의 '반야용선(般若龍船)'에서 따온 이름임을 알 수 있다. 반야용선은 중생을 태워 고통이 없는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용선대 석조여래좌상은 바로 반야용선의 선장으로 선수에 위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어 용선대 석조여래좌상이 위치한 용선대와 그 주변 경관으로 인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더욱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참고 사항	기 존 문화재와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사찰들에 비해 규모가 소규모이며, 일반적이지 않은 가람 배치와 사찰후면의 경관이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위요한 형태로, 기존의 수림 사찰형태와 차별화 되며, 용선대 석조여래좌상의 "반야용선"의 경관 또한 수려함.</li> </ul>
	원 형 보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형에 대한 사료의 근거가 부재하여, 경내의 건축물 및 구조물들의 조성에 대한 원형의 변형이 급속도로 진행 중</li> <li>○ 일주문 및 관룡사에 샷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에 배치한 돌장승과 현재 일주문을 대신하여 짧은 오솔길을 뒤에 만들어진 어른 키 만한 담장의 석벽, 비틀어진 가람배치 등의 복원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임.</li> </ul>  
지정등급		I 등급
지정기준		바-①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어울림이 뛰어나 총체적 미를 형성하고 있는 곳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룡사는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의 말사로 관룡사 조성에 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관룡사사적기(觀龍寺事蹟記)」(이하 사적기)와 『창녕군지(昌寧郡誌)』에 신라시대 때 조성된 것을 기록하고 있고, 경내의 약사전, 대웅전,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석조여래좌상,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 대웅전 관음보살벽화의 보물이 지정되어 있음</li> <li>- 조선이후 부터 이 지역의 자연 풍광은 경관적으로 수려하며, 기암괴석과 용선대로 이어지는 역사문화 권역은 우수한 경관자원 상태임</li> <li>- 다만,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거쳐 화마에 유실된 이후 복원되는 과정에서 사료 및 문헌 자료의 고증이 불분명하게 이루어짐으로 원형 등의 근거가 모호한 상태임.</li> </ul>

		- 명승으로 지정할 경우 주차장 및 현재 조성된 일주문을 시점으로 조성시에는 주변 상업시설과의 마찰과 진입도로의 1차선 협소 등의 문제들이 사전 협의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

- 첨부서류 1. 명승 지정가치 평가표 1부.  
2. 관련 세부사진 일체 1부. 끝.

2023년 8월 일

조 사 자

\*\*\*

문화재청장 귀하

# 명승 지정가치 평가표(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대 분류	기준	문 항	지정가치 평가지표	매 우 수 (I)	우 수 (II)	양 호 (III)	미 흡 (IV)	매 우 흡 (V)	해 당 사 항 無
1. 역 사 적  가 치 지 표	가 (생활· 민속성)	①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			
		②	각 시대·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을 잘 보여주는 곳인지		●				
				최고등급 : I 등급					
	나 (인물· 사건 관련성)	①	종교·사상·전설·사건·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가 풍부하여 보존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		
			최고등급 : II 등급						
2. 학 술 적  가 치 지 표	다 (희소성· 상징성)	①	자연물·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연구할 가치가 있는지		●				
		②	지역 고유의 특성이 잘 드러나거나 상징성이 강한 곳인지				●		
				최고등급 : III 등급					
	라 (완전성· 의도성)	①	대상의 고유한 성격을 알 수 있는 구성요소가 잘 남아있고, 위치·구성·형식 등이 명확한지				●		
②		조경의 구성원리·유래·발달 과정 등 관련 보존·연구할 가치가 있는지					●		
			최고등급 : III 등급						
3. 경 관 적  가 치 지 표	마 (전통성· 심미성)	①	우리나라 혹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나고, 경관적 의미를 지니는지		●				
		②	자연 속에 구현한 경관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잘 남아있는지		●				
				최고등급 : II 등급					
	바 (조화미· 조망성)	①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어울림이 뛰어나 총체적 미를 형성하고 있는지	●					
②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자연현상·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					

대분류	기준	문항	지정가치 평가지표	매우우수	우수	양호	미흡	매우미흡	해당사항
				(I)	(II)	(III)	(IV)	(V)	無
표			최적의 장소인지						
			최고등급 : II 등급						
4. 국제적 가치 지표	사 (협약에 따른 자연유산)	①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 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 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그 집단으로 구성된 자연적 조형물로서 미학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 및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또는 보존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위협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를 이루는 것.            ㉢ 자연유적 또는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div>						
			최고등급 : 등급						
평가 참고사항		·							

종합 평가 결과 (추후 작성 가능)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준 제시)	※ 3등급 이상 중 높은 등급 우선으로 작성한다.
	▶ 대분류( 3 ) - 지정기준( 바-① ) - ( I ) 등급
	▶ 대분류( 3 ) - 지정기준( 마-② ) - ( II ) 등급
	▶ 대분류( 2 ) - 지정기준( 다-① ) - ( II ) 등급
평가결과 종합	지정등급 I 등급
	지정기준 바-①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어울림이 뛰어나 총체적 미를 형성하고 있는 곳

【붙임】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주요경관 사진

○ 관룡사와 병풍바위 전경



○ 용선대와 관룡산 전경



○ 용선대에 바라본 관룡사 풍경과 관룡사 법종루 근처 석문, 돌담



## 9. 「곡성 함허정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곡성 함허정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곡성 함허정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
- 추진경과
  - '23. 1. 19. 명승 잠재자원 추천요청(문화재청→시·도)
  - '23. 3. 7. 명승 우수잠재자원 추천(전라남도→문화재청)
  - '23. 3. 22. 명승 지정추진대상 선정 관계전문가 검토회의
  - '23. 6. 21. 명승 지정 관계전문가 현지조사(김영모·\*\*\*·신현실 문화재위원)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 지정명칭 : 곡성 함허정 일원
    - (한문) 谷城 涵虛亭 一圓
    - (영문) Hamheojeong Pavilion and Surroundings, Gokseong
-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곡성 함허정(1988.3.16.)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곡성 함허정(1988. 3. 16. 지정)

- 조선 중종 38년(1543) 심광형이 이 지역 유림들과 풍류를 즐기기 위해 지은 정자로 일명 호연정이라고도 한다. 증손자 심민각이 오래된 정자를 옛 터 아래쪽으로 옮겨 다시 지었으며 5대손 심세익이 고쳤다. 지금 있는 건물은 1980년에 수리를 한 것이다.
- 앞면 4칸·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구성은 마루 1칸을 3면을 터 만들었고 2칸 반은 방으로 꾸몄다. 나머지 오른쪽 반 칸은 바닥을 한 단 높여 쪽마루를 두었다.
- 정자 아래로 흐르는 섬진강, 울창한 숲, 멀리 무등산이 보이는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약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심광정이 세운 균지춘정사(국가민속문화재)가 있다.

- 당대 학문을 익히던 선비들의 수양지와 휴식처를 빼어난 경치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 지정종별 : 명승(역사문화명승)
-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6 일원
- 문화재지정구역 : 7필지, 25,244m<sup>2</sup>
- 지정사유
  - 곡성 함허정 일원은 조선 중기 문사(文士) 제호정(齊湖亭) 심광형(沈光亨, 1510-1550)이 군지촌정사(涪池村精舍, 현재 국가민속문화재 곡성 제호당 고택)를 짓고, 섬진강에 인접한 구릉지에 함허정(涵虛亭)을 건립하였음
  - 함허정 일대에는 풍수상 거북이 용궁으로 입수하는 형국이라 하며, 거북의 등 위에 함허정이 자리하고 절벽 아래엔 용소(龍沼)와 하중암도인 구암(龜巖)이 있고, 이중 구암은 낚시를 드리우기 좋은 자리라 하여 구암조대(龜巖釣臺)라 칭해지며, 거꾸로 ‘용(龍)’자를 새긴 용암(龍巖) 관련 전설이 전해지고 있음
  - 『옥과현지(玉果縣誌, 1788)』, 『호남읍지 옥과현읍지(湖南邑誌第2冊玉果縣邑誌(1871))』 등에 증손인 구암(龜巖) 심민각(沈民覺, 1589-1643)이 쇠락한 누정을 현재 위치로 이건하고, 정자의 이름을 ‘호연정(浩然亭)’으로 개칭했다고 전해지며, 여러 차례 중수를 거치며 19세기 창건 당시의 이름인 함허정으로 복칭(復稱)되었음
  - 함허정은 제호정 고택과 연계되어 당대 지역의 특별한 장소성을 지닌 곳으로, 옥과현감을 지낸 위백규(1727-1798), 최원(1788~?)과 신위(1769-1845) 등 조영 관련 기록과 문인들의 교류 흔적, 주변의 경관을 읊은 기문과 시문들이 전해지고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남
  - 함허정 전면에 펼쳐진 반달형의 ‘제월(霽月)섬’, ‘제호(霽湖, 섬진강)’ 등이 정자에서의 근경을 형성하고, 멀리 서석산(무등산), 설산의 전경이 파노라믹한 경관이 펼쳐지는 등 정자에서 바라본 경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근거기준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 제1-다-3호<정자·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 제2-나-3호<경관, 정자 등 종교·교육·위락과 관련된 인공경관>
- 관리단체(안) : 전라남도 곡성군

#### 라. 검토의견(\*\*\*\*\*)

- 곡성 함허정 일원은 조영자의 후손에 의해 초기 건립 위치에서 이건되어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옥과현지(玉果縣誌, 1788)』, 『호남읍지 옥과현읍지(湖南邑誌第2冊玉果縣邑誌(1871))』 등에 조영 기록과 주요 경관요소가 기록되어 있으며, 여러 문인들의 교류 흔적, 주변의 경관을 묘사한 시문들이 전해지고 있음

- 특히 함허정에서의 조망과 귀암조대 등 경관요소가 현전하고 섬진강 일대의 파노라믹한 경관이 빼어나 명승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음

## 마. 서면검토,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3.6.21.)

#### <\*\*\* 문화재위원>

- 함허정은 강변의 구릉지와 수림과 어우러진 풍광이 좋으며, 누정의 아래로는 섬진강이 굽이쳐 흐르고, 수변에 조영자의 누정활동과 관련된 거암이 자리하며 주변의 산을 조망하기에 최적의 장소에 자리하고 있음
- 입지와 조망의 가치적 측면에서 호남을 대표하는 누정으로서 손색이 없으며, 덧붙여 제호정 고택과의 연계성이 보다 뚜렷한 특징으로 부각될 수 있음

#### <\*\* 문화재위원>

-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에 위치한 함허정(涵虛亭)은, 1535년 심광형(1510-1550)이 처소와 학당을 겸비한 사랑채인 군지촌정사(涪池村精舍)를 지은 뒤, 1543년에 인근 순자강변 동산에 건립한 정자임
- 함허정이 자리한 제월(霽月)은 맑게 갠 하늘의 밝은 달을 뜻하고 반달꼴로 둘러싸고 강이 흘러 붙여진 지명으로, 함허정 일대는 풍수상 거북이 용궁으로 입수하는 형국의 터로 알려짐
- 함허정은 제월당 고택과 연계되는 청송심씨 일가의 세거지로, 관련 조영 기록이 전해지고 있음. 지금의 함허정은 옛터 아래 현 위치로 1643년 이건되었고, 호연정·제호정·세연정 등 다양하게 불리다 19세기에 이르러 함허정으로 복칭됨
- 함허정은 강변 수림 경관과 조망 경관이 뛰어난 곳에 자리하여, 보이는 경관과 바라보는 경관의 구성이 돋보임. 아래로 굽이치는 강과 들, 멀리 서석산(무등산), 설산이 조망되는 등 다채로운 경관적 가치가 우수함
- 곡성 제호정 고택과 옛터를 중심으로 구암사 등 대상지의 가치 연계가 필요하며, 문헌 기록 등을 포함한 대상지 일원의 종합적인(인문, 건축, 식생, 지질 등) 자원조사를 통해 진정성 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 문화재위원>

- ‘함허(涵虛)’는 주로 고대 시서화를 통해 나타나는 유교의 경물인식방식의

하나로서 곡성 함허정은 옥과현지(玉果縣誌, 1788), 호남읍지 제2권 옥과현 읍지(湖南邑誌第2冊玉果縣邑誌, 1871)에 의해 건조물의 위치와 주변 경물의 구성요소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경관의 유상(遊賞)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함허정은 위치변경과 주변 환경 변화 및 개발로 인하여 과거의 함허정 현판들에 나타나고 있는 명승 경점의 물리적 요소들이 소멸 혹은 변형되어 경관적 가치가 유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군지촌과 체호당 고택이 이루는 경관과 공간의 역사적 가치가 우수하고 기록된 문헌에 근거한 함허정의 가치는 뛰어나다고 판단됨. 단, 현 함허정은 명확한 본래 위치를 추정하기 어려움
- <옥과현지>와 <옥과읍지>에서도 정자의 위치에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재 위치에 신축된 함허정은 기존 추정 위치에서 벗어난 지점으로 문헌에 나타난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3) 지자체(\*\*\*) 의견('23. 3. 7.)

- 함허정 주변은 강변의 구릉지로 수립의 풍광이 좋으며 건물 아래로 섬진강이 흐르고 있고, 주위에 나무가 울창하고 멀리 명승지 무등산이 자리 잡고 있어 입면 8경 중 함허순자(함허정에서 조망되는 순자강)을 조망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임
- 함허정은 자연과 교감하면서 학문적 영감을 얻기 위한 공간이며, 국가민속 문화재인 체호정 고택과 일체감을 이루며 400여 년 동안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섬진강을 대표하는 정자중의 하나로 명승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음

###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 가결 8명, 조건부 가결 5명

붙임 곡성 함허정 일원 지정조사 보고서 1부. 끝.

# 자연유산(명승) 지정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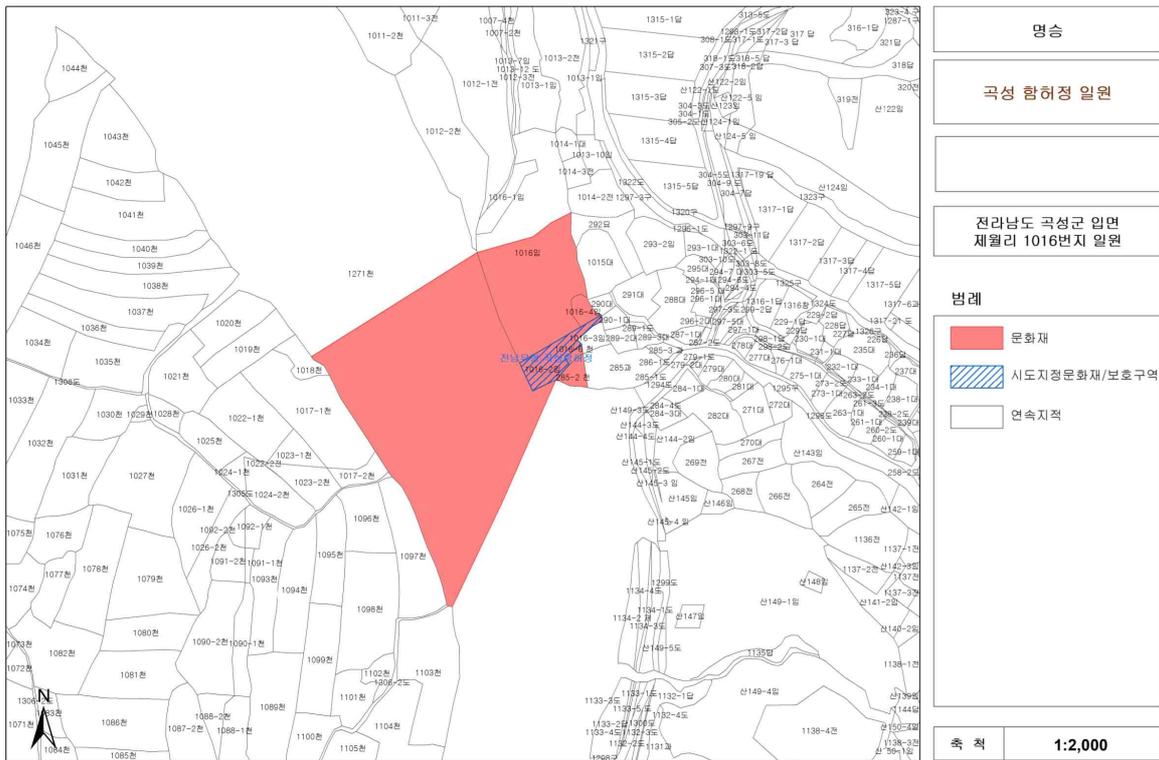
## □ 조사일자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3. 6. 21.
- 조사자 : \*\*\*·\*\*\*·\*\*\* 문화재위원

## 1. 문화재 개요

- 가. 지정종별 : 명승
- 나. 지정명칭 : 곡성 함허정 일원
- 다.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6번지 일원
- 라. 지정대상 및 범위 : 7필지, 25,24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계			511,620			
1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6	임	7,277	4,648	심석기	광주광역시 북구
2		1271	천	502,798	19,051	국(환경부)	
3		1016-2	임	895	895	청송심씨도정공파곡성종회	전라남도 곡성군
4		1016-4	임	260	260	심석기	광주광역시 북구
5		1016-5	천	21	21	국(환경부)	
6		1016-6	천	73	73	국(환경부)	
7		285-2	천	296	296	국(환경부)	



## 바. 주요특징

- 함허정은 심광형(沈光亨, 1510-1550)이 제호정(齊湖亭) 고택을 짓고, 서편 동산에 지역 유림들과 풍류를 즐기기 위해 건립한 누정으로서, 입지적 특징이 전통 정자의 전형을 보여줌
- 함허정은 조영 이력이 비교적 상세히 전해지며, 다채로운 경관적 특징이 잘 보존되어 있는 호남을 대표하는 조선시대 전통누정임

## 2. 주요연혁 및 입지환경 검토

### 가. 연혁 및 유래

- 곡성 함허정은 조선중기 광양·곡성 등 인근 고을 향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훈도를 지내며 후학양성을 한 당대 문사(文士) 제호정(齊湖亭) 심광형(沈光亨, 1510-1550)이 군지촌정사(국가민속문화재 ‘곡성 제호정 고택’)를 짓고, 그곳에서 100m 가량 이격된 서편 동산에 지역 유림들과 풍류를 즐기고자 건립한 누정임
- 함허정이 자리한 제월리의 ‘제월(霽月)’은 ‘맑게 갠 하늘의 밝은 달’을 뜻하고 일대를 반달꼴로 둘러싸고 강이 흘러 붙여진 지명이며, 앞의 강은 호수같다 하여 ‘제호(霽湖)’라 칭함. 군지촌의 촌명은 자신의 낙향을 중국 순임금의 분주(分州)에 비견하여 자손의 번영을 염원한 것이라 전해짐
- 비워둠의 미학을 지닌 ‘함허(涵虛)’란 정명은 당나라 맹호연(689-740)이 동정호를 바라보며 지은 시구 “八月湖水平 涵虛混太清”에서 인용하였다 하나, 최초 정명에 관한 이견으로 제호정으로 칭한 기록도 전해짐
- 함허정 일대는 풍수상 거북이 용궁으로 입수하는 형국이라 하며, 거북의 등위에 함허정이 자리하고 절벽 아래엔 용소(龍沼)와 하중암도인 구암(龜巖)이 있고, 이중 구암은 낚시를 드리우기 좋은 자리라 하여 구암조대(龜巖釣臺)라 칭해지며, 용암(龍巖) 전설이 내려오고 있음
- 이후 증손 심민각이 쇠락한 누정을 뒷동산 정상에서 현재의 동산 아래로 이 건하였으며, 다시 5대손인 심세익이 중수하면서 함허정(涵虛亭)을 호연정(浩然亭)으로 개칭하였으나, 후에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치면서 19세기 창건 당시의 이름인 함허정으로 복칭된 것으로 전해짐
- 함허정에 대한 기록은 『사현실기(四賢實記, 1799)』, 『옥과현지(玉果縣誌, 1788)』, 『호남읍지 옥과현읍지(湖南邑誌第2冊玉果縣邑誌(1871))』에 조선중기 심안지의 손자 제호정 심광형이 건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함허정은 본가인 제호정 고택을 건조한 후 인근에 축조한 정자로서 건조물의 이전과 여러 차례 중수를 통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옥과현지(玉果縣誌, 1788)』에 기록된 호연정이 위치와 규모 및 건조시기 등을 고려할 때 함허정과 동일 정자일 것으로 추정됨
- 함허정은 옥과현감을 지낸 위백규(1727-1798), 최원(1788~?)과 신위(1769-1845) 등이 남긴 글과 『옥과군읍지(玉果郡邑誌, 1899)』, 『사현실기(四賢實記)』, 『고종시(高宗時)』 등 문헌 및 편역 제영시에 관련 기록이 전해짐
- 정자 내에는 현판은 조선후기 명필인 이삼만(1770-1847)이 썼으며, 기문과 시문 등 19개의 편액이 걸려있음

#### 나. 입지환경

- 옥과현지(1700년대)와 옥과읍지(1800년대)에 호연정이 하천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함허정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제월리 일원의 제호정 고택(국가민속문화재)과 100m 정도 떨어진 동산의 중턱에 위치해 있음
- 이곳은 전면에 천마봉을 향해 남동향으로 배치하여 섬진강이 반달꼴로 끼고 돌며 설산과 서석산(무등산)이 조망되는 전경관(파노라믹 경관)이 펼쳐진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후면으로는 섬진강과 평야를 배경으로 함
- 곡성 함허정은 1988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살림집과 군지촌정사는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 ‘곡성 제호정 고택’으로 지정됨
- 국가민속문화재인 곡성 제호정 고택과 함허정 조영자를 포함한 청송심씨 사현인 심광형, 심민각, 심선, 심민겸의 위패를 배향한 구암사(龜巖祠)가 인근에 자리함
- 함허정 아래 섬진강 제월 습지 내 하중도가 정비되면서 제월섬으로 명해지고 생태체험장과 둘레길이 연결되어 있으며 주변에 한옥펜션이 있음

### 3. 보존관리사항 검토

#### 가.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현재의 위치로 이견 되기 이전 함허정 건립 추정지(동산 정상)에 이견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안내 체계 보완, 조망 및 경관을 위한 수목 정비 및 탐방로와 진입로 정비 등 경관 보완이 필요함
- 함허정은 제호정 고택과 일체성을 지닌 정자로 문헌 기록 등을 포함한 대상지 일원의 종합적인(인문, 건축, 식생, 지질 등) 자원조사를 통해 진정성을 보완, 곡성 제호정 고택과 옛 터, 구암사 등 대상지의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함

#### 나. 문화재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명승 지정 후 6개월 이내 수립

## 4. 지정가치

### 가. 가치평가

#### 1) 역사적 가치

- 곡성 함허정 일원은 제호정 고택과 연계되어 당대 지역의 특별한 장소성을 지닌 곳으로, 조영 관련 기록과 문인들의 교류 흔적이 전해지는 등 역사적 가치를 지님
- 문헌에 근거한 함허정의 역사적 가치는 뛰어나나, 『옥과현지』와 『옥과읍지』에서도 정자의 위치에 차이를 보이는 등 현재 함허정의 명확한 본래 위치를 추정하기 어려우며, 현재 위치에 신축된 함허정은 기존 추정 위치에서 벗어난 지점으로 문헌에 나타난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 학술적 가치

- 약 400년의 역사를 지닌 제호정 고택을 중심으로 한 종택의 계승과 변화를 알 수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음

#### 3) 경관적 가치

- 곡성 함허정 일원은 조선시대 누정의 경관 특징인 ‘보여지는 경관’과 ‘바라보는 경관’의 이중성이 뚜렷한 누정으로, 섬진강변의 구룡지 수림에 둘러싸여 멀리서는 드러나지 않는 은밀함을 가지고 있으나, 제호정 고택의 진입로 상에서 다소곳이 자리하며, 정자에서 근경으로는 섬진강과 제월섬이, 중경으로 마산봉과 고리봉 등이 정자를 둘러 감싸고 멀리 무등산과 설산이 조망되어 함허정에서 조망되는 순자강을 ‘함허순자’라 일컫는 등 경관적 가치가 우수함
- 누정을 둘러싼 참나무와 소나무의 고목과 동산의 수림경관, 조영자의 행위적 사실과 관련된 구암조대와 용암의 거석경관, 군촌마을의 문화경관, 섬진강과 제월섬의 수경관과 주변산과 원산의 산악경관 등이 보존되어 있음
- 단, ‘함허(涵虛)’는 주로 고대 시서화를 통해 나타나는 유교의 경물인식방식의 하나로서 곡성 함허정은 『옥과현지』와 『옥과현읍지』에 건조물의 위치와 주변 경물의 구성요소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경관의 유상(遊賞)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함허정은 위치변경과 주변 환경의 변화 및 개발로 인하여 과거의 함허정 현판들에 나타나고 있는 명승 경점의 물리적 요소들이 소멸 혹은 변형되어 경관적 가치가 유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나. 참고사항

#### 1) 기존문화재와의 차별성

- 조망과 경관이 뛰어난 곳에 위치한 누정은 전국에 산재하고 또한 전통정원

이나 원림에 부속된 누정도 상당하나, 조영자의 제택과 인접하여 조영된 누정은 드문 경우로서 차별성을 지님

- 정자나 누각이 명승으로 지정된 사례는 총 16건으로 정자와 계곡, 하천 등 주변 자연경관을 조망하거나 정원, 마을숲 등의 요소와 결합한 사례 등이 있음
- 명승을 포함한 다양한 종별의 문화재에서 누정이 중요 요소로 포함된 사례는 매우 많음(시도문화재 포함 전국에 분포)
- 고산정과 같이 정자에서의 조망이 중심이 되는 사례로는 ‘초연정’, ‘초간정’, ‘청암정’, ‘만휴정’, ‘거연정’, ‘용암정’, ‘침수정’ 등이 대표적임

<정자·누각 명승 지정 사례>

순번	지정일	문화재명	주요 구성
1	'07.12.07.	순천 초연정 원림	정자, 계류, 정원
2	'07.12.07.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정자, 하천, 마을숲
3	'07.12.7.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누각, 절벽, 하천
4	'08.12.26.	예천 초간정 원림	정자, 계류,
5	'08.12.26.	구미 채미정	정자, 하천
6	'09.09.18	담양 식영정 일원	정자, 하천
7	'09.09.18.	담양 명옥헌 원림	정자, 정원
8	'09.12.09.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정자, 계류, 하천
9	'11.08.08.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정자, 하천, 마을숲
10	'11.08.08.	안동 만휴정 원림	정자, 계류, 정원
11	'12.02.08.	함양 화림동 거연정 일원	정자, 계류
12	'12.04.10.	화순 임대정 원림	정자, 정원
13	'12.04.10.	거창 용암정 일원	정자, 계류
14	'13.11.06.	광주 환벽당 일원	건물, 언덕, 하천
15	'13.12.30.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정자, 호수
16	'22.02.25.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	정자, 계류, 절벽

2) 원형 보존성

- 함허정은 청송심씨 가문에서 전승하며 관리해온 상태로 대상지 일원의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나, 옻터 주변의 훼손이 진행된 상태로 면밀한 조사 및 보전 관리가 필요함

라. 종합의견

- 1) \*\*\* 문화재위원

- 함허정은 강변의 구릉지와 수림과 어우러진 풍광이 좋으며, 누정의 아래로는 섬진강이 굽이쳐 흐르고, 수변에 조영자의 누정활동과 관련된 거암이 자리하며 주변의 산을 조망하기에 최적의 장소에 자리하고 있음
- 입지와 조망의 가치적 측면에서 호남을 대표하는 누정으로서 손색이 없으며, 덧붙여 제호정 고택과의 연계성이 보다 뚜렷한 특징으로 부각될 수 있음

## 2) \*\* 문화재위원

-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위치한 함허정(涵虛亭)은, 1535년 심광형(1510-1550)이 처소와 학당을 겸비한 사랑채인 군지촌정사(涪池村精舍)를 지은 뒤, 1543년에 인근 순자강변 동산에 건립한 정자임
- 함허정이 자리한 제월(霽月)은 맑게 갠 하늘의 밝은 달을 뜻하고 반달꼴로 둘러싸고 강이 흘러 붙여진 지명으로, 함허정 일대는 풍수상 거북이 용궁으로 입수하는 형국의 터로 알려짐
- 함허정은 제월당 고택과 연계되는 청송심씨 일가의 세거지로, 관련 조영 기록이 전해지고 있음. 지금의 함허정은 옛터 아래 현 위치로 1643년 이건 되었고, 호연정·제호정·세연정 등 다양하게 불리다 19세기에 이르러 함허정으로 복칭됨
- 함허정은 강변 수림 경관과 조망 경관이 뛰어난 곳에 자리하여, 보이는 경관과 바라보는 경관의 구성이 돋보임. 아래로 굽이치는 강과 들, 멀리 서석산(무등산), 설산이 조망되는 등 다채로운 경관적 가치가 우수함
- 곡성 제호정 고택과 옛터를 중심으로 구암사 등 대상지의 가치 연계가 필요하며, 문헌 기록 등을 포함한 대상지 일원의 종합적인(인문, 건축, 식생, 지질 등) 자원조사를 통해 진정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3) \*\*\* 문화재위원

- ‘함허(涵虛)’는 주로 고대 시서화를 통해 나타나는 유교의 경물인식방식의 하나로서 곡성 함허정은 옥과현지(玉果縣誌, 1788), 호남읍지제2권옥과현읍지(湖南邑誌第2冊玉果縣邑誌, 1871)에 의해 건조물의 위치와 주변 경물의 구성요소가 상세히 기록되어 경관의 유상(遊賞)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함허정은 위치변경과 주변 환경 변화 및 개발로 인하여 과거의 함허정 현판들에 나타나고 있는 명승 경점의 물리적 요소들이 소멸 혹은 변형되어 경관적 가치가 유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군지촌과 제호당 고택이 이루는 경관과 공간의 역사적 가치가 우수하고 기록된 문헌에 근거한 함허정의 가치는 뛰어나다고 판단됨. 단, 현 함허정은 명확한 본래 위치를 추정하기 어려움
- <옥과현지>와 <옥과읍지>에서도 정자의 위치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재 위치에 신축된 함허정은 기존 추정 위치에서 벗어난 지점으로 문헌에 나타

난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5. 관련사진



곡성 함허정 일원 전경



곡성 함허정 일원과 주변 전경



함허정과 구암조대



곡성 함허정 일원 설경

## 자연유산(명승)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3.6.21.			
조 사 자	성 명	***	전공분야	전통조경
	소 속	*****	직위(직책)	교수
문화재 개 요	지정종별	역사문화명승		
	지정명칭	곡성 함허정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6번지 일원		
	지정 대상 및 범위 (면적)	해 당 문화재 (지정구역) 보 호 구 역	함허정 일원 916㎡	
	주요특징	-심광형(沈光亨, 1510-1550)이 제호정(齊湖亭) 고택을 짓고, 서편 동산에 지역 유림들과 풍류를 즐기 위해 건립한 누정으로서, 입지적 특징이 전통 정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창건시부터 중건과 현재까지의 중수사실이 기록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경관적 특징이 잘 보존되어 있는 호남을 대표하는 조선시대 전통누정이다.		
주요연혁 및 입지환경 검 토	연혁 및 유래	<p>-곡성 함허정은 조선중기 남원·해주 목사를 역임하고 병조참판에 오른 청송인 심안지의 손자 제호정 심광형(1510-1550)이 중종 38년(1543)에 후학을 위해 군지촌정사(현 곡성 제호정 고택)을 짓고, 그곳에서 100m 가량 이격된 서편 동산에 지역 유림들과 풍류를 즐기고자 건립한 누정이다.</p> <p>-이후 1636년 증손 심민각이 쇠락한 누정을 뒷동산 정상에서 현재의 동산 아래로 이건하였다. 다시 5대손인 심세익(호는 浩然亭)이 1686년 중수하면서 함허정(涵虛亭)을 호연정으로 개칭하였으나, 후에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치면서 창건시의 이름인 함허정으로 불리게 되었다.</p> <p>-함허정에 대한 기록은 옥과현지(1788)와 옥과읍지(1871)에 호연정(현 함허정)의 기록이 발견되고 있다.</p> <p>-현판은 조선후기 명필인 이삼만(1770-1847)이 썼으며, 기문과 시문 등 19개의 편액이 걸려있다.</p>		
	입지환경	<p>-함허정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6번지 일원의 제호정 고택(국가민속자료 155호)과 100m 정도 떨어진 동산의 중턱에 위치해 있다.</p> <p>-이곳은 섬진강이 반달꼴로 끼고 돌며 멀리 광주 무등산까지 조망되는 전경관(파노라마적 경관)이 펼쳐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p> <p>-함허정은 남동향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전면으로는 천마봉을 향하여 자리잡고, 후면으로는 섬진강과 평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p>		
보존관리 사항검토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창건 이후 현재의 자리로 이건되기 이전의 동산 정상에 원래의 위치에 안내판과 조망지점 정비 등을 통하여 두 누정간의 연계성과 활용성 제고		

		-진입로 정비와 원래의 위치에 대한 탐방로 정비, 그리고 주변 조망을 위한 수목가지치기 등의 정비, 전면 제월섬과의 경관정비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 및 활용계획의 수립이 필요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지정 가치	역사적 가치	-역사적 조영사실이 관련 사료와 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누정이다.
	학술적 가치	
	가치 평가 *해당 가치 부분 작성	-경관의 이중성 : 조선시대 누정의 경관 특징인 ‘보여지는 경관’과 ‘바라보는 경관’의 이중성이 뚜렷한 누정이다. 섬진강변의 구릉지 수립에 둘러싸여 멀리서는 드러나지 않는 은밀함을 가지고 있으나, 제호정 고택의 진입로 상에서 다소곳이 자리한 특징이 있으며, 정자 내에서 근경으로는 섬진강과 제월섬이, 중경으로 마산봉과 고리봉 등이 정자를 둘러 감싸고 있으며, 멀리 무등산과 설산이 조망되는 특징을 보여 준다.
	경관적 가치	-제호정 고택과의 맥락적 연계성 : 현 민속자료로 지정된 제호정 고택과의 역사적, 조영적 특징이 연계되는 특징이 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살림집과 인접한 누정이 함께 보존된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상호간의 역사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경관요소 : 누정을 둘러싼 참나무와 소나무의 고목과 동산의 수립 경관, 조영자의 행위적 사실과 관련된 구암조대와 용암의 거석경관, 군촌마을의 문화경관, 섬진강과 제호섬의 수경관과 주변산과 원산의 산악경관 등이 인공구조물의 조망 저해없이 보존되어 있다.
	참고 사항	기 존 문화재 와의 차별성 원 형 보존성
	지정등급	
	지정기준	

	<p>종합의견</p>	<p>-함허정은 강변의 구릉지와 수림과 어우러진 풍광이 좋으며, 누정의 아래로는 섬진강이 굽이쳐 흐르고, 수변에 조영자의 누정활동과 관련된 거암이 자리하며 주변의 산을 조망하기에 최적의 장소에 자리하고 있다.</p> <p>-입지와 조망의 가치적 측면에서 호남을 대표하는 누정으로서 손색이 없으며, 덧붙여 제호정 고택과의 연계성이 보다 뚜렷한 특징으로 부각될 수 있다.</p>
--	-------------	---

- 첨부서류 1. 명승 지정가치 평가표 1부.  
 2. 관련 세부사진 일체 1부. 끝.

년 월 일

조 사 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명승 지정가치 평가표(곡성 함허정)

대 분류	기준	문 항	지정가치 평가지표	매 우 수 (I)	우 수 (II)	양 호 (III)	미 흡 (IV)	매 우 흡 (V)	해 당 사 항 無
1. 역 사 적  가 치 지 표	가 (생활 민속성)	①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 의미가 있는지	●					
		②	각 시대·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을 잘 보여주는 곳인지	●					
				최고등급 : I 등급					
	나 (인물· 사건 관련성)	①	종교·사상·전설·사건·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가 풍부하여 보존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				
			최고등급 : II 등급						
2. 학 술 적  가 치 지 표	다 (희소성· 상징성)	①	자연물·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연구할 가치가 있는지			●			
		②	지역 고유의 특성이 잘 드러나거나 상징성이 강한 곳인지		●				
				최고등급 : II 등급					
	라 (완전성· 의도성)	①	대상의 고유한 성격을 알 수 있는 구성요소가 잘 남아있고, 위치·구성·형식 등이 명확한지		●				
②		조경의 구성원리·유래·발달 과정 등 관련 보존연구할 가치가 있는지				●			
			최고등급 : II 등급						
3. 경 관 적  가 치	마 (전통성· 심미성)	①	우리나라 혹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나고, 경관적 의미를 지니는지			●			
		②	자연 속에 구현한 경관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잘 남아있는지	●					
				최고등급 : II 등급					
	바 (조화미· 조망성)	①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어울림이 뛰어나 총체적 미를 형성하고 있는지	●					
②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자연현상·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						

대분류	기준	문항	지정가치 평가지표	매우우수 (I)	우수 (II)	양호 (III)	미흡 (IV)	매우미흡 (V)	해당사항無
지표			최적의 장소인지						
				최고등급 : I 등급					
4. 국제적 가치 지표	사 (협약에 따른 자연유산)	①	<p>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 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지</p> <p>㉠ 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그 집단으로 구성된 자연적 조형물로서 미학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 및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또는 보존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위협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를 이루는 것.            ㉢ 자연유적 또는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p>						
				최고등급 : 등급					
평가	참고사항	:							

종합 평가 결과 (추후 작성 가능)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준 제시)	<p>※ 3등급 이상 중 높은 등급 우선으로 작성한다.</p> <p>▶ 대분류( 3 ) - 지정기준( 바-① ) - ( I ) 등급            ▶ 대분류( ) - 지정기준( ) - ( ) 등급            ▶ 대분류( ) - 지정기준( ) - ( ) 등급</p>	
평가결과 종합	지정등급	I 등급
	지정기준	3-바 ①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어울림이 뛰어나 총체적 미를 형성하고 있는 곳

## 자연유산(명승)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3.6.21.			
조 사 자	성 명	**	전공분야	활용, 콘텐츠
	소 속	*****	직위(직책)	**
문화재 개 요	지정종별	역사문화명승		
	지정명칭	곡성 함허정 일원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6번지 일원		
	지정 대상 및 범위 (면적)	해 당 문화재 (지정구역)	함허정 일원 916㎡	
		보 호 구 역	-	
	주요특징	곡성 순자강변에 자리한 함허정은 곡성 제호정 고택과 일체성을 지닌 정자로, 조영 이력이 비교적 상세히 전해지며 다채로운 경관적 특성이 우수함		
주요연혁 및 입지환경 검 토	연혁 및 유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성 함허정(涵虛亭)은 심광형(沈光亨, 1510-1550)이 군촌(涪村, 현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에 1535년 처소와 학당을 겸비한 사랑채인 군지촌정사(涪池村精舍)를 짓고, 8년 뒤인 1543년(중종 38년) 인근 순자강(鶉子江, 섬진강의 지역 별칭)변 동산에 장수지소(藏修之所)로 건립한 정자임</li> <li>○ 함허정의 조영자 심광형(호 霽湖亭)은 남원부사와 해주목사를 역임하고 병조참판을 지낸 심안지의 손자로 광양·곡성 등 인근 고을 향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훈도를 지내며 후학양성을 한 당대 문사(文士)임</li> <li>○ 함허정이 자리한 제월(霽月)은 맑게 갠 하늘의 밝은 달을 뜻하고 일대를 반달꼴로 둘러싸고 강이 흘러 붙여진 지명이며, 앞의 강은 호수같다 하여 제호(霽湖)라 칭함. 군지촌의 촌명은 자신의 낙향을 중국 순임금의 분주(分州)에 비견하여 자손의 번영을 염원한 것이라 전해짐</li> <li>○ 비위둠의 미학을 지닌 ‘함허(涵虛)’란 정명은 당나라 맹호연(689-740)이 동정호를 바라보며 지은 시구 “八月湖水平 涵虛混太清”에서 인용하였다 하나, 최초 정명에 관한 이견으로 제호정으로 칭한 기록도 전해짐</li> <li>○ 일대는 풍수상 거북이 용궁으로 입수하는 형국이라 하며, 거북의 등위에 함허정이 자리하고 절벽 아래엔 용소(龍沼)와 하중암도인 구암(龜巖)이 있음. 구암은 낚시를 드리우기 좋은 자리라 하여 구암조대(龜巖釣臺)라 칭해지며, 용암(龍巖) 전설이 내려오고 있음</li> <li>○ 1636년 현 위치로 심광현의 증손 심민각(호는 구암, 1589-1643)이 함허정을 이건하고, 이후 1686년 5대손인 심세익(호 호연정)이 증수하며 호연정(浩然亭)으로 개칭하였다고 전해짐. 제호정·세연정 등으로도 칭한 기록이 전해지며 19세기 함허정으로 복칭되었고 지금의 정자는 1980년</li> </ul>		

		<p>중수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허정은 앞면 4칸 옆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에 삼면이 트인 마루 1칸과 방 2칸 반의 규모로, 바닥을 한 단 높인 쪽마루 반 칸과 함실아궁이로 구성되었음</li> <li>○ 함허정은 풍광이 수려하여 관찰사들이 봄철 향음례를 베풀며 풍류를 즐겼고 문인들이 교류한 장소로 전해지며, 조선 후기 명필 창암 이삼만(1770-1847)이 쓴 현판과 기문 1점 시문 18점의 편액이 걸려있음</li> <li>○ 함허정은 순자강오곡(鶡子江五曲)의 누정 중 제4곡의 경물로 전해지며, 제2곡 합강정 제3곡의 무진정과 『비변사인방지도, 18세기 중엽』, 『옥과현지(玉果縣誌), 1788』 등에 호연정으로 묘사되어 있음</li> <li>○ 함허정은 옥과현감을 지낸 위백규(1727-1798), 최원(1788~?)과 신위(1769-1845), 『옥과군읍지(玉果郡邑誌), 1899』, 『사현실기(四賢實記)』, 『고종시(高宗時)』 등 문헌 및 편액 제영시에 관련 기록이 전해짐</li> <li>○ 곡성 함허정은 1988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살림집과 군지촌정사는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 ‘곡성 제호정 고택’으로 지정됨</li> </ul>	
	입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허정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제월리 섬진강에 위치하며, 휘돌아 나는 강을 굽어보고 설산과 서석산(무등산)이 다채롭게 조망되는 수림 풍광이 수려한 동산에 자리함</li> <li>○ 함허정 아래 섬진강 제월 습지 내 하중도가 정비되면서 제월섬으로 명해지고 생태체험장과 둘레길이 연결되어 있으며 주변에 한옥펜션이 있음</li> <li>○ 국가민속문화재인 곡성 제호정 고택과 함허정 조영자를 포함한 청송심씨 사현인 심광형, 심민각, 심선, 심민겸의 위패를 배향한 구암사(龜巖祠)가 인근에 자리함</li> </ul>	
보존관리 사항검토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허정의 최초 건립지인 옛터로 추정되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나, 안내 체계 보완, 조망 및 경관을 위한 수목 정비 및 탐방로와 진입로 정비 등 경관 보완이 필요함</li> <li>○ 함허정은 제호정 고택과 일체성을 지닌 정자로 문헌 기록 등을 포함한 대상지 일원의 종합적인(인문, 건축, 식생, 지질 등) 자원조사를 통해 진정성을 보완, 곡성 제호정 고택과 옛터, 구암사 등 대상지의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함</li> </ul>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명승 지정 후 6개월 이내 수립	
지정 가치	가치 평가 *해당 가치 부분 작성	역사적 가치	제월당 고택과 연계되어 당대 지역의 특별한 장소성을 지닌 곳으로, 조영 관련 기록과 문인들의 교류 흔적이 전해지는 등 가치가 있음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순자강변 수림 경관과 조망 경관이 뛰어난 곳에 자리하여, 보이는 경관과 바라보는 경관의 구성이 돋보임. 아래로 굽이치는 강과 들, 멀리 서석산(무등산), 설산의 전경이 다양하게 펼쳐짐. 함허정에서 조망되는 순자강을 ‘함허순자’라 일컫는 등 경관적 가치가 우수함	

참고 사항	기 존 문화재와의 차별성	곡성 제호정 고택과 일체성을 지니며 조영 이력과 조영 의도가 전해지는 정자로 다채로운 경관 특징이 차별화됨
	원 형 보존성	함허정은 청송심씨 가문에서 전승하며 관리해온 상태로 대상지 일원의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나, 옛터 주변의 훼손이 진행된 상태로 면밀한 조사 및 보전 관리가 필요함
지정등급		
지정기준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위치한 함허정(涵虛亭)은, 1535년 심광형(1510-1550)이 처소와 학당을 겸비한 사랑채인 군지촌정사(涪池村精舍)를 지은 뒤, 1543년에 인근 순자강변 동산에 건립한 정자임</li> <li>○ 함허정이 자리한 제월(霽月)은 맑게 갠 하늘의 밝은 달을 뜻하고 반달 꼴로 둘러싸고 강이 흘러 붙여진 지명으로, 함허정 일대는 풍수상 거북이 용궁으로 입수하는 형국의 터로 알려짐</li> <li>○ 함허정은 제월당 고택과 연계되는 청송심씨 일가의 세거지로, 관련 조영 기록이 전해지고 있음. 지금의 함허정은 옛터 아래 현 위치로 1636년 이건 되었다고 전해지며, 호연정·제호정·세연정 등 다양하게 불리다 19세기에 이르러 함허정으로 복칭됨</li> <li>○ 함허정은 강변 수림 경관과 조망 경관이 뛰어난 곳에 자리하여, 보이는 경관과 바라보는 경관의 구성이 돋보임. 아래로 굽이치는 강과 들, 멀리 서석산(무등산), 설산이 조망되는 등 다채로운 경관적 가치가 우수함</li> <li>○ 곡성 제호정 고택과 원터를 중심으로 구암사 등 대상지의 가치 연계가 필요하며, 문헌 기록 등을 포함한 대상지 일원의 종합적인(인문, 건축, 식생, 지질 등) 자원조사를 통해 진정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li> </ul>

첨부서류 1. 명승 지정가치 평가표 1부.

2. 관련 세부사진 일체 1부. 끝.

2023년 9 월 일

조 사 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명승 지정가치 평가표(곡성 함허정)

대 분류	기준	문 항	지정가치 평가지표	매 우 수 (I)	우 수 (II)	양 호 (III)	미 흡 (IV)	매 우 흡 (V)	해 당 사 항 無
1. 역 사 적  가 치 지 표	가 (생활 민속성)	①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 의미가 있는지		○				
		②	각 시대·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을 잘 보여주는 곳인지	○					
				최고등급 :    등급					
	나 (인물· 사건 관련성)	①	종교·사상·전설·사건·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가 풍부하여 보존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				
			최고등급 :    등급						
2. 학 술 적  가 치 지 표	다 (희소성· 상징성)	①	자연물·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연구할 가치가 있는지			○			
		②	지역 고유의 특성이 잘 드러나거나 상징성이 강한 곳인지		○				
				최고등급 :    등급					
	라 (완전성· 의도성)	①	대상의 고유한 성격을 알 수 있는 구성요소가 잘 남아있고, 위치·구성·형식 등이 명확한지		○				
②		조경의 구성원리·유래·발달 과정 등 관련 보존연구할 가치가 있는지				○			
			최고등급 :    등급						
3. 경 관 적  가 치	마 (전통성· 심미성)	①	우리나라 혹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나고, 경관적 의미를 지니는지		○				
		②	자연 속에 구현한 경관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잘 남아있는지		○				
				최고등급 :    등급					
	바 (조화미· 조망성)	①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어울림이 뛰어나 총체적 미를 형성하고 있는지	○					
②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자연현상·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						

대분류	기준	문항	지정가치 평가지표	매우우수	우수	양호	미흡	매우미흡	해당사항無
				(I)	(II)	(III)	(IV)	(V)	
지표			최적의 장소인지						
				최고등급 : 등급					
4. 국제적 가치 지표	사 (협약에 따른 자연유산)	①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 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 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그 집단으로 구성된 자연적 조형물로서 미학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 및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또는 보존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위협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를 이루는 것.            ㉢ 자연유적 또는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div>						
			최고등급 : 등급						
평가 참고사항			:						

종합 평가 결과 (추후 작성 가능)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준 제시)	<p>※ 3등급 이상 중 높은 등급 우선으로 작성한다.</p> <p>▶ 대분류( 3 ) - 지정기준( 바-① ) - ( I ) 등급</p> <p>▶ 대분류( 3 ) - 지정기준( 바- ) - ( ) 등급</p> <p>▶ 대분류( ) - 지정기준( ) - ( ) 등급</p>	
평가결과 종합	지정등급	I 등급
	지정기준	3-바①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어울림이 뛰어나 총체적 미를 형성하고 있는곳

## 자연유산(명승)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23.6.21.			
조 사 자	성 명	***	전공분야	조경
	소 속	*****	직위(직책)	조교수
문화재 개 요	지정종별			
	지정명칭		곡성 함허정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6번지 일원	
	지정 대상 및 범위 (면적)	해 당 문화재 (지정구역)  보 호 구 역	함허정 일원 916㎡	
	주요특징			
주요연혁 및 입지환경 검 토	연혁 및 유래		<p>四賢實記(1799), 玉果縣誌(1788), 湖南邑誌第2冊玉果縣邑誌(1871)에 근거하면 함허정은 조선중기 심안지의 손자 제호정 심광형이 건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가인 제호정 고택을 건조한 후 인근에 축조한 정자로서 건조물의 이전과 여러번의 중수를 통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옥과현지에 기록된 호연정이 위치와 규모 및 건조시기 등을 고려할 때 함허정과 동일 정자일 것으로 추정됨.</p>	
	입지환경		<p>현재의 함허정은 본래의 함허정 위치와 상이한 공간으로 구릉의 종턱에 위치하고 있고 전면으로 섬진강이 흐르고 있음. 옥과현지(1700년대)와 옥과읍지(1800년대)에 호연정이 하천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음.</p>	
보존관리 사항검토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지정 가치	가 치 평 가 *해당 가치 부분 작성	역사적 가 치	<p>군지촌과 제호당 고택이 이루는 경관과 공간의 역사적 가치가 우수하고 기록된 문헌에 근거한 함허정의 가치는 뛰어나다고 판단됨. 단 현 함허정은 명확한 본래 위치를 추정하기 어려움, &lt;옥과현지&gt;와 &lt;옥과읍지&gt;에서도 정자의 위치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재 위치에 신축된 함허정은 기존 추정 위치에서 벗어난 지점으로 문헌에 나타난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p>	
		학술적 가 치	<p>약 400년의 역사를 지닌 제호정 고택을 중심으로 한 종택의 계승과 변화를 알 수 있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조선시대 건조물의 변화 및</p>	

		계승에 대한 중요한 자료라 판단됨
	경관적 가치	<p>涵虛는 주로 고대 시서화를 통해 나타나는 유교의 경물인식방식의 하나로써 곡성 함허정은 玉果縣誌(1788), 湖南邑誌第2冊玉果縣邑誌(1871)에 의해 건조물의 위치와 주변 경물의 구성요소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경관의 유상(遊賞)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함허정은 위치변경과 주변 환경의 변화 및 개발로 인하여 과거의 함허정 현판들에 나타나고 있는 명승 경점의 물리적 요소들이 소멸 혹은 변형되어 경관적 가치가 유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p> <p>在縣東二十里君湖之上前臨大江平沙漠漠後負高山立石轟轟亭下有石狀如龜大如牛露出水面 ... 중략.... 題詩有三兄弟一室高義稀人間之句.</p>
참고 사항	기 존 문화재와의 차별성	
	원 형 보존성	
	지정등급	
	지정기준	
	종합의견	<p>- 涵虛는 주로 고대 시서화를 통해 나타나는 유교의 경물인식방식의 하나로서 곡성 함허정은 玉果縣誌(1788), 湖南邑誌第2冊玉果縣邑誌(1871)에 의해 건조물의 위치와 주변 경물의 구성요소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경관의 유상(遊賞)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함허정은 위치변경과 주변 환경의 변화 및 개발로 인하여 과거의 함허정 현판들에 나타나고 있는 명승 경점의 물리적 요소들이 소멸 혹은 변형되어 경관적 가치가 유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p> <p>- 군지촌과 제호당 고택이 이루는 경관과 공간의 역사적 가치가 우수하고 기록된 문헌에 근거한 함허정의 가치는 뛰어나다고 판단됨. 단, 현 함허정은 명확한 본래 위치를 추정하기 어려움, &lt;옥과현지&gt;와 &lt;옥과읍지&gt;에서도 정자의 위치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현재 위치에 신축된 함허정은 기존 추정 위치에서 벗어난 지점으로 문헌에 나타난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p>

- 첨부서류 1. 명승 지정가치 평가표 1부.  
2. 관련 세부사진 일체 1부. 끝.

2023년 09 월 20 일

조 사 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명승 지정가치 평가표(곡성 함허정)

대 분류	기준	문 항	지정가치 평가지표	매 우 수 (I)	우 수 (II)	양 호 (III)	미 흡 (IV)	매 우 미 흡 (V)	해 당 사 항 無
1. 역 사 적  가 치 지 표	가 (생활 민속성)	①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 의미가 있는지						
		②	각 시대·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을 잘 보여주는 곳인지						
				최고등급 :    등급					
	나 (인물· 사건 관련성)	①	종교·사상·전설·사건·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가 풍부하여 보존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최고등급 :    등급						
2. 학 술 적  가 치 지 표	다 (희소성· 상징성)	①	자연물·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연구할 가치가 있는지						
		②	지역 고유의 특성이 잘 드러나거나 상징성이 강한 곳인지						
				최고등급 :    등급					
	라 (완전성· 의도성)	①	대상의 고유한 성격을 알 수 있는 구성요소가 잘 남아있고, 위치·구성·형식 등이 명확한지						
②		조경의 구성원리·유래·발달 과정 등 관련 보존연구할 가치가 있는지							
			최고등급 :    등급						
3. 경 관 적  가 치	마 (전통성· 심미성)	①	우리나라 혹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나고, 경관적 의미를 지니는지						
		②	자연 속에 구현한 경관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잘 남아있는지						
				최고등급 :    등급					
	바 (조화미· 조망성)	①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간의 어울림이 뛰어나 총체적 미를 형성하고 있는지						
②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자연현상·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대분류	기준	문항	지정가치 평가지표	매우우수	우수	양호	미흡	매우미흡	해당사항無
				(I)	(II)	(III)	(IV)	(V)	
지표			최적의 장소인지						
				최고등급 : 등급					
4. 국제적 가치 지표	사 (협약에 따른 자연유산)	①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 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 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그 집단으로 구성된 자연적 조형물로서 미학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 및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또는 보존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위협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를 이루는 것.            ㉢ 자연유적 또는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div>						
			최고등급 : 등급						
평가 참고사항			:						

종합 평가 결과 (추후 작성 가능)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준 제시)	※ 3등급 이상 중 높은 등급 우선으로 작성한다. ▶ 대분류( ) - 지정기준( ) - ( ) 등급 ▶ 대분류( ) - 지정기준( ) - ( ) 등급 ▶ 대분류( ) - 지정기준( ) - ( ) 등급
평가결과 종합	지정등급
	지정기준

## 10.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잠수함 운항 관련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에 따른 향후 조치 등 검토

### 가. 제안사항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잠수함 운항에 따른 무허가 행위 고발 조치와 관련,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에 따른 향후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잠수함 운항에 따른 무허가 행위 고발 조치와 관련,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에 따른 향후 조치 등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2023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23.2.22.) 검토 결과에 따른 고발 조치 관련 후속 검토 사항임.
- 추진경과
  - 1988.12. : 서귀포 잠수함 관광 시작
  - 2001.09.19. : 잠수정 운항 및 기 설치시설물 운영(최초 허가)
  - 2020.11.25. :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내 잠수정 운항 및 시설물 운영 현상 변경 허가(2021~2023)
  - 2022.06.08. : 연산호 군락 훼손 관련 언론보도(KBS, MBC, SBS 등)
  - 2022.06.17. : 민·관전문가 합동 현지조사(문화재청·해수부·국회·녹색연합 등)
  - 2022.07.13.~07.16. : 추가 현지조사(절대보존지역 훼손 현황 확인 등)
  - 2022.08.09. :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지형분석 등을 통한 정확한 훼손면적 및 원인규명 등 추가조사 필요 의견 제시)
  - 2022.10.04.~12.02. : 추가 정밀조사
  - 2023.02.22. : 문화재위원회 검토보고(조건부가결)
    - (허가조건 위반 여부) 운항에 따른 마찰 최소화를 위해 세부적인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여 추후 보고할 것
    - (무허가 행위 여부) 절대보존지역(F구간) 훼손 등 무허가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 관리단체를 통해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
  - 2023.03.22. : 무단 현상변경 고발 조치(제주세계유산본부→서귀포해양경찰서)
  - 2023.06.12. :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
  - 2023.08. : 보완조사 지시(제주지방검찰청→서귀포해양경찰서)
  - 2023.08.25. : 잠수함 운항에 따른 마찰 최소화 방안 제출(대국해저관광→문화재청)

- 2023.09.14. : 수사결과 및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서귀포해양경찰서→세계유산본부(9.14.)→문화재청(9.22., 10.11))
- 2023.10.11. : 수사심의 신청 요청(문화재청→세계유산본부)
- 2023.10.17. :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백운기 문화재위원, 좌종현 교수, 황성진 교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조인영 박사, 국립문화재연구원 강정훈 연구관, 관리단체(제주세계유산본부) 담당자 등)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2) 대상문화재 :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대포코지 2499-1 외
- 지정일 : 2004.12.13.

(3) 주요 검토내용 :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에 따른 행정처분 및 연산호 군락 보호방안 검토 등

① 수사 결과 및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 사항

○ 통보기관 : \*\*\*\*\* (→\*\*\*\*\* (9.14.) →\*\*\*\*\* (9.22./10.11))

○ 통보내용 : 수사 결과\* 및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

\* 검찰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문화재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위반사항 적시 및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근거: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② 법률자문 결과

○ 사법기관의 형사상 처분 결과와 별개로 행정청의 행정처분 가능 여부

- 자문 결과 : 행정처분 가능

- (자문1) 행정형벌의 구성요건과 행정처분의 처분요건은 상이하므로 동일 행위가 행정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처분요건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 가능함
- (자문2)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기판력이나 문화재청에 대한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바, 행정처분 가능함

○ 문화재 보호와 행정법규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청으로서 취할 수 있는(또는 취해야 하는) 행정처분 수단 여부

- 자문 결과 : 행정명령만 가능 / 허가취소 또는 행정명령 모두 가능

- (자문1) 허가조건(ABDE구간 운항)은 허가범위이며,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허가조건 위반이 아닌 무허가행위임. 무허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명령만 가능함 (허가사항·허가조건 위반 ≠ 무허가행위)
- (자문2) 문화재보호법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의 취소의 요건에 해당되며, 문화재보호법 제42조(행정명령)의 행정명령도 가능함

- 행정처분의 수단의 우선순위 또는 적정성
  - 자문 결과 : 행정명령(원상회복) / 행정명령 검토 후 필요시 허가취소 검토

- (자문1) 행정명령이 유일한 처분이며, 원상회복 명령이 적절한 수단임
- (자문2) 행정명령으로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 달성이 가능한지 검토 후, 공익 달성이 부족하면 허가의 취소 처분이 필요함

③ 행정처분 검토(안)

- (제1안) 행정명령(원상회복) 처분
  - (장점) 법률자문 결과(허가취소 시 다툼의 소지)를 반영하고, 소송 진행의 가능성 약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 감소
  - (단점)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적정 조치인지 외부의 지적이 예상되며, 훼손된 문화재의 실질적인 원상회복 방안 마련은 곤란
- (제2안) 허가의 취소 처분
  - (장점) 강력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이며, 향후 외부(국회·언론·환경단체 등) 지적에 대한 행정부담 감소
  - (단점) 법률자문 결과 다툼의 소지가 있는 바, 소송 제기 시 패소 가능성 있고, 집행정지신청 예상으로 인한 취소의 실효성 의문

라. 검토의견(\*\*\*\*\*)

- 법률자문 결과, 무허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수단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일부 다툼의 소지가 있으나, 행정처분 수단으로서 행정명령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처분에 따른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의 달성과 함께 행정처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명령 처분을 우선 검토 후 허가의 취소 처분도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행정명령 처분 검토 시 처분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 문화재위원, \*\*\* 교수, \*\*\* 교수, \*\*\*\*\* \*\*\* 박사, \*\*\*\*\* \*\*\* 연구관/ 2023. 10. 17.>

- 문섬 암반의 특성 상 원상회복 기술을 적용한 인위적인 원상복구 방안은 무리가 있음(원상복구에 따른 추가 훼손 우려)
- 다만, 운항구역이 조정된다면 기존 무허가 훼손구역(F구역)에 대한 원상복구 허가조건 제시는 필요함

- 연산호 유성생식을 통한 원상회복 기술은 개발되었으나, 생존율이 낮고 고비용 및 회복에 장기간 소요로 인해 효과성은 불투명함
- 또한, 잠수정 업체가 자체 원상복구 하는 방안은 현재 모니터링 용역을 자체 수행하는 문제와 동일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
- 따라서, 원상복구에 따른 추가 훼손 방지 위해 관리단체·환경단체 입회하에 원상복구 실시 주문이 필요함
- 모니터링은 운항구역 뿐만 아니라 미운항 구역을 포함한 전체구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관(해양생물자원관 등) 및 환경단체 입회 또는 감시 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기준·항목은 해양생태전문가 그룹을 통해 검증을 받은 후 설정 (훼손구역에 대한 그리드 설정 등)
- 충돌 기록장치 개발은 단기간 개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허가조건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다만, 기록장치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는 있음
  - 잠수정에 GPS 부착 통해 좌표 측정, 운항위치 기록토록 허가조건 제시 필요함
  - 현재의 운항지도 부정확으로 인해 충돌 기록장치 개발 연구 시 운항지도 재작성에 대한 허가조건 명시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정 운항에 따른 훼손이 불가피하다면 연산호 회복을 위해 잠수정 운항 불허 또는 운항구역 조정 등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

## (2) 지자체(\*\*\*\*\* \*\*\*) 의견(2023. 10. 24.)

- 서귀포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 (\*)\*\*\*\*\*은 45명을 고용하고 있는 제주의 중상위 관광업체로 서귀포 지역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나, 관광잠수함을 운영하는 과정에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및 문섬 암반을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록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이 있었지만, 상당 기간 동안 문화재 훼손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음
- 따라서 향후 운항 허가기간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절대보호구역 구간 운항 금지 준수 및 암반과 연산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운항구역도 정밀 작성 등)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운항사에서 제출하는 용역보고서에 대하여 제주도를 포함하여 관계전문가들이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감리 제도 도입 등)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조건부 가결 13명

---

# 보 고 사 항

---

## 11.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107건)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현상 변경 허가	1	동물	천연기념물 참매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매사냥을 위한 참매 포획 및 사육 - 허가내용 : 참매 포획 및 사육 - 개체수 : 1개체 - 허가장소 : 경기도 포천시 일원 야산 ○ 허가기간 : 2023.10.1. ~ 2024.3.31.	<조건부 허가>
	2	동물	천연기념물 따오기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따오기 야생방사 - 허가내용 : 따오기 자연방사(위치추적기 부착) - 개체수 : 20개체 - 허가장소 : 창녕군 우포따오기복원센터 ○ 허가기간 : 2023.10.05. ~ 2023.10.11.	<허가>
	3	동물	천연기념물 수달	○ 신청인 : **** ○ 허가사항 - 사업명 : 수달 폐사체 매장 - 허가내용 : 수달 매장 - 개체수 : 1개체 ○ 허가기간 : 2023.9.21. ~ 2023.10.05.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4	동물	천연기념물 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수달 폐사체 소각</li> <li>- 허가내용 : 수달 소각</li> <li>- 개체수 : 2개체</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9.21. ~ 2023.10.05.</li> </ul>	<허가>
	5	동물	천연기념물 참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매사냥을 위한 참매 포획, 사육</li> <li>- 불허사유 : 참매의 포획과 사육은 매사냥 전승을 위해 이수자 및 보유자에 한해 일부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신청인은 이수자 및 보유자가 아님</li> </ul> </li> </ul>	<불허>
	6	동물	천연기념물 참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매사냥을 위한 참매 포획 및 사육</li> <li>- 허가내용 : 참매 포획 및 사육</li> <li>- 개체수 : 1개체</li> <li>- 허가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 일원</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 ~ 2024.3.31.</li> </ul>	<조건부 허가>
	7	동물	천연기념물 참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매사냥을 위한 참매 포획 및 사육</li> <li>- 허가내용 : 참매 포획 및 사육</li> <li>- 개체수 : 1개체</li> <li>- 허가장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일원</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 ~ 2024.3.31.</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8	동물	천연기념물 참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매사냥을 위한 참매 포획 및 사육</li> <li>- 허가내용 : 참매 포획 및 사육</li> <li>- 개체수 : 1개체</li> <li>- 허가장소 : 강원도 강릉시 야산 일원</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 ~ 2024.3.31.</li> </ul>	<조건부 허가>
	9	동물	천연기념물 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수달 폐사체 소각</li> <li>- 허가내용 : 수달 소각</li> <li>- 개체수 : 1개체</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05. ~ 2023.10.19.</li> </ul>	<허가>
	10	동물	천연기념물 참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참매 폐사체 소각</li> <li>- 허가내용 : 참매 소각</li> <li>- 개체수 : 1개체</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05. ~ 2023.10.19.</li> </ul>	<허가>
	11	동물	천연기념물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원앙 폐사체 소각</li> <li>- 허가내용 : 원앙 소각</li> <li>- 개체수 : 1개체</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04. ~ 2023.10.18.</li> </ul>	<허가>
	12	동물	천연기념물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전시목적 사육</li> <li>- 허가내용 : 원앙 사육</li> <li>- 개체수 : 2개체(서울어린이대공원 교류개체)</li> <li>- 허가장소 : 광주우치공원</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04. ~ 2028.10.03.</li> </ul>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13	동물	천연기념물 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수달 학술연구를 위한 시료채취</li> <li>- 허가내용 : 수달 털(모근) 채취</li> <li>- 개체수 : 7개체</li> <li>- 허가장소 : 서울대공원</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04. ~ 2023.11.20.</li> </ul>	<허가>
	14	동물	천연기념물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천연기념물 원앙 사육</li> <li>- 허가내용 : 원앙 사육</li> <li>- 개체수 : 12개체(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li> <li>- 허가장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상삼리 326</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04. ~ 2028.10.03.</li> </ul>	<허가>
	15	동물	천연기념물 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수달 폐사체 소각</li> <li>- 허가내용 : 수달 소각</li> <li>- 개체수 : 1개체</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3.10.24.</li> </ul>	<허가>
	16	동물	천연기념물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AI(조류인플루엔자)예찰을 위한 포획</li> <li>- 허가내용 : 원앙 포획 및 시료채취(혈액, 인후두, 총배설강) 후 방사</li> <li>- 개체수 : 50개체(포획개체수 50, 위치추적기 부착 10)</li> <li>- 허가장소 : 이천시 일원</li> <li>- 허가조건 : 포획 및 시료채취, 부착 후 즉시 방사 전체(허가 받은 전 지역) 포획수는 300마리 미만으로 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4.04.30.</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17	동물	천연기념물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AI(조류인플루엔자)예찰을 위한 포획</li> <li>- 허가내용 : 원앙 포획 및 시료채취 (혈액, 인후두, 총배설강) 후 방사</li> <li>- 개체수 : 50개체(포획개체수 50, 위치추적기 부착 10)</li> <li>- 허가장소 : 천안시 일원</li> <li>- 허가조건 : 포획 및 시료채취, 부착 후 즉시 방사 전체(허가 받은 전 지역) 포획수는 300마리 미만으로 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4.04.30.</li> </ul>	<조건부 허가>
	18	동물	천연기념물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AI(조류인플루엔자)예찰을 위한 포획</li> <li>- 허가내용 : 원앙 포획 및 시료채취 (혈액, 인후두, 총배설강) 후 방사</li> <li>- 개체수 : 50개체(포획개체수 50, 위치추적기 부착 10)</li> <li>- 허가장소 : 화성시 일원</li> <li>- 허가조건 : 포획 및 시료채취, 부착 후 즉시 방사 전체(허가 받은 전 지역) 포획수는 300마리 미만으로 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4.04.30.</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19	동물	천연기념물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AI(조류인플루엔자)예찰을 위한 포획</li> <li>- 허가내용 : 원앙 포획 및 시료채취 (혈액, 인후두, 총배설강) 후 방사</li> <li>- 개체수 : 50개체(포획개체수 50, 위치추적기 부착 10)</li> <li>- 허가장소 : 논산시 일원</li> <li>- 허가조건 : 포획 및 시료채취, 부착 후 즉시 방사 전체(허가 받은 전 지역) 포획수는 300마리 미만으로 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4.04.30.</li> </ul>	<조건부 허가>
	20	동물	천연기념물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AI(조류인플루엔자)예찰을 위한 포획</li> <li>- 허가내용 : 원앙 포획 및 시료채취 (혈액, 인후두, 총배설강) 후 방사</li> <li>- 개체수 : 50개체(포획개체수 50, 위치추적기 부착 10)</li> <li>- 허가장소 : 청주시 일원</li> <li>- 허가조건 : 포획 및 시료채취, 부착 후 즉시 방사 전체(허가 받은 전 지역) 포획수는 300마리 미만으로 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4.04.30.</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21	동물	천연기념물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AI(조류인플루엔자)예찰을 위한 포획</li> <li>- 허가내용 : 원앙 포획 및 시료채취 (혈액, 인후두, 총배설강) 후 방사</li> <li>- 개체수 : 50개체(포획개체수 50, 위치추적기 부착 10)</li> <li>- 허가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li> <li>- 허가조건 : 포획 및 시료채취, 부착 후 즉시 방사 전체(허가 받은 전 지역) 포획수는 300마리 미만으로 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4.04.30.</li> </ul>	<조건부 허가>
	22	동물	천연기념물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AI(조류인플루엔자)예찰을 위한 포획</li> <li>- 허가내용 : 원앙 포획 및 시료채취 (혈액, 인후두, 총배설강) 후 방사</li> <li>- 개체수 : 50개체(포획개체수 50, 위치추적기 부착 10)</li> <li>- 허가장소 : 제천시 일원</li> <li>- 허가조건 : 포획 및 시료채취, 부착 후 즉시 방사 전체(허가 받은 전 지역) 포획수는 300마리 미만으로 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4.04.30.</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23	동물	천연기념물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AI(조류인플루엔자)예찰을 위한 포획</li> <li>- 허가내용 : 원앙 포획 및 시료채취 (혈액, 인후두, 총배설강) 후 방사</li> <li>- 개체수 : 50개체(포획개체수 50, 위치추적기 부착 10)</li> <li>- 허가장소 : 보은군 일원</li> <li>- 허가조건 : 포획 및 시료채취, 부착 후 즉시 방사 전체(허가 받은 전 지역) 포획수는 300마리 미만으로 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4.04.30.</li> </ul>	<조건부 허가>
	24	동물	천연기념물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AI(조류인플루엔자)예찰을 위한 포획</li> <li>- 허가내용 : 원앙 포획 및 시료채취 (혈액, 인후두, 총배설강) 후 방사</li> <li>- 개체수 : 50개체(포획개체수 50, 위치추적기 부착 10)</li> <li>- 허가장소 : 아산시 일원</li> <li>- 허가조건 : 포획 및 시료채취, 부착 후 즉시 방사 전체(허가 받은 전 지역) 포획수는 300마리 미만으로 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4.04.30.</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25	동물	천연기념물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AI(조류인플루엔자)예찰을 위한 포획</li> <li>- 허가내용 : 원앙 포획 및 시료채취 (혈액, 인후두, 총배설강) 후 방사</li> <li>- 개체수 : 50개체(포획개체수 50, 위치추적기 부착 10)</li> <li>- 허가장소 : 용인시 일원</li> <li>- 허가조건 : 포획 및 시료채취, 부착 후 즉시 방사 전체(허가 받은 전 지역) 포획수는 300마리 미만으로 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4.04.30.</li> </ul>	<조건부 허가>
	26	동물	천연기념물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AI(조류인플루엔자)예찰을 위한 포획</li> <li>- 허가내용 : 원앙 포획 및 시료채취 (혈액, 인후두, 총배설강) 후 방사</li> <li>- 개체수 : 50개체(포획개체수 50, 위치추적기 부착 10)</li> <li>- 허가장소 : 부여군 일원</li> <li>- 허가조건 : 포획 및 시료채취, 부착 후 즉시 방사 전체(허가 받은 전 지역) 포획수는 300마리 미만으로 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4.04.30.</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27	동물	천연기념물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AI(조류인플루엔자)예찰을 위한 포획</li> <li>- 허가내용 : 원앙 포획 및 시료채취 (혈액, 인후두, 총배설강) 후 방사</li> <li>- 개체수 : 50개체(포획개체수 50, 위치추적기 부착 10)</li> <li>- 허가장소 : 공주시 일원</li> <li>- 허가조건 : 포획 및 시료채취, 부착 후 즉시 방사 전체(허가 받은 전 지역) 포획수는 300마리 미만으로 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4.04.30.</li> </ul>	<조건부 허가>
	28	동물	천연기념물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AI(조류인플루엔자)예찰을 위한 포획</li> <li>- 허가내용 : 원앙 포획 및 시료채취 (혈액, 인후두, 총배설강) 후 방사</li> <li>- 개체수 : 50개체(포획개체수 50, 위치추적기 부착 10)</li> <li>- 허가장소 : 김제시 일원</li> <li>- 허가조건 : 포획 및 시료채취, 부착 후 즉시 방사 전체(허가 받은 전 지역) 포획수는 300마리 미만으로 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4.04.30.</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29	동물	천연기념물 큰고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AI(조류인플루엔자)예찰을 위한 포획</li> <li>- 허가내용 : 큰고니 포획 및 시료채취 (혈액, 인후두, 총배설강) 후 방사</li> <li>- 개체수 : 10개체</li> <li>- 허가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원</li> <li>- 허가조건 : 포획 및 시료채취, 부착 후 즉시 방사</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4.04.30.</li> </ul>	<조건부 허가>
	30	동물	천연기념물 원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AI(조류인플루엔자)예찰을 위한 포획</li> <li>- 허가내용 : 원앙 포획 및 시료채취 (혈액, 인후두, 총배설강) 후 방사</li> <li>- 개체수 : 50개체(포획개체수 50, 위치추적기 부착 10)</li> <li>- 허가장소 : 안성시 일원</li> <li>- 허가조건 : 포획 및 시료채취, 부착 후 즉시 방사 전체(허가 받은 전 지역) 포획수는 300마리 미만으로 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4.04.30.</li> </ul>	<조건부 허가>
	31	동물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증식개체 사육</li> <li>- 허가내용 : 수리부엉이 증식 1개체 사육</li> <li>- 개체수 : 총 10개체(허가 9수, 증식 1수)</li> <li>- 허가장소 : 대전오월드 동물원</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1. ~ 2028.10.10.</li> </ul>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32	동물	천연기념물 큰고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큰고니 야생방사</li> <li>- 허가내용 : 큰고니 자연방사(위치추적기 부착)</li> <li>- 개체수 : 3개체(에버랜드 동물원 증식개체)</li> <li>- 허가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40번지 일원 습지</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1. ~ 2023.10.31.</li> </ul>	<허가>
	33	동물	천연기념물 참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매사냥을 위한 참매 포획 및 사육</li> <li>- 허가내용 : 참매 포획 및 사육</li> <li>- 개체수 : 1개체</li> <li>- 허가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간지역</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1. ~ 2024.3.31.</li> </ul>	<조건부 허가>
	34	동물	천연기념물 저어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증식·복원 목적 사육</li> <li>- 허가내용 : 저어새 사육</li> <li>- 개체수 : 2개체</li> <li>- 허가장소 : 서울대공원</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1. ~ 2028.10.10.</li> </ul>	<허가>
	35	동물	천연기념물 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구조개체 사육</li> <li>- 허가내용 : 수달 사육</li> <li>- 개체수 : 3개체(동인동물병원 구조개체)</li> <li>- 허가장소 : 한국수달연구센터</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1. ~ 2028.10.10.</li> </ul>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36	동물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하늘다람쥐 폐사체 소각</li> <li>- 허가내용 : 하늘다람쥐 소각</li> <li>- 개체수 : 1개체</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3. ~ 2023.10.27.</li> </ul>	<허가>
	37	동물	천연기념물 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수달 학술연구를 위한 시료채취</li> <li>- 허가내용 : 수달 털(모근) 채취</li> <li>- 개체수 : 2개체</li> <li>- 허가장소 : 대전 오월드</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3. ~ 2023.11.30.</li> </ul>	<허가>
	38	동물	천연기념물 참매 등 5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철새이동 및 유전적 다양성 연구</li> <li>- 허가내용 : 검독수리, 참매, 잣빛개구리매, 매, 황조롱이 포획 및 채취, 위치추적기 부착, 방사</li> <li>- 개체수 : 검독수리 5, 참매 5, 잣빛개구리매 5, 매 5, 황조롱이 5</li> <li>- 허가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영암호, 금호호, 고천암호 등) 일원</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1.01. ~ 2024.3.30.</li> </ul>	<허가>
	39	동물	천연기념물 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천연기념물 수달 자연 복귀</li> <li>- 허가내용 : 수달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방사</li> <li>- 개체수 : 6개체</li> <li>- 허가장소 : 개체별 구조 장소 및 한강 수계 일원</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6. ~ 2023.12.31.</li> </ul>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40	동물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미호종개 서식 모니터링</li> <li>- 허가내용 : 미호종개 포획, 방사</li> <li>- 허가장소 :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중석리 1038-56(오갑교) ~ 문백면 은탄리 802-1</li> <li>- 허가조건 : 포획, 동정 후 즉시 방사</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6. ~ 2023.12.30.</li> </ul>	<조건부 허가>
	41	동물	천연기념물 수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수달 학술연구를 위한 시 료채취</li> <li>- 허가내용 : 수달 털(모근) 채취</li> <li>- 개체수 : 1개체</li> <li>- 허가장소 : 오산버드파크</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6. ~ 2023.11.30.</li> </ul>	<허가>
	42	동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li> <li>-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086-15번지(5구역)</li> <li>- 사업내용 : 기존 건물 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li> <li>· 설치 면적 310㎡, 설치용량 49kw, 모듈 500w, 98장, 인버터 1대 설치</li> <li>- 허가기간 : 2023.9.11.~2023.10.31.</li> </ul> </li> </ul>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43	동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낙동강 하류 습지식물 (새섬매자기, 갈대 생물량) 조사 (선박운항)</li> <li>-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원 습지(낙동강 하구 갯벌 등)(문화재 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습지식물 조사 모니터링 선박운항</li> <li>· 방형구 설치 5개지점, 새섬매자기, 갈대 채집 1식</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9.11.~2023.10.31.</li> </ul> </li> </ul>	<허가>
	44	동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유항·유속 자동 측정 장치 설치 및 운영</li> <li>-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48(낙동강하굿둑 상류 1km 지점) (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동강 하굿둑 상류 1km 지점 실시간 유항·유속 자동 측정장치 (부이식 1개소) 설치 및 운영</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 9. 15.~2023. 11. 30</li> <li>- 허가조건 : 자동 측정장치 설치·관리 등을 위한 동력선 운행은 낙동강 하굿둑 기수 생태계 복원 모니터링용 동력선 운행과 연계하여 운행하시기 바람</li> </ul> </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45	동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신호동 둘레길 주민 편의시설(의자) 설치</li> <li>-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203번지(허용기준 1구역)</li> <li>- 사업내용 : 고정식 의자(2식) 설치</li> <li>- 허가기간 : 2023.9.18. ~ 2023.10.31.</li> </ul> </li> </ul>	<허가>
	46	동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비 증설</li> <li>-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642-10번지(허용기준 5구역)</li> <li>- 사업내용 :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내 폐유자장탱크2개소(100.54㎡, 높이 7.5m) 증설</li> <li>- 허가기간 : 2023.9.18. ~ 2024.6.30.</li> <li>- 허가조건 : 허가기간 중 겨울철새 도래기간(11월~익년 3월)에는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람</li> </ul> </li> </ul>	<조건부 허가>
	47	동물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li> <li>-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송촌동 718-14번지(허용기준 3, 5구역)</li> <li>- 사업내용 : 단독주택 부지조성 및 신축(2동)</li> <li>· 건축면적 198.15㎡, 연면적 270.09㎡</li> <li>· 1동(1층, 최고높이 4.75m, 일반목조), 2동(2층, 최고높이 7.9m, 철근콘크리트 구조), 용벽 최고 높이 4m</li> <li>- 허가기간 : 2023.9.15. ~ 2025.8.31.</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기간 중 겨울철새 도래기간 (11월~익년 3월)에는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람</li> <li>· 공사 시 소음·진동·비산먼지 등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 시행하고, 농경지 및 수계 등 외부로의 오염 물질 유출 방지 등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li> </ul> </li> </ul> </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48	동물	진도 고니류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li> <li>- 사업위치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644, 645, 646, 644-1번지(허용기준 2구역)</li> <li>-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li> <li>· 사업부지 6,451㎡, 다결정 실리콘 셀 태양전지판 595W, 1170장</li> <li>· 태양광 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 100kW 7대, 집광판 면적 3,232㎡, 고정식 지지대 1식</li> <li>- 허가기간 : 2023. 9. 18. ~ 2024. 6. 30.</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니류의 월동기(11월~익년3월)에는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라며, 허가기간 연장 시에도 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람</li> <li>· 공사 시 오폐수 발생 방지 및 소음 영향 최소화 등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li> </ul> </li> </ul> </li> </ul>	<조건부 허가>
	49	동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가설 건축물 설치(농막)</li> <li>-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3518-1번지(허용기준 1구역)</li> <li>- 사업내용 : 농막 1개동(3m*6m) 설치</li> <li>- 허가기간 : 2023. 9. 18. ~ 2023. 10. 31.</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막 용도로만 사용(수도시설 및 오폐수 발생시설, 간이 화장실, 정화조 설치 금지)하시기 바람</li> <li>· 마감재의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을 활용(붉은색이나 오렌지색 사용 지양)하시고 수변에서 떨어진 쪽으로 설치하시기 바람</li> </ul> </li> </ul> </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50	동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태양광 발전시설 및 경관조명 설치(EDC 16블럭)</li> <li>-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428-6번지 일원(허용기준 5구역)</li> <li>- 사업내용 : 아파트 옥상 위 태양광 발전설비 및 경관조명 설치</li> </ul> </li> <li>· 태양광 설치면적 1,348㎡, 발전용량 311.04kw, 모듈 540w*총576장</li> <li>- 허가기간 : 2023. 9. 19. ~ 2026. 10. 30.</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 기간 중 겨울철새 도래기간 (11월~익년 3월)에는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람</li> <li>·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 경관조명 설치 시 조명환경관리구역 1종 적용 (장식조명) 및 보안등 갓 설치, 조류 이동과 서식에 영향이 적은 조명 계획(오렌지, 붉은색 계통 조명 색상 지양) 수립</li> </ul> </li> </ul>	<조건부 허가>
	51	동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신호동 인공철새 둘레길~신호대교 연결공사</li> <li>-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207번지 일원(허용기준 1구역)</li> <li>- 사업내용 : 무장애 슬로프데크 설치(L=46.5m, W=2m)</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9.26.~ 2023.10.31.</li> <li>- 허가조건 : 허가기간 연장 시에도 겨울철새 도래기간(11월~익년 3월)에는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람</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52	동물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li> <li>-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내리 산337, 산347, 2194-3, 2194, 산339번지(허용기준 2, 4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4,060㎡, 건축면적 768.9㎡ 연면적 2,988.9㎡</li> <li>· 건축물 1동(지하1층, 지상 3층, 최고 높이 17m, 철근콘크리트구조(평지붕))</li> <li>· 옹벽 설치(최고높이 3m), 휨스 설치(H=2.0m, L=190m), 야외 집회장(280㎡) 조성 등</li> </ul> </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 9. 19. ~ 2025. 4. 30.</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허가조건에 따라 건축물의 최돌출점이 해안경계선에서 50m 이상 이격되도록 하고, 건물높이는 바다쪽 지반기준 3층으로 건립하되 지하층은 바다층에서 보아 완전히 지하층으로 하여야 함</li> <li>· 옹벽 공사 시 천연기념물 전문가 참관 하에 실시하고, 토사 유출 등 갯벌 오염이 없도록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li> </ul> </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53	동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낙동강 하굿둑 개방 관련 지하수 관측공 설치 및 시추조사</li> <li>-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200-10번지 등 6필지(문화재구역~4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 지점 시추조사공 1개소 및 지하수 관측정 2개소(관측데이터 전송시설 포함) 설치(굴착깊이 60m, 직경 150mm)</li> <li>· 점용면적: 설치공사 324㎡(장비면적 18㎡×6개 지점×관정 3개소), 시추조사공 운영 2.2㎡(보호시설 면적 0.36㎡×6개 지점×시추공 1개소), 지하수관측정 운영 48㎡(펜스설치 4㎡×6개 지점×관측정 2개소)</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9.21. ~ 2024.6.30.</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 기간 중 겨울철새 도래기간 (11월~익년 3월)에는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람</li> <li>·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환경관리 대책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소음, 진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시행하고, 폐공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li> </ul> </li> </ul> </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54	동물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li> <li>- 사업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석포면 대현리 산128번지(문화재 구역)</li> <li>- 사업내용 : 이동통신 중계기(콘크리트 통신전주, Ø400mm, H=16m) 1본 설치</li> <li>- 허가기간 : 2023.9.26. ~ 2023.12.31.</li> <li>- 허가조건 : 공사 시 오탁 관리 철지 등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li> </ul> </li> </ul>	<조건부 허가>
	55	동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낙동강 염지하수 관련 관측정 설치공사</li> <li>-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41번지(허용기준 1구역)</li> <li>- 사업내용 : 낙동강 하굿둑 개발 관련 염분침투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정 설치 공사</li> </ul> </li> <li>· 시추조사 4개소</li> <li>· SR-1: 좌표 35° 10' 14.90", 128° 58' 15.69"(심도 13m, 직경 76mm, 점용면적 1m<sup>2</sup>)</li> <li>· SR-2: 좌표 35° 10' 14.70", 128° 58' 15.71"(심도 38m, 직경 76mm, 점용면적 1m<sup>2</sup>)</li> <li>· SR-3: 좌표 35° 10' 14.88", 128° 58' 15.76"(심도 60m, 직경 76mm, 점용면적 1m<sup>2</sup>)</li> <li>· SR-4: 좌표 35° 10' 14.49", 128° 58' 15.81"(심도 80m, 직경 76mm, 점용면적 1m<sup>2</sup>)</li> <li>- 허가기간 : 2023.9.26. ~ 2023.10.31.</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기간 연장 시에도 겨울철새 도래 기간(11월~익년 3월)에는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람</li> <li>· 소음, 진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시행하고, 폐공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li> </ul> </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56	동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전력구공사(신강서분기) 지반조사</li> <li>-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62, 1161-1번지(허용기준 1, 5구역)</li> <li>- 사업내용 : 시추조사 2개소(지름 76mm, 깊이 50m)</li> <li>- 허가기간 : 2023.10.5. ~ 2024.8.31.</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기간 중 겨울철새 도래기간(11월~익년 3월)에는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람</li> <li>· 조사 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시기 바람</li> <li>공사소음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공정은 최단시간 또는 일시적으로 진행</li> <li>장비나 건설기계 운영 시 저소음(적정용량), 저진동 장비 사용</li> <li>야간작업 지양</li> <li>· 지하수 오염원 차단을 위한 폐공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폐공관리통합지침 준수)</li> </ul> </li> </ul> </li> </ul>	<조건부 허가>
	57	동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을숙도 생태안내소 설치</li> <li>-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42-10번지(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 컨테이너 1동 설치 (면적 18㎡, 3m×6m×2.1m)</li> <li>- 허가기간 : 2023.10.5. ~ 2023.10.31.</li> <li>- 허가조건 : 설치 시 소음·진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것</li> </ul> </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58	동물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서귀포항 재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지반조사</li> <li>-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서귀동 758-4번지 일원(문 화재구역~허용기준 1구역)</li> <li>- 사업내용 : 지반(시추)조사 6개소 (지름 8cm, 깊이 1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H-1: 위도 33° 14' 14.81", 경 도 126° 33' 59.47"</li> <li>· BH-2: 위도 33° 14' 12.34", 경 도 126° 33' 59.08"</li> <li>· BH-3: 위도 33° 14' 13.27", 경 도 126° 33' 03.00"</li> <li>· BH-4: 위도 33° 14' 08.20", 경 도 126° 34' 08.14"</li> <li>· BH-5: 위도 33° 13' 59.90", 경 도 126° 34' 02.72"</li> <li>· BH-6: 위도 33° 14' 09.65", 경 도 126° 34' 03.34"</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3.11.30.</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환경관리 대책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소 음, 진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여 시행하고, 폐공 원상복구 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li> <li>· 모든 시추 공정은 가능한 간조 시에 실시하고, 야간 및 강우 시 반드시 사업을 중단하시기 바람</li> <li>· 폐유 및 폐기물 등 오염 물질의 주변 해상 유입 방지 철저 등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li> <li>· 사업 시행 전 해양생물 관련 전문가 자문 실시 및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시행</li> </ul> </li> </ul> </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59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대저생태공원 철새쉼터 조성사업</li> <li>-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1동 1-5 대저생태공원(허용기준 1구역)</li> <li>- 사업내용 : 훼손된 습지 복원 및 겨울철새의 철새쉼터(연못) 조성 (30,625㎡)</li> <li>· 매자기 식재 9,100본, 수목제거 27주, 맹꽁이보호웬스 설치 (340m, H=0.9m), 담면고르기 (17,641㎡), 제초 및 풀깎기 (30,625㎡), 마사토 포장(696㎡)</li> <li>- 허가기간 : 2023.10.13. ~ 2023.10.31.</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작업 시 조류 전문가를 동행 하여 작업을 추진하시기 바람</li> <li>· 허가기간 연장 시에도 겨울철새 도래기간(11월~익년3월)에는 공사를 중지하시기 바람</li> <li>· 공사 시 오탁 방지 철저 등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li> </ul> </li> </ul> </li> </ul>	<조건부 허가>
	60	지질	고성 덕명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오수관로 매설</li> <li>- 위치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320-2(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 오수관로 매설(∅100mm, L=4.05m, 깊이200mm)</li> <li>- 허가조건 : 제출된 사업계획서 대로 시행할 것</li> <li>- 허가기간 : 2023. 9. 25. ~ 2023.12.31.</li> </ul> </li> </ul>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61	지질	진주 충무공동 익룡·새·공룡발 자국 화석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li> <li>- 사업명 : 전시관 부설 주차장 확장</li> <li>- 위치 :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68번길 22(문화재구역, 1구역)</li> <li>- 사업내용 : 수목제거, 터파기, 우수관 설치, 블록제거 등</li> <li>- 허가조건 :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할 것</li> <li>- 허가기간 : 2023. 9. 27. ~ 2023.12.31.</li> </ul>	<허가>
	62	지질	경남 양남 주상절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li> <li>- 사업명 :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립</li> <li>- 위치 :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478번지(2구역)</li> <li>- 사업내용 : 건축면적 211.44㎡/연면적 417.07㎡/건물높이 11.017m</li> <li>· 토목공사 : 콘크리트포장 850㎡/집수정 5개소/우수받이 7개소/U형측구 10.3m/PE관 129m</li> <li>- 허가조건 :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할 것</li> <li>- 허가기간 : 2023. 9. 27. ~ 2024. 9. 30.</li> <li>※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사업내용 변경없음)</li> </ul>	<허가>
	63	지질	울진 성류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li> <li>- 사업명 :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li> <li>- 위치 :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30번지(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li> <li>· 안전망 보호철책 설치(약15m)</li> <li>· 완충 모래주머니 설치(약10m)</li> <li>- 허가조건 :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할 것</li> <li>- 허가기간 : 2023. 10. 6. ~ 2023. 12.31.</li> </ul>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64	지질	경남 양남 주상절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립</li> <li>- 위치 :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479-1번지(1구역, 2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2동 : 건축면적 108.12㎡/연면적 156.75㎡/건물높이 9.552m/플장 (6mx3mx깊이1m)</li> <li>· 3동 : 건축면적 95.78㎡/연면적 136.32㎡/건물높이 9.727m/플장 (6mx3mx깊이1m)</li> <li>· 4동 : 건축면적 67.20㎡/연면적 67.20㎡/건물높이 3.733m</li> <li>· 토목공사 : 콘크리트포장 308㎡/집수정 1개소/우수받이 9개소/PE관 68m</li> </ul> </li> </ul> </li> <li>- 허가조건 : 제출된 사업계획서 대로 시행할 것</li> <li>- 허가기간 : 2023. 9. 27. ~ 2024. 9. 30.</li> <li>※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사업 내용 변경없음)</li> </ul>	<허가>
	65	지질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대금굴 이동식 여자 화장실 제작 설치</li> <li>- 위치 :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 111번지 일원(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 대금굴 이동식 여자 화장실 제작 설치 A=15.5㎡ (5.0×3.1), H=3.2m</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된 사업계획서 대로 시행하며,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높은 채도의 외관 마감재 등은 지양할 것</li> <li>· 공사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현장에서 반드시 수거, 청소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9.19.~2024.3.31.</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66	지질	제주 용천동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제주 용천동굴 시추조사</li> <li>-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545번지, 구좌읍 월정리 1400-117번지(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 거무오름용암동굴계 미래 변형예측 연구용역 관련 시추조사(2공)</li> <li>- 허가조건 : 제출된 사업계획서 대로 시행할 것</li> <li>- 허가기간 : 2023.10.10.~2023.12.20.</li> </ul> </li> </ul>	<허가>
	67	지질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천진리 농로 확포장공사</li> <li>- 위치 :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586번지~2590번지 일원(1~2구역)</li> <li>- 사업내용 : 아스콘 포장(A=1,358㎡), 배수관 부설(D=450~D600, L=337m)</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된 사업계획서 대로 시행하며, 사업 시행이전에 사업대상지 중 주요 지점을 선별하여 홍조단괴 분포조사를 시행할 것</li> <li>· 분포조사 및 공사 도중 홍조단괴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보고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5.~2024.6.30.</li> </ul> </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68	지질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li> <li>- 위치 :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263번지 1호(2구역)</li> <li>- 사업내용 : 단독주택 1동 신축 (지상 1층 6.25m, 연면적 99.09㎡)</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되, 지붕 및 벽체 외장재 등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낮은 채도의 색상으로 지정할 것</li> <li>· 우수처리시설 및 측구 등의 설치 시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처리하고, 주변 임야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2024.9.30.</li> </ul>	<조건부 허가>
	69	식물	천연기념물 구미 독동리 반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천연기념물(식물) 종자 시드볼트 영구저장 용역</li> <li>- 사업위치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539외 2필(문화재구역)</li> </ul> </li> <li>- 허가내용 :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영구보존을 위한 300~500립 종자채취</li> <li>○ 허가조건 : 천연기념물 생육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및 제출된 계획서대로 수행하시기 바람</li> <li>○ 허가기간 : 2023.9.5. ~ 2023.11.30.</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70	식물	천연기념물 당진 면천 은행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면천읍성 객사 내삼문 문화재 정밀발굴조사</li> <li>- 사업위치 : 충남 당진 면천면 성상리 772-1,1118-1,789 등 3필지 /658㎡(허용기준 1구역)</li> <li>- 허가내용 : 면천 읍성 객사 내삼문 범위 정밀발굴조사(토지형질변경)</li> </ul> </li> <li>○ 허가조건 : 제출된 사업계획대로 시행하시기 바라며, 문화재 외곽경계 15m이내 트렌치 구획시 문화재청 협의 후 시행할 것</li> <li>○ 허가기간 : 2023.9.6. ~ 2023.12.29.</li> </ul>	<조건부 허가>
	71	식물	천연기념물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천안호두 대표품종 육성 기반 구축</li> <li>- 사업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사길30(문화재구역)</li> <li>- 허가내용 : 과실채취 100개(2023년 50개, 2024년 50개)</li> </ul> </li> <li>○ 허가조건 :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시기 바람</li> <li>○ 허가기간 : 2023.9.19. ~ 2023.10.30.</li> </ul>	<허가>
	72	식물	천연기념물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불갑산도립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li> <li>- 사업위치 :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산2-1(문화재구역)</li> <li>- 허가내용 : 불갑산도립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돌갈기(B2.0) 1,270m, 로프웬스(2.0x1.2) 730m, 이정표 신설7개))</li> </ul> </li> <li>○ 허가조건 :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시기 바람</li> <li>○ 허가기간 : 2023.9.21. ~ 2023.12.29.</li> </ul>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73	식물	천연기념물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당진 삼월리 회화나무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및 도로확장사업</li> <li>- 사업위치 : 충남 당진시 송산면 삼월리 47-2,47-3번지(허용기준 2구역)</li> <li>- 허가내용 : 주차장 조성 1,500㎡</li> </ul> </li> <li>○ 허가조건 :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시기 바람</li> <li>○ 허가기간 : 2023.9.18. ~ 2023.06.28.</li> </ul>	<허가>
	74	식물	천연기념물 제주 천지연 난대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천지연 폭포 차집관로 정비공사</li> <li>-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809번지, 808-2번지</li> <li>- 허가내용: 차집관로 개량(D600mm, L=26.0m, ∠31.4m, B=1.12m, A=35.2㎡)</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문화재구역 내 설치된 차집관로를 우회하여 문화재구역 외부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li> <li>- 공사 시행 시 오탁 방지 철저히 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09-19 ~ 2023-12-31</li> </ul>	<조건부 허가>
	75	식물	천연기념물 성주 경산리 성박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충전기 설치 사업</li> <li>- 사업위치: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367-3(1구역/100m인접)</li> <li>- 허가내용: 충전기 및 배전반 1개소 설치</li> </ul> </li> <li>○ 허가조건 :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시기 바람</li> <li>○ 허가기간 : 2023-09-27 ~ 2023-12-31</li> </ul>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76	식물	천연기념물 제주 납읍리 난대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납읍지구 사유지 내 농업용 수관로 이설공사</li> <li>- 위치: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505-2번지, 1454번지</li> <li>- 허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용수 급수관로 설치(D63) L=300m(굴착 깊이 0.3m/ 굴착 폭 0.3m)</li> <li>. 아스팔트 포장 복구A=6m<sup>2</sup></li> <li>. 기존 아스팔트 철삭 후 덧씌우기 A=32m<sup>2</sup></li> <li>. 콘크리트 포장 복구 A=17m<sup>2</sup></li> </ul> </li> </ul> </li> <li>○ 허가조건: 보완된 설계서대로 시행하 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뿌리 손상 최소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준수(인력 터파기, 식물보호전문가 입회 등)</li> <li>- 포장 면적 최소화</li> <li>- 공사 완료 후 관로 노선 내 수목 뿌리생육 현황 자료 제출</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09-19 ~ 2023-12-31</li> </ul>	<조건부 허가>
	77	식물	천연기념물 성주 경산리 성밖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성주 경산리 성밖숲 내 수목정비</li> <li>- 위치: 성주읍 경산리 446-1번지 일원(문화재구역)</li> <li>- 허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밖숲 왕버들 고사목(26호) 제거: 허가</li> <li>. 성밖숲 잔디광장 왕벚나무 고사목 제거: 허가</li> <li>. 후계목 식재: 불허</li> </ul> </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목 벌채 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li> <li>- 고사목 제거시 뿌리부분까지 제거할 것</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09-27 ~ 2024-12-31</li> </ul>	<조건부 일부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78	식물	천연기념물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SK텔레콤 서귀포시 도순동 통신망관련 관로구축공사</li> <li>-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1134-3 ~257-1번지 앞 도로</li> <li>- 허가내용: 통신망 관로 구축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D관 Ø100mm 2조(총연장 1,100m)</li> <li>. 수공맨홀 4개소(2.0m x 1.1m x H1.45m)</li> <li>. 인공맨홀 4개소(2.3m x 1.4m x H1.8m)</li> <li>. 콘크리트전주 Ø0.32m 1본 H10m (지상 8.7m, 지하 1.3m)</li> </ul> </li> </ul> </li> <li>○ 허가조건 : 굴착 후 원상복구 철저히 하시기 바람</li> <li>○ 허가기간 : 2023-10-13 ~ 2024-10-12</li> </ul>	<조건부 허가>
	79	식물	천연기념물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영천 자천리 오리장림 보수 치료사업 내 고사목 제거</li> <li>- 사업위치: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1421-1일원</li> <li>- 허가내용: 고사목 1주 제거(오리장림 2지역 9번 왕버들)</li> </ul> </li> <li>○ 허가조건 : 수목 벌채 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시기 바람</li> <li>○ 허가기간 : 2023-10-13 ~ 2023-10-31</li> </ul>	<조건부 허가>
	80	천연 보호 구역	독도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2023년 독도 천연해조장 자연암반 개선 및 해조이식 작업</li> <li>- 사업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20번지 일원(서도 일원)</li> <li>- 허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착기질 개선(자연암반 깎내기) : 0.2ha</li> <li>. 해조류 직접 이식 및 설치 : 220개체</li> </ul> </li> </ul> </li> <li>○ 허가조건 :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시기 바람</li> <li>○ 허가기간 : 2023-09-18 ~ 2023-12-31</li> </ul>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81	천연보호구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신흥사 내원암 요사채 건립공사</li> <li>- 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설악동 212번지</li> <li>- 허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사채 건립부지 지반정리 1식</li> <li>. 요사채 건립: 213.75㎡ (정면 8칸 x 측면 5칸/3칸)</li> <li>. 기존 정화조 폐쇄 및 신규 정화조 설치(오배수관 연결 포함)</li> <li>. 경사지 보호 씨드매트 설치 후 자생종자 파종</li> </ul> </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li> <li>- 요사채 배면 절토 시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주의</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09-18 ~ 2023-12-31</li> </ul>	<조건부 허가>
	82	천연보호구역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차양대 및 탄약고 신축공사</li> <li>-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96번지 외 1필지(문화재 구역 내)</li> <li>- 허가내용: 차양대 및 탄약고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파기 222.57㎡</li> <li>. 우수시설 설치 1식</li> <li>. 차양대 신축(면적: 135㎡/지상 1층/철골조, 철근콘크리트/ 높이: 5.6m)</li> <li>. 탄약고 신축(면적: 15.64㎡/지상 1층/철골조, 철근콘크리트/ 높이: 2.7m)</li> <li>. 콘크리트 포장: 362㎡</li> <li>. 조경석쌓기: H0.5~3.0/ 13.2m</li> <li>. 울타리 설치: H2.4xW3.0/ 22경간</li> </ul> </li> </ul> </li> <li>○ 허가조건 : 공사 진행시 지형변화를 최소화 하고 오폐수가 지하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행하시기 바람</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3-12-31</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83	천연보호구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한라산 용진각 현수교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li> <li>- 사업위치: 제주도 오라이동 산107-20번지 일원(용진각계곡)</li> <li>- 허가내용: 예·경보 시스템 구축 1식 . 전광판 2개소, 풍향풍속계 1개소, 인원계수기 2개소 설치 . 비상경보방송, CCTV시설 2개소 설치 . 관제시설 설치 1식(관음사 탐방지원센터 내) . 전기, 통신 선로 설치 L=600m</li> </ul> </li> <li>○ 허가조건 :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시기 바람</li> <li>○ 허가기간 : 2023-10-13 ~ 2023-12-31</li> </ul>	<허가>
	84	천연보호구역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55여단 GOP소초 대피호 신축공사</li> <li>- 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산1번지</li> <li>- 허가내용: 대피호 신축 1식 . 연면적: 101.96㎡ . 건물높이: 지상 1층 .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li> </ul> </li> <li>○ 허가조건 :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공사 진행시 오폐수가 지하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행하시기 바람</li> <li>○ 허가기간 : 2023-10-13 ~ 2024-08-31</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85	천연보호구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2023년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li> <li>-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산78-1번지</li> <li>- 허가내용: 무육숙아베기 46.26ha(삼나무 9,300본)</li> </ul> </li> <li>○ 허가조건 :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해목, 불량목 위주로 과도한 숙아베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행할 것</li> <li>○ 허가기간 : 2023-10-13 ~ 2023-12-31</li> </ul>	<조건부 허가>
	86	천연보호구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국도44호선 한계E3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li> <li>- 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2번지 일원(문화재구역)</li> <li>- 허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벽식 옹벽 설치 : L=162.1m, H5.0m</li> <li>. 법면 보호 등 토공사 1식</li> </ul> </li> </ul> </li> <li>○ 허가조건 : 신규 설치 구간에 대하여 식물 전문가 자문을 받아 기존 식생 조사 후 시행</li> <li>○ 허가기간 : 2023-10-13 ~ 2024-12-31</li> </ul>	<조건부 허가>
	87	명승	창녕 남지 개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출입차단기 설치</li> <li>-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73, 신전리 산175-1(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 출입차단기(W2.20m×H1.0m) 2개소 설치</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3. 12. 31.</li> </ul> </li> </ul>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88	명승	문경새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 설치</li> <li>- 사업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288-16, 51(문화재외곽경계로부터 300m 이격(2구역))</li> <li>-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발전설비용량 : 44.03kW(595W×74매)</li> <li>· 설치면적 : 201.28㎡</li> </ul> </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3. 12. 31.</li> </ul>	<허가>
	89	명승	청송 주산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주산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li> <li>- 사업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주산지리 산48-3(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 기존 재래식 화장실 철거 및 공동화장실(L12.0m×W5.0m×H3.2m) 1동 설치</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3. 12. 31.</li> </ul>	<허가>
	90	명승	부여 구드래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보령댐 도수로 조류유입 차단막 정비</li> <li>- 사업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210-38(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 조류유입차단막(L20m×D5mm×H3.0m) 5장 철거</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3. 11. 30.</li> </ul>	<허가>
	91	명승	부여 구드래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보령댐 도수로 취수구 퇴적토 처리</li> <li>- 사업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210-38(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 보령댐 도수로 취수구 퇴적토 제거 및 운반(상부 제방 유실부)</li> </ul> </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3. 11. 30.</li> </ul>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92	명승	남해 지족해협 죽방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li> <li>- 사업명 : 남해 삼동-창선 국도건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li> <li>- 사업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291-19(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 해상 4개소 시추조사</li> <li>- 허가조건 : 오탉방지지설 설치 후 시행하시기 바람</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3. 12. 31.</li> </ul>	<조건부 허가>
	93	명승	부여 구드래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li> <li>- 사업명 : 건주 스탬프투어 비콘 안내판 설치</li> <li>- 사업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구교리 17-4(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 안내판(35cm×25cm×70cm) 1개소 설치</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3. 11. 30.</li> </ul>	<허가>
	94	명승	문경새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li> <li>- 사업명 : 문경새재 산신문화예술제</li> <li>- 사업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148 일원(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 산신문화예술제 개최</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3. 10. 31.</li> </ul>	<허가>
	95	명승	문경새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li> <li>○ 신청사항</li> <li>- 사업명 : 이동통신중계기 전주 설치</li> <li>- 사업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산34 일원(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 이동통신중계기 전주 1식 설치(지상 최고높이 15.8m)</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3. 12. 31.</li> </ul>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96	명승	영광 법성진 숲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li> <li>- 사업명 : 취약개선중요망코아링 이원화 SKT 광 관로공사</li> <li>- 사업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5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외)</li> <li>- 사업내용 : 통신관(L=116m) 매설</li> <li>- 허가기간 : 2023.10.10. ~ 2023. 11. 30.</li> </ul>	<허가>
	97	명승	부여 구드래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li> <li>- 사업명 : 국가하천 제방안정성 평가 및 정보지도 작성 지반조사</li> <li>- 사업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298-4, 274-1, 4-4(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 시추조사 3개소(굴착깊이 30m, 직경 76mm)</li> <li>- 허가기간 : 2023.10.17. ~ 2023. 11. 30.</li> </ul>	<허가>
	98	명승	부산 영도 태종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li> <li>○ 신청사항</li> <li>- 사업명 : 도보인증대 설치</li> <li>-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29-1번지 등(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 도보인증대 설치(A1.2m<sup>2</sup>, H1.1m)</li> <li>- 허가기간 : 2023.9.15. ~ 2023.12.31.</li> </ul>	<허가>
	99	명승	봉화 청량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li> <li>- 사업명 : 이동통신중계기 설치</li> <li>- 사업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94번지(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 이동통신중계기 1개소 설치(높이 16.5m)</li> <li>- 허가기간 : 2023.9.18. ~ 2023.12.31.</li> </ul>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100	명승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이동통신중계기 설치</li> <li>-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산3-10번지 등(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 이동통신중계기 2개소 설치 (높이 16.5m)</li> <li>- 허가기간 : 2023.9.18. ~ 2023.12.31.</li> </ul> </li> </ul>	<허가>
	101	명승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국립공원 화장실 재설치</li> <li>- 사업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상의리 산24-2번지(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 국립공원 화장실 철거 및 재설치(건축면적 93.76㎡, 높이 6.54m), 석축설치(L59m, H0.2~4.5m)</li> <li>- 허가기간 : 2023.9.26. ~ 2024.12.31.</li> </ul> </li> </ul>	<허가>
	102	명승	충주 탄금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체육시설 배수시설 정비</li> <li>- 사업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산1-1번지(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 석축설치 26m(높이1.5m), 수로관 교체 8m 및 설치 78.3m 등</li> <li>- 허가기간 : 2023.10.11. ~ 2023.12.31.</li> </ul> </li> </ul>	<허가>
	103	명승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구 국도 36호선 대흥 20지구 도로정비 공사</li> <li>-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183-15번지 등(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 낙석방지망 재설치 2,286㎡, 낙석방지울타리 재설치 10경간(20m) 등</li> <li>- 허가기간 : 2023.10.11. ~ 2024.12.31.</li> </ul> </li> </ul>	<허가>

구분	연번	유형	대상문화재	주요내용	비고
	104	명승	울진 불영사계곡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구 국도 36호선 하원 2지구 도로정비 공사</li> <li>-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183-44번지 등(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 낙석방지망 재설치 1,116㎡, 비탈면 보호앵커 27공 (L8.5m) 설치 등</li> <li>- 허가기간 : 2023.10.11.~2024.12.31.</li> </ul> </li> </ul>	<허가>
	105	명승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안전계단 설치</li> <li>- 사업위치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29-1번지(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 안전계단 설치 1개소 (L14m, B2m)</li> <li>- 허가기간 : 2023.10.11.~2024.12.31.</li> </ul> </li> </ul>	<허가>
허가 사항 변경 허가	106	동물	천연기념물 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받는 이 : *****</li> <li>&lt;기허가사항&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내용 : 산양 사육</li> <li>- 허가개체 : 2개체</li> <li>- 허가장소 : 국립생태원</li> </ul> </li> <li>&lt;변경허가사항&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사항 : 사육기간 연장</li> <li>- 허가개체 : 1개체</li> <li>- 허가기간 : 2018.06.05. ~ 2028.10.12.</li> </ul> </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107	명승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 ***</li> <li>○ 신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배수로 정비</li> <li>- 사업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산247번지 등(문화재구역)</li> <li>- 기 허가사항 : 배수로 설치 45m</li> <li>- 허가기간 : 2023.5.31.~2023.12.31.</li> <li>- 변경허가사항 : 배수로 설치 35m, 측구수로관 설치 12m 및 노면정리 150m 등</li> <li>- 허가기간 : 2023.10.11.~2023.12.31.</li> </ul> </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나.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접수 12명